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
백서**

202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 백서

2022

북한인권백서 2022

발행 일: 2022년 12월
저자: 이우태·이규창·정은이·이지순·나용우·최규빈·김아영·윤훈희
발행 인: 고유환
편집 인: 인도협력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5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I S B N 979-11-6589-095-7 93340

가격 24,000원

©통일연구원, 202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북한 인권 백서

2022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이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아영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윤훈희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 인권 백서

2022

C O N T E N T S

| | |
|-----|----|
| 요 약 | 14 |
|-----|----|

Chapter I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 | |
|------------|----|
| 1 발간목적 | 26 |
| 2 연구방법 | 27 |
| 3 북한의 인권정책 | 35 |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 | |
|--------------------------|-----|
| 1 생명권 | 46 |
|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60 |
|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 70 |
|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77 |
| 5 피구금자의 권리 | 87 |
|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 115 |
|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33 |
|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157 |
|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72 |
|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87 |
|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209 |
| 12 참정권 | 217 |
| 13 평등권 | 228 |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 | |
|---------|-----|
| 1 식량권 | 246 |
| 2 건강권 | 269 |
| 3 노동권 | 292 |
| 4 교육권 | 310 |
| 5 사회보장권 | 330 |

Chapter IV

취약계층

| | |
|-------|-----|
| 1 여성 | 348 |
| 2 아동 | 389 |
| 3 장애인 | 420 |

Chapter V

주요사안

| | |
|-----------------|-----|
| 1 정치범수용소 | 452 |
| 2 해외 탈북자 | 464 |
| 3 해외 노동자 | 493 |
| 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517 |
| 5 재해재난 | 549 |

C O N T E N T S _ 표

| | | |
|-----------|---------------------------------|-----|
| 〈표 I-1〉 |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가입 현황 | 28 |
| 〈표 I-2〉 | 2021~2022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 31 |
| 〈표 I-3〉 |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 36 |
| 〈표 I-4〉 |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및 보고서 제출 현황 | 42 |
| 〈표 II-1〉 | 자유권규약 제6조 | 46 |
| 〈표 II-2〉 |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 49 |
| 〈표 II-3〉 |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 50 |
| 〈표 II-4〉 |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 및 법정형 | 51 |
| 〈표 II-5〉 | 마약 및 한국 녹화물 관련 사형 사례 | 53 |
| 〈표 II-6〉 | 북한 비상방역법의 처벌 규정 | 58 |
| 〈표 II-7〉 | 자유권규약 제7조 | 60 |
| 〈표 II-8〉 |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사례 | 63 |
| 〈표 II-9〉 | 공개총살 사례 | 66 |
| 〈표 II-10〉 | 자유권규약 제8조 | 70 |
| 〈표 II-11〉 | 행정처벌법상 노동교양처벌기관 관련 규정 | 75 |
| 〈표 II-12〉 | 자유권규약 제9조 | 78 |
| 〈표 II-13〉 | 수사·예심·기소기간 및 피의자 구속기간 | 83 |
| 〈표 II-14〉 | 자유권규약 제10조 | 87 |
| 〈표 II-15〉 |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97 |
| 〈표 II-16〉 | 교화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98 |
| 〈표 II-17〉 | 노동단련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100 |
| 〈표 II-18〉 | 노동단련대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101 |
| 〈표 II-19〉 |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102 |
| 〈표 II-20〉 | 집결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103 |
| 〈표 II-21〉 |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106 |

| | | |
|-----------|--------------------------------|-----|
| 〈표 II-22〉 | 구류장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109 |
| 〈표 II-23〉 | 교화소 내 과도한 노동 실태 | 112 |
| 〈표 II-24〉 | 자유권규약 제12조 | 115 |
| 〈표 II-25〉 | 여행증 관련 사례 | 121 |
| 〈표 II-26〉 | 강제추방 관련 사례 | 127 |
| 〈표 II-27〉 | 자유권규약 제14조 | 134 |
| 〈표 II-28〉 | 북한의 외국인 재판과 판결 집행 | 152 |
| 〈표 II-29〉 | 영사협약상의 영사접견권 규정 | 154 |
| 〈표 II-30〉 | 자유권규약 제17조 | 157 |
| 〈표 II-31〉 | 주민감시 및 사회통제 사례 | 165 |
| 〈표 II-32〉 |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사례 | 169 |
| 〈표 II-33〉 | 자유권규약 제18조 | 172 |
| 〈표 II-34〉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 175 |
| 〈표 II-35〉 | 10대 원칙 관련 사례 | 177 |
| 〈표 II-36〉 |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 182 |
| 〈표 II-37〉 | 자유권규약 제19조 | 187 |
| 〈표 II-38〉 | 한국·외국 출판물 접촉 및 단속 사례 | 194 |
| 〈표 II-39〉 |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 196 |
| 〈표 II-40〉 |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 201 |
| 〈표 II-41〉 |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실태 | 206 |
| 〈표 II-42〉 | 자유권규약 제21조, 제22조 | 210 |
| 〈표 II-43〉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 214 |
| 〈표 II-44〉 | 자유권규약 제25조 | 217 |
| 〈표 II-45〉 | 참정권 침해 사례 | 226 |
| 〈표 II-46〉 |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229 |

| | | |
|---------|---------------------------|-----|
| 〈표Ⅱ-47〉 |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 231 |
| 〈표Ⅲ-1〉 | 사회권규약 제11조 | 246 |
| 〈표Ⅲ-2〉 | 최근 식량수령 실태 | 255 |
| 〈표Ⅲ-3〉 | 대북제재 이후 기업소 배급이 악화된 사례 | 259 |
| 〈표Ⅲ-4〉 | 기업소(공장)의 배급이 양호한 사례 | 260 |
| 〈표Ⅲ-5〉 | 군부대 배급이 잘 이뤄진 사례 | 264 |
| 〈표Ⅲ-6〉 | 사회권규약 제12조 | 269 |
| 〈표Ⅲ-7〉 | 의료서비스 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 273 |
| 〈표Ⅲ-8〉 |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 | 275 |
| 〈표Ⅲ-9〉 | 계층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실태 | 278 |
| 〈표Ⅲ-10〉 | 빙두(마약류) 남용 사례 | 283 |
| 〈표Ⅲ-11〉 |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 292 |
| 〈표Ⅲ-12〉 | 북한의 임금 지급 실태 | 303 |
| 〈표Ⅲ-13〉 | 사회권규약 제13조 | 310 |
| 〈표Ⅲ-14〉 | 교육 시설과 환경 실태 | 314 |
| 〈표Ⅲ-15〉 | 교원 처우 실태 | 316 |
| 〈표Ⅲ-16〉 | 무상교육 실태 | 318 |
| 〈표Ⅲ-17〉 |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 | 322 |
| 〈표Ⅲ-18〉 |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 | 326 |
| 〈표Ⅲ-19〉 | 국제사회에서의 사회보장 관련 규약 | 330 |
| 〈표Ⅲ-20〉 | 사회보장 관련 법규 | 331 |
| 〈표Ⅲ-21〉 | 부족한 연로연금 관련 증언 | 333 |
| 〈표Ⅳ-1〉 |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관련 증언 | 355 |
| 〈표Ⅳ-2〉 |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진출 실태 증언 | 360 |
| 〈표Ⅳ-3〉 |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 377 |

| | | |
|---------|-------------------------------|-----|
| 〈표Ⅳ-4〉 |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 390 |
| 〈표Ⅳ-5〉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 연간 교육시간 | 404 |
| 〈표Ⅳ-6〉 |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사례 | 406 |
| 〈표Ⅳ-7〉 | 학생들의 노동동원 실태 | 410 |
| 〈표Ⅳ-8〉 |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별 비율(2016년 기준) | 425 |
| 〈표Ⅳ-9〉 | 영예군인 공장 운영 실태 | 429 |
| 〈표Ⅳ-10〉 |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 429 |
| 〈표Ⅳ-11〉 | 왜소증 장애인 격리 관련 증언 | 438 |
| 〈표Ⅳ-12〉 | 왜소증 장애인 비격리 관련 증언 | 438 |
| 〈표Ⅴ-1〉 |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운영 현황 | 454 |
| 〈표Ⅴ-2〉 |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 467 |
| 〈표Ⅴ-3〉 | 난민 자격 해외 탈북자 수 | 468 |
| 〈표Ⅴ-4〉 | 탈북자 처벌 사례 | 481 |
| 〈표Ⅴ-5〉 |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 484 |
| 〈표Ⅴ-6〉 | 신분증 압수 주체 관련 증언 | 514 |
| 〈표Ⅴ-7〉 | 이산가족 등록 현황 | 518 |
| 〈표Ⅴ-8〉 |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 519 |
| 〈표Ⅴ-9〉 |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 519 |
| 〈표Ⅴ-10〉 | 이산가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체 조사 현황 | 520 |
| 〈표Ⅴ-11〉 | 제네바 제4협약 가족권 관련 규정 | 521 |
| 〈표Ⅴ-12〉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 523 |
| 〈표Ⅴ-13〉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 524 |
| 〈표Ⅴ-14〉 | 이산가족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 | 526 |
| 〈표Ⅴ-15〉 | 전시납북자 규모 | 527 |
| 〈표Ⅴ-16〉 | 전시납북자 처리 현황 | 528 |

| | | |
|----------|----------------------------|-----|
| 〈표 V-17〉 |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 529 |
| 〈표 V-18〉 |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 529 |
| 〈표 V-19〉 | 귀환 납북자 현황 | 530 |
| 〈표 V-20〉 |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접수 결과 | 530 |
| 〈표 V-21〉 |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 531 |
| 〈표 V-22〉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531 |
| 〈표 V-23〉 | 제네바 제4협약 강제이송 및 억류 관련 규정 | 533 |
| 〈표 V-24〉 |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 539 |
| 〈표 V-25〉 | 국군포로(사망자 포함) 출신지 현황 | 539 |
| 〈표 V-26〉 |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 | 540 |
| 〈표 V-27〉 | 사망 국군포로 연령 현황 | 540 |
| 〈표 V-28〉 | 제네바 제3협약 강제노동 관련 규정 | 544 |
| 〈표 V-29〉 | 국군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 사례 | 545 |
| 〈표 V-30〉 |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 | 546 |
| 〈표 V-31〉 |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 | 546 |
| 〈표 V-32〉 | 재해재난 관련 법규 | 550 |
| 〈표 V-33〉 | 재해재난 시 지원 사례 | 557 |
| 〈표 V-34〉 | 재해재난 시 구호물자 모집 사례 | 558 |

C O N T E N T S _ 그림

| | |
|-------------------------------------|-----|
| 〈그림II-1〉 교화소 위치 | 89 |
| 〈그림II-2〉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 90 |
| 〈그림II-3〉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 91 |
| 〈그림II-4〉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 92 |
| 〈그림IV-1〉 북한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 | 396 |
| 〈그림V-1〉 정치범수용소 위치 | 454 |
| 〈그림V-2〉 2022년 북한 위기관리지표 | 552 |
| 〈그림V-3〉 2021년 북한의 세계 보건안보 지수 | 553 |
| 〈그림V-4〉 재해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와 실종자 수 | 555 |

요약

Chapter I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2』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7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2』는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을 전후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들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

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비상방역법은 방역질서를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에 반한다. 다만, 구체적인 실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차단 정책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급감함에 따라 파악에 한계가 있다.

당국의 강제노동 부과로 인한 자유권 침해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미한 수준의 범죄에 대해 노동단련형 부과, 집결소 수용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 집결소에서는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한편, 구금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에 비해 일부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15년 이후 통행증을 뇌물로 대체 가능해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이동 수단의 증가로 다소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뇌물을 지

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한편,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 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5호 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수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도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숙박검열을 가장하고 불시에 집에 들어서 가택수색을 받았다는 다수의 증언은 주거 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공간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무리지어 기도를 할 경우 단속되어 정치

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하며,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행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 주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집회를 열거나 결사체를 구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꾸준히 수집되고 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외부 문화 콘텐츠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영상 및 음원,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은 세대와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상물 시청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된 실태는 최근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국 영상물 단속과 처벌 강도는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정권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증언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여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할 수 없다.

평등권은 북한 내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라 침해받고 있다.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 배치, 승진, 거주지 배치 등

에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에 의한 차별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토대와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증첩되어 차별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농장원의 식량권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당간부 등 일부 특권층들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고 있지만 교원 및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배급량이 실수요에 크게 미달한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이후 지배인의 역량에 따라 기업소별로 차등하게 배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개인 간의 격차를 불러오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환자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 한편 주민들은 공식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장마당 약사나 개인

으로부터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병뚜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배치에서 최근 대학 졸업장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되며 좋은 직장에 배정받기 위한 뇌물의 금액도 점차 커졌다. 이는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를 초래했다. 한편, 무리 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최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여가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 과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여건과 환경은 지역 간, 학교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과제 및 환경개선 비용 등이 학

생과 학부모에게 이전되어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보장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급되는 연로연금으로는 고령층의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이며,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력에 의존하며 생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업재해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Chapter IV

취약계층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된 성역할과 성차별의식이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남성의 의식 변화, 젊은 세대의 결혼관은 가정폭력 감소, 가정 내 역할 분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여성이 진출해 있고, 하위직 여성 간부 등용이 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그러나 운전수 등 특정 직종에 진출하지 못하는 영역 제한은 남아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빈곤, 외도, 음주, 마약 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며 인신매매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에도 뇌물로 무마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으며 2021년 SDGs 이행에 관한 VNR 보고를 통해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 전국적으로 애육원과 중등학교 등이 새롭게 건설되거나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되어 온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사상교육은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고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노동동원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과 영예군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2021년 장애인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등록상식문답집 발간, 장애인자전용홈페이지 개설, 청력장애자들을 위한 손말전자사전 개발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이나 자립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Chapter V

주요사안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기존의 인권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및 탈북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경지대에 더 많은 감시시설과 병력 배치를 하고 있다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북 비용이 급증하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탈북 관련한 처벌도 강화되고,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선발 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나 소속기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상당 부분이 다양한 명목으로 현지 중간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파견 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인해 해외 노동자 중 상당수가 강제 노동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2021년과 2022년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

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초고령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지역이 분명한 수해의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자발적인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철저한 국경 봉쇄 및 지역 격폐 등의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이동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고강도 봉쇄정책으로 인한 외부물자 반입금지 및 재해재난 대비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림복원 사업이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재해재난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에 일부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Chapter I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3. 북한의 인권정책
-

1

발간목적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향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분석은 필수적이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관련 자료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백서는 국제인권규범의 틀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조망한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다.

표 | -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가입 현황

| 조약명 | 상태 | 가입/비준일 (통보/기탁일 기준) | 발효일 | 비고 |
|--|-----------------|-----------------------|-------------|----------------|
| 자유권규약 | 가입 ¹ | 1981.9.14. | 1981.12.14. | |
| 사회권규약 | 가입 | 1981.9.14. | 1981.12.14. | |
| 아동권리협약 | 비준 | 1990.9.21. | 1990.10.21. | |
| 아동의 매매·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비준 | 2014.11.10. | 2014.12.10. | |
| 여성차별철폐협약 | 가입 | 2001.2.27. | 2001.3.29. | 제29조 제1항 유보 |
| 장애인권리협약 | 비준 | 2016.12.6. | 2017.1.5. |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따르면,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제26조). 한편,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유엔 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들은 조약에 열거된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과 사법은 법을 기초로 행해지기 때문에 입법은 조약의 이행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각 조

1_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최초로 채택된 데 항의하여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1997년 9월 23일 북한에 보낸 비망록(aide-mémoire)을 통해 규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규약으로부터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 자연스럽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사국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를 인정하였다.

약에서 인정되는 개별 권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되고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법규상의 규정 자체가 조약상의 규정에 배치된다면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북한 법규상의 규정이 조약상의 규정과 부합하나 실제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정 국가의 인권 실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2017년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통일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를 작성하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2』는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거주 지역,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72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통일연구원에서 작성한 구조화된 질문지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질문지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명시한 권리항목들과 유엔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지적하는 인권침해 항목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이번에 심층면접을 진행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은 강한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 따라 일부 조사항목은 새로운 증언을 수집하지 못했다.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권리항목은 2020년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수록한다. 2021년과 2022년 심층면접을 실시한 72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 -2 2021~2022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 항목 | 세부항목 | 사례수(명) | 비율(%) |
|---------|------------------|--------|-------|
| 성별 | 남성 | 21 | 29 |
| | 여성 | 51 | 71 |
| | 소계 | 72 | 100 |
| 최종 탈북연도 | 2017년 이전 | 4 | 6 |
| | 2018년 | 12 | 17 |
| | 2019년 | 43 | 60 |
| | 2020년 | 10 | 14 |
| | 2021년 | 2 | 2 |
| | 2022년 | 1 | 1 |
| | 소계 | 72 | 100 |
| 남한 입국일자 | 2018년 | 5 | 7 |
| | 2019년 | 33 | 46 |
| | 2020년 | 20 | 28 |
| | 2021년 | 11 | 15 |
| | 2022년 | 3 | 4 |
| | 소계 | 72 | 100 |
| 연령대 | 10대 이하(~2003년) | 1 | 2 |
| | 20대 (2002~1993년) | 20 | 28 |
| | 30대 (1992~1983년) | 19 | 26 |
| | 40대(1982~1973년) | 14 | 19 |
| | 50대(1972~1963년) | 16 | 22 |
| | 60대 이상(~1964년) | 2 | 3 |
| | 소계 | 72 | 100 |
| 도강 횟수 | 1회 | 71 | 99 |
| | 2회 이상 | 1 | 1 |
| | 소계 | 72 | 100 |
| 최종 거주지 | 평양직할시 | 5 | 7 |
| | 평안남도 | 6 | 8 |
| | 평안북도 | 4 | 6 |
| | 자강도 | 1 | 1 |
| | 황해남도 | 0 | 0 |
| | 황해북도 | 0 | 0 |
| | 강원도 | 3 | 4 |
| | 함경남도 | 4 | 6 |
| | 함경북도 | 9 | 13 |
| | 양강도 | 38 | 53 |
| | 무응답 | 2 | 3 |
| | 소계 | 72 | 100 |

통일연구원은 심층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NKHR2021000000, NKHR2022000000)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접조사 내용을 『북한인권백서』에 인용할 경우 증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² 입국 초기 단계 심층면접과 별도로 특정 권리 또는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면접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는 “북한이탈주민 ○○○, 연월일, 서울에서 면접”으로 출처를 명기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수기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북한 법규 등 일부 입수한 북한의 공식 문건을 활용하였다.

셋째,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및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관련 자료, COI 보고서 등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문서를 활용하였다.

넷째,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

2_ 또한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으로 처리하였다.

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HCR), 한국 통계청 등 각종 기구들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필요할 경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논문 등을 활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일곱째, 필요할 경우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보도한 국내외 주요 매체를 활용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2』의 집필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2022년에 조사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다만, 경향성을 제시하거나 실태 변화 추이를 제시하는 등 기존 조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1~2022년 이전 조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2021~2022년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둘째, 최근의 북한인권 상황에 주목하기 위하여 조사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2021~2022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북한인권백서 2022』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사건을 다룬다. 다만,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시킨다.

셋째,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주민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료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과 같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증언은 예외적으로 이를 수록하되, 득문(得聞)사항임을 명시한다.

넷째, 북한 법규의 경우 입수된 것 중 가장 최근 법규를 인용한다. 다만, 『북한인권백서 2022』는 2022년 10월 기준 『북한법령집』을 활용하였다. 또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 법규를 인용하되, 구 법규임을 명시한다.

다섯째, 북한 기관명의 경우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한다. 다만, 심층면접 대상자가 변경 전의 기관명을 언급한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하며, 일부 용어는 예외적으로 개편 전·후의 사항을 혼재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위성이 공식명칭이지만 보위부를 같이 사용한다.

3

북한의 인권정책

가. 북한의 인권법제와 인권관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였다(제8조). 그 이전에도 북한은 변호사법(제2조), 형사소송법(제6조) 등의 법규에 인권을 명시하는 조문을 두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보호법(2003), 연로자보호법(2007), 여성권리보장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해외동포권익옹호법(2022)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제2차 UPR 수검을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북한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성과를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기술하였다.³ 특히,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기관과 법일군(법일꾼) 연수 장소에서의 인권교육 외에 여러 형태의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저명한 인권학자와의 대담 프로그램 방영, 국제인권법 및 기타 인권 교재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의 날, 국제부녀절, 국제아동절, 국제 장애인의 날에

3_UN Doc. A/HRC/WG.6/19/PRK/1(30 January 2014), paras. 30~124.

는 언론 매체들이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문서의 주요 내용과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⁴

표 1-3 북한의 인권 관련 법규

| | 권리 | 관련 법규 |
|---------------|---------------------------|--|
|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 형법, 형법부칙(일반범죄),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
| | 신체의 자유와 안전 | 행정처벌법, 인민보안단속법, 인민보안법, 검찰감시법, 주민행정법, 구타행위방지법 |
| | 평등권 |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평양시관리법 |
| |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 | 형법, 변호사법, 재판소구성법, 신소청원법, 판결판정집행법 |
| | 법원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해사소송관계법, 재산집행법 |
| |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 출입국법, 주민행정법, 살림집법, 비상방역법, 전염병예방법 |
| | 참정권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 | 국적을 가질 권리 | 국적법 |
|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 출판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
| | 가족권 | 가족법, 민법 |
|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 재산권 | 민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재산집행법 |
| | 식량권 | 농업법, 농약법, 농장법, 농작물종자관리법, 작물유전자원관리법, 잠업법, 양정법, 수산법, 양어법 |
| | 건강권 |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료감정법, 전염병예방법, 비상방역법, 의약품관리법, 국경위생검역법 |
| | 노동권 |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노동정량법, 인민경제계획법 |
| | 교육권 |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원격교육법 |
| | 사회보장권 |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연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
| | 환경권 |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오염방지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보통강오염방지법, 산림법, 기상법 |
| | 문화권 |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원림법, 광천법, 자연보호구법, 문화유산보호법, 민족유산보호법 |

4. *Ibid.*, paras. 20~22.

| | 권리 | 관련 법규 |
|--------------|------------|----------------------------|
| 여성차별 철폐협약 | 여성 권리 보호 |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여성권리보장법 |
| 아동권리 협약 | 아동 권리 보호 | 어린이보육교양법, 육아법, 아동권리보장법 |
| 장애인권 리협약 | 장애인 권리 보호 | 장애자보호법 |
| | 해외동포 권리 보호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인권의 개념은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보편적 인권 개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는 데 비해 북한은 ‘전체’로서의 인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63조). 북한이 많은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집단주의 인권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둘째,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우리식 인권관을 주장하고 있다.⁵ 주체사상은 북한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활동지침으로 명시한 이래(제4조)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통치이념으로 작동하여 왔다. 2019년 4월 11일 헌법 개정 시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되었다(북한 헌법 제3조).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북한체제의 근간인 노동당규약과 10대원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 당국과 노동당은 북한체제를 유지·계승하기 위해 금수산태양궁전법(2013),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등의 법규 제정을

5_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평양: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p. 7.

통해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통해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소와 재판소도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북한 헌법 제156조, 제162조).

셋째, 북한에서의 인권 개념은 국권(國權), 즉 국가의 권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자주권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 관련 문제는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내정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⁶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북한 체제 및 책임규명 문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북한체제 및 책임규명 문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2000년대 초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구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결의

6_ 위의 보고서, p. 9.

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04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 8월 1일에는 엘리자베스 살몬이 4대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2013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가 설치되었다. 2015년 6월에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였다.⁷ 2021년 12월 15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후 7개 이사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일본이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북한은 2014년 2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COI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북한의 기관 및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⁸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인민보안부(현 사회안전성), 검찰 및 재판소

7_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20.12.11., 2021.12.15., 북한인권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

8_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para. 80.

제도,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등에 기관책임(Institutional accountability)이 있다고 결론지었다.⁹ COI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situation)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⁰ 특히, COI 상세보고서는 ‘최고지도자’가 노동당 및 국방위원회와 별도로 독자적인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함으로써¹¹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형사책임을 언급하였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형사책임 언급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북한 체제의 전복(顛覆)을 의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취약계층 인권 및 SDGs〉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30일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산전 60일, 산후 90일이던 종전 출산휴가를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15년 11월 23일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3개 유보 조항 가운데 2개 조항

9_UN Doc. A/HRC/25/CRP.1(7 February 2014), paras. 1166~1190.

10_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para. 87.

11_UN Doc. A/HRC/25/CRP.1(7 February 2014), para. 1191.

의 유보를 철회하고, 2016년 4월 11일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아동인권의 경우에는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2014년 11월 10일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2016년 5월 13일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제5차 및 제6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2013년 11월 21일 장애자보호법 개정, 2016년 11월 23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같은 해 12월 6일 비준서 유엔 사무국 기탁 조치를 취하고,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북한 방문은 불허하면서도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의 방북은 허용하였다. 2012년 하계 런던장애인올림픽,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2016년 하계 리우장애인올림픽, 2018년 동계 평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넷째,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SDGs 이행과 관련하여 2021년 6월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작성하여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 제출하였다. 북한은 유엔 SDGs 항목에 따라 자국의 17대 목표와 95개 세부 목표, 132개 지표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VNR 보고서는 목표-5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대응〉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이행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이행 보고서도 2002년 이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비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선별적 수용·협력 양태는 UPR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UPR은 모두 3차례 있었다(2009년, 2014년, 2019년).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 부분 수용, 유념, 거부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제 유지, 책임 규명과 관련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였고 체제 유지와 큰 관련이 없는 사항, 취약계층 관련 사항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표 | -4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및 보고서 제출 현황

| 조약명 | 가입/비준 (통보/기탁일 기준) | 보고서 제출 |
|----------|----------------------|---|
| 자유권규약 | 1981.9.14. 가입 | 최초 보고서: 1983.10.24. 2차 보고서: 2000.3.20. |
| 사회권규약 | 1981.9.14. 가입 | 최초 보고서: 1984.12.18. 2차 보고서: 2002.4.12. |
| 아동권리협약 | 1990.9.21. 비준 | 최초 보고서: 1996.2.13. 2차 보고서: 2002.5.16. 3·4차 통합보고서: 2007.12.10. 5·6차 통합보고서: 2016.5.13. |
| 여성차별철폐협약 | 2001.2.27. 가입 | 최초 보고서: 2002.9.11. 2·3·4차 통합보고서: 2016.4.11. |
| 장애인권리협약 | 2016.12.6. 비준 | 최초 보고서: 2018.12.19.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 피구금자의 권리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 참정권
13. 평등권

1

생명권

생명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다른 권리들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생명권은 최고의 권리이며, 모든 인권의 기본이다. 이에 보편적 및 지역적 차원의 주요 국제인권문서들은 예외 없이 생명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권규약도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6조에서 생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II-1 자유권규약 제6조

| | |
|-----|--|
| 제1항 |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 제2항 |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
| 제3항 |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
| 제4항 |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
| 제5항 |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
| 제6항 |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이하에서는 생명권과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은 생명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의적 생명 박탈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² ‘자의적’의 의미는 다소 모호하나, ‘불법적’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국의 국내법 하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생명 박탈의 경우라도 자유권규약 제6조 하에서는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자의적’ 생명 박탈의 금지는 생명이 불합리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자유권규약 제6조의 규정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4조,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금지된다.

북한에서는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루어진다. 2016년 4월 함흥교화소에서 도주 중 검거된 수감자에 대해 (재판절차 없이) 공개총살을 집행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증언자는 처형 목격을 원하지 않는 수감

12_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6: Article 6(Right to Life)," April 30, 1982, para. 3.

자들은 불참 시 출소일을 늦추겠다고 위협하였고, 총살 후에는 사체를 땅에 놓고 돌을 던지라 강요했으며, 이후 남성 수감자들이 시체를 화장했다고 한다.¹³ 이런 식의 처형은 피구금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지니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교화소에서도 공개재판을 통해 사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¹⁴ 이러한 재판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재판 유무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판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재판절차를 거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장성택, 현영철, 리용호, 최영건, 김용진 등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처형은 대체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사형 적용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중

13_NKHR2019000043 2019-07-01.

14_NKHR2015000031 2015-02-10.

한 범죄”는 표현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사형이 아주 예외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지니도록 “가장 중한 범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반역, 해적행위, 강도, 유독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거래, 마약 관련 범죄, 병역 회피, 재산범죄, 경제범죄, 간통, 부패, 정치범죄 등은 “가장 중한 범죄”가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제6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고의적인 살인이나 살인미수, 고의적인 중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현행 북한 형법(2015)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은 <표II-2>와 같다.

표 II-2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 | | |
|-------------------|--|-----------------------|
|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테로(테러)죄 (제61조) |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조국반역죄 (제63조) |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15_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6: Article 6(Right to Life)," April 30, 1982, para. 7.

| | | |
|--------------------------------------|--|-----------------------------|
| 파괴, 압해죄 (제65조) | 반국가목적 파괴, 압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민족반역죄 (제68조) |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북한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제206조) |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마약 밀수, 거래죄 (제208조) | 대량의 마약을 밀수·거래한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고의적중상인죄 (제266조) |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특히, 2013년 형법부터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3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 | |
|---------------------|---|
| 2012년 형법 |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
| 2013년 형법 |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 2015년 형법 |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한편, 북한은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형법부칙(일반범죄)(2010)은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생명권에 반하는 ‘극히 무거운’, ‘특히 무거운’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II-4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 및 법정형

| | |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제1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제2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제3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제4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제5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유색금속 밀수·밀매죄(제6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도주죄(제7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제8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제9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제10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
|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제11조) |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북한에서 사형 관련 규정의 구체적 적용 실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형집행을 직접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조사에서는 마약 거래,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살인, 국가재산 약취·강도·파손, 인신매매, 강간 등을 이유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들이 다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미신행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득문했다고 증언하였다.¹⁶ 양강도 ○○시에서 거주하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빙두(마약, 이하 '빙두') 때문에 총살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처형보다는 비공개처형으로 진행한다고 증언하였다.¹⁷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총살되었으며, 본인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이를 돌려 보았다고 증언하였다.¹⁸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2명이 각각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⁹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6_NKHR202000011 2020-06-15.

17_NKHR2019000022 2019-05-07.

18_NKHR2019000084 2019-10-05.

19_NKHR2019000103 2019-11-09.

표 II-5 마약 및 한국 녹화물 관련 사형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총살되었음. | NKHR2019000084 2019-10-05 |
| 2014년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2명이 각각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되었음. | NKHR2019000103 2019-11-09 |
| 2014년 10월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3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음. | NKHR2018000098 2018-10-01 |
| 2015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30~40대 남성 5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과 마약 거래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총살되었음. | NKHR2017000083 2017-09-25 |
| 2017년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1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음. | NKHR2018000114 2018-10-13 |
| 2017년 2월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20여 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와 마약 거래를 이유로 총살되었음. | NKHR2017000073 2017-08-28 |

최고지도자의 지침(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김정은 지시)이나 노동당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 종교 활동으로 공개처형되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대동강 자라공장 지배인과 당비서가 공개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반당적 행위, 수령의 유혼·교시 말살,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처형됐다고 증언하였다.²⁰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반체제 삐라 유통을 이유로 여성 1명이 공개재판을 받은 후 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¹ 증언자에 따르면, 당시 1,000~2,000명 정도 군중이 모여 있었고, 황해북도의 주변 군(軍)과 보안원, 보위원들이 올라왔으며, 인민반장이거나 비서급, 공장기업소 및 인민반 인

20_NKHR2020000018 2020-07-04.

21_NKHR2019000054 2019-07-29.

원 등은 모두 참석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재판소 인원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재판 및 처형 전반을 국가보위성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18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70세 여성이 미신행위 및 미신행위 전파를 이유로 수성천 다리 밑에서 총살당한 것을 득문했다는 증언,²²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도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²³

사회일탈 및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증언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2014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아동납치사건에 연루된 범죄자가 공개총살되었다는 소식을 득문했다는 증언,²⁴ 2014~2015년경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포주 역할을 했던 여성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득문했다는 증언,²⁵ 2017~2018년경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인죄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득문했다는 증언²⁶이 수집되었다. 2018년 1월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온성군당 책임비서 아들(6세)을 운전수 애인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 여성을 군중 10만 명 앞에서 총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상당히 많은 사람 앞에서 해당 여성이 총살되었다.²⁷ 한 북한이탈주민은

22_NKHR2019000071 2019-08-26.

23_NKHR2019000024 2019-05-18.

24_NKHR2019000047 2019-07-01.

25_NKHR2019000054 2019-07-29.

26_NKHR2019000038 2019-06-15.

27_NKHR2019000111 2019-11-18.

2018년 2~3월경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구에 있는 장생이라는 군부대 마을에서 남성 1명이 살인죄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²⁸ 간부들이 탈북한 경우에는 탈북 당시 지위, 탈북 동기, 소지품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²⁹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그 시기는 증언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 이후 공개처형이 사라졌다고 한다.³⁰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2008년 이후 공개처형이 사라졌다고 증언하였다.³¹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2~2013년 공개총살을 목격한 이후 공개처형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³² 2019년에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2013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공개총살이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공개처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김정은의 명령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³³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2016년 마지막으로 공개처형을 봤고, 2018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³⁴

28_NKHR2019000118 2019-11-30.

29_NKHR2022000001 2022-05-13.

30_NKHR2022000020 2022-06-18.

31_NKHR2022000003 2022-05-19.

32_NKHR2020000005 2020-05-15.

33_NKHR2020000032 2019-08-04.

34_NKHR2021000017-2 2022-05-26.

이러한 증언과 달리 2015년과 2018년에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⁵ 이를 볼 때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공개처형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개처형 일부는 비공개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경 탈북 브로커를 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비공개총살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⁶ 공개처형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증언 수집이 필요하다. 아울러 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처형 자체는 유지되는 가운데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은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유의할 점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 금지의 경우 사형선고 시가 아닌 범죄행위 시의 연령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35_NKHR2022000012 2022-06-10.

36_NKHR2022000003 2022-05-19.

북한 형법은 제29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치의 측면에서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미성년자 범죄의 사형선고와 임신부의 사형집행 사례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라. 방역질서 위반에 대한 사형부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제정된 북한 비상방역법(2020)은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제3조), 봉쇄·제한·차단(제33조), 격리(제34조)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집행태만죄(제65조), 국경·지상·해상·공중봉쇄태만죄(제68조)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조치로 비례성에 반한다는 점에서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당해 상황의 긴급성에 의하여 의무 위반 조치가 가능하지만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자유권규약 제4조 제1항).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실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차단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하여 파악에 한계가 있다.

표 II-6 북한 비상방역법의 처벌 규정

| 비상방역조치 위반 | 처벌 |
|-----------------------------------|--------------------------------|
| 비상방역질서 위반한 공민(제59조) | 벌금 |
| 비상방역질서 위반 공민(제62조) | 노동교양 |
| 비상방역질서 위반 기관·기업소·단체(제60조) | 벌금 |
| 엄중한 경우(제61조) | 중지 또는 폐업 |
| 비상방역질서 위반 일군(제63조) |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철직 |
| 비상방역질서 위반한 자(제64조) | 구금 |
| 비상방역사업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집행태만죄(제65조) | 극히 엄중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비상방역의무태만죄(제66조) | 극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죄(제67조) | 극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 국경·지상·해상·공중봉쇄태만죄(제68조) | 극히 엄중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
| 비상방역사업방해죄(제69조) | 극히 엄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 외국인에 대한 법적 제재(제70조) | 벌금, 정상이 엄중한 경우 추방 |

마. 기타 생명권 침해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유한 생명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생명권이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한 후, “고유한 생명권”이란 표현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생명권의 보호는 각국의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⁷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북한 내에는 생명권과 관련한 여러 침해 사안들이 존재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II. 시

37_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6: Article 6(Right to Life)," April 30, 1982, para. 5.

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5. 피구금자의 권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바. 평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이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하여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로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다.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반당 행위, 최고지도자의 지침 위반, 성경 소지, 선전물 유통, 미신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수집된 사례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북한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의 폭넓은 규정과 빈번한 집행은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당사국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처형 자체가 감소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생명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방역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비상방역법 규정은 북한주민의 생명권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의 경우 제7조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하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7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완된다.

표 II-7 자유권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은 공무원이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특정한 목적, 고의, 극심한 고통과 같은 고문의 핵심 요소 중 일부가 결여되어 고문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가혹한 고통의 부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해당한다.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 간 개념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지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형법(2015) 및 형사소송법(2016)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 제242조는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후, 이러한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6조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

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에서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6조에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5조에서는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제3차 UPR 수검을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과학적 정확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⁸

그러나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의자 심문 기간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 중 하나로 고문이 만연해 있다.³⁹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표 II-8). 사회안전성 산하의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및 구류장 등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증언도 수집되었다.⁴⁰ 이를 볼 때 보위성-안전성 산하 구금시설 모두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구금시설에 수감되었지만 구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으며 검찰소에서는 구타를 할 수 없고, 보

38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27.

39_한동호 외,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8.

40_NKHR202000020 2020-07-04.

안서의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⁴¹ 2017년 5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성 구류장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은 당시 인권유린으로 북한이 타격을 받았을 때라 가혹행위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⁴²

표 II-8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2월 인신매매 혐의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음. 몽둥이로 맞아 온몸이 멍이 들고 살이 다 썩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증언함. | NKHR2018000074 2018-07-30 |
| 2015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에서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15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4명의 보위원이 주먹, 발 등으로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음. | NKHR2018000127 2018-11-19 |
| 2016년 5월 양강도 삼지연시 보위부 집결소에서 8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행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음. 아버지는 폭행을 당한 정도가 더 심하게 치아가 다 나가고 눈이 터질 정도였음. | NKHR2018000129 2018-11-19 |
| 2016년 9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15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실토하고 인정할 때까지 보위원에게 구타를 당하였음. 당시 의자에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을 거부하면 보위원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 의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증언함. | NKHR2018000109 2018-10-06 |
| 2018년 탈북 시도 중 검거되어 2019년 초 약 4개월 반 정도 집결소와 구금시설에 수용되었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매를 맞고 고정자세를 했음. | NKHR2020000020 2020-07-04 |
| 2019년 4월부터 구금시설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재판 전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형 대기 중인 사람'으로서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고정행위 등의 가혹행위가 행해진다고 증언함. | NKHR2020000035 2020-09-05 |

나. 공개적 사형집행

사형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어떠한 사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이 문제될 수

41_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32 2020-08-04.

42_NKHR2020000027 2020-07-06.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형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⁴ 여기서의 ‘공개적 사형집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되 그러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는 자유권규약 제6조와 제7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편, 사형집행이든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든지 간에 이를 공개적으로 하면 그러한 장면이 일반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목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⁴⁵

43_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rch 10, 1992, para. 6.

44_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을 비롯한 몇몇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공개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UNHRC, Concluding Observations: Islamic Republic of Iran, UN Doc. CCPR/C/IRN/CO/3 (201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O/72/PRK (2001); Nigeria, UN Doc. CCPR/C/79/ Add.65 (1996). 고문 및 기타 잔혹한·비인도적·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역시 공개적 사형집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Note by Secretary-General, Interi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Doc. A/67/279 (2012).

45_ COI도 상세보고서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어 [공개처형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처형의 목격자들 또한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취급의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HCHR,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 830.

북한은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2005)에서 사형의 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⁴⁶ 사형의 공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치사상적 이유, 미신행위 등을 죄목으로 공개처형된 사례가 다수 수집되었다. 2015년 대동강 자라공장 지배인과 당비서가 정치사상적인 죄목으로 공개총살되었는데, 반당적 행위, 수령의 유혼교시 말살, 부정부패 등의 처형 사유가 공표되었으며 1,000명 정도가 참관하여 집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⁷ 또한,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⁸ 마약, 살인을 죄목으로 한 공개처형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월 청진 수성천에서 있었던 공개처형 사건을 증언하였다. 군당 책임비서 운전수 아내가 30대 중반 여성과 함께 마약장사를 하다가 갈등이 생겨 30대 중반 여성이 운전수 아내를 죽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김정은에게 알려져 군중 앞에서 총살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한다.⁴⁹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공개적 사형집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민반에서 사형집행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공지하기는 하나 참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증

46_ 북한 형사소송법 제421조에서는 사형판결의 집행은 중앙재판소가 발급한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판정집행법 제32조 역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사형은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7_ NKHR2020000018 2020-07-04.

48_ NKHR2020000011 2020-06-15.

49_ NKHR2022000014 2022-06-10.

언,⁵⁰ 학교나 직장에서 동원되어 보러 간다는 증언,⁵¹ 대학교에서 불량분자로 간주되는 학생들(이른바 ‘애로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사형집행을 보게 한다는 증언⁵²도 수집되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사형집행 현장에 나가는 주민들의 수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9 공개총살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 여성 3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9000054 2019-07-29 |
| 2015년 2월 평안남도 평성시 경기장에서 남성 5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7000083 2017-09-25 |
| 2016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3명과 여성 4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7000073 2017-08-28 |
| 2017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2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8000114 2018-10-13 |
| 2017년 2월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20여 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7000073 2017-08-28 |
| 2017년 12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여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8000107 2018-10-01 |
|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2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9000024 2019-05-18 |
| 2018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여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9000071 2019-08-26 |
| 2018년 1월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여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9000111 2019-11-18 |
| 2018년 1월 청진 수성천에서 마약장사로 갈등을 빚은 30대 여성이 군당 책임비서 운전수 아내를 살인하였다는 이유로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22000014 2022-06-10 |
| 2018년 2~3월경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남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 NKHR2019000118 2019-11-30 |

50_NKHR2018000060 2018-07-02.

51_NKHR2018000098 2018-10-01.

52_NKHR2018000114 2018-10-13.

제한된 정보로 인해 수집된 사례들을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와 공개적으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진 경우로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유권규약 제7조 하에서는 총살 같은 장면을 ‘공개’하는 것의 비인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상기 사례들은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상반된 증언들도 수집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에서 살펴보았다. 공개적 사형집행 감소 추세가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즉결 처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통일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양강도 혜산시에서의 공개적 사형집행 목적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피면접자들의 절반 이상이 양강도에서 거주하였던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공개적 사형집행은 내륙지역보다는 국경지역에서, 그리고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경지역 및 도시지역에서 불법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공개적 사형집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 및 공포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 강제실종 및 구금시설 내 사망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강제실종이 강제실종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⁵³ 강제실종된 자는 오랜 기간 가족과 격리되어 구금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그 가족은 강제실종된 자의 행방과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V.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5. 이산가족·납북자·국군 포로 참조).

라. 평가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에 수감되는 기간 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자행된다고 증언하였다. 반면에 북한 당국이 구금시설 내에서 구타를 근절하고 있으며,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한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3_ 예컨대,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munications 950/2000, *Sarma v. Sri Lanka*, July 31 2003, para. 9.5; 1295/2004, *El Alwani v. Libyan Arab Jamahiriya*, July 11 2007, paras. 6.5, 6.6; 1327/2004, *Grioua v. Algeria*, July 10 2007, paras. 7.6, 7.7.

공개적 사형집행과 사형집행 강제 목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반당행위나 최고지도자의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은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미신, 마약과 살인에 대한 공개처형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형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되고, 사형집행을 목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정보와 증언으로 인해 공개처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유입 급감으로 인해 2020년 이후 실태 파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제4조에서 어느 누구도 예측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노예제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 예측상태 금지,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 예측상태 금지의 경우와는 달리 강제노동 금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표 II-10 자유권규약 제8조

| | |
|-----|--|
| 제1항 |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 제2항 | 어느 누구도 예측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
| 제3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의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의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 |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복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본다.

가. 경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의 부과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a)는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조 제3항 (b)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3항 (c)는 합법적 억류 또는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또는 의무, 군사적 의무,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의무, 통상적 시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의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합법적 억류’는 재판 전 억류를 포함하여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의 결과로서 부과된 모든 유형의 억류를 의미하며, ‘억류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또는 의무’는 구금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일과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 형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노동교화형(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유기노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다(제30조).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이다(제31조). 상기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b)에 따르면, 법원에서 노동교화형 또는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를 교화소나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은 경범죄에 부과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북한 형법에 따르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에 해당하는 노동단련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8조 제3항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수행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수행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5. 피구금자의 권리).

나. 집결소 수용자의 노동력 착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형법에서는 범죄자를 노동시키는 형벌이 있고, 이는 자유권규약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직 실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집결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집결소는 여행 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고 수용하는 곳이다. 집결소 측에서 수용자의 거주지 담당 보안서 또는 보위성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 보안원 또는 보위원이 집결소에 도착하면 수용자는 거주지로 이송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집결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결소에서 거주지 보안서로의 통보 시점에 따라 수용자들은 3개월에

서 6개월 정도까지 집결소에 있게 되는데, 집결소 측에서 수용자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하여 수용자 거주지 보안서 통보를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7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서 20일간 수용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을철 수확 작업과 공장 담장 쌓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자에 따르면 원래는 집결소에서 3개월 정도 붙잡아 두고 노동을 시키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노력을 하여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가족들이 거주지의 담당 보안원에게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집결소 수용 기간이 달라진다고 한다.⁵⁴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조사는 받지 않고, 농사일, 건설장 일, 축사일 등을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⁵ 이 증언자는 건설장에서 블록을 등에 지고 나르는 노동을 했으며,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에 물을 마시려 하자 관리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⁵⁶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농포집결소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집결소 내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마대에 담는 노동을 하였으며, 배추심기, 고추심기 등 농사일도 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⁷

54_NKHR2018000098 2018-10-01.

55_NKHR2019000010 2019-04-08.

56_위의 증언.

57_NKHR2019000075 2019-08-26.

이처럼 단순 구류장소인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이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에게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증언도 수집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한 구금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재판 전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형 대기 중인 사람’이며 이 구금시설에서는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⁵⁸ 2017년 말부터 2018년도 4월 초까지 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던 한 북한이탈주민도 증언자도 노동력 착취가 없었다고 한다.⁵⁹

다. 노동교양처벌

자유권규약 제8조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보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행정처벌법(2017)이다. 행정처벌법 제15조는 행정처벌의 종류 중 하나로 노동교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노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노동교양대에 보내여 노동을 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노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행정처벌법은 161개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교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교양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

58_NKHR2020000035 2020-09-05.

59_NKHR2020000004 2020-05-15.

회, 검찰기관,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다(제333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표 II-11 행정처벌법상 노동교양처벌기관 관련 규정

| | |
|---|---|
| 제333조 (사회주의법무 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권한) |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감직, 해임, 철직처벌, 벌금처벌, 중지, 변상처벌, 몰수처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
| 제335조 (검찰기관의 행정처벌권한) |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
| 제336조 (재판기관의 행정처벌권한) |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을 줄수 있다. |
| 제337조 (인민보안기관의 행정처벌권한) |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

행정처벌법뿐만 아니라 인민보안단속법(2007)도 인민보안기관과 책임일군협의회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7조).

노동교양처벌은 앞에서 살펴본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2016년 8월에서 9월까지 양강도 보천군 읍 노동교양대의 경험이 있는 이탈주민은 재판 없이 6개월 처분을 받아 교양대에 출퇴근을 하며 별목일과 부역일을 했다고 증언했다.⁶⁰ 또 다른 이탈주민은 2016년 1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안서 사람들과 정

60_NKHR2018000120 2018-10-22.

치위원에게 노동교양처별 6개월을 받아서 양강도 혜산시 노동 단련대에 수용되었고, 중등학교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⁶¹

라. 평가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때문에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은 자유권규약에 준용되지만 경미한 범죄에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한다면 자유권 규약에 반한다. 또한 형을 받지 않은 수감자를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인 집결소에서 노동을 강요하고, 행정처벌법과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라 노동교양처별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노동에 대한 강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반대 증언도 수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61_NKHR2017000095 2017-10-23.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신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3조에서 생명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신체가 제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신체의 안전은 심신에 대한 상해로부터의 자유 또는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의미한다. 자유권규약은 제9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총 5개 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체포 또는 억류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일부와 제3항은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반면 나머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표 II-12 자유권규약 제9조

| | |
|------------|--|
| 제1항 |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 제2항 |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
| 제3항 |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을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 제4항 |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
| 제5항 |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하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북한 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자의적·불법적 체포·억류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적 체포·억류는 법에 근거가 없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한 체포·억류이다.⁶² 자의성은 불법성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부적절성, 부당성, 예측가능성의 결여, 적법절차의 결여, 합리성의 결여, 필요성의 결여, 비례성의 결여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⁶³ 따라서 자의적

62_ UN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December 16, 2014, para. 11.

63_ *Ibid.*, para. 12.

체포·억류 금지와 불법적 체포·억류 금지는 중첩될 수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억류된 자의 처우 문제는 주로 자유권규약 제7조와 제10조에서 다루어질지라도 억류된 자가 억류된 목적과 무관한 처우를 당한다면 자의적 억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⁶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 체포·억류,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체포·억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류도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강제실종은 자유권규약의 여러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특히 심각한 형태의 자의적 억류에 해당한다.⁶⁵

북한 헌법(2019)은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제79조)고 규정하는 한편,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79조). 북한 형사소송법은 범죄자 및 범죄사실 적발을 위한 수사절차와 범죄자 및 범죄사실 확정을 위한 예심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데,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은 예심단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단계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에 대한 체포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제142조).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 단계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및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6조). 예심원이 피심자 체포 결정을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5조). 그러나

64_ *Ibid.*, para. 14.

65_ *Ibid.*, para. 17.

2014년 3월 ○○시 보안서 구류장에 구류된 적이 있는 북한이 탈주민은 체포시 영장 제시는 없으며 취조가 무작위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증언하였다.⁶⁶

북한 형사소송법은 또한 체포 및 구속의 시기, 체포 및 구류 구속의 사유, 체포 및 구류구속의 절차, 구류의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77조부터 제190조까지). 이와 같은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 체포·억류에 해당하게 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 당국이 체제를 비판하거나 수령을 모독한 사람, 한국행을 기도한 사람, 종교 활동을 한 사람 등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억류에 해당한다. 출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 주민들로 하여금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경우 여행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여행구역 이탈 또는 여행 기일 경과 시 체포하여 집결소에 수용하는 것(II. 시민적·정치적 권리실태,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였다고 하여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II. 시민적·정치적 권리실태,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은 모두 자의적 체포·억류에 해당한다. 북한 법규상으로는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로써 체포·억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6_NKHR200000006 2022-05-25.

구속처분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법에 입각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2월 탈북기도 혐의로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도 보위부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는데, “99% 죄가 있어도 1% 양심이 있으면 살려주는” 것이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석방을 하였고 문건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⁶⁷

나. 체포 이유 및 피의사실 고지 미흡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은 체포 시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단계에서는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82조),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피체포자의 통고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하였던 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1월 자신의 아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 1명에 의해 끌려가 며칠 동안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⁶⁸ 2016년 12월 자신의 남편이 보위원에게 체포되어 보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은 당시 체포이유 등은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⁶⁹

67_NKHR2017000001 2017-04-10.

68_NKHR2018000089 2018-08-27.

69_NKHR2018000099 2018-10-01.

다. 과도한 재판 전 구금 기간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은 체포되거나 억류된 형사피의자는 신속히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 받은 기타 관헌에게 회부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지며, 재판 전 억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체포된 경우 48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10일 내에 범죄자라는 확인이 없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고(제143조), 예심단계에서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구속처분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5조).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상 권한이 부여된 관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⁰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각 단계별 기간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심을 위한 구류기간만도 최장 5개월에 이르는 등 재판 전 구금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제186조, 제187조). 한편, 2013년까지 검찰소 검사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검찰소 억류실에는 구금처벌을 받은 자만이 수용되고 10일간의 조사기간을 둘 수 있으며, 10일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한다.⁷¹ 북한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0_ UN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December 16, 2014, para. 32.

또한, 북한 법규에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기간 구금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강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에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전에 구류장에서 9개월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구류장에 있었던 기간은 교정기간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⁷²

표 II-13 수사·예심·기소기간 및 피의자 구속기간

| | | |
|-------|-------------|---|
| 수사 단계 | 형사소송법 제143조 | 수사원은 이 법 제142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이하 생략) |
| | 형사소송법 제150조 |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끝낸다.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낸다. (이하 생략) |
| 예심 단계 | 형사소송법 제151조 | 이 법 제150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
| | 형사소송법 제186조 |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하 생략) |
| | 형사소송법 제187조 | 이 법 제150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 예심원과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 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늘일 수 있다. |

71_NKHR202000032 2020-08-04.

72_NKHR201800034 2018-05-07.

| | | |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61조 |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0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그러나 10일안에 검토처리할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
| | 형사소송법 제262조 |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 |

라. 절차적 보장 및 보상 미흡

자유권규약 제9조 제4항은 체포 또는 억류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불법적 체포 또는 억류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 적부 심사청구는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형사보상청구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법규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손해보상법(2005)은 인신(人身)의 불법적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특히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경우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그러나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며(제8조), 사법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침해는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00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에서 형사보상규정(Regulation on Criminal Compensation)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⁷³ 북한은 보고서에서 동 규정 제2조에 “국가는 수사, 예심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73_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Doc. CCPR/C/PRK/2000/2 (2000), para. 17 (d).

무고하게 체포 및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재산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유엔에 제출한 공통핵심문서(common core document)에서도 권리를 침해 받은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민사보상제도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제도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⁷⁴ 그러나 일반 북한 주민들은 형사보상제도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⁷⁵

마. 평가

북한에서는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의 수용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억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개별 권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북한에서는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의 체포·억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자의적인 체포·억류에 해당한다.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절차적 보장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74_ Common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HRI/CORE/PRK/2016 (2016), para. 52.

75_ 대한변호사협회, 『2018 북한인권백서』(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8), p. 85.

않다. 그리고 예심을 위한 구류기간만도 최장 5개월에 이르는 등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북한에서는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5

피구금자의 권리

자유권규약은 제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14 자유권규약 제10조

| | |
|-----|---|
| 제1항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
| 제2항 |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
| 제3항 |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

이하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미결수용자, 수형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주요 쟁점별로 분석한다.

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의 법과 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 즉 감옥, 병원(특히, 정신병원), 구치소, 교정시설, 기타 장소에 감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⁷⁶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유권규약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 금지 규정을 보완한다.⁷⁷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자유권규약 제7조에 위배되는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박탈에 수반되는 결과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곤경이나 압력에도 놓이지 않아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그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의 불가피한 제약들을 조건으로 자유권규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⁷⁸

(1) 구금시설 현황

북한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의 구금시설과 관리소(정치범수용소)가 있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V.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76_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pril 10, 1992, para. 2.

77_ *Ibid.*, para. 3.

78_ *Ibid.*

(가) 교화소

교화소는 국무위원회 직속의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할하는 교정시설로, 재판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⁷⁹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된 결과 2015년 당시 북한에는 <그림 II-1>과 같이 총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⁸⁰

그림 II-1 교화소 위치



79_ 북한 형법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으로 구분된다(제30조). 현행 북한 형법은 총 8개 범죄(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 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을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 제68조, 제206조, 제208조, 제266조).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범죄에는 유기노동교화형이 규정되어 있다. 유기노동교화형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되어 있고,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유기노동교화형 1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제30조).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의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일부 정지된다(제30조).

80_ 한동호 외, 『북한 교화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12.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전거리교회소와 개천교회소에 관한 것이다. 탈북 후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이 북한 형법상 ‘비법국경출입죄’⁸¹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후 주로 수용되는 곳이 전거리교회소와 개천교회소이기 때문이다.

- 전거리교회소

전거리교회소는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소속의 교회소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소재하고 있다(북위 42.2103/동경 129.7536).

그림 II-2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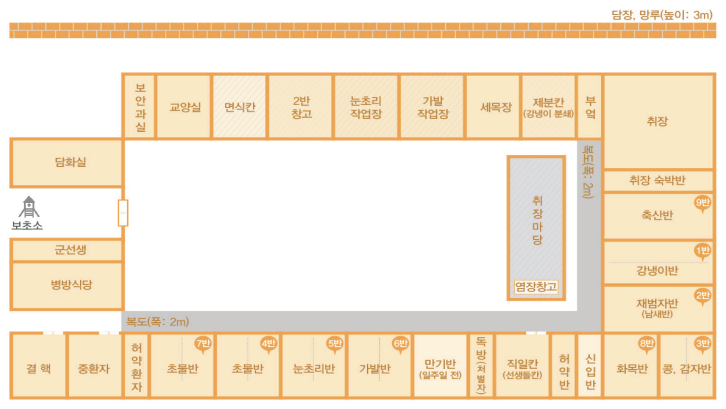


전거리교회소는 1과부터 5과까지 수형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 수형자는 1, 2, 4, 5과에 편성되어 있고, 여성 수형자는 3과에 편성되어 있다.⁸² 각 과는 다시 반

81_ 북한 형법은 제221조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그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으로 분류되는데, 1과는 12개 반 정도, 2과와 3과는 각 10개 반 정도, 4과는 4개 반 정도, 5과는 3개 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⁸³ 전거리교회소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여성 수용동인 3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3과에는 과장, 비서, 의사선생, 여자 관리선생 3명이 있다고 한다.⁸⁴ 그리고 3과는 감자반, 남새반, 콩반, 강냉이반, 돌축반, 가밭·눈초리반, 화목(火木)반, 축산반, 구내반, 허약자반으로 분류된다고 한다.⁸⁵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전거리교회소 3과 내부는 <그림 II-3>과 같다.⁸⁶

그림 II-3 전거리교회소 3과 내부



82_NKHR2013000046 2013-03-05 외 다수의 증언.
 83_NKHR2012000185 2012-09-11.
 84_NKHR2014000048 2014-05-13.
 85_NKHR2011000248 2011-12-20; NKHR2014000048 2014-05-13.
 86_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5000036 2015-02-10.

- 개천교화소

개천교화소는 평안남도 인민보안국 소속의 교화소 중 하나로,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소재하고 있다(북위 39.7083/동경 125.9233).

그림 11-4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개천교화소는 남자동과 여자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자동은 다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이 있는 무기동과 유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이 있는 유기동으로 구분된다.⁸⁷ 여자 무기동과 유기동은 별도의 건물에 있다.⁸⁸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여성 수형자가 수용되는 것으로 볼 때 개천교화소는 중범죄자 수용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개천교화

87_NKHR2014000175 2013-10-21; NKHR2015000186 2015-12-15.

88_ 위의 증언.

소 여성 수형자의 경우 농산반, 축산반, 뜨개반, 남새반, 과수반, 밭갈이반 등에 속해 노동을 한다고 한다.⁸⁹ 한 북한이탈주민은 농산반, 축산반, 과수반 등의 경우 각각 단층집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뜨개반의 경우 관리원들 건물 가까이 있는 2층 짜리 건물에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뜨개반은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과 비법국경출입 및 인신매매 등 도주 위험자들로 구성된다고 증언하였다.⁹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일의 강도가 높은 남새반에는 재범자들이 배치된다고 한다.⁹¹ 개천교화소 남성 수형자의 경우 벽돌반, 포화반(신발, 허리띠, 권총집, 군화, 단화 등을 만드는 반)에서 노동을 하거나, 교화소 인근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⁹² 2015년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한 30대 남성은 형기가 짧은 사람들, 즉 도주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이 탄광 일에 배정된다고 증언하였다.⁹³

(나)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형벌로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 받거나 인민보안기관 등에 의하여 행정처벌로서 노동교양처벌(5일 이상 6개월 이하)을 부과 받은 자를 수용하

89_NKHR2013000156 2013-08-20.

90_NKHR2013000121 2013-06-25; NKHR2016000014 2016-01-26.

91_NKHR2017000130 2017-12-18.

92_NKHR2013000115 2013-06-11; NKHR2013000195 2013-10-29.

93_NKHR2018000034 2018-05-07.

는 곳이다.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는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용되고, 노동교양처별을 받은 자는 인민위원회 노력동원부 관할의 시·군·구역 단위 노동단련대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도 원산시 노동단련대, 평안남도 증산군 노동단련대가 인민보안성 관할의 노동단련대라는 증언이 있다.⁹⁴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고 개천교화소 내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었다는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⁹⁵ 개천교화소 내에도 인민보안성 관할의 노동단련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한다고 한다.⁹⁶

(다) 집결소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고 수용하는 곳이다. 집결소 측에서 수용자의 거주지 담당 보안서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 보안원이 집결소에 도착하면 수용자는 거주지로 이송된다. 인민보안성 관할의 집결소가 전국적으로 있으며, 국경지역에는 국가보위성 관할의 집결소가 있다. 국경지역에 있는 국가보위성 관할의 집결소는 중국행 및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자, 즉 비법월경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협소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2017년 수감 당시 국가보위성 관

94_ 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5000121 2015-09-08.

95_ NKHR2016000026 2016-03-08; NKHR2017000005 2017-04-10; NKHR2018000049 2018-06-04; NKHR2018000080 2018-07-30.

96_ NKHR2015000119 2015-09-08.

할의 청진 집결소는 2평 남짓한 공간에 30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⁹⁷

(라) 구류장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곳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 및 예심원이 담당하며,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 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사건의 수사과 예심은 검차기관의 수사원과 예심원이 한다.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과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 및 예심원이 담당하므로(제46조 및 제48조), 구류장은 국가보위성 구류장과 인민보안성 구류장으로 구분된다. 국가보위성 조직은 중앙, 도, 시·군 단위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단위별로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 인민보안성 조직은 중앙, 도, 시·군, 동·리 단위로 구분되며, 역시 각각의 단위별로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

(2) 구금시설 내 처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이 열악하여 많은 피구금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비인도적 처우로 인하여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97_NKHR2019000075 2019-08-26.

아래에서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영양·위생·의료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⁹⁸

(가) 교화소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6년 함경남도 함흥시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종아리를 3일 동안 맞아 살이 새까맣게 되었고 세 번째 날에는 부은 살이 터졌다고 한다.⁹⁹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교화소에서 오전에 한 번씩 대변을 보게 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대변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⁰⁰ 대변을 보게 해달라고 간수에게 부탁하면 내일 오전까지 참으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며, 결국 바지에다 대변을 보게 되었고, 그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한다.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있다.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에 비해 2015년에는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¹ 수형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비판서를 써야 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안원들이 가급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증언자는 이것이 교화소 수형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방침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98_ 구금시설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낙태에 대해서는 'IV. 취약계층, 1. 여성' 참조.

99_NKHR2019000043 2019-07-01.

100_NKHR2022000017 2022-06-13.

101_NKHR2018000034 2018-05-07.

표 II-15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수시로 구타가 이루어졌음. 구둣발로 때리고 사람이 먹던 국사발을 얼굴에 던지기도 하였음. | NKHR2017000044 2017-07-03 |
|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하거나 생활규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 보안원들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음.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음. | NKHR2016000184 2016-12-13 |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노동과제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담당선생이 “교양 좀 해라”라고 말을 하면 동료 수감자들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였음. | NKHR2016000114 2016-07-12 |
| 2016년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구둣발로 찌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질을 하는 등의 구타가 일상적으로 있었으며,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실수를 하면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음. | NKHR2017000122 2017-11-20 |
| 2016년 함경남도 함흥시 교화소 수감 당시 계호원이 구타를 하였음. 종아리를 3일 동안 맞아 살이 새까맣게 되었고 세 번째 날에는 부은 살이 터졌음. | NKHR2019000043 2019-07-01 |
| 2014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매일 오전에만 대변을 보게 하고 이외 시간에는 대변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바지에 대변을 보면 그 이유로 구타함 | NKHR2022000017 2022-06-13 |

교화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² 옥수수와 콩 한 덩어리 정도가 식사로 나왔기 때문에 가족이 면회식을 넣어줘야 버틸 수 있는데, 가족이 면회를 오지 않는 수형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함흥교화소 복역 중 질병으로 사망한 수형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수형자 2명은 자궁암, 척추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교화소에서 진료를 봐주지 않아 치

102_ 위의 증언.

료를 못 받고 사망하였다고 한다.¹⁰³ 열악한 영양상태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수형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사망하기도 한다.¹⁰⁴ 수형자들이 사망한 경우 교화소 측이 시신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개천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어머니가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교화소 측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¹⁰⁵

표 II-16 교화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개천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하루 과제를 끝내지 못하면 '미결밥(정량이 아닌 아주 적은 밥)'이 나왔음. 썩은 강냉이를 삶아줘서 탈이 나는 경우도 많았음. 배가 고프면 나머지 쥐나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였음. 수형자들이 허약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교화소 측이 시신을 그냥 태워버리고 가족들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음. | NKHR2017000047 2017-07-03 |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하루 식사로 강냉이 450그램, 단지 밥, 콩 30그램을 주었으며, 수형자의 80% 정도가 허약 상태였음. 폐렴, 허약, 간염 등으로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람만 병동생활이 가능하였음. | NKHR2016000114 2016-07-12 |
| 2014년 12월 개천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어머니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교화소 측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음. | NKHR2018000073 2018-07-30 |
|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수형자들이 허약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음. 시신은 불망산에서 화장을 하였음. 협소한 화장시설에 가능한 한 많은 사체를 넣기 위하여 시신을 다 쪼갬. | NKHR2017000047 2017-07-03 |
| 2016년 함흥교화소 복역 중 질병으로 수형자 2명이 사망하였음. 수형자 2명은 자궁암, 척추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교화소에서 진료를 봐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 | NKHR2019000043 2019-07-01 |

103_ NKHR2019000043 2019-07-01.

104_ "북, 교화소 수감자 인권유린 행위 심각," 『자유아시아방송』, 2019.6.18.

105_ NKHR2018000073 2018-07-30.

(나)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10월 황해남도 옹진군 노동단련대에서 지도원들이 몽둥이로 다른 수용자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⁰⁶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시택 식구가 2017년 헤산시 노동단련대에 6개월 수감되었는데, 이때 엄청 맞았고 노동단련대에서는 당연히 때를 맞으며, 다쳐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¹⁰⁷ 한편, 노동단련대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고 있다는 증언들도 수집되고 있다. 2016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단련대 생활준칙에 ‘인권유린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싸움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아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⁸ 이 증언자에 따르면, 노동단련대에서는 서로 말을 심하게 하거나 구타를 하면 그것이 ‘인권유린행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동단련대에 있는 동안 욕설을 듣거나 구타를 당한 적은 없다고 한다. 2015년 3월부터 2개월간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도 구타나 폭행을 하지 말라는 김정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단련대 보안원들이 수용자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⁰⁹

106_NKHR2019000011 2019-04-20.

107_NKHR2022000002 2022-05-18.

108_NKHR2018000129 2018-11-19.

109_NKHR2018000074 2018-07-30.

표 II-17 노동단련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수용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운동장을 돌게 하지 때리지는 않았음. | NKHR2017000093 2017-10-23 |
| 2014년 3월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작업감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따귀를 세게 맞아 고막이 손상되었음. | NKHR2016000108 2016-07-12 |
| 2014년 3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에 수용된 적이 있는데, 노동단련대는 노동으로 단련을 하라는 곳이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매일 벌을 주고 때렸음. 노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음. | NKHR2016000114 2016-07-12 |
| 2014년 10월 황해남도 용진군 노동단련대에서 지도원들이 동맹이로 수용자를 구타하였음. | NKHR2019000011 2019-04-20 |
| 2016년에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고 개천교화소 내에 있는 노동단련대에 있었는데,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음. | NKHR2018000049 2018-06-04 |
|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 지도원들이 욕을 하기는 했으나 때리지는 않았음. | NKHR2017000095 2017-10-23 |

한편, 노동단련대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단련대에서 세 끼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삶은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전부였기 때문에 버티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⁰ 다만,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경우 노동단련대 측에서 약을 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2015년 3월부터 2개월간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다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강냉이밥, 장국, 염장시래기국 등이 식사로 제공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¹ 이 증언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망을 갈 수도 있기 때문

110_NKHR2018000129 2018-11-19.

111_NKHR2018000074 2018-07-30.

에 일을 시키지 않는 대신 밥을 매우 조금만 주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범죄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면회를 온 가족들을 통해 면식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외부에서 일도 하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표 II-18 노동단련대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50명 정도의 여성들이 한 방에서 지냈으며, 강냉이밥과 소금국이 식사로 제공되었음. | NKHR2017000093 2017-10-23 |
| 2016년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교화소 내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강냉이밥과 양배추 염장국이 식사로 제공되었음. | NKHR2018000049 2018-06-04 |
| 2016년 8월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한 달간 있었는데, 50~60명이 한 방에서 지냈으며, 130그램 정도의 강냉이밥과 소금국이 식사로 제공되었음. 배가 너무 고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음. 가족이 면회를 와서 '속도전 가루(옥수수를 가열해 만든 식품)'를 넣어 주거나 본인이 미리 준비해 오는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음. | NKHR2017000086 2017-09-25 |
|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강도 해산시 노동단련대에 있었음. 식사로 통강냉이가 제공되었는데, 집에서 면회를 오는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음. 한겨울임에도 나무를 조금 때는 수준이었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크게 춥다고 느끼지는 않았음. 군의라는 사람이 있어 이들이 진단을 내리면 집에서 약을 조달해 줌. | NKHR2017000095 2017-10-23 |

(다) 집결소

집결소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11월 양강도 해산시 집결소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집결소에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² 2013년 7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역시 집결소 수용자들 대부분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

112_ NKHR2018000080 2018-07-30.

다.¹¹³ 한편, 2019년 조사에서는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감소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는데 간지러운 곳을 긁는 정도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¹⁴ 다만, 이 증언자는 예전에 비해 구타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표 II-19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있었는데, 구둣발에 갈비뼈가 채이고, 총 쇠줄로 손등을 맞는 등 구타를 당하였음. 옆방에서 각목에 맞는 소리가 났으며, “너도 저렇게 맞고 싶나?”라며 협박당하기도 하였음. | NKHR2017000093 2017-10-23 |
| 2014년 5월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 15일간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하거나 계호원과 눈이 마주치면 몽둥이나 삽자루로 때리거나 발로 찼음. | NKHR2018000077 2018-07-30 |
| 2014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 40일간 있었는데,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으며, 수용자 한 명이 잘못하면 그 방 수용자 전체가 벌을 받았음. 같은 방에 있던 한 여성은 지속적인 구타로 머리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나갈 당시 걷기도 어려운 정도였음. | NKHR2016000094 2016-06-14 |
| 201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강도 혜산시 시 보위부 집결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지도원들한테 간단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음. | NKHR2017000001 2017-04-10 |
| 2015년 9월 함경북도 라진 웅산집결소에 20일간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였음. | NKHR2018000001 2018-03-12 |
| 2018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간지러운 곳을 긁는 정도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았음. 예전에 비해 구타가 많이 감소하였음. | NKHR2019000069 2019-08-26 |

집결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있었다는

113_ NKHR2018000023 2018-04-09.

114_ NKHR2019000069 2019-08-26.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식사로 제공되는 것은 강냉이밥, 염장국, 염장시래기가 전부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⁵ 2014년 4월부터 한 달간 양강도 혜산시의 집결소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통강냉이가 제공되었으며, 고열로 힘든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만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⁶ 2014년 혜산시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 수감자 모두 배고파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⁷ 이 증언자는 혜산시 집결소는 소독약을 뿌리는 등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표 II-20 집결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혜산시 집결소 구금 당시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 수감자 모두 배고파하였음. 혜산시 집결소는 소독약을 뿌리는 등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었음. | NKHR2019000047 2019-07-01 |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통강냉이와 배춧국이 제공되었으며, 난방은 각자 집에서 빨감을 보내면 가능하였음. | NKHR2015000170 2015-12-01 |
| 201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강도 혜산시 시 보위부 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통강냉이와 배춧국이 제공되었으며, 면식(면회음식)이 가능하였음. | NKHR2017000001 2017-04-10 |
| 2015년 9월 함경북도 라진 웅산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국수가 제공되었는데, 젓가락을 주지 않아 손으로 먹어야 했음. 일을 하러 밖에 나간 기회에 나무를 꺾어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하였음. | NKHR2018000001 2018-03-12 |
|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강냉이밥 200그램 정도와 무시래기국, 김치가 제공되었고, 이따금씩 콩비지가 나왔음. 화목(火木)장 일에 동원되어 나무에 발이 채이면서 발목과 발을 다쳤지만 치료는 전혀 받지 못하였음. | NKHR2017000099 2017-10-23 |

115_ NKHR2018000074 2018-07-30.

116_ NKHR2018000010 2018-03-12.

117_ NKHR2019000047 2019-07-01.

(라) 구류장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당시 새벽부터 밤까지 고정자세를 유지하는 일과를 반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⁸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벽을 바라보고 3시간 정도 벌을 받았다고 한다.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계호원 1명이 몽둥이로 머리를 지속적으로 구타해 혹이 심하게 나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가 중국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니 북한말의 억양과 발음이 불량하다는 것이 구타의 이유였다고 한다.¹¹⁹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기도 혐의로 체포되어 2017년 한 달간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고정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수용자는 각자로 맞았다고 증언하였다.¹²⁰ 이 증언자에 따르면, 같은 방에 있던 한 여성은 구둣발로 머리를 맞아서 혹이 나고 눈 밑까지 파란 멍이 들었다고 한다. 2017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매일같이 심한 구타를 당했던 한 증언자는 허리와 등에 상처가 심하게 났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파상풍이 생겨 열이 심하게 나고 고름이 났었다고 한다.¹²¹ 2016년 양강도 혜산시 구류장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고정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다고 표현하였다.¹²² 2014년

118_NKHR2018000074 2018-07-30.

119_NKHR2019000089 2019-10-19.

120_NKHR2018000089 2018-08-27.

121_NKHR2019000075 2019-08-26.

양강도 삼지연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구류장에서 머리구타를 많이 당해 구타당할 때 마다 기절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²³ 또한 허락을 받지 않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감방에 수용되어 있는 전원을 함께 쇠살창에 달아매서 밤부터 새벽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2016년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아침부터 밤까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다. 계호원들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력을 행사하였다.¹²⁴

또한 밀수로 잡혀서 2017년에서 2018년에 김정숙읍 군보안서 안에 있는 구류장에 보름 동안 수감된 가족의 경험을 들은 증언이 있었다. 증언자에 따르면 가족은 구류장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는 등의 고정자세를 취하고, 움직이면 맞고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의자나 장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한다. 장작 패는 일을 시켰는데, 일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보다는 수월해서 일종의 배려라고 증언했다.¹²⁵

한편, 구류시설에서 구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 내려와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증언들이 일부 수집되었다.¹²⁶ 2014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

122_NKHR2018000058 2018-07-02.

123_NKHR2022000017 2022-06-13.

124_NKHR2018000109 2018-10-06.

125_NKHR2022000019 2022-06-16.

126_NKHR2019000033 2019-06-03; NKHR2019000069 2019-08-26; NKHR2019000079 2019-09-25.

탈주민은 최근에는 인권침해라고 하여 심하게 구타하지는 않으며 1~2시간 동안 고정자세로 기합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⁷ 2019년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보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고문하고 구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표 II-21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권침해라고 하여 심하게 구타하지 않음. | NKHR2019000026 2019-05-18 |
|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계호원 1명이 몽둥이로 머리를 지속적으로 구타해 혹은 심하게 나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음. 중국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니 북한말의 억양과 발음이 불량하다는 것이 구타의 이유였음. | NKHR2019000089 2019-10-19 |
|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경우 뽕부 5,000개 등의 벌을 받았음. 허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벌을 받다가 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음. 또한,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는데, 콧구멍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구타가 심했음. | NKHR2016000051 2016-04-19 |
| 2015년 12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계호원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쇠창살 밖으로 머리카락이나 손을 내밀라고 한 후 참나무 몽둥이로 수시로 때렸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날은 졸도를 하기도 하였음. | NKHR2016000078 2016-05-31 |
| 2016년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방안에 24시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계호원들이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벌을 주었음. 몽둥이로 손바닥을 100~200대씩 때리기도 하였음. 구류장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10kg 이상 체중이 빠지고 6개월을 앓았음. | NKHR2017000001 2017-04-10 |
| 2016년 10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력을 가하였음. | NKHR2018000109 2018-10-06 |
| 2016년 12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력을 가하고 '뽕부질'을 천 번씩 시켰음. | NKHR2017000054 2017-07-31 |
| 2019년 1월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보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고문하고 구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NKHR2019000106 2019-11-09 |

127_NKHR2019000026 2019-05-18.

구류장 내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에 대한 증언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구류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열악하고, 겨울철에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헤산시 보안국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통강냉이 가루에 콩을 섞은 식사를 받았고, 2017년~2018년까지 양강도 보위부 구금시설에서는 강냉이에 메주콩을 식사로 제공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²⁸ 2015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누룽지, 김치, 콩나물이 제공되었으며, 숟가락을 별도로 주지 않아서 비닐로 숟가락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증언하였다.¹²⁹ 2015년부터 1년간 양강도 헤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벼깍지에 강냉이 가루를 버무려서 찌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⁰ 2017년 양강도 헤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강냉이 50알 정도가 한 끼 식사였다고 증언하였다.¹³¹

2018~2019년 사이에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한 줌 정도의 옥수수를 소금물과 함께 받았고, 식사수준은 개도 안 먹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기름도 못 먹고, 강냉이 같은 것만 먹어서 10kg 정도가 빠졌고, 허약으로 인한 어혈로 죽는 사람도 있었다. 수감자들은 허약에 걸릴까봐 한 달에 한 번씩 체중을 재지만 수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식수는

128_NKHR2020000004 2020-05-15.

129_NKHR2018000074 2018-07-30.

130_NKHR2022000013 2022-06-10.

131_NKHR2018000091 2018-08-27.

큰 물통에 담긴 것을 3~4명이 사용하는데, 화장실 처리, 세수, 청소를 모두 그 물로 해결해야 해서 물이 모자랐으며, 겨울에는 방이 매우 추웠다고 한다. 갈아입을 옷이 허용되지 않아서 수감 당시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지내야 했으며, 나중에 담당자에게 얘기해 집에서 옷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수감자 치료를 위한 군의가 1명 있지만 지급되는 약이 좋지 않고, 그나마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약도 얻지 못하며 구류장 생활은 짐승과도 같았다고 증언하였다.¹³²

2017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매일같이 심한 구타를 당했던 한 증언자는 허리와 등에 상처가 심하게 났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파상풍이 생겨 열이 심하게 나고 고름이 났었다고 한다.¹³³ 2017년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워서 떨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⁴ 2015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용 경험이 있는 40대 여성은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발이 다 얼 정도였으며, 환자라고 해도 특별히 봐주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¹³⁵

132_NKHR2020000020 2020-07-04.

133_NKHR2019000075 2019-08-26.

134_NKHR2020000027 2020-07-06.

135_NKHR2018000074 2018-07-30.

표 II-22 구류장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5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양강도 삼지연시 보안서 구류장에 있었는데, 식사로 소금을 살짝 친 통강냉이 100그램 정도가 제공되었음. 썩이 나고 벌레 먹은 강냉이를 제대로 씻지도 않고 줘서 사람들이 탈이 나고 하였음. 일요일 한 끼 정도는 가족이 가져다준 면식가루로 식사를 하였는데, 면식이 가능하려면 계호원에게 담배 한 갑씩을 바쳐야 했음. | NKHR2017000005 2017-04-10 |
| 2015년 12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을 당시 식사로 곱팡이가 낀 썩은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제공되었음. 한 겨울에도 난방이 제공되지 않아 매우 추웠으며, 작은 방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어 잠을 잘 때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었음. | NKHR2016000078 2016-05-31 |
| 2016년 양강도 해산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이마저도 양이 적어 사람들이 힘들어 하였음. | NKHR2017000125 2017-11-20 |
| 2016년 6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을 당시 한 끼 식사로 삶은 통강냉이 한 줌과 멀건 장물이 제공되었음. 구류장 안에 변소는 있는데 수도가 없어 아침마다 30리터짜리 통에 물을 길어다가 썼음. 하루 종일 그 물을 가지고 변소용으로도 쓰고 먹은 그릇도 씻어야 해서 늘 물이 부족하였음. 물을 많이 쓰는 경우 욕을 먹고 벌을 서야 했음. | NKHR2017000108 2017-11-20 |
|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는데, 식사로 곱팡이 냄새가 나는 옥수수밥과 소금물 또는 된장물이 제공되었음. | NKHR2017000054 2017-07-31 |
| 2017년 운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감 당시 허리와 등에 상처가 심하게 났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 파상풍이 생겨 열이 심하게 나고 고름이 났었음. | NKHR2019000075 2019-08-26 |
| 2017년 10월 함경북도 경원군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을 당시 한 끼 식사로 옥수수밥, 염장 고추와 오이가 제공되었음. | NKHR2018000098 2018-10-01 |

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 (a)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기결수와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미결수용자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¹³⁶

북한 법규를 살펴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분수용과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¹³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노동단련 처벌이 확정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수용되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분수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구별되는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집결소의 경우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점(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접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교정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

136.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pril 10, 1992, para. 9.

137.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를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분수용 및 구분수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참관금지, 사복착용, 이발,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조사 등에서의 특칙, 작업과 교화 등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야 한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우선 북한 법규상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¹³⁸ 북한 형법상 형벌 관련 규정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교화소 등에서의 노동을 통한 수형자의 교양개조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증언한 북한 내 구금시설의 비인도적 노동환경과 과도한 노동 부과는 수형자의 교정과 사회복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의 강도가 매우 강하여 수형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작업 속도가 더딜 경우 폭언과 폭행이 뒤따른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천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눈초리반과 뜨개반에서 각각 5개월씩 일을 하였는데, 할당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반장들이 혼이 나기 때문에 반장들은 수감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³⁹ 2015년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당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탄광에서 일을 하였는데, 노동 강도가 매우 쎄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¹⁴⁰ 2016년 함경남도 함흥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작

138.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를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형자 처우의 원칙, 분류심사,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작업과 직업훈련, 귀휴 등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39_NKHR2018000081 2018-07-30.

140_NKHR2018000034 2018-05-07.

업반에서 눈초리 작업을 하였는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호원이 구타를 하였다고 한다.¹⁴¹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취사장에 배치되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계속 일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셧다고 한다.¹⁴² 또한 150kg짜리 밥가마를 떨어뜨려 발을 다치고 밀차에 부딪쳐 손을 다쳤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발을 절고 손을 쥐지 못하는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증언했다.

표 II-23 교화소 내 과도한 노동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노동과제가 너무 많아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야 했음. 일을 제대로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때리고 잠도 재우지 않았음. | NKHR2016000114 2016-07-12 |
|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남새반에 속해 하루에 7시간 정도 노동을 하였음. | NKHR2018000080 2018-07-30 |
|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허약에 걸린 상태에서 3미터가 되는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 작업을 하였음. 산에 올라가는 데 2시간 반, 산에서 내려오는 데 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할당된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참나무 지팡이로 구타를 당하였음. 허약에 걸린 상태에서 나무를 끌고 내려오다가 나무에 깔려 즉사한 수감자도 있었음. | NKHR2017000047 2017-07-03 |
| 2016년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탄광에서 탄을 깨는 작업, 농사일, 돌 나르기, 석회 칠, 철대 세우는 일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음. | NKHR2017000122 2017-11-20 |
| 2014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취사장에 속해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일함. | NKHR2022000017 2022-06-13 |

141_ NKHR2019000043 2019-07-01.

142_ NKHR2022000017 2022-06-13.

라. 미성년 미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 (b)는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 후단은 미성년 수형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최소한 형사사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¹⁴³

현행 북한 법규상으로는 미성년 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집결소에서 아동이 작업에 동원된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는데,¹⁴⁴ 추후 미성년 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평가

북한에서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특히 강제송환자들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보위부 집결소

143_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pril 10, 1992, para. 13.

144_NKHR2017000130 2017-12-18; NKHR2018000010 2018-03-12.

와 구류장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여전히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금시설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구금시설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은 생명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보장이 미흡하며, 수형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과도한 노동 부과 등 교정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구금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으며, 일부 구금시설의 영양·위생·의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구금시설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

6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 중 하나이다. 거주지 선택과 이주를 포함한 이동의 자유 확보를 통해 인권 전반이 더욱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2조는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 II-24 자유권규약 제12조

| | |
|-----|--|
| 제1항 |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 제2항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
| 제3항 |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
| 제4항 |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이하에서는 이동 및 거주 자유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여행증을 통한 주민단속 및 이동제한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국민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북한은 이동 및 거주 자유와 관련하여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제75조).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와는 별개로 북한 당국은 여행증 발급을 통해서 주민이동 제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이나 국경지역으로 이동을 더 엄격하게 관리·통제한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인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여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 제282조에서는 “여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고 규정한다.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여행증을 발급받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공무상 출장의 경우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 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 일군(일꾼)이 소속단위에서 발급하는 출장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적 범위로 출장, 파견을 이유로 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환자가 진단서를 소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도 소재지나 간병을 해줄 직계가족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역에 따라 여행증에 그어지는 줄의 색깔이 다르며, 당국이 위조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색을 변경한다. 평양과 국경연선 지역 등 특수구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¹⁴⁵ 여행증을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의 경우 인민반장이 담당 보안원에게 신고한다.

여행증은 원래 도내에서 이동할 때는 해당 지역 보안서에서 발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내 이동을 할 때는 여행증이 필요 없이 공민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증언들이 조사되고 있는 한편,¹⁴⁶ 담배 몇 갑만 주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증언이¹⁴⁷ 부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도내를 이동할 때도 일일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공민증만 있어도

145_NKHR2016000001 2016-01-12; NKHR2016000029 2016-03-08. 물론, 수월하다는 것은 상대적 인식이다. 증언자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시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증 발급 자체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증언은 뇌물수수를 전제로 한 내용일 수 있다.

146_NKHR2021000026 2022-05-18.

147_NKHR2022000014-2 2022-07-29.

이동이 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 일일증명서를 떼는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공민증이 일일증명서를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 외 이동은 증명서가 필요했다. 단속할 때는 벌이 차(서비스차)에 자전거를 실어서 초소를 통과하고, 초소를 통과한 후에 자전거를 타는 식으로 모면한다고 증언하였다.¹⁴⁸ 단속에 걸리면, 대개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한다.¹⁴⁹

즉 도와 도 사이를 이동할 때는 여전히 여행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한다.¹⁵⁰ 다만,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경우 비용은 무료이지만 기간도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담배나 뇌물을 지불하여 즉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¹⁵¹ 2015년 이후부터는 아예 여행증명서를 떼는 뇌물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신의주에서 평양은 200위안, 신의주에서 청진은 100위안, 청진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는 비용은 200위안으로 특수구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렴한 반면, 일반구역에서 특수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가격

148_ NKHR2020000016 2020-07-04.

149_ NKHR2016000017 2016-01-26; NKHR2016000033 2016-03-22; NKHR2016000049 2016-04-19; NKHR2016000137 2016-08-23; NKHR2016000098 2016-06-14; NKHR2017000052 2017-07-03; NKHR2018000004 2018-03-12; NKHR2018000064 2018-07-11; NKHR2018000092 2018-08-27; NKHR2019000012 2019-04-20; NKHR2019000062 2019-07-29.

150_ NKHR2017000069 2017-08-28; NKHR2017000092 2017-09-25;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8000058 2018-07-02; NKHR2018000096 2018-08-27; NKHR2018000110 2018-10-06; NKHR2018000114 2018-10-13.

151_ NKHR2017000127 2017-12-18; NKHR2018000050 2018-07-02; NKHR2018000096 2018-08-27;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09 2019-04-08; NKHR2019000079 2019-09-25; NKHR2022000005-2 2022-08-03; NKHR2022000014-2 2022-07-29 외 다수의 증언.

이 2배로 비쌌다. 이는 바꿔 말하면 돈만 있으면 특수구역이라고 해도 증명서를 떼고 갈 수 있게 되었을 정도로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 있는 계층에 한정하여 이동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의 탈북으로 인한 감시대상자라 여행증은 물론 공민증도 발급받지 못했지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단속에 걸리면 담배 한 갑이나 5,000원 정도를 주고 무마하였으며, 여행증을 발급받겠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그때그때 뇌물을 주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였다. 또한 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공식 절차를 밟는 경우보다 뇌물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청진에 가기 위한 뇌물로 북한돈 10,000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열차원, 승무원, 보위원, 보안원 등에게 가서 ‘증명서를 못 떼었는데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자리까지 앉혀준다고 증언하였다.¹⁵²

이와 같이 북한 당국은 여행증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지역 간 이동과정에서 뇌물이 만연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공민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단속에 걸리면 열차원, 승무원, 보위원, 보안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무마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 주민이 아닌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 간부는 이러한

152_NKHR2020000021 2020-07-06.

여행증 제도와는 별개로 당도장이 찍힌 신임장을 발급받아 우선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¹⁵³ 또한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만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비켜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게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북한에서는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각종 이동 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동의 제한이 완화된 측면도 적지 않다. 즉, 종전에는 장거리 이동을 하고 싶어도 기차 이외에는 대체 수단이 없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각종 트럭 등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주민의 이동 폭이 확장되었으며 이는 통행증 제도를 이완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는 증언이 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도 신의주에서 원산으로 이동할 때 증명서 없이도 통과 가능한 장거리 버스를 선택할 수 있었다.¹⁵⁴ 이러한 이동 수단들이 뇌물로 각종 초소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송 수단의 증대 및 물류 체계의 형성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수입품은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쌀을 비롯하여 국내 생산품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으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설령 사람의 이동은 통제한다고 해도 물류 단속은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¹⁵⁵

153_NKHR2016000013 2016-01-26.

154_NKHR2022000014-2 2022-07-29.

표 II-25 여행증 관련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았음. 국경지대나 평양·나선시는 여행증 발급이 제한되나 보안서 2부에 담배 1~5갑을 내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음. 평양·나선시의 경우, 보통 담배 2막대기를 내면 여행기간 15~30일 확보가 가능했음. 기간 연장도 뇌물로 가능했음. | NKHR2015000142 2015-10-06 |
| 2015년 양강도 해산시에서 함경남도까지 여행증 없이 여행함. 열차 안내원들과 안면이 있어 차표, 증명서 없이 이동했으나 결국 단속되어 벌금 1만 원을 냈음. | NKHR2016000081 2016-05-30 |
| 2015년 남한에 있는 언니가 보내주는 돈을 받으러 국경지역으로 가기 위해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 NKHR2017000063 2017-07-31 |
| 2015년 평양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여행증을 2회 발급받음. 고마움의 표시로 담배와 8위안을 냈음. | NKHR2018000016 2018-04-09 |
| 2015년 큰아버지가 사망하여 함경남도 신포로 가기 위해 20위안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1~2일 만에 여행증이 나눔. | NKHR2018000098 2018-08-27 |
| 2015년 1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청진시로 가기 위해 담배 1갑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 NKHR2017000092 2017-09-25 |
| 2015년 3월, 양강도 해산시에서 동생 면회로 기재 후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가는 여행증을 발급받았음. 보안서 2부에서 신청했고, 합법적 절차인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1달 소요되었음. | NKHR2016000171 2016-11-01 |
| 2017년 봄 아버지가 평양 소재 병원에 검진을 받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3~5만 원 가량을 뇌물로 주었음. 여행증에는 사선으로 빨간 두 줄이 그어져 있었음. 여행증에는 신청인 이름, 평양 주소, 여행 이유, 기간 등이 적혀 있었음. | NKHR2019000071 2019-08-26 |
| 2017년 4월 평양에 사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100위안을 인민위원회 2부 담당자에게 주었고 이들 만에 여행증이 나눔. 평양여행증에는 대각선으로 빨간 줄이, 나머지 지방여행증은 파란 줄이 그어져 있음. | NKHR2018000058 2018-07-02 |
| 2018년 들쭉장사를 하기 위해 양강도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음. 평양에 가는 것은 100위안, 함흥에 가는 것은 50위안을 주어야 함. | NKHR2019000026 2019-05-18 |
| 2018년 평양 9·9절 70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총 6명에게 뇌물을 주었고 신청 당일 발급받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당일에 처리되지 않았을 것임. | NKHR2019000021 2019-05-07 |
| 2018년 11월 양강도에서 평성으로 장사를 하러 가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구체적인 비용을 요구받지는 않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담배 한 갑을 주었고 24시간 만에 발급받음. | NKHR2019000024 2019-05-18 |
| 가격이 다 있음. 평양 통행증은 중국돈 200위안이며 청진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는 것은 200위안임. 그러나 신의주에서 청진 나가는 것은 200위안임. 국경이나 특수지역 사람들이 일반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더 저렴함. | NKHR2022000014-2 2022-07-29 |
|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관광하기 위해 200위안을 주고 통행증을 떼었음. 평양에 가니 맨 신의주, 남포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통성명도 하였음. 신의주는 접경지역이라서 복장 단속을 많이 하는데 평양은 치마도 좀 짧게 입어도 되었음. 물놀이장 입장료는 2만 원, 경마장은 6만 원, 평양 개선공원은 3만 원이었음. | NKHR2022000015-3 2022-08-31 |

155_NKHR2022000030 2022-07-22.

Chapter I
법정목적 및 연구방법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V
취임개증

Chapter V
주요시안

나.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강제추방

자유권규약 제12조 제3항은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권에 대하여,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한의 조건이 국내법상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 개인이 국가를 떠날 수 없다거나 혹은 특정한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이동을 금지하는 것 등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¹⁵⁶ 자유권규약 제12조 제3항은 이동 및 거주권이 국가정책상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시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조항이 자의적·임의적으로 해석되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수도인 평양, 국경연선지대, 전연지대(휴전선 접경지역), 나진·선봉 등 자유무역지대를 승인번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양시 등) 도 인민위원회 2부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을 거주지역 도에서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승인번호구역 출입증명서의 경우 여러 가지 색깔의 줄이 그어져 있고 국가보위

156.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2(Freedom of Movement),” November 2, 1999, paras. 12, 16.

성 압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여타 증명서와 확연히 구분된다.¹⁵⁷

평양여행증은 일반 여행증보다 발급이 더 까다롭고 뇌물의 액수가 크며, 심지어 뇌물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다.¹⁵⁸ 평양에 큰 행사가 예정돼 있거나 정세가 어지러울 때는 평양여행증이 아예 발급되지 않지만, 병원 진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¹⁵⁹ 평양은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여행증 없이 공민증으로만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¹⁶⁰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2015년 이후부터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뇌물 비용이 대체로 정찰제와 같이 고정되면서 평양에도 돈만 있으면 여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및 이에 따른 각종 유희 시설들의 신설로 인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행에 대한 인식의 싹이 트기 시작해 여행증을 발급받아 평양으로 여행을 가는 평양 국내 관광객도 생겨났다는 증언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도에 200위안을 들여 평양가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신의주나 남포 등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적지 않았으며 서로 통성명도 하였다. 물론 돈은 들었지만 한 번 다녀오니 주변에 자랑도 할 수 있고 꼭 다시 가보고 싶었다고 답했다.¹⁶¹

157_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21~22; NKHR2018000058 2018-07-02; NKHR2019000071 2019-08-26.

158_NKHR2018000058 2018-07-02; NKHR2018000110 2018-10-06.

159_NKHR2018000016 2018-04-09.

160_NKHR2018000092 2018-08-27.

그러나 국경지역은 평양보다 통제가 더 심한 편인데,¹⁶² 국경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내륙에서 국경지대로 가기 위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어렵다.¹⁶³

이러한 여러 특별구역에 대한 광범위한 출입제한 조치는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 지역 통제에 대해 국가안보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리적 상식에 호소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단적인 예로, 자국민이 수도를 방문할 때 국가가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까다로운 여행증 발급 절차를 통한 특정지역 출입제한과 강제추방도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거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이 권리가 ‘모든 형태의 강제적 이전’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고, 동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및 제한에 대한 방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¹⁶⁴ 북한 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추방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이전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 및 반체제 인사, 그리고 그 가족 등에 대해 강제추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고, 특히 특수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 시켰다. 먼저, 김정은 정권은 평양의 인구를 줄여 식량배급 등

161_NKHR2022000015-3 2022-08-31.

162_NKHR2018000041 2018-06-04.

163_NKHR2014000127 2014-08-26; NKHR2018000003 2018-03-12.

164_UNHRC, General Comment, No. 27 (1999), para. 7.

평양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체제불만자를 색출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전과자나 무직자를 평양 밖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⁶⁵ 또한 양강도 삼지연시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강제추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고향인 삼지연시는 ‘혁명의 성지’, ‘제2의 평양’으로 불리는 곳으로, 교화자(전과자)와 그 가족들은 이 지역에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삼지연시는 국경지역이라 교화자의 대부분이 탈북 경험자이므로 이들이 다시 탈북하지 못하게 추방시키는 것이라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⁶⁶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탈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경연선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국경지대 중 양강도 삼지연시는 강 근처 집 뒤로 수풀이 우거져 있어 혜산시나 보천군 등에 비해 도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당국은 탈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15년경 삼지연시 근처 국경지대의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고, 기존의 집들은 다 허물기도 했다.¹⁶⁷ 정치적 보복의 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강제이주 정책이 전통적 차원의 강제추방 형태라면, 국경지역 통제를 위해 시행되어 온 강제이주는 새로운 차원의 강제추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탈북과정에서 붙잡혔거나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비법월

165_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p. 34.

166_NKHR2017000122 2017-11-20.

167_NKHR2016000025 2016-03-08.

경자를 강제추방하는 사례는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¹⁶⁸ 특히 2019년 조사에서는 가족의 탈북을 이유로 추방당했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이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결과라기보다는,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모두 추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지역이라 탈북이 많이 발생하는 양강도의 경우, 도내에서 국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추방지로 정해야 하다 보니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추방자가 몰리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한다.¹⁶⁹

2019년에는 성매매, 마약, 사기 등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사회주의’ 범죄에 대해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고 가족을 추방시키는 경우가 증언으로 수집되었다. 2017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은 2014~2015년경 아들의 사기범죄 때문에 어머니가 황해북도 곡산으로 추방당한 사례를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자는 또 같은 시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여성이 처형당하고 아들은 추방당한 사례를 득문했다고 증언하였다.¹⁷⁰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2015년경 유괴범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가족이 모두 추방당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⁷¹

168_NKHR2017000011 2017-04-10; NKHR2017000060 2017-07-31; NKHR2018000040 2018-05-08.

169_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p. 36.

170_NKHR2019000054 2019-07-29.

171_NKHR2019000063 2019-07-29.

표 II-26 강제추방 관련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2015년경, 아들이 경제범죄(사기)를 저질러 교화소에 가고 그 어머니는 황해북도 곡산으로 추방당한 것을 목격함. | NKHR2019000054 2019-07-29 |
| 2014~2015년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이 처형당하고 사업을 도운 아들이 강제추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 NKHR2019000054 2019-07-29 |
| 2015년 당일군이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 탈북함. | NKHR2017000033 2017-06-05 |
| 2015년 은하수악단 단원 2명이 평양에서 양강도 풍서군 귀북리로 강제 추방은 것을 목격함. | NKHR2017000097 2017-10-23 |
| 2015년 봄 양강도 삼지연시 리명수 노동자구에서 약 10세대가 중국과의 밀수가 발각되어 가족 전체가 추방되었음. 주로 풍서, 백암 지역으로 추방됨. | NKHR2016000063 2016-05-03 |
| 2015년 9월 아내의 범법행위로 양강도 보천군에서 양강도 풍서군 신창리로 추방되었음. 집행기관은 인민보안성 군 보안서였고, 새벽에 갑자기 차가 들이닥쳐 보안원들이 집에 있는 가구를 모두 차에 싣고 이동시킴. | NKHR2016000194 2016-12-27 |
| 2016년 10월 양강도 도당 간부가 양강도 운흥군으로 강제추방 당함. 김정은이 칭찬한 예술소조원 공연을 별로였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됨. | NKHR2017000126 2017-12-18 |
| 2018년도에 신의주에 거주한 트럭 도강차 운전수가 공화국 깃발을 중국에 팔아먹었다는 죄목으로 추방되었으며 그 가족들 또한 피현군과 같이 살기 힘든 시골로 추방됨. | NKHR2022000014-3 2022-08-31 |

다. 국경출입 제한 및 자유로운 퇴거 금지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자국’이란 본국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퇴거’란 그 국가를 떠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및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국가가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 대하여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⁷²

그러나 북한 당국은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엄격히 통

제한으로써 북한에서 퇴거와 다른 나라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출입국법(2013)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를 위해 여권 및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제11조). 여권에는 외교여권, 공무여권, 여행자여권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외교관은 외교여권을, 당기관이나 공작부서 공무원은 공무여권을, 친척 방문 등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주민들은 여행자여권을 발급받는다.

여행자여권의 경우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의 개인문건에 중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여권발급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국가보위성 외사과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¹⁷³ 그러나 뇌물을 바쳐 규정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¹⁷⁴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기업소나 기관의 지배인, 담당 보안원과 보위원 등의 확인을 거쳐 시 보위성 외사지도원이 최종 검토한다. 이후 국가보위성 부부장이 최종 결재하여 여권이 발급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공화국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 날짜에 돌아오겠다는 서약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상 여권은 외교관 및 공무원, 해외 노동자, 유학생과 같은 특수한 계층에게 발급되며 일반주민이 여권을 발급

172_ UNHRC, General Comment, No. 27 (1999), para. 9.

173_ NKHR2015000043 2015-02-24.

174_ 북한이탈주민 ○○○은 여권 발급 당시 35세였기 때문에 담당 보위원에게 뇌물을 주고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5000070 2015-04-07.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2019년에 탈북한 북중 국경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또한 북한에서는 여권의 존재나 개념조차 모르고 살았다.¹⁷⁵ 다만 화교와 그 가족의 경우 중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화교였는데, 화교 가족은 비교적 쉽게 여권을 받을 수 있어 네 차례나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공식적인 체류 허가기간은 2개월이지만 화교는 기한을 넘겨도 2년까지는 봐준다고 증언하였다.¹⁷⁶

북한에는 여권 이외에도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라는 서류가 존재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친척방문이나 소규모 교역 등을 위해 단기로 국외(중국)에 나갈 경우에 발급받는다. 출입국법 제1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를 위해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여행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초청통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국경통행증을 신청해 4년 만에 발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 1만 5,000위안 이상을 지불하였다.¹⁷⁷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동생의 시어머니가 2018년, 2019년도 당시 중국에 갈 때 당국으로부터 1천 500달러를 내라고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¹⁷⁸ 문제는 중국을 다녀와도 통행증 발행 비용이 거액이라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175_NKHR2022000015-3 2022-08-31.

176_NKHR2019000054 2019-07-29.

177_NKHR2019000035 2019-06-03.

178_NKHR2022000014-3 2022-08-31.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친척으로부터 편지가 와도 당국이 도강증 발급을 더욱 제한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특히 양강도와 같은 국경지역의 경우 적법하게 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 국가보위성이 통행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답했다.¹⁷⁹

국경무역 종사자들은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국경통행증을 발급받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초청장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 도강증은 24~48시간 동안 국경출입을 허용하는 초단기 국경통행증으로 알려져 있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가 여권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여권과 달리 국가보위성 중앙조직이 아닌 시·도 보위부에서 발급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여권보다 발급이 다소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출입국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해지고(출입국법 제55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형법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를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국경출입 금지 및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불법적 도강 비용의 증가로 이

179_NKHR2019000035 2019-06-03.

어지는데, 중국에 간 북한 주민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체류하며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남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국가는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게 출입국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국경 출입 통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라. 평가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실제로 여행증 제도와 구간별 단속을 통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다만 2015년 이후 통행증에 대한 뇌물 가격이 고정되어 돈만 있으면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넘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동 수단의 증가로 인해 일정 정도 이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코로나 19 시기 최소 국내 생산품에 한해 물가 폭등 현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동수단의 증대가 일정 정도 기능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산업에 대한 강조 및 각종 유흥시설의 설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도 관광에 대한 인식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평양 등 국내 유명 관광지를 다니는 주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비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 주민에게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이 규정하는 불순세력에 대한 강제 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다만 탈북에 대한 처벌로 이뤄지던 탈북자 및 탈북자 가족의 강제추방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기보다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자에 대한 사후 처벌로서의 강제 추방이 줄어든 것은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는 국경이동 통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경출입을 철저히 제한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여권이나 국경통행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설령 여권을 받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고 제한이 많아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거주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이동 및 거주 자유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제10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도 제14조에서 당사국들이 각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권 보호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법치(rule of law)를 수호하는 절차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¹⁸⁰ 제14조 제1항에서는 재판상의 평등권, 모든 종류의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제14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형사재판 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다.

180. UNHRC,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fair trial,” August 23, 2007, para. 2.

표 II-27 자유권규약 제14조

| | |
|-----|---|
| 제1항 |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
| 제2항 |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제3항 |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이하 생략)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
| 제4항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 제5항 |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
| 제6항 |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하 생략) |
| 제7항 |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북한은 헌법과 재판소구성법(2011)에 따라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재판의 독립 부인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있다(헌법 제159조).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52조). 북한의 재판은 3급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헌법 제91조 제12호), 그 외 중앙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또한,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68조).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 우위 및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노동당이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포함하여 모든 기관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결국 북한의 사법기관은 그 상급 기관, 즉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¹⁸¹ 북한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

181_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49.

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헌법 제166조, 형사소송법 제271조),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판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¹⁸²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은 크지 않고, 검찰소 검사가 재판감시를 한다.¹⁸³

한편,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직업판사와 합의재판부를 이루어 재판하는 제도로서, 일반인인 참심원도 재판부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직업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다수결에 따라 재판내용을 결정한다. 북한은 제1심 판결에 인민참심원을 참가시키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9조). 판결 및 판정은 재판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의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한다(재판소구성법 제17조). 인민참심원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중앙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 인민참심원제도는 당에 의한 재판소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¹⁸⁴

182_ 위의 책, pp. 49~53.

183_ NKHR2020000032 2020-08-04.

184_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 54.

나.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이는 형식적인 재판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부정부패도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47조). 그러나 법 규정과는 달리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예심원에 의해 형이 결정된다는 증언들이 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예심 및 재판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주민은 보안서 예심원이 대부분 형을 확정하며, 예심이 끝날 때쯤 재판소에서 검사가 와서 예심과정 중 폭행 여부, 위생환경 보장 여부, 억울한 부분이나 다른 제기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재판소에서 검사가 오기 전 이미 계호원이 엄포를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⁸⁵

제1심 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 변론, 피소자의 최후진술, 판결 선고의 5단계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300조). 일반적으로 북한에서의 형사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5_NKHR2016000102 2016-06-28.

대표적인 예로 재판시간 15분 만에 노동교화형 5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을 겪은 북한이탈주민은 항의를 하려 했으나 계호원이 이를 저지했다고 증언하였다.¹⁸⁶ 예심 단계에서 형이 확정되기도 한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장사를 하다가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예심 단계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기록을 열람할 수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⁸⁷

재판을 경험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석은 하였으나 이들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대답했다.¹⁸⁸ 그러나 이와 다른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는데, 2011년 12월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판사의 역할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변호사와 인민참심원은 적극적, 검사의 역할은 보통이었다고 대답했다. 예심에서는 노동교화형 5년을 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노동단련형 1년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⁸⁹ 2012년 8월 양강도 혜산시에서 비법월경죄로 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판사의 역할은 보통이었으나,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은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대답했는데, 증인이 참석해 증언이 이뤄졌으며, 1년 6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였다.¹⁹⁰ 이는 비법국경출입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5년의 노동교화형임을

186_ 위의 증언.

187_ NKHR2022000006 2022-05-25.

188_ NKHR2017000005 2017-04-10; NKHR2017000103 2017-10-23.

189_ NKHR2016000113 2016-07-12.

190_ NKHR2016000189 2016-12-27.

고려할 때(형법 제221조), 재판과정에서의 논의가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공개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재판제도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조직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대표는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5조). 공개재판은 정치적 선전용 또는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된다.¹⁹¹

공개재판제도는 현지에서 재판을 조직함으로써 재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현지 공개재판제도는 순수한 재판제도라기보다는 범죄를 폭로규탄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공포를 조장하는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공개재판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공개폭로모임’으로 불리기도 한다.¹⁹²

어떤 범죄에 대해 공개재판이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최근에는 빙두, 아편과 같은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공개재판이 시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¹⁹³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을 비롯한 불순녹화물에 대한 공개재판도 다수 목격되고 있다.¹⁹⁴ 이 밖에 비법월경,¹⁹⁵ 살인,¹⁹⁶ 인신매매,¹⁹⁷ 중국 또는 한국과

191_ NKHR2018000099 2018-10-01; NKHR2018000102 2018-10-01; NKHR2019000050 2019-07-20.

192_ NKHR2019000013 2019-06-07.

193_ NKHR2019000021 2019-05-07;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62 2019-07-29; NKHR2019000097 2019-10-21; NKHR2020000035 2020-09-05;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24 2022-06-23.

194_ NKHR2019000063 2019-07-29; NKHR2019000021 2019-05-07; NKHR2019000064 2019-08-17; NKHR2019000104 2019-11-09; NKHR2019000116 2019-11-30; NKHR2020000005 2020-05-15.

전화하다 검거된 사람,¹⁹⁸ 미신행위¹⁹⁹ 등에 대해서도 공개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침 사건(김정은이 방침을 내린 중대사건) 위주로 공개재판이 진행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²⁰⁰

공개재판은 군대에서도 실시된다고 한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여단 소대장이 병사를 때렸는데 그 병사가 사망하여 공개재판하는 것을 본 적이 증언하였다. 군 판사와 검사들이 와서 군사재판을 했는데 여단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 공개재판 형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²⁰¹

공개재판제도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반한다. 현지공개재판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공개재판에 참석하더라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²⁰²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공개재판에 검사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참석하며,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방어하지도 못한다.²⁰³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판사와 검사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²⁰⁴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195_ NKHR2019000064 2019-08-17; NKHR2019000096 2019-10-21; NKHR2019000110 2019-11-18; NKHR2020000005 2020-05-15.

196_ NKHR2019000024 2019-05-18; NKHR2012000021 2012-06-21.

197_ NKHR2019000082 2019-09-25.

198_ NKHR2020000005 2020-05-15.

199_ NKHR2022000012 2022-06-10.

200_ NKHR2022000009 2022-06-05.

201_ NKHR2021000023-2 2022-05-31.

202_ NKHR2018000014 2018-04-09; NKHR2018000095 2018-08-27.

203_ NKHR2020000035 2020-09-05.

사안이 엄중한 경우, 검찰소, 도 보위부, 시 보위부 등에서 사 람이 나온다고 증언하였다.²⁰⁵

또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 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개재판 중 죄질이 가장 무거 운 사람들은 총살되기도 한다.²⁰⁶ 2014년 양강도 삼지연시 포 태구 문화회관 앞에서 비법월경 죄목으로 공개재판을 받은 북 한이탈주민은 공개재판을 받기 전 보위성 구류장에서 20일간 죽도록 매를 맞은 뒤 예심도 받지 않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인 민참심원 없이 공개재판을 받았다.²⁰⁷ 공개재판 중 죄질이 무거 운 사람들은 공개처형으로 이어져 생명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월에 함경북도 온성군 군당 책임비서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공개재판을 받은 직후에 공개처형 당했다고 증언하였다.²⁰⁸ 공개처형에 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의 공개적 사형집행에서 살펴보았다. 한 편, 2019년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옛날 에는 공개재판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고 증언하였다.²⁰⁹ 특정 지역에 한정된 현상인지 아니면 북한 지역 전반적인 현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추가적인 조사와 증언 수집이 필요하다.

204_NKHR202000022 2020-07-06.

205_NKHR202000005 2020-05-15.

206_NKHR201800009 2018-03-12; NKHR201800095 2018-08-27; NKHR2018000124 2018-10-27.

207_NKHR2018000081 2018-07-30.

208_NKHR2019000111 2019-11-18.

209_NKHR2012000019 2012-06-16.

다. 유사사법제도의 운영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재판소에 의한 공식 재판제도가 아닌 유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지심판,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이 여기에 해당되며, 재판기관 이외의 여러 기관들이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북한의 유사재판제도 운영은 자유권규약 위반에 해당된다.

(1) 동지심판제도

북한에는 정규재판조직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재판제도인 동지심판제도가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군중심판제도를 폐지한 뒤 1972년경부터 각 지역단위별로 동지심판제도를 실시하였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2012)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0조 제3호는 법을 어긴 자를 동지심판회에 넘길 경우 검사는 범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심판 대상은 경제범 및 과오로 인한 손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기타 사범 등이다. 동지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 탐오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제도,

행정적 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降職)처분, 자아비판처분, 엄중 경고, 경고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¹⁰

동지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동지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증언이 있다. 한 북한 이탈주민은 함경북도 연사군에서는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10일) 장날마다 동지심판을 했으며,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이 노동단련대(90%)로 갔으며, 일부는 교화소(10%)로 갔다고 한다.²¹¹

동지심판제도는 주로 군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²¹² 한 북한이탈주민은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3년 동안 탈영했다가 붙잡힌 군인이 2019년 2월 동지심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¹³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동지심판에 대해 “군대 내에서의 군사복무를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²¹⁴

군대 내에서의 동지심판은 대대급부터 진행된다. 군대 동지심판은 항상 한 단계 높은 직급에 있는 상관이 있을 때 진행된다. 심판결과는 상급부서에서 미리 결정하고 본보기로 동지심판을 진행한다. 동지심판은 대부분 교양이나 비판으로 끝나지만 심할 경우 생활제대로 이어지기도 한다.²¹⁵ 북한 주민들은

210.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211_NKHR2016000188 2016-12-27.

212_NKHR2016000029 2016-03-08; NKHR2017000073 2017-08-28; NKHR2018000107 2018-10-01; NKHR2019000012 2019-04-20.

213_NKHR2019000115 2019-11-30.

214_NKHR2016000001 2016-01-12.

215_NKHR2018000107 2018-10-01; NKHR2019000115 2019-11-30.

생활제대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며 큰 벌로 인식하고 있다.²¹⁶ 생활제대를 당하면 본인과 가족은 탄광이나 농촌에 배치된다.²¹⁷ 동지심판 현장에서는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동지심판 이후 예심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된다.²¹⁸ 예를 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군대에서 강제 퇴소시키고 교화소에 보낸다.²¹⁹

(2) 국가보위성에 의한 정치범 재판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해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경우 안전보위기관이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 관할로 정하는 등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일반범죄사건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제48조 및 제51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재판도 안전보위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있다. 보위원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도 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보위성 검찰국에 보고한다고 한다.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현지에서 재판을 실시하는데, 국가보위성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

216_NKHR2019000012 2019-04-20.

217_NKHR2015000069 2015-04-07.

218_NKHR2015000119 2015-09-08; NKHR2015000131 2015-09-22; NKHR2015000172 2015-12-01.

219_NKHR2016000001 2016-01-12.

양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의 여부와 평생 수용 여부도 국가보위성이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²²⁰ 마찬가지로 국가보위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북한이탈주민은 예심이 끝나면 국가보위성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²²¹

(3) 여러 기관의 행정처벌 부과

북한에서 형법상의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적용된다. 위법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어긴 행정처벌을 적용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행정처벌법 제8조). 행정처벌로는 경고·엄중경고처벌, 무보수노동처벌, 노동교양처벌, 강직·해임·철직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 자격정지·자격강급·자격박탈처벌 등 다양한 종류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행정처벌법 제15조). 그런데 행정처벌은 재판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중재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한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행정처벌

220_ 북한이탈주민 ○○○,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221_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법 제332조). 행정처벌은 인민보안단속법과 검찰감시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인민보안기관과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인민보안단속법 제57조). 검사는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다(검찰감시법 제40조 제3호).

북한에서 행정처벌법과 인민보안단속법 및 검찰감시법에 의한 다양한 행정처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행정처벌 가운데 특히 무보수노동과 노동교양, 노동단련은 북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적 제재로 보기 어려우며, 형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 변호권 침해

북한 헌법은 제164조에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형사소송법은 또한,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된 경우 변호사회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해야 한다(제63조). 아동권리보장법도 14세 이상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한다고 증언한다. 2013년까지 도 검찰소 검사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은 법 규

정상 변호인이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²²² 재판에 참석하는 변호사는 사선변호와 공선변호 두 가지가 있다. 중앙변호사협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공선변호이고, 법률을 전공한 법률전문가가 무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선변호이다. 살인이나 무기징역감인 사건은 사선변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한 것이 확정되면 변호인은 변호를 그만두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²²³

변호인들이 피소자(피고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증언들이 있다. 특히 피소자의 토대가 좋은 경우나 피소자 측에서 뇌물을 주는 경우 변호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어 2015년 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는 재판과정에서 사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증언자가 속아서 중국에 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용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검사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²⁴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7월 비법월경으로 잡혔는데 본인 집안이 좋았고 ‘사업’도 조금 해서 노동교화형을 가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했다고 변호해주고 국가지원 증서도 가져와 판사에게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²²⁵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도 있고, 변호를 통해 무죄를 받아낼 때도 있다.²²⁶

222_NKHR2020000032 2020-08-04.

223_위의 증언.

224_NKHR2019000043 2019-07-01.

225_NKHR2017000125 2017-11-20.

반면에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들도 있다. 2015년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변호인이 검사와 함께 거짓 증언자를 섭외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²⁷ 이 증언자는 북한에서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국가편이며 피소자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2018년 3월 형제가 살인혐의를 받아 형은 중국으로 도망가고 동생은 붙잡힌 사건에서 교화 5년이 선고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미미하였고 피소자의 감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한다.²²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형식적 운영은 공개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공개재판에 변호사가 참석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소자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²⁹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임무는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제59조). 변호사법(1993) 또한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옹계 분석·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변호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226_NKHR2020000032 2020-08-04.

227_NKHR2017000005 2017-04-10.

228_NKHR2018000107 2018-10-01.

229_NKHR2018000014 2018-04-09; NKHR2018000095 2018-08-27;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97 2019-10-21.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피심자와 피소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 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또한, 북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변호인 접견권이 일부 이행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평안남도 내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어 예심을 받을 당시 보안원이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너 만나서 개수작 하면 죽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³⁰ 이 북한이탈주민은 재판 열흘 전에 변호인을 만났고, 변호인이 자신에게 보안서에서 구타를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자 변호인은 재판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형을 줄여 주겠다고 하면서 가족을 통해 뇌물을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집이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검사의 편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230_NKHR2017000096 2017-10-23.

마. 상소권 보장 미흡 및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형사판결에 대해 상소가 가능하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심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6조). 그러나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고(제53조), 중앙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과 판정에 대해서는 상소가 불가능하다(제358조). 이는 상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에 반한다.

북한주민들은 상소 제도 자체는 알고 있지만 불이익을 염려하여 상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5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소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상소를 하면 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포기했다고 증언하였다.²³¹ 상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류장 생활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상소를 포기했다는 증언도 있다. 2014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소과정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고,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구류장에 오래 있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상소를 포기했다고 한다.²³² 2014년 4월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재판을 받

231_NKHR2016000014 2016-01-26.

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상소를 할 경우 3~4개월 동안 구금되어야 하며, 이를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 상소를 포기했다고 증언하였다.²³³ 이로 인해 실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주민들이 상소를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²³⁴

탈북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상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상소의 실익이 없어 상소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월경자는 상소할 수 없다는 증언이 있는 반면,²³⁵ 불법월경의 경우 혐의 인정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없어 다룰 여지가 없으므로 하 루라도 빨리 형기를 마치기 위하여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²³⁶

바.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2022년 9월 기준으로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외국인인 미국 국적의 유나 리(Euna Lee), 로라 링(Laura Ling), 아이잘론 말리 고클(Aijalon Mahli Gomes), 케네스 배(Kenneth Bae, 한국명: 배준호), 매튜 토드 밀러(Matthew Todd Miller), 오토 프레데릭 워비어(Otto Frederick Warmbier), 김동철,

232_NKHR2016000114 2016-07-12.

233_NKHR2016000104 2016-06-28.

234_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6000055 2016-05-03.

235_NKHR2012000184 2012-09-11.

236_NKHR2014000151 2014-09-23.

한국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등 9건에 11명이다.

표 II-28 북한의 외국인 재판과 판결 집행 (2022.9. 기준)

| 성명 | 국적 | 체포 일시 | 재판 일시 | 적용 범죄 | 형벌 | 집행 |
|-------------------|-----|------------------------|-------------|---------------------------------------|-------------------------|---|
| 유나 리, 로라 링 | 미국 | 2009.3.17. | 2009.6.4. |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 | 노동교화형 12년 | 재판 후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09.8.) |
| 아이잘론 말리 곱즈 | 미국 | 2010.1.25. | 2010.4.6. |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 | 노동교화형 8년 벌금 7,000만 원 | 재판 후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0.8.) |
| 케네스 배 | 미국 | 2012.11.3. | 2013.4.30. | 국가전복음모죄 | 노동교화형 15년 |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4.11.) |
| 김정욱 | 한국 | 2013.10.8. | 2014.5.30. |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 무기 노동교화형 | 복역 중 |
| 매튜 토드 밀러 | 미국 | 2014.4. | 2014.9.14. | 반공화국 적대행위 | 노동교화형 6년 |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4.11.) |
| 김국기 최춘길 | 한국 | 2014.10.1. 2014.12. | 2015.6.23. |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음해죄 비법국경출입죄 | 무기 노동교화형 | 복역 중 |
| 임현수 | 캐나다 | 2015.2.2. | 2015.12.16. | 국가전복음모죄 | 무기 노동교화형 |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7.8.) |
| 오토 프레데릭 웁비어 | 미국 | 2016.1.22. | 2016.3.16. | 국가전복음모죄 | 노동교화형 15년 |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6일 후 사망 (2017.6.) |
| 김동철 | 미국 | 2015.10.2. | 2016.4.29. |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 노동교화형 10년 |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8.5.) |

북한의 외국인 재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식상으로는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인들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나 리의 경우 재판에 앞서 북한 관리가 그녀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북한 변호인이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줄 리가 만무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였다.²³⁷ 케네스 배도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다.²³⁸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발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외국인들의 변호인 선임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3항 (b)에 명시된 변호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권리를 침해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전반을 침해한다.

둘째,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앙재판소의 제1심으로 마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사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으로 판결을 마치는 것은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반한다.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인정되기 때문이다(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셋째, 외국인 구금기간 중 영사접견권의 임의적 제한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237_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p. 187.

238_ 『조선중앙통신』, 2013.5.9.

Relations) 제36조 제1항은 파견국 국민이 영사관할권 내에서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었을 때, 그 국민이 통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사접견권은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영사접견권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권리이다.²³⁹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영사협약이 영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제관습법규를 성문화한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²⁴⁰

표 II-29 영사협약상의 영사접견권 규정

| | |
|---------------------|--|
| <p>제36조 제1항</p> | <p>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p> <p>(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p> <p>(b) 파견국의 영사관할권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
|---------------------|--|

북한은 영사접견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

239_ ICJ, “LaGrand Case(Germany v. U. S. A.),” *Judgement of 27 June 2001*, paras. 89, 128(3).

240_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USA v. Iran),” *ICJ Reports 1980* (24 May 1980), p. 24 (para. 45).

한과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익대표국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의 영사접견권을 행사한다.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5월 15일, 6월 1일과 6월 23일 미국 여기자들(유나 리와 로라 링)에 대한 스웨덴 대사와의 면담을 허용하였다.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도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이 재판을 참관하였다.²⁴¹ 케네스 배의 경우에도 스웨덴 대사관에 구금 사실이 전달되었으며, 영사를 면담할 수 있었다.²⁴² 그러나 케네스 배는 평양 주변에 있는 외국인 교화소에 구금된 채 송환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사관을 통해 보내는 서신교환이 제한된 적이 있었으며, 일정 기간 통보 없이 면담이 제한된 시기도 있었다.²⁴³ 2017년 6월 사망한 오토 프레데릭 월비어는 2016년 3월 2일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한 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이후 접견이 불허되었다.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는 무기노동 교화형이 선고되고 이틀 뒤인 2015년 12월 18일에 캐나다 외교관과의 첫 면담이 이루어졌다. 케네스 배 이후 영사접견이 장기간 차단되는 등 외국인들의 영사접견권 실현이 장애를 받고 있다.²⁴⁴

한국 국민에게는 영사접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사접견권의 제한은 궁극적으로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에 명시된 공

241_ 『조선중앙통신』, 2010.4.7.

242_ 『미국의소리』, 2013.6.1.

243_ 케네스 배, 2016년 11월 7일, 서울에서 면접.

244_ “북한 억류 미국인 처우 악화…영사 접견 차단 최장기화,” 『미국의소리』, 2016.8.8.; “국무부 “북한 억류 미국인 소재 파악 안돼…영사접견 1년 3개월 차단,” 『미국의소리』, 2017.6.3.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억류되어 있다.

사. 평가

북한은 규정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판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 즉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에 불과하다. 이는 ‘독립적인’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공개재판제도도 공정한 재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지심판제도,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 유사 사법제도 운영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를 야기한다.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은 변호사 선임을 형식적으로만 제공할 뿐,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자유롭게 선임한 변호인에 의해 조력을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구금기간 중 영사접견권의 임의적 제한을 통해 자유권규약 제14조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재판은 상소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제14조 제5항에 명시된 개인의 상소할 권리를 침해한다.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모든 인간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개인의 공간과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거나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2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역시 제17조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30 자유권규약 제17조

| | |
|-----|---|
| 제1항 |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 제2항 |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은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 자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의 개념은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으로,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체계적이며 중첩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 북한에도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관련 법률들은 쉽게 무력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 감시제도, 불법 가택수색, 통신 간섭 등을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민 감시제도를 통한 사생활 침해

자유권규약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제17조). 이러한 사생활 보호 권리 전반이 보장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조직 및 제도를 통한 주민 감시제도의 존재 및 운용 여부이다. 국가조직 및 제도를 통한 사생활 침해는 국가에 의한 물리적 폭력 행사 이상의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밀한 사생활이 국가를 통해 조직적·제도적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것은 개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고유한 인격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감시에 대한 자기검열을 가져오는 심리적 폭력에 해당한다.

북한은 헌법 제79조에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의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일군의 불법적인 살림집 수색을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형법 제241조), 압수·수색은 검사의 승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또한 통신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편통신, 전기통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체신법(2001) 제5조, 제11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벌, 형사처벌로 다스리고 있다(행정처벌법 제164조, 형법 제158조).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보장과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국가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주민의 사생활 감시와 통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5호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민 사생활 감시제도로 첫째, ‘5호담당제’, 가 있다. 5호담당제는 5세대를 1개 단위로 묶어 그 중 열성당원인 세대주를 5호 담당선전원으로 배치하여 나머지 세대의 부부 간 애정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포함한 가정생활 일체를 간섭·통제하는 제도이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 초 김일성이 평북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급 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도록 해서 리사업을 추켜세우라”고 하면서 “리당위원회는 그들을 모아 놓고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면 일이 잘 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이후 이른바 ‘붉은 가정 창조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전역

에 걸쳐 실시되었다. 1974년 초부터는 연대책임단위를 5호에서 10호로 늘린 ‘인민반 분조담당제’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5호 담당제는 노력착취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인민반 제도를 들 수 있다. 2010년에 제정된 주민행정법(2010) 제9조에서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인민반은 1946년 토지개혁 초기에 인민위원회의 사회적 협조단위로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²⁴⁵ 북한에서 거주 등록된 모든 주민들은 예외 없이 인민반에 자동 소속된다. 인민반의 세대수는 주민행정법 제9조에 따라 내각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인민반은 20~40세대로 묶이는데, 대도시의 아파트 경우 1동에 70~80세대가 거주할 경우 모든 세대들이 한 개의 인민반에 묶이기도 한다.

인민반은 주민생활의 거점이자 가장 말단의 행정조직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인민반의 감시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인민반은 소속 주민들의 생활지도, 사상동향 파악,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한다. 인민반 안에는 인민반장과 부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담당지도원(보안원, 보위원)을 둔다.²⁴⁶ 인민반은 생활총화 등을 거쳐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

245.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편,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2021), p. 617.

246. ‘주민행정법’ 제10조에 의하면 인민반장과 부반장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인민반장은 인민반 전체 주민의 동태 감시를 맡는다. 세대주반장은 당에서 직접 임명하며 남편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데, 남편들만을 상대로 회의, 인원 동원, 강연 등을 주최하기도 하고 선거 행사 때 인민반 통제와 퇴근 후 동태까지 파악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위생반장은 인민반의 환경 책임자이고 선동원은 반원들의 사상교양을 담당하며 인민반의 당원들로 구성된 당분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담당지도원(보안원, 보위원)은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에서 배치한 감시원이다.

공공질서 유지, 사건·사고 전파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각종 문제를 처리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²⁴⁷

주민행정부 제30조는 “주민은 인민반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가정생활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검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민반 생활과 가정생활은 긴밀하게 연계된다. 보통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대한 위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가계 관련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가택수색에 해당한다. 또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하고, 사상동향이나 가정의 내밀한 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도로청소, 농촌 노력동원, 군대 지원 등 각종 과제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생활총화 제도가 있다. 생활총화는 주민의 사생활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생활총화’란 북한 주민들이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소속 조직에서 주, 월, 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에 대해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는 모임을 말한다.²⁴⁸ 1967년 김정일이 재정립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주민의 사생활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북한은 1974년 선포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유일사상 10대 원칙’)²⁴⁹에

247_NKHR2015000014 2015-01-27.

248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북한지식사전』, p. 492.

249_2013년 6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

서 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주민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소학교 2학년 이상의 북한 주민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총화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²⁵⁰ 생활총화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조직생활이나 인민반 생활을 자기검열하여 자아비판하고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하는 생활총화는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고 비판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이다. 생활총화 직후에는 그날의 비판 내용을 ‘김일성·김정일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생활총화수첩’을 작성하도록 한다.²⁵¹ 불참 시에는 당세포 비서 앞에서 1대 1로 ‘개별총화’를 받기도 한다.²⁵²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생활총화가 일부 형식화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생활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군수업 관련 직장을 다니는 경우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총화가 세계 이뤄지고 있다.²⁵³ 북한 주민들은 평생을 생활총화를 통해 사생활을 자기 검열하고 공개하여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주민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안전소조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있다. 북한에는 모든 조직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일명 ‘안전소조원’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소속 조직의 동료나 주민을

250_ 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북한지식사전』, p. 493.

251_ NKHR2015000102 2015-05-19.

252_ NKHR2015000053 2015-03-10.

253_ NKHR2019000070 2019-08-26.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을 ‘스파이’ 또는 ‘통보원’으로 부른다.²⁵⁴ 안전소조원은 보통 국가기관, 공장·기업소, 농장, 인민반 등에 소속된 사람들 중 비밀리에 선발한다. 모든 조직에 보통 20~30명 중 한 명이 안전소조원이다. 안전소조원으로 비밀리에 발탁되면 해당 소속 조직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고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또는 구두 서약을 한다. 이들을 통해서 보름에 한 번 정도씩 A4 용지 반 쪽 분량의 정책자료, 동향자료 등이 비밀 접선을 통해 상부에 보고된다. 가령 누가 농촌 동원기간에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장사해서 폭리를 보았다, 담당 과장이나 위원장이 위로부터 내려온 보조금을 사취했다는 등 주민 언행 속에 나타나는 모든 동향을 비밀리에 보고한다. 이들 안전소조원들은 보이지 않는 체제유지의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 감시와 사생활 침해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증언은 최근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북 시 탈북자 가족이었던 증언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민반장과 인민반원 등 이웃의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보

254. 안전소조원은 서약서를 쓰고 활동하는 스파이와 구두로 서약하고 활동하는 스파이로 구분된다고 한다. NKHR2015000040 2015-02-24.

안원과 보위원의 직접 감시도 노골적으로 이뤄졌다.²⁵⁵ 2017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엄마가 교화소를 간 후에 계속 감시를 받고 살았는데 옆집 사는 이웃이 담장 너머로 지켜보면서 계속 근황을 물어봤으며 언니가 탈북한 이후부터는 어디 갈 때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한다.²⁵⁶ 중국을 자주 다니는 주민들도 감시의 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양강도 보천군에서 중국과 밀수를 하며 살았는데 보위부로부터 항상 감시를 받았으며, 식사시간에 무엇을 먹는지, 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지 등까지 감시를 당했으며, 심지어 밀수하는 사람들에게 감시자를 붙여 상호 감시하게 했다고 증언하였다.²⁵⁷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도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가 모두 100% 보위부의 검열을 받기 때문에 편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았고 전화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⁵⁸

255_ NKHR2020000006 2020-05-15;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2000006 2022-05-25.

256_ NKHR2021000008-2 2022-05-26.

257_ NKHR2020000006 2020-05-15.

258_ NKHR2020000050 2020-11-28.

표 II-31 주민감시 및 사회통제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3년 도강 시도로 잡힌 이후 보위부 감시대상이 되어 항상 감시당함. 손전화에 항상 도청이 걸려있고 인민반장이거나 담당 보위원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집을 제일 처음으로 참관하고 감시함. | NKHR2021000026 2021-11-10 |
| 2013~2019년에 러시아에 파견된 증언자는 집에서 오는 편지를 보위부에서 검열하기 때문에 본인도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구체적인 사항을 쓰지 않고 전화도 일체 하지 않음. | NKHR2020000050 2020-11-28 |
| 2017년 딸이 한국 입국 후 감시가 많아졌는데, 옆집 이웃 주민이 증언자의 집을 수시로 감시, 도청하여 시 보위부에 보고함. 하루는 시모상을 당해 하룻밤 집을 비우자 그 이웃이 증언자가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 그 일로 보위지도원이 방문함. | NKHR2020000028 2020-07-06 |
| 2018년 남편이 행방불명되자 보위부에서 감시하기 시작. 증언자가 집을 비우면 인민반장이 자주 집을 찾아와 동향 파악을 하였고, 보위원도 남편 소식을 묻고 자수하라는 말을 하기도 함. | NKHR2020000026 2020-07-06 |
| 중국과 밀수를 하며 사는데 보위부에서는 중국에 다니는 사람을 항상 감시하며, 식사 음식, 장에서 구입한 물건 등도 감시하며, 보위지도원들은 밀수꾼들에게 감시자를 붙여 서로 상호 감시하게 함. | NKHR2020000006 2020-05-15 |
| 탈북자 가족인 증언자는 보위부의 감시를 받았으며, 보위원이 교체될 때마다 집을 방문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감. | NKHR2020000012 2020-06-15 |
| 이모의 탈북으로 증언자는 인민반장이거나 인민반원들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았으며, 보위지도원이 직접 감시를 하는데 밭에서 농사 중에도 와서 얼굴을 보고 가기도 함. | NKHR2020000014 2020-06-15 |
| 아들의 한국 입국을 도운 브로커가 검거되어 증언자도 2019년 4월까지 보위부의 감시를 받음. | NKHR2020000024 2020-07-06 |
| 엄마가 교화소에 간 후에 계속 감시를 받았으며 옆집 사는 사람이 계속 근황을 물어봤음. 언니가 1년 먼저 탈북한 후에는 감시가 더 심해져서 어디 갈 때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따라옴. | NKHR2021000008-2 2022-05-26 |
| 탈북자 가족들은 번두리로 강제추방 당한 후 계속 감시당함. 보위부에서 탈북자 가족들이 사는 옆집을 감시원으로 등록하며, 이들은 시간제로 보위지도원에게 보고함. | NKHR2022000006 2022-05-25 |
| 서로 감시하는 체계가 엄청 잘 되어 있음. 인민반장도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고, 또 인민반장이 간첩을 하나씩 심어놓음. 서로가 약간 감시하고 스파이가 되어 고발함. 김새가 있다 하는 집은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 생각하니까 막 쳐들어가서 그냥 막 뒤짐. 굳이 '우리가 이런 증거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음. | NKHR2022000010 2022-06-09 |
| 인민반에 보위부 통보원이 있어서 이들이 모두 감시하며, 너무 잘 살거나 잘 먹으면 안 됨. | NKHR2022000014 2022-06-10 |
| 마을에 경비를 서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 중심에서 의자를 놓고 완장을 끼고 감시하고 있음.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음. 몰래 감시하는 사람들을 '누갈이'라고 하며, 보위지도원이 감시하는 일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음. | NKHR2022000015 2022-06-10 |
| 여동생이 실종자가 되고 나서 보위원과 보안원이 집에 와서 묻고 들락날락했음. 주변과 옆집이 보위부 스파이인 것 같았음. 보위원이 집을 몰래 들락날락하고 감시를 많이 함. | NKHR2022000020 2022-06-18 |

Chapter I
법정목적 및 연구방법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V
취임개중

Chapter V
주요시인

나.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을 통한 사생활 침해

자유권규약 제17조 제1항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된다. 특히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가택 수색은 개인 주거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79조는 개인 주택의 불가침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가택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공간 불가침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북한 현실은 법적 규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안전성(舊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舊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상설·비상설 검열조직(일명 ‘그루빠’) 등 사법 및 치안일군의 불법 가택수색이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증언에서 불법적인 가택수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가택수색은 원래 검찰소의 검사장을 통해 수색영장을 발급받아서 해당 지역 안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순녹화물이나 밀수 등을 검열한다는 이유로 보안원이나 보위원, 109상무 등이 영장 없이 집 안에 불시에 들어와서 수색하는 사례가 많다.²⁵⁹ 또한 숙박검열을 가장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택수색을 받았다는 사례들도 수집되고 있

다.²⁶⁰ 한 예로 2019년 신의주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109상무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리거나 여름에 더워서 문을 열어두면 그냥 들어와서 서랍을 열어보고 외국돈을 가져가거나 텔레비전을 만져서 따끈한지 확인해 본 후 칩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²⁶¹

김정은 정권에서는 가택수색 후 뇌물이나 식사 제공을 통해 단속이 무마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함경남도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0월에 단속원들이 흙친 농작물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며 가택수색을 당하였는데 불순녹 화물(인도 영화와 중국 영화)이 적발되어 3만 원을 주고 무마하였다.²⁶² 2018년 5월에 가택수색을 당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컴퓨터에 한국 노래가 있어 적발되었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담배 두 상자와 돈을 주고 109상무원들을 돌려보냈다.²⁶³

2019년 함경북도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단속원들이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기관에서 떨어지는 과제(숙제)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택수색에서 문제 사항이 생기더라도 사업(뇌물 제공)을 하면 어떤 일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²⁶⁴ 2019년

259_ NKHR2019000013 2019-05-07;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52 2019-07-20; NKHR2020000011 2020-06-15; NKHR2020000023 2020-07-06; NKHR2020000030 2020-08-03; NKHR2020000048 2020-11-28; 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15 2022-06-10; NKHR2022000024 2022-06-23 외 다수의 증언.

260_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14 2022-06-10; NKHR2022000015 2022-06-10.

261_ NKHR2022000015 2022-06-10.

262_ NKHR2019000045 2019-07-01.

263_ NKHR2019000071 2019-08-26.

강원도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또한 보위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았으며 그들 입장에서는 잡아가는 게 목적이 아닌 단속하여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²⁶⁵

2015년을 전후하여 불법 가택수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거나 수색항목에 없는 것을 수색할 경우 강하게 항의하면 단속반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과 2018년에 109상 무원으로부터 가택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영장 제시가 없었으며, 수색 대상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먼저 보여주어야만 단속단원이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는데 단속반원들이 마구 잡이식으로 수색하여 항의하였다.²⁶⁶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2018년 11월에 보위원 6명으로부터 갑자기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밀수를 한다며 손전화기를 내놓으라고 요구받았으나 그들이 담당 보위원의 수표, 인민반장의 동행, 수색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손전화기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였다.²⁶⁷

264_NKHR2020000030 2020-08-03.

265_NKHR2021000026-2 2022-05-18.

266_NKHR2019000085 2019-10-05.

267_NKHR2019000095 2019-10-21.

표 II-32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109상무가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해도 항의할 수 없고, 수색을 나오면 TV가 달궈져 있는지, 메모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손전화가 보이면 함께 단속함. | NKHR2020000023 2020-07-06 |
| 109상무가 외국 녹화물 단속을 위해 불시에 집집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었으며,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두드리거나 담을 넘어오기도 함. | NKHR2020000026 2020-07-06 |
| 109상무가 영장 없이 집에 들어와 컴퓨터와 책 등을 검열하는데 가택수색을 당해 문제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단속원이 집을 나가기 전에 사업(뇌물 제공)을 하여 무마가 가능하며, 단속원들은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사업을 하면 해결됨. | NKHR2020000030 2020-08-03 |
| 숙박검열, 불순녹화물 단속하러 보안원들이 불시에 집에 오는데 한번도 영장을 본 적이 없으며,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고 보안원들이 단속하는 것인데 인민반장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NKHR2020000048 2020-11-28 |
| 가택수색은 흔했으며, 보위원들에게 정기검열을 받았음. 그들은 잡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다가 단속하여 돈을 벌겠다는 게 목적임. 눈감아줘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은 돈 받고 눈감아줌. | NKHR2021000026-2 2022-05-18. |
| 저녁에 숙박검열을 한다고 집에 들어와서 이 책은 어디서 났냐면서 책장을 뒤지는 등 숙박검열이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가택수색을 함. | NKHR2022000001 2022-05-13 |
| 신의주는 국경지역이라 숙박검열을 많이 했는데, 숙박검열로 집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뒤지면서 검열함. | NKHR2022000014 2022-06-10 |
| 109상무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수색함. 지나가다 문을 두드리거나 여름에는 더우니까 문을 열어 놓는데 그냥 들어와서 집을 뒤지고 서랍을 다 열어보고 다른 나라 돈이 나오면 가져감. 죄를 지어서 가택수색을 하는 경우엔 영장 제시를 한다고 들은 것 같으나 109상무가 숙박검열을 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 없이 그냥 자기 집처럼 함. | NKHR2022000015 2022-06-10 |
| 일반적인 가택수색을 많이 당했으며 꼭 탈북자 가족이라서 당하는 것은 아니었음. 탈북 전까지 가택수색을 당함. | NKHR2022000018 2022-06-15 |
| 2017년에 딸이 가지고 있던 USB에 저장된 노래를 들어놓고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109상무가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검열함. 담배 두 막대기를 주고 끝난 줄 알았는데 3개월 후 109상무 책임자가 다시 찾아와서 단련대 1개월이 떨어졌으니 구류장에 가자고 함. 그 때 다시 중국돈 500위안을 줬으며, 병원 의사에게도 돈을 주고 환자로 처리해서 교양 처리로 끝남. | NKHR2022000019 2022-06-16 |
| 빙두나 드라마 단속이 심해져서 109상무가 불시에 집집마다 들어와서 USB를 확인함. | NKHR2022000024 2022-06-23 |

Chapter I
법정문적 및 연구방법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V
취임개중

Chapter V
주요사건

다. 평가

북한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의 감시 강화는 물론 일상적 사회통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망자 색출, 불법 녹화물 적발, 비법적 경제활동 단속 등을 이유로 불법적 가택수색, 임의적인 통신 간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감시와 통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5호담당제’, ‘인민반제도’, ‘생활총화제도’ 등 제도적인 차원의 사생활 감시제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 가택수색에 대한 다수의 증언들은 주민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가택수색이 공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²⁶⁸에 이어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현상” 및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투쟁 전개와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었다.

2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의 진행,” 『노동신문』, 2020.12.5.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는 청년교양 보장법²⁶⁹이 채택되어 청년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사회적으로 준법기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 명분하에 공권력 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9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5차회의 1일 진행,” 『노동신문』, 2021.9.29.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내면세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자유로운 신념의 표명,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등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요건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표 II-33 자유권규약 제18조

| | |
|-----|---|
| 제1항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 제2항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이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
| 제3항 |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제한받을 수 있다. |
| 제4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이하에서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령유일지배체제 및 10대 원칙 지속

자유권규약 제18조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어느 한 국가의 공식신념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⁷⁰ 국가 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은 고유한 사상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의 공식신념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공식신념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당국의 공식사상인 주체사상 외에 그 어떠한 사상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을 제정한 이래, 국가의 주요 신념을 제외하고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으로 개인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본개념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사상·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 요인은 수령유일 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 문화로 볼 수 있다. 수령이 중심

270_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2: Article 18(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July 30, 1993, para. 10.

이 된 국가사상인 주체사상 외에 다른 어떠한 사상을 용납하는 것은 수령유일지배체제를 흔드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만이 국가운영의 ‘기본담보’이며(서문),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제3조).

북한에서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발표된 1974년부터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더불어 어떤 법과 규범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6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개정하였다. 이는 1974년 4월 14일 제정 이후 39년 만의 개정으로, 명칭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북한체제를 사상적으로 지지하는 통치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²⁷¹

개정된 10대 원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全黨)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제6원칙). 김정은은 2013년 6월

271_ 이기우, 『북한의 선전선동과 로동신문』 (서울: 패러다임, 2015), p. 80.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대해 직접 연설을 하였으며, 노동당출판사는 연설 내용을 묶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 하였다.²⁷² 10대 원칙의 개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34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 | |
|-------|---|
| 제1원칙 |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 제2원칙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
| 제3원칙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
| 제4원칙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
| 제5원칙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 제6원칙 |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 제7원칙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
| 제8원칙 |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 제9원칙 |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전군·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
| 제10원칙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

272. 김정은은 이 책에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새롭게 '제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5~6.

10대 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전 가족이 처벌되는 사례도 10대 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10대 원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당원이 아닌 이상 10대 원칙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바뀐 10대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⁷³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10대 원칙은 학교·기업소나 생활총화 시간에 배웠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²⁷⁴

하지만 10대 원칙은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상화 검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부터 초상화 단속이 심해졌다고 증언하였다. 규찰대가 거리에서 초상화 배지를 달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고, 간부들이 내려와서 한두 가구를 선정해서 가정집의 초상화를 검열한다고 한다.²⁷⁵ 초상화 검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도에 검열

273_NKHR2019000014 2019-05-07; NKHR2019000016 2019-05-07.

274_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12 2019-04-20; 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26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275_NKHR2020000022 2020-07-06.

이 있을 때는 검열을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때맞춰 잘 관리했다고 한다.²⁷⁶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민반에서 초상화 검열 공지를 몇 번 하였지만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거나,²⁷⁷ 과거와 같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²⁷⁸

북한주민들은 실생활에서 10대 원칙을 의식하면서 생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생활에서 10대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없다는 증언이 많기 때문이다.²⁷⁹ 반면에 군대는 사회와 다르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군대에서 10대 원칙을 암기한다고 증언하였다.²⁸⁰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주민들도 사상통제 차원에서 10대 원칙에 대한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 예를 들어 한 증언자는 오만에 파견되기 전에 10대 원칙을 통달하도록 외웠다고 한다.²⁸¹

표 II-35 10대 원칙 관련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10대 원칙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군대나 노동단련대에서 학습했음. | NKHR2016000167 2016-11-01 |
| 10대 원칙을 군대에서 입당 전에 암송했음. | NKHR2016000178 2016-11-29 |
| 10대 원칙을 잘 기억하지 못함. 다만 1년에 두 번씩 학습총회를 조직하여 문답식으로 학습하였음. | NKHR2017000053 2017-07-31 |

276_NKHR2020000024 2020-07-06.

277_NKHR2020000013 2020-06-15.

278_NKHR2020000021 2020-07-06.

279_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2 2020-07-06; 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48 2020-11-28.

280_NKHR2020000035 2020-09-05.

281_NKHR2018000113 2018-10-13.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10대 원칙 개정 이후 여맹에서 학습하긴 했음. 하지만 기억나지 않음. 실제 생활에서 10대 원칙들을 의식하지는 않음. | NKHR2017000060 2017-07-31 |
| 생활총화 시 10대 원칙을 인용했음.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였음. 군대에서는 열심히 하는 편임. | NKHR2017000087 2017-09-25 |
| 직장에서 10대 원칙에 대한 책을 배포한 적이 있으나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음. | NKHR2018000056 2018-07-02 |
| 10대 원칙을 문답식으로 교육받으며 힘들게 암송했지만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음. | NKHR2018000070 2018-07-14 |
| 김정은 시대 들어 바뀐 10대 원칙을 읽어본 적도 없으며, 입당 대상자들만 입당하기 전에 교육받음. | NKHR2019000013 2019-05-07 |
| 바뀐 10대 원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NKHR2019000014 2019-05-07 |
| 과거에는 10대 원칙에 대한 교육이 세계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학교에서조차 배우지 않음. | NKHR2019000016 2019-05-07 |

나. 종교의 자유 제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68조에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모든 종교 관련 행위를 체제전복 행위로 간주한다.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천주교나 천우당이 존재하기는 하나 형식적이라고 증언했다.²⁸²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보위부에서 중국에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감시하고, ‘이상한 것’을 알리면 바로 신고를 당한다고 증언하였다.²⁸³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강연대회에서 ‘어디에서 성경책이 나왔다’, ‘어떤 처벌을 받는다’,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²⁸⁴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부대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썩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²⁸⁵

특히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한 편인데,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에 해당되어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하기도 한다.²⁸⁶ 2019년 탈북한 복수의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초반 평안북도 선천에 있는 지하실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적발 되서 총살되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²⁸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

282_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3 2020-07-06; NKHR2020000040 2020-10-31; 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1000023-2 2022-05-31;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7 2022-05-25.

283_NKHR2020000006 2020-05-15.

284_NKHR2020000023 2020-07-06.

285_NKHR2021000023-2 2022-05-31.

286_NKHR2019000054 2019-07-29; NKHR2019000051 2019-07-20; NKHR2019000021 2019-05-07.

287_NKHR2022000014 2022-06-10; NKHR2022000015 2022-06-10.

다고 한다.²⁸⁸ 또한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처벌받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증언하였다.²⁸⁹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 당국이 존재를 주장하는 가정예배처소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가정예배처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제한된 이유는 건국 이래 북한 당국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 탄압을 꾸준히 실시해 온 사실에 기인한다.²⁹⁰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 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⁹¹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 인식에 따라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288_NKHR2019000024 2019-05-18.

289_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22000017 2022-06-13.

290_“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154.

291_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p. 490.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둘째, 종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해 왔다. 새로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988년 9월에 세워진 평양 봉수교회의 경우, 평상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노동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많은 외국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탄압한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종교가 외세침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1990년대에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

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였다.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행위와 관련해 주민 및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현상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이면에는 외부 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특히 중국 등지에서 기독교를 접촉하거나 남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는 그 처벌이 더 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에서 종교를 접해본 적은 없지만 탈북 시기 즈음에 종교생활이 발각되면 처벌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⁹²

표 II-36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00년대 초반 평안북도 선천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실에서 기도하다가 적발되어 70여 명이 역적으로 몰려 총살당함. | NKHR2022000014 2022-06-10; NKHR2022000015 2022-06-10 |
| 2013년 동료의 아버지가 남한에서 불교를 전파 받아 10년 정도 믿었고, 주위에도 이를 소개시켰음. 직원 1,200명 중 70%가 동료의 집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러 밤마다 찾았으며, 점이나 관상을 봐주기도 하였음. 불교책도 본 적이 있으며, 동료의 아버지는 2013년에 노동교화형 1년을 선고받고 원산교화소에 갔으나,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불교를 믿었음. | NKHR2016000056 2016-05-03 |
| 2015년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성경책 같은 내용이 돌기도 했으며, 종교는 '하나님을 따르는 단체'로 이해했음. | NKHR2015000091 2015-05-12 |
| 2015년 12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가택수색 받던 중 성경책이 발견되어 도 보위성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음. 이후 소식을 듣지 못하여 관리 소로 간 것으로 추정함. | NKHR2017000012 2017-04-10 |

292_ NKHR2017000106 2017-11-11; NKHR2017000109 2017-11-20.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8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 기독교 전파 혐의로 2명이 공개처형되는 것을 목격함.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동시에 진행했고 정치범 재판의 주체는 국가보위성이었음. | NKHR2019000054 2019-07-29 |
| 2018년 4월 사촌이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선교용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하다가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보내졌음. | NKHR2019000051 2019-07-20 |
| 말수를 하는 경우, 성경책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적발되면 대부분 교화를 보냈음. | NKHR2015000067 2015-04-07 |
| 보위성 심문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음. 복송되어 보위성 심문을 받을 때, '기독교'를 이유로 체포되어 온 경우가 많았음. | NKHR2015000122 2015-09-08 |

다.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

북한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신이 성행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을 보는 것과 같은 미신행위가 증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⁹³ 북한 형법은 미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그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형법 제256조). 또한 청년교양 보장법은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종교와 미신행위를 두고 있다(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제3항). 하지만 실제로 북한 당국은 미신행위를 여타 종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 혹은 탈북자가 미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부분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⁹⁴ 이마저도 뇌물을 주면 무마되기도 한다.²⁹⁵ 2019년 탈

293_ 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294_ NKHR2017000040 2017-06-05; NKHR2018000094 2018-08-27 외 다수의 증언.

295_ NKHR2017000046 2017-07-03; NKHR2017000133 2017-12-18; NKHR2018000107 2018-10-01.

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살한 미신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되도 처벌강도가 낮고,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을 주면 경고만 주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다.²⁹⁶

그러나 미신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 집권 이후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심해졌다고 했고,²⁹⁷ 2018년 7월 미신행위를 신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²⁹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미신행위 단속에서 점을 본 사람들보다 점쟁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 심하다고 증언하였다.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친한 경우가 아니면 잘 무마되지 않고, 심하면 총살을 당한다. 2019년 혜산에서 점쟁이 여러 명이 검거되었고, 그중 여성 2명이 총살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⁹⁹ 또 다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부터 미신행위 단속이 심해졌다고 증언하였다. 점을 봐준 사람들이 잡혀가서 교화소에 갔고, 점을 보러 간 사람들도 심하지는 않지만 처벌을 받았다고 하였다.³⁰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2018년경부터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미신행위는 교화까지 보내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처벌받

296_NKHR2022000003 2022-05-19.

297_NKHR2022000010 2022-06-09.

298_NKHR2022000002 2022-05-18.

299_NKHR2020000024 2020-07-06.

300_NKHR2020000013 2020-06-15.

은 사람들은 3년형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뇌물을 주고 석방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미신행위는 점을 보러간 사람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³⁰¹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의 사주팔자 책을 사춘 시누이에게 빌려주었다가 109상무 단속에 걸려서 한 달을 갇혀 있다가 뇌물을 바치고 석방되었다.³⁰²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에 미신행위를 하다 적발된 2~3명이 공개재판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각각 교화형 5년과 8년을 받았고, 점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한다.³⁰³

미신행위자 처벌사례에 대한 증언은 매우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점쟁이들이 공개재판을 받고 교화에 갔다는 증언,³⁰⁴ 2018년 70대 여성이 미신행위를 20명의 제자들에게 전수해주다 적발돼 총살당했다는 증언,³⁰⁵ 2018년 방토(귀신 쫓기) 등 미신행위를 해주던 사람이 무기교화를 갔다는 증언³⁰⁶ 등이다.

301_NKHR2020000005 2020-05-15.

302_NKHR2020000024 2020-07-06.

303_NKHR2020000022 2020-07-06.

304_NKHR2019000033 2019-06-03; NKHR2022000025 2022-06-23.

305_NKHR2019000071 2019-08-26.

306_위의 증언.

라. 평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신봉하는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은 자유로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나아가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북한의 법제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 사이에 사상 및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의 자유의 경우, 헌법에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등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북한 당국은 지속적 통제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와 같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점이나 굿과 같은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미신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와 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있어서 필수조건이 되는 권리로서³⁰⁷ 모든 권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의 하나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및 국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 취득,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도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37 자유권규약 제19조

| | |
|-----|--|
| 제1항 |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 제2항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 제3항 |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공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307. UNHRC,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September 12, 2011, para. 2.

이하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치적 의견 형성 및 표명에 대한 제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과학적·역사적·도덕적·종교적 성격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의견이 보호되며, 의견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금지된다.³⁰⁸ 통상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 없이 의견 형성에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이것이 강압이나 협박 또는 다른 유사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때 의견을 가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⁰⁹

북한은 헌법 제67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디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³¹⁰ 그러나 북한 헌법은 제10조와³¹¹ 공

308. UNHRC, General Comment, No. 34 (2011), paras. 9~10.

309.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2nd revised ed (Kehl am Rhein: N. P. Engel, 2005), p. 442.

310.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자료집 (2014.9.13.), p. 49.

3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63조,³¹² 제81조,³¹³ 제85조에서³¹⁴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혁명적 경각성’, ‘국가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은 감시가 일상에서 작동하고 있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다.³¹⁵

실제로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에 관한 부정적 언급, 남한에 관한 호의적 언급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수령이나 정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간다는 인식이 있다.³¹⁶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말한다.³¹⁷ 북한 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가 가지는 통제력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의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형법 조항은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행위를 범죄화하여 가혹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 ‘민족반역행위’에 속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면 보위부에 잡혀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라질 수 있

3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313.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314.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15. 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14 2022-06-10 외 다수.

316. NKHR2019000020 2019-05-07.

317.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104 2019-11-09 외 다수의 증언.

다는 두려움이 있어³¹⁸ 국가나 국가정책을 비판한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행위를 자기검열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³¹⁹ 북한 사회에서 체제비판 등 정치적 발언은 근본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사 표현조차 심각하게 통제되는 상황이다.

나. 언론 및 출판물의 임의 검열·규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표현의 수단이 되는 언론·출판 및 기타 매체는 자유로워야 하며 검열과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출판물과 언론 및 방송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및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주민선동에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 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다.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된다.³²⁰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노동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물론 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엄격히 금지된다.

318. NKHR2021000026-2 2022-05-18.

319.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75/271 (2020), para. 20.

320.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9), pp. 297~298.

북한의 방송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하며,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³²¹

북한 출판법(1999)은 “국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6조), 그 목적을 “혁명적 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제2조). 출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자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에 등록해야 하며(제12조)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인쇄설비는 몰수된다(제49조).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어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제47조). 또한, “기밀을 누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고 규정하여(제48조) 사실상 출판물에 대한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출판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 국민은 정상에 따라 행정 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처해진다(제50조). 행정처벌법은 출판,

321_ 위의 책, p. 304.

인쇄, 보급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다(제 194조 및 제195조). 북한 형법은 출판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4조).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최종적으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 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 당국은 형법 제 62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 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서 노동당이나 최고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2019년 제3차 UPR 당시 북한은 주민들의 저작물 출판물의 종류와 수가 현저히 늘어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매년 수차례 개최되어 국가 표창과 기타 인센티브가 수여되어 창작 활동에 대한 대중의 열정이 고무되었다고 보고하였다.³²² 그러나 실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출판물은 검열에서 ‘합격’ 도장을 받은 것이며,³²³ 그 외의 출판물은 단속 대상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의 승인 없이 출판하는 것은 가족 3대가 ‘종파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증언했다.³²⁴ 더욱이 국가와 당에 반대하는 글이나 불평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³²⁵

322_ UN Doc. A/HRC/WG.6/33/PRK /1 (2019). para. 32.

323_ NKHR2021000026-2 2022-05-18.

324_ NKHR2022000006 2022-05-25.

325_ NKHR2021000026-2 2022-05-18.

지역이나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에 참가한 북한 주민들은 국가와 당에 충실한 ‘나팔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³²⁶ 당사국이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출판 전에 받는 검열이 불편하고 부당하다 여길지라도 당국의 검열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³²⁷ 그렇기에 북한 주민은 개별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으며³²⁸ 승인되지 않는 출판물을 읽거나 접할 수도 없다. 도서출판과 유통을 관리하는 국가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생산과 유통, 소비는 불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지인의 어머니가 2011년에 영화를 찍어서 팔다가 적발되어 교화형 8년을 받았으며, 외국 출판물은 국가가 승인한 것만 읽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³²⁹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외국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며, 단속에 걸리면 회수당한다고 증언했다.³³⁰ 휴대전화에 저장한 도서를 단속당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사례처럼³³¹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로 인해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자유롭게 책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326_ “당사상전선의 화선나팔수-방송선전차 방송원들,” 『노동신문』, 2020.10.28.

327_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6 2022-05-25.

328_ 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2000014 2022-06-10.

329_ NKHR2022000006 2022-05-25.

330_ NKHR2021000026-2 2022-05-18.

331_ NKHR2022000018 2022-06-15.

표 II-38 한국·외국 출판물 접촉 및 단속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한국의 사주팔자 책을 사춘시누이에게 빌려줬다가 109상무에 단속되었음. 한 달을 갇혀 있다가 뇌물을 바치고 나옴. 책 한 권을 통으로 단속당했으면 살기 힘들었을 테지만, 몇 장을 남겨둔 것만 단속되어 해결할 수 있었음. | NKHR2020000024 2020-07-06 |
| 2017년에 핸드폰에 다운 받았던 도서가 검열에 걸렸음. 책은 다 중앙 출판사에서 나오는 줄 알았음. 그러나 사회 사람들도 단속할 수 있는 군인들인 보위소대에 단속됐음. 지침이 내려온 걸 보여주면서 '봐라, 네가 지금 읽은 이 책 제목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르고 했다고 얘기를 해도 안 되어서 아주 작게 뇌물을 주고 나왔음. | NKHR2022000018 2022-06-15 |
| 미술작품은 모르겠으나, 책이나 음악은 검열받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나 저항해도 소용없음. 검열 시스템이 있어서 출판물 하나도 다 검열함. 모든 출판물이 첫째로 보는 게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의 말 씀, 교시를 첫 자리에 놓는 것부터 봄. 문장 띄어쓰기 잘했는가? 콤마도 잘 찍었나? 이런 거 다 보고 정책적으로 평가하는 게 기본임. 내용은 어떻게든 기간에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됨. | NKHR2022000001 2022-05-13 |
| 검열을 받지 않는 출판물은 없으며, 합격이 되어야 출판이 가능함. 외국 출판물을 소지했다고 처벌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가지고 있으면 모두 안 됨. | NKHR2021000026-2 2022-05-18 |
| 출판물 발매 전에 검열받는 것에 당연히 부정적이나,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깐 절차는 밟는 것임. 검열을 받지 않고 출판하면 종파로 몰려서 가족 삼대가 종파 간첩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위험함. 외국 출판물이나 작품은 북한 자체에서 승인된 것만 접하는 게 가능하고 비법으로 절대 못 함. | NKHR2022000006 2022-05-25 |

다. 외부 정보 차단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 통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권규약 당사국인 북한의 주민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와 사상을 추구·취득·전달할 수 있다. 2019년 제3차 UPR에서 북한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에 대한 공민의 권리가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소개하였다.³³² 또한 북한은 IT 이용 환경에 투자를 지속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가 모든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³³³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지도 못할뿐더러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정보와 사상(녹화물 포함)을 취득하고 전달했을 때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케이블 TV처럼 200위안 하는 ‘푸른 하늘’ 기계를 두고 TV를 시청할 수 있으나 4개 채널 외에는 단속당한다.³³⁴ 북한 주민들은 불법 녹화물과 휴대전화를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국의 통제와 감시 속에 자유롭지 않다.

(1) 녹화물 단속 및 처벌

북한 당국은 불법 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 등을 허가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 보관한 행위(제183조)와 반국가 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행위(제185조)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이용, 유포행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된다(제208조).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는다. 외부문화 반입 관련 2013년 형법은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에서 최대

332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

333_ *Ibid.*, para. 33.

334_ NKHR2022000014 2022-06-10.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형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2013년 이후 외부 문화 반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였다.

표 II-39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 | |
|---------------------|--|
| <p>2012년 형법</p> | <p>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악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 <p>2013년 형법</p> | <p>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록화물, 전자매체 같은 것을 여러번 반입, 유포하였거나 많은 량을 보관하고있는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 <p>2015년 형법</p> | <p>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유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

북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콘텐츠를 ‘비사회주의 퇴폐적 문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열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외부문화 콘텐츠를 반입하고 생산, 유포, 보관하는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형법과 행정처벌법 조항을 두고 있다. 게다가 해외언론 및 출판물을 규제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된 109상무는 사전 공지나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³³⁵

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신경이 단속에 가 있을 정도로 109 상무가 자주 가택을 수색한다고 증언하였다.³³⁶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고 보안원들이 불시에 집에 와서 숙박검열, 불순녹화물 단속을 한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³³⁷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민반 지원사업도 하던 모범세대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열받았는데 단속 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며, 검열에 걸렸을 때 당 위원회 통보 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안전부나 보위부에 가거나 추방당한다고 증언했다. 특히 당시에 몰래 보았던 드라마 내용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수술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들키는 순간 정치범수용소에 가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했다고 증언했다.³³⁸ 단속에 대비하여 북한 영상물을 본 것처럼 미리 준비해 두거나 소리와 빛을 차단하였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³³⁹ 영상물을 보는 기기도 CD에서 메모리, 휴대전화 칩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³⁴⁰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CD로 봐서 걸리기 쉬웠으나 이제는 손톱만한 SD 메모리 카드로 보기 때문에 밖에서 문소리가 들리면 바로 숨긴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⁴¹

단속조직으로 알려진 109상무의 녹화물 단속은 지속적으로

335_UN Doc. A/75/271 (2020), para. 18.

336_NKHR2020000029 2020-07-05.

337_NKHR2020000029 2020-07-05; NKHR2020000048 2020-11-28.

338_NKHR2022000001 2022-05-13.

339_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2000007 2022-05-25; NKHR2021000011-2 2022-05-31; 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14 2022-06-10 외 다수.

340_NKHR2022000015 2022-06-10.

341_NKHR2022000006 2022-05-25.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도 강력해졌다. 109상무는 전파를 탐지하는 기계를 들고 다니며 그 기계로 전파를 탐지하면 화면에 어떤 영상물을 봤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에 걸리면 꼼짝없이 단속된다고 한다.³⁴² 109상무는 사복 입고 돌아다니다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거나 얼굴에 살이 좀 있고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한다.³⁴³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보유한 젊은 세대들은 영상물을 활발하게 보기 때문에 휴대전화 검사와 숙박검열을 자주 받고, 다른 이에게 유포시켜 연쇄적으로 걸리는 경우도 많다.³⁴⁴ 그러나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드라마가 ‘환상적’이어서 자연스럽게 북한 사회와 비교했으며³⁴⁵ 의사 표현과 외모 꾸미기가 자유로운 한국 모습을 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고민했다고 증언했다.³⁴⁶ 한국 드라마에서 의식주, 특히 집을 눈여겨보았으며 동상을 청소하고 초상화를 닦는 일과와 비교하자 철장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⁴⁷ 반면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후 ‘예술은 예술’이라서 실제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발전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⁴⁸ 또한, 북한 사회가 잘못되었다

342_NKHR2019000089 2019-10-19.

343_NKHR2022000004 2022-05-20.

344_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14 2022-06-10.

345_NKHR2021000011-2 2022-05-31.

346_NKHR2021000026-2 2022-05-18.

347_NKHR2022000014 2022-06-10.

는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자본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⁴⁹ 그러나 많은 경우 한국 드라마로 ‘바깥세상’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⁵⁰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의 경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라는 증언은 형법이 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노래나 녹화물은 단련대 형을, 한국 드라마는 교화형을 받는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³⁵¹ 단속에 걸려 잡혀 들어가면 심문을 통해 반드시 유포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다고 한다.³⁵²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이 빙두를 하다 단속된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데, 교화형·강제 추방을 받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는 증언이 있었다.³⁵³ 특히 음란물이 적발되면 최대 교화 10년형을 받기도 하고³⁵⁴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³⁵⁵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게시되었다는 증언과³⁵⁶ 적발되면 총살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⁵⁷ 2018년에 형사법이 바뀌어서 한국 드라마나 녹화물을 보면 5년 징역형이 주어진다는 증

348_ NKHR2022000006 2022-05-25.

349_ NKHR2022000019 2022-06-16.

350_ 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17 2022-06-13.

351_ 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NKHR2022000006 2022-05-25 외 다수의 증언.

352_ NKHR2020000013 2020-06-15.

353_ NKHR2020000021 2020-07-06.

354_ NKHR2019000016 2019-05-07.

355_ NKHR2019000003 2019-04-08.

356_ NKHR2015000099 2015-05-19.

357_ NKHR2019000084 2019-10-05; NKHR2022000006 2022-05-25.

언도 있었다.³⁵⁸ 2019년부터 처벌이 엄격해졌는데 한국 영화는 1시간에 교화 1년이어서 한국 영화 7시간 봤다고 교화 7년간 사람을 보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³⁵⁹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 영상물 시청으로 받는 형량은 7년형에서 10년형이며,³⁶⁰ 10년형은 오히려 작은 형량이고 무기징역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처벌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³⁶¹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CD알 보는 것을 눈감아줬던 예전과 달리 한국 드라마로 단속되면 무조건 보위부 취조를 받으며 전문적으로 유포했다는 게 밝혀지면 총살감이라고 증언했다.³⁶²

하지만 당국의 녹화물 차단을 위한 통제 강화와 별개로 여전히 인맥과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³⁶³ 북한이탈주민은 녹화물 단속을 당했을 때 현장에서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서 교화에 갈 사안도 며칠이나 몇 달 만에 풀려나며, 돈이 많은 집은 걸려도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한다.³⁶⁴ 단속되면 영화 한 편에 인민비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서 돈이 있으면 살아나고 없으면 교화소에 가야 한

358_ 2018년에 개정되었다는 형사법은 현재 입수되지 않아 정확한 법령 구문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일부 개정 내용은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다. “북, 인신매매범 처벌에 관한 형법 일부 개정,” 『자유아시아 방송』, 2019.6.26.

359_ NKHR2022000002 2022-05-18.

360_ 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5 2022-06-10; NKHR2022000017 2022-06-13.

361_ NKHR2022000017 2022-06-13.

362_ NKHR2021000026-2 2022-05-18.

363_ 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22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364_ NKHR2020000014 2020-06-15.

다는 것이다.³⁶⁵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한국 음악을 들으며 놀던 아들이 109상무에 잡혀서 중국 돈으로 1만 5천 원을 주고 단련대 6개월형으로 줄였다고 증언했다.³⁶⁶ 그러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뇌물로 해결되지 않으며, 시청하다가 단속 될 경우 돈을 아무리 쥐도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한 증언도 있었다.³⁶⁷ 2020년에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3년 교화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³⁶⁸ 청소년도 비판무대에 세워졌으며, 공개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갔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³⁶⁹

표 II-40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6년에 아는 동생이 드라마를 보다 잡혀서 5년형을 받음. | NKHR2022000011 2022-06-10 |
| 2016년 고등중학교 졸업한 해에 청소년들 모아놓고 비판무대 하는 것을 목격함. 심각하면 소년교도소에 보냄. 처벌이 심각한긴 해도 돈을 주면 빼내는 경우도 많이 있음. | NKHR2022000025 2022-06-23 |
| 2017년에 한국 영화를 보면 같이 본 친구들을 모두 말해야 하니 혼자 가겠다고 마약 한 병 마시고 죽은 애가 있었음. 교도소에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 추방당함. 예전에 5년형을 받았다면 지금은 10년형으로 늘어남. 한국 영화를 보면 교도소를 보내기 때문에 간혹 자살하는 애들도 있음. | NKHR2022000015 2022-06-10 |
| 2017년에 구류장에 있을 때, 종고로 산 컴퓨터에 이전 사용자가 저장해 둔 미국 영화가 걸려 들어온 사람이 있었음. 2017년 12월에 구류장에 같이 있던 사람의 딸이 한국 드라마인줄 모르고 친구랑 같이 봤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걸리면서 딸도 같이 잡혔음. 그 딸은 구류장에서 심문을 받다가 죽었다고 들음. | NKHR2022000017 2022-06-13 |

365_ NKHR2022000010 2022-06-09.

366_ NKHR2022000003 2022-05-19.

367_ NKHR2019000076 2019-08-26; NKHR2019000089 2019-10-19; NKHR2019000097 2019-10-21.

368_ NKHR2021000011-2 2022-05-31.

369_ NKHR2022000023 2022-06-22; NKHR2022000025 2022-06-23.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7년에 노트북에 홍콩 영화랑 한국 영화가 있던 걸 109상무가 노트북 검열할 때 잡혀서 보안서에 갔음. 취조를 받으면서 맞기도 함.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책으로 머리를 치고 함. 미국 영화도 있어서 돈을 아무러 가져다줘도 누구랑 공범인지 얘기해야 끝남. 미성년이라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음. 결국 복사해준 사람을 불고 나왔음. | NKHR2022000023 2022-06-22 |
| 2018년 지인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녹화를 가택수색에 단속되었음. 6개월 정도 보위부에 들어가 있었으며, 돈을 많이 고이고 단련대에 가는 것을 면했음.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자칫 노동교화소에 가게 되므로 대략 2,000달러 정도로 많이 고여야 함. | NKHR2020000022 2020-07-06 |
| 2018년에 아들이 친구 집에서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놀다가 같이 있던 친구가 신고해서 109상무에 잡혀감. 15,000위안을 주고 처벌을 면한 게 단련대 6개월이었음. | NKHR2022000003 2022-05-19 |
| 2018년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단속되면 교도소를 가며 형이 5년 이상임. 옛날에는 CD로 봤으니 걸리기 쉬웠으나, 요즘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SD로 보기 때문에 밖에서 문소리가 나면 벌아서 쥐고 있으면 안 걸림. 처벌은 무엇을 봤나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국 영화는 무조건 교화형임. | NKHR2022000006 2022-05-25 |
| 2018년 탈북 전에 한국 노래를 듣고 단련형 6개월을 간 애가 있었는데, 부모가 뇌물을 주고 단련형 6개월만 받음.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집 문을 잠그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창문에 담요를 덮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시청함. | NKHR2022000007 2022-05-25 |
| 2018년도에 딸이 친구에게 USB를 빌려줬는데 109 상무에게 검열당해 잡혀감. 딸이 잡혀가서 너무 많이 맞아서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도망침. 결국 1,800원 고이고 살아남. | NKHR2022000019 2022-06-16 |
| 2019년 탈북하기 전에 청년동맹에서 길 가던 사람들의 손전화 단속을 하는데,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1편에 10,000위안 정도를 고여야 무마 가능함. | NKHR2020000013 2020-06-15 |
|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는데, 회사에서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했지만 노동자들이 막대기형 전화를 암암리에 사용했음. 관리자가 보지 못하도록 몰래 사용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았음. 2018년 남북정상회담도 유튜브에서 보고, 한국노래도 들었음. 전화기를 검열하지는 않았음. | NKHR2020000050 2020-11-28 |
| 2019년 탈북하기 전까지 USB로 드라마를 시청함. 예전에는 CD알을 보는 거 눈감아줬는데 그게 좀 없어짐. 단속되면 무조건 보위부 취조를 받음. 취조받아서 전문적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총살감임. | NKHR2021000026-2 2022-05-18 |
| 2019년 탈북 직전까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음. 검열이 자주 오기 때문에 걸리면 추방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를 갈 수 있어서 조심해서 시청함. 109 상무에서 인민반장과 함께 단속하며, 보통 한 달에 3~4번 정도 함. | NKHR2022000001 2022-05-13 |
| 2019년도부터 엄격해졌으며, 한국 영화는 시간당으로 1시간에 교화형 1년임. 한국 영화 7시간 봤다고 교화 7년 간 사람이 있음. 단련형이면 뇌물 주면 관참음. | NKHR2022000002 2022-05-18 |
| 2019년에 학교 후배 3명이 한국 녹화물을 보다 단속되어 교화소에 보내는 공개재판을 봄. 18살을 교화소를 보낸 적은 처음임. | NKHR2022000023 2022-06-22 |
| 2020년 1월에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3년 교화형을 받음. | NKHR2021000011-2 2022-05-31 |
| 단속되면 무조건 추방임. 대학생들이 유포죄로 주로 많이 걸림. | NKHR2022000014 2022-06-10 |

(2)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휴대전화는 북한 주민들 간에 외부 정보가 유입·전달되는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2010년 50만 명, 2012년 100만 명, 2013년 300만 명 수준에 이른 후 2017년 370만 명을 넘어섰고,³⁷⁰ 2020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약 600만 명 수준으로, 이집트·태국 합작사 등 3개 통신사가 3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마당 종사자 등 1인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자는 전체 주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4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세계 인터넷 이용 통계(World Internet Usage Statics 2022)’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는 2만 명으로 추산돼, 약 2,596만 명의 인구 중 0.1%(0.0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³⁷¹

또한, 휴대전화에도 도청 및 보안체크 기능을 삽입하여 정보 유출 방치를 조치하는 등 정보통제 차원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³⁷² 북한 내 휴대전화의 보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내 통화에 한정되고 있다. 방해전파 설비를 설치하고, 감청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휴대전화를 단속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⁷³

370_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49.

371_ “북, 인터넷 이용자 0.1% 세계 꼴찌,” 『자유아시아방송』, 2022.8.18.

372_ 김민관,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북한포커스』, 2020.8.10.

373_ NKHR2021000011-2 2022-05-31; 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3 2022-06-10.

상시 이루어지는 단속은 주로 규찰대, 보위부, 109상무에서 한다. 직장에 검열이 나오면 휴대전화 사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⁷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는 모두 보위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있어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1대라고 한다.³⁷⁵ 중국 전화는 사용하면 바로 위치추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북한 전화를 사용한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³⁷⁶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중국 전화를 사용하다가 전화를 감청하는 보위부 111에 걸려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당시 유심칩을 이빨로 씹고 뇌물을 주어서 처벌을 면했다고 증언했다.³⁷⁷ 북한 주민들이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평소에 숨겨놓았다가 산이나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짧게 통화하거나,³⁷⁸ 중국산 스마트폰 위챗으로 채팅하거나,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후 바로 삭제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³⁷⁹

휴대전화 사용 단속 항목은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메모리 등이다. 휴대전화 알림음을 한국 음악으로 넣거나³⁸⁰ 한국 말투로 문자를 보냈는지가 단속의 대상이다.³⁸¹ 2020년에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북한이탈주민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이

374_NKHR2022000001 2022-05-13.

375_NKHR2022000006 2022-05-25.

376_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1000011-2 2022-05-31.

377_NKHR2021000011-2 2022-05-31.

378_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1000008-2 2022-05-26.

379_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24 2020-07-06.

380_NKHR2022000001 2022-05-13.

381_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11 2022-06-10.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의 전화에 불순녹화물, 한국 노래 등이 있는지 검사한다고 증언하였다.³⁸²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예전보다 단속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주로 보안원이 단속하지만, 기차 타면 보위부가 단속하며 때로는 기차 승무원도 휴대전화를 검열하여 북한 주민들은 수시로 단속받는 상황에 처한다.³⁸³ 보위부의 전화 파장 추적에 세 번 걸리면 교화를 가야 하며,³⁸⁴ 보지 말라는 영화가 들어있거나 이상한 사진, 하지 말라는 오락이 있으면 보안원들이 검열하고 구류장에 넣으며 교화도 갈 수 있고 노동단련대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³⁸⁵ 단속에 하도 걸리니 “핸드폰이고 뭐고 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다”³⁸⁶는 증언도 있었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했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단속에 많이 걸리며 심하면 교화까지 가지만 뇌물로 무마되곤 한다.³⁸⁷ 대학생이 휴대전화에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노래, 영상, 그림들을 보위부에 걸리면 학교에서 처벌받지만, 부잣집 자식들은 돈을 많이 쓰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³⁸⁸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규찰대 검

382_ NKHR2020000038 2020-09-26.

383_ NKHR2022000014 2022-06-10; NKHR2022000015 2022-06-10.

384_ NKHR2022000013 2022-06-10.

385_ NKHR2022000014 2022-06-10.

386_ NKHR2022000015 2022-06-10.

387_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18 2022-06-15.

388_ NKHR2021000026-2 2022-05-18.

열에 걸려 보안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사정하자 노골적으로 100위안을 가져오라 했다고 증언했다.³⁸⁹

표 II-41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에 집에서 중국 전화로 딸과 통화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구류장에 들어감. 단속에 걸린 후로 집에서 통화를 못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 도청이 된다 해도 실제로 믿기 힘들었는데 직접 겪어봄. | NKHR2022000003 2022-05-19 |
| 2018년에 중국 전화로 전화를 사용하다가 친구 집에서 갑자기 단속을 당했을 때 유심칩부터 씹어서 버림. 전파를 잡아서 가택수색을 하는 거라 영장도 없었음. | NKHR2021000011-2 2022-05-31 |
| 2018년에 단속에 걸려봄. 신분증 보여주면서 달라고 해서 핸드폰 보여줌. 불법적인 노래나 동영상 있는지 봄. | NKHR2022000016 2022-06-11 |
| 2019년에는 1,500~2,000위안을 고여야 손전화 단속을 해결할 수 있었음. 다만 뇌물 액수가 지역마다 다른데, 해산시라면 5,000위안은 고여야 함. 2015년에 손전화 단속에 걸렸을 때는 500위안으로 해결했음. | NKHR2020000006 2020-05-15 |
| 2019년에 사동생이 손전화 단속에 걸렸음. 손전화는 길거리나 시장에서도 강하게 단속됨. 시·구역 청년동맹, 109상무가 검열하며, 도끼리 교차검열 하기도 함. 이미 지운 데이터도 복원해서 검사함. 하지만 손전화 처벌은 단속한 사람이 편을 돌리는 데 따라서 증감됨. | NKHR2020000030 2020-08-03 |
| 2019년에 대학생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음. 규찰대에게 단속당해 걸리면 재수 없는 것임. 핸드폰 안에 있는 노래나 영상, 그림들이 걸리면 비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봄. 압수당해 보위부에 걸리면 학교에서도 처벌받지만, 부장 집 자식들은 돈 많이 쓰면 나올 수 있었음. | NKHR2021000026-2 2022-05-18 |
| 2019년 탈북 전에 집체적으로 방침이 내려오거나 할 때 직장에서 핸드폰 소유자명단으로 단속함.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오라고 하면 가져가기 전에 불필요한 거 다 지움. | NKHR2022000001 2022-05-13 |
| 2019년 탈북하기 전에 해산 쪽은 방해 전자파가 있어서 전화를 잡을 수가 없음. 길 지나가다가 사복 입은 사람이 보위부라고 하면서 핸드폰 보자고 검열함. | NKHR2022000008 2022-05-27 |
| 2020년까지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매일 아침 담임선생과 사로청 자원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손전화에 불순녹화물, 한국 노래 등이 있는지 확인함. | NKHR2020000038 2020-09-26 |
| 보위부 111이 전화 감청하는 부서임. 몸예다 장비를 차가지고 다니며 감청함. | NKHR2021000011-2 2022-05-31 |
| 중국 전화는 단속이 심해서 사용할 수 없음. 국가보위부에서 단속하며, 걸리면 교화소를 가야 함. 뺨을 쓰거나 돈을 주면 나올 수 있음. 북한 제품은 단속을 안 해도 한국 노래를 사용하면 단속당함. | NKHR2022000002 2022-05-18 |

389. NKHR2022000015 2022-06-10.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단속대, 지정대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보위부에서도 핸드폰 좀 보자 하고 109상무도 보자 함. 문자를 보자 해서 '오'자가 들어가면 한국말투라고 시비를 걸고 단속함. 특히 비디로나 이미지는 있으면 안 됨. 갓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다가 단속이 잘 되고 1년, 2년 형을 받기도 함. | NKHR2022000011 2022-06-10 |
| 파장으로 단속하며 손전화 단속 세 번이면 교화형임. | NKHR2022000013 2022-06-10 |
| 보안원이 주로 단속하지만, 기차 타면 승무원도 검열할 수 있음. 단속하다가 보지 말라는 영화가 들어있거나 이상한 사진, 하지 말라는 오락이 들어있으면 걸림. 교화도 갈 수 있고 노동단련대도 갈 수 있음. 보안원들이 검열하고 구류장에 집어넣음. | NKHR2022000014 2022-06-10 |
| 주로 보안원이 단속하는데 기차 타면 보위부, 보위소대가 단속함. 길을 가다 규찰대가 핸드폰을 그냥 보자고 함. 보고 이상한 게 나오면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면서 보안서로 오라고 함. 잘못했다고 사정하면 노골적으로 얼마 가져오라고 함. 핸드폰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중국돈 100위안 정도임. 핸드폰이 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님. | NKHR2022000015 2022-06-10 |
|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손전화 검열은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예전에 109가 617인가로 이름이 바뀌어서 동네에서 자주 함. 심한 경우엔 교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뇌물이면 되는 경우도 있음. | NKHR2022000018 2022-06-15 |
| 보통 16~17세부터 손전화를 쓰며, 중국돈 2,000위안 정도면 살 수 있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음. 길 가다가도 단속하고 학교에서도 한국 것들이 있는지 검열함. | NKHR2022000034 2022-08-08 |

라. 평가

북한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당국도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 표현의 수단이 되어야 할 언론 및 출판물은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외부 문화 콘텐츠를 저장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과 검열 및 처벌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2015년 형법 개정으로 국경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최근 조사에서 실제 증언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은 세대와 성별, 지역을 막론

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시청이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한편, 2020년 12월에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된 실태는 최근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각종 콘텐츠 가운데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당국의 강력한 통제와 검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결집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주요 국제인권규범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21조 및 제22조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 II-42 자유권규약 제21조, 제22조

| | |
|------|---|
| 제21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정,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 제1항 |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22조 |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제3항 |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와 노동조합 혹은 이익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는 자발적 집회 및 결사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 및 실질적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노동권을 다루는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3. 노동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조직생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부재

자유권규약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정,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전체가 국가안보 및 애국주의 우선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 어떠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개인이 집단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 형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이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억압의 표시이다.³⁹⁰ 그러나 북한에서 열리는 집회는 대부분 군중집회에 해당하며,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양, 정치교양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회동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형법 제209조에서 반국가적 목적이 없다 해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여 북한 내에서의 시위를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처벌법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이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을 시킨다고(제252조)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대변되는 이러한 법조항들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법 조항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집회하거나 시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국이 허용하는 관제집회 및 군중동원 외에 어떠한 형태의 집회도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

390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7, Article 21: Right of Peaceful Assembly, Advance Unedited Version. UNHRC Doc. CCPR/C/G/37 (27/July/2020), paras. 1, 2, 9.

다.³⁹¹ 이는 집단주의 원칙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화적 집회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다.

나. 결사의 자유 부재 및 조직생활 강제 부과

자유권규약 제22조 제1항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67조에서 “공민은 (...)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사의 자유라는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하는 결사체에 대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다만 자율적인 집회활동을 비롯해 당이나 기관에 항의하기 위해 개인이 시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³⁹² 여럿이 모이는 술자리도 못하게 한다는

391_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6 2022-05-25.

392_ 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2000014 2022-06-10.

것이다.³⁹³ 한 북한이탈주민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으며, 절차도 아예 없다고 증언했다.³⁹⁴ 2018년 양강도 도보위국 출입국에 빚을 내서라도 자금지원을 많이 했지만 중국으로 가는 도강증과 여권 발급이 지연되자 화가 난 사람들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평양의 중앙보위성에서 검열이 내려왔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³⁹⁵ 최근에 철도 정리 동원령에 주민들이 농사일이 바빠 집단으로 불참하자 당국이 이를 선동한 불순분자를 조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³⁹⁶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집회나 결사는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으며, 집단행위를 집단저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사체가 일절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에 대해 조직생활이 강제 부과된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노동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해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단체에서의 활동 및 임무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결사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³⁹⁷

2019년 UPR 실무그룹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기혼 여성이 여성동맹에 가입해야 하는 관행을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을 북한

393_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1 2022-05-13.

394_NKHR2022000006 2022-05-25.

395_NKHR2019000091 2019-10-21.

396_“북 양강도서 노력 동원 집단불참사태 발생,” 『자유아시아방송』, 2019.6.24.

397_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2000011 2022-06-10 외 다수.

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⁹⁸ 그러나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북한이 사회와 가정, 일터 등 모든 부문에서 구축해온 조직 생활의 관행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와 조직의 결성이 성립되기 어려운 북한에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강제하는 조직생활을 결사의 자유와 연 관해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II-4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고급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적으로 청년동맹에 들어가는데, 집회에는 다 참가해야 함. 의무로 가는 것일 뿐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웬만한 사람은 다 입을 다물고 구호 외치는 것을 흉내 냄. | NKHR2019000053 2019-07-29 |
| 미사일을 쏘거나 실험을 하면 당비서가 중대방송이라고 모이게 해서 즉각 상황을 알려줌. 군중대회는 시에 조직별로 모여서 하는데,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직장 일도 쉬. 일에 차질이 생겨서 직원들이 당비서에게 항의해서 대회 동원에서 빼주기도 함. 그러나 한두 번 빠지면 본인에게 불리해짐. | NKHR2019000060 2019-07-29 |
| 정치행사는 학교에 다닐 땐 무조건 가야 하고, 사회 기업소에 다닐 때도 필수 참석해야 함. 북한의 체제 특성상 참석은 응당 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음. | NKHR2020000017 2020-07-04 |
| 청년동맹에서는 감자동원을 주로 나가고, 선거할 때도 동원됨. 여맹에서 동원이 있을 때는 여맹위원장에게 1년에 100~150위안을 내고 빠짐. | NKHR2020000038 2020-09-26 |
| 강원도 원산시에서는 명절 때마다 내려오는 집회가 있음.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돈을 주거나 보상을 하면 불참해도 관참음. 당이나 기관에 항의하기 위해 개인이 시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보위부에 잡혀감. 모여 앉아 술 놀이를 하면 비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며, 술좌석에서 마주 앉지 마라, 두세 명씩, 그리고 생일 놀이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점점 많아짐. | NKHR2021000026-2 2022-05-18 |
|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집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으며 반드시 참가해야 함. 자율적인 집회활동은 못 하며 항의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음. | NKHR2022000001 2022-05-13 |
| 여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계속 했음. 몸이 아파서 2016년까지 참석하고 이후부터는 돈을 주고 빠졌음. 인민반에 중국돈 100위안, 여맹에 100위안을 냈음. 몸이 아팠기 때문에 가능했음. | NKHR2022000003 2022-05-19 |

39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10 (2019), para. 127.47.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양강도 해산시 출신인 40대 남성은 집회가 있을 때 참석은 안 해도 되지만, 생활총화 때 비판받기 싫어서 나감. 불참 시 불이익은 없으나 자주 반복되면 세포비서들이 기록하기 때문에 간부가 될 수 없음. 개인적인 집회 활동은 아예 없으며, 절차도 없음. 생각조차 하지 않음. | NKHR2022000006 2022-05-25 |
| 대학생들은 청년동맹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꼭 해야 했으며, 개별 총화를 많이 했음. | NKHR2022000011 2022-06-10 |
| 평안남도 신의주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으며 정부에서 집체적으로 하는 것만 있음. | NKHR2022000014 2022-06-10 |

국가가 동원하는 집회에 돈을 주고 빠져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³⁹⁹ 누적될 경우 간부 등용이 안 되거나 생활총화 때 비판받을 수 있다는 증언도 있어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⁰⁰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사회 내 조직생활 관련 통제는 지속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적으로 갖는 모임조차 통제되고 있다는 증언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⁰¹ 한편으로 국가 명절이나 기념일에 참가해야 하는 집회도 돈을 내고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이완되고 있다.⁴⁰² 정치행사는 필수 참여하지만, 경제력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경우엔 회피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는 조직 및 집단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9_NKHR2021000026-2 2022-05-18.

400_NKHR2022000006 2022-05-25.

401_NKHR2021000026-2 2022-05-18.

402_ 위의 증언.

다. 평가

북한 주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있고, 이익 증대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국이 허용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제도화된 단체에 참가할 것이 강요된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통제가 가해지는 북한의 현실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는 이완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집회를 열거나 결사체를 구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꾸준히 수집되고 있다. 장기간 국가 차원의 통제를 받고,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2

참정권

참정권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시민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5조에서도 참정권에 있어 직접·보통·평등·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II-44 자유권규약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북한은 법제상으로는 주민의 민주적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참여와 관련하여 일반, 평등, 직접 그리고 비밀 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헌법 제4조는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10)도 선거의 원칙으로 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5조). 이렇듯 북한의 선거법과 헌법은 민주선거원칙을 통해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⁰³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가 노동당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5조는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국가기관들이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일당독재라는 북한의 정치현실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참정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참정권과 관련한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민주선거 본질의 왜곡

자유권규약 제25조 (a)에 의하면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

403.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각급 선거법 제8조).

어야 한다. 민주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자신이 선출하는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 및 배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일부 증언자들은 투표하기 며칠 전부터 선거장의 벽보에 후보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어서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하였지만,⁴⁰⁴ 선거장에 가보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선출하는 대표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고 있다.⁴⁰⁵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와 선거에 대한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가 제약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선거 과정에 필수적인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정치의사 형성 과정이 부재하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다양한 견해와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선거는 노동당이 원하는 인사를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의 정책과 목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동원 수단일 뿐이다. 특히 북한은 대의원 선거를 김정은과 백두혈통의 세습, 노동당이 이끄는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용해왔다. 그리고 정권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당 후보의 100% 득표를 북한 주민의 절대적 지지라고 선전해오고 있다. 이는 복수

404. NKHR2019000016 2019-05-07; NKHR2019000069 2019-08-26; NKHR2019000072 2019-08-26; NKHR2021000026-2 2022-05-18.

405. NKHR2019000049 2019-07-01; NKHR2021000026-2 2022-05-18 외 다수의 증언. 북한 당국이 대의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유권자 역시 정치 무관심으로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하지 않아 후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한 경우들도 포함됨.

후보가 출마하는 자유경쟁 선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선거가 유권자가 정치적 대리인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의 통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에서 대표적 참정권인 선거 참여가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후보와 정책을 선택할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북한 주민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나. 비밀 및 직접선거 원칙 위반

자유권규약 제25조 (b)는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그리고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자유로이 의사표현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헌법에서 일반, 평등, 직접 원칙에 의한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어 제6조에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제도 차원에서는 자유권규약이 정의하는 참정권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당국은 주민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TV와 신문을 통해 선거 일정과 투표 장소가 공지되고,⁴⁰⁶ 인민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선거일을 알려주며 공민증 분실

406_NKHR2019000105 2019-11-09.

자는 미리 재발급 받으라고 안내하기도 한다.⁴⁰⁷ 행방불명자들은 선거 전에 호구조사하면서 확인하고, 보안서에 사진을 붙여 놓고 보면 신고하라고 한다.⁴⁰⁸ 또한 사망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선거 때 사망처리를 하기도 한다.⁴⁰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공민증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임을 증빙하고 유권자의 수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선거를 앞두고 공민증을 분실한 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공민증이 재발급된다.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인민반장은 가구별로 방문해 공민증을 모두 수거하고, 선거 당일에 공민증을 돌려주는데 공민증 위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 이 일련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명부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된다.⁴¹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선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⁴¹¹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정치범(또는 간첩,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⁴¹² 선거 당일 유권자가 개인사정으로 직접 선거장에 나와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동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선거법 제67조에는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

407_NKHR2019000072 2019-08-26.

408_NKHR2022000015 2022-06-10.

409_NKHR2019000073 2019-08-26.

410_NKHR2019000072 2019-08-26.

411_NKHR2019000047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412_NKHR2019000037 2019-06-15; NKHR2019000070 2019-08-26; NKHR2019000073 2019-08-26; NKHR2022000020 2022-06-18; NKHR2022000022 2022-06-21.

(구)선거위원회의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여러 증언자들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이동투표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이 이동투표함을 직접 집까지 들고와 투표를 하게 하고,⁴¹³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에도 이동투표증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 가서 투표를 한다.⁴¹⁴

북한의 선거법 역시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선거법 제5조는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해당 후보에 반대를 표시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더러 반대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⁴¹⁵

실제 비밀 투표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투표 과정 곳곳에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된다. 유권자는 선거장에 나가 공민증을 선거관리위원에게 보여주고 비치되어 있는 선거 명부에 있는 본인의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에는 ‘선거표’라고 적혀 있고 후보자의 이름도 적혀 있다. 투표자는 흰색 천의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후 벽에 걸려있는 수령의 초상화에 인사한 후 투표함에

413. NKHR2020000011 2020-06-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2 2022-05-18 외 다수의 증언.

414. NKHR2019000073 2019-08-26; NKHR2019000085 2019-10-05; NKHR2022000022 2022-06-21.

415.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19000086 2019-10-05; NKHR2022000015 2022-06-10 외 다수의 증언.

투표용지를 넣는다.⁴¹⁶ 투표함은 대개 한 개만 설치되어 있고 투표용지에는 선거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않을 경우 누가 넣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⁴¹⁷

대체로 가림막 안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증언들이 다수이나 가림막 안에 감시하는 사람이 앉아있었다는 증언들도 일부 있었다.⁴¹⁸ 일부 투표 장소에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⁴¹⁹

특이 사례의 하나로 복수의 후보자들이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복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찬반 투표의 형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보통 하나의 선거구에는 단일 후보자가 출마하고 유권자들은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증언에 의하면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는 3명의 대의원 후보가 출마했는데 3명의 이름이 적힌 투표함에 찬성표만을 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⁴²⁰

반대 투표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투표용지에 반대 표시를 할 수도 없으며, 감시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416_NKHR2019000072 2019-08-26; NKHR2019000073 2019-08-26.

417_NKHR2019000071 2019-08-26; NKHR2019000095 2019-10-21.

418_NKHR2019000068 2019-08-26.

419_NKHR2019000068 2019-08-26; NKHR2019000086 2019-10-05.

420_NKHR2019000069 2019-08-26.

요약하면, 제도적으로는 일반, 평등, 직접 그리고 비밀 선거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국이 이미 정해놓은 후보자에게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여 사실상 반대 의사를 행사할 수가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후보자(각급 인민위원회 대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선거장 주변의 벽보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채 투표에 참여한다.⁴²¹

또한 북한 주민들은 선거 참여 여부에 대한 자율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출장이나 병 또는 장애 등으로 선거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투표제도’가 적용되는데 한편으로는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참여의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자유가 존재한다.⁴²²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비밀 및 자유 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421. 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48 2020-11-28 외 다수의 증언.

422. 이동투표제도는 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투표행위를 하지 못하는 주민의 경우 사실상 대리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선거법 제67조(이동투표)에서는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선거권의 제한적 적용

자유권규약 제25조 (c)에서는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을 참정권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은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노동당의 추천을 받는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일반 주민들에게 대의원 후보자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⁴²³ 한 북한이탈주민이 “당원이더라도 최고지도자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⁴²⁴고 증언한 것처럼 참정권이 온당히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북한 헌법은 만 17살 이상인 모든 공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선거할 권리는 있으나 선거받을 권리, 즉 피선거권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당에서 후보자를 정한다. 또한 추천받은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위원회에 등록하기에 앞서 100명 이상의 선거자회의(북한이탈주민은 ‘유권자회의’라고 부름)에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거자회의는 법적으

423_NKHR2019000085 2019-10-05.

424_NKHR2019000037 2019-06-15.

로는 주민 거주지역 혹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군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들은 선거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한다.⁴²⁵

표 II-45 **참정권 침해 사례**

| 증인내용 | 증인번호 |
|---|--------------------------------|
| 2019년 3월 10일에 투표를 했는데 보위지도원들이 감사하고 있어 선거에 대해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행동을 조심함. | NKHR2019000064 2019-08-17 |
|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였는데 후보자에 대해 모르는 채 찬성과 반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1개의 투표함에 선거표를 넣었음. 기표소 옆에 보안원이 서있고, 선거명부의 수와 투표함의 선거표 개수가 맞지 않으면 색출당함. | NKHR2019000071 2019-08-26 |
| 2019년 선거 경험이 있는데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감사하는 사람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반대표시를 전혀 할 수 없었음. | NKHR2019000086 2019-10-05 |
| 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투표용지에 번호가 적혀 있어 누가 선거했고 찬성을 했는지 모두 확인되고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불가능함. | NKHR2019000095 2019-10-21 |
| 2019년 대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후보를 반대할 경우 투표용지에 X 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반대할 경우 나쁜 사람으로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찬성표를 던짐. | NKHR2020000028 2020-07-06 |
| 2019년 대의원 선거, 지방선거에 참여했는데, 선거는 무조건 100% 참가해야하며, 반대 투표는 못하고 무조건 찬성해야 함. | NKHR2022000022 2022-06-21 |
| 선거 일주일 전 유권자회의에서 대의원후보자 자격심사를 하는데, 형식만 갖추고 거부권도 없음. 반대하면 종파간첩으로 몰림. | NKHR2022000006 2020-05-25 |
| 선거 전에 대의원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유권자회의(선거자회의)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함. | NKHR2020000011 2020-06-15 |
| 선거는 형식적이며 백프로 찬성 투표해야하고, 선거 열흘 전부터 선거장에 후보 사진이 붙어 있으나 선거장에 가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거 당일 후보자를 알게 됨. | NKHR2021000026-2 2022-05-18 |

425. NKHR2020000011 2020-06-15.

라. 평가

북한 주민들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직접·보통·평등·비밀 투표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피선거권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당국의 강압적 동원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그리고 당이 추천한 후보에게 찬성 투표만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민주선거의 원칙이 존재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와 자유 경쟁을 통해 피선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정치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할 대리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권 강화와 체제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투표 시 기표소 안에는 감시자가 없었지만 투표소 주변에 보안원이 배치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있었다. 공식매체와 인민반장을 통한 적극적인 투표 독려가 이뤄지고, 선거 전에 후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들과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선거자회의(또는 유권자회의)가 개최된다는 증언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고,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참정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3

평등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권은 차별금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은 법 앞의 평등 및 법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함께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을 구성한다.⁴²⁶ 이 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른 차별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분 및 계층 분류는 북한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은밀한 차별 제도로 입당, 입대,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주거 등 북한주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426_ UNHRC, General Comment, No. 18 (1989), para. 1.

표 11-46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 | |
|---------------|--|
| 세계인권선언 제7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 자유권규약 제26조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가. 성분 및 계층에 따른 근본적 차별제도 지속

자유권규약 제2조에서는 규약 당사국 영토 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역시 제2조에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에서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출신, 출생, 신분 등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사회적 구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65조에서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제도

상으로는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 향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분 혹은 토대라고 불리는 독특한 사회계층 분류 제도가 존재하며 계층 분류에 따라 전 주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3대 계층 및 56개 부류로 분류하고 별도로 25개 성분으로 구분해 놓았다.⁴²⁷ 북한은 성분을 “그가 출생할 당시의 경제적 조건, 가정의 계급적 토대와 그로부터 영향관계, 본인의 사회정치적 생활경위, 그리고 우리나라 력사 발전의 특수성과 계급관계,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실시한 계급정책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⁴²⁸ 성분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되며, 성분은 계층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는다.⁴²⁹ 계층은 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 계층으로 분류되며 3대 계층 밑에는 세부적으로 56개의 부류가 존재한다.

427. 과거 북한의 계층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사회안전부(현 사회안전성) 출판사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절대비밀)』에 따르면 북한의 계층 및 성분 분류는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 계층과 그 밑으로 56개 부류, 그리고 별도의 2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 기초하여 다음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현인애,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428. 현인애, 위의 글, p. 25.

429. 출신성분은 본인이 출생한 때로부터 사회적 직업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랜 직업에 따라 규정하며, 부모가 가졌던 직업이 여러 가지이고 그 연한이 비슷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출신성분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성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서 연한이 가장 오래된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는데 그 연한이 비슷할 경우에는 본인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47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 계층 및 성분 | 부류(총 56개) | |
|---------------|---|--|
| 기본 군중 | 1. 혁명가 2. 혁명가 가족 3. 혁명가 유가족 4. 영예군인 5. 영예전상자 6. 집권자 7. 영웅 8. 공로자 9. 제대군인 10. 전사자 가족 11. 피살자 가족 12. 사회주의 애국희생자 가족 13. 기타(당이 맡겨 준 혁명초소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핵심군중과 계급적 토대·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이 건실한 노동자·농민·병사·지식인) | |
| 3대 계층 | <p>복잡한 군중</p> <p>적대계급 잔여분자</p> | <p>1. 인민군대 입대기피자 2.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3. 귀환군인 4. 귀환시민 5. 반동단체 가담자 6. 일제기관 복무자 7. 해방전사 8. 건설대 제대자 9. 의거입북자 10. 10지대 관계자 11. 금강학원 관계자 12. 정치범 교화출소자 13. 종교인 14. 월남자 가족 15. 처단된 자 가족 16. 체포된 자 가족 17. 정치범 교화자 가족 18.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의 가족 19. 해외도주자 가족 20. 지주 가족 21. 부농 가족 22. 예속자본가 가족 23. 친일파 가족 24. 친미파 가족 25. 악질종교인 가족 26. 종파분자 가족 27. 종파연루자 가족 28. 간첩 가족 29. 농촌십장 가족 30. 기업가 가족 31. 상인 가족</p> <p>1. 지주 2. 부농 3. 예속자본가 4. 친일파 5. 친미파 6. 악질종교인 7. 종파분자 8. 종파연루자 9. 간첩 10. 농촌십장 11. 기업가 12. 상인</p> |
| 성분 (총 25개) | 1. 혁명가 2. 직업혁명가 3. 노동자 4. 군인 5. 고농 6. 빈농 7. 농민 8. 농장원 9. 중농 10. 부유중농 11. 농촌십장 12. 부농 13. 지주 14. 사무원 15. 학생 16. 수공업자 17. 십장 18. 중소기업가 19. 애국적 대기업가 20. 기업가 21. 소시민 22. 중소상인 23. 상인 24. 종교인 25. 일제관리 | |

출처: 현안에,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pp. 31~35 참조.

이러한 계층 및 성분 분류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계층 간 이동도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령 탁월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에서 복잡한군중 계층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이나 복잡한군중 계층에서 기본군중 계층으로의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대계급잔여분자나 복잡한군중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직업·교육·주거·군복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연좌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연좌제에 의한 신분차별은 주로 해방 이후 치안대 경력,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가족, 귀국자 가족, 가족 중 한국행 이력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북한은 이산가족들을 ‘월남자’ 또는 ‘월남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복잡한 군중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가계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 등을 구실로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하거나 포로교환 대상자 집안의 자녀들은 간부를 꿈꾸지도 못하고 여자인 경우 공장에 일하고 시집 잘 가는 게 최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⁴³⁰ 한 증언자의 경우 해방 이전에 할아버지가 지주 출신이란 이유로 원래 살던 강원도에서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가족이 추방되었다.⁴³¹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연좌제에 의한 차별이 심각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1960년대 갑산파 사건에 아버지가 연루되어 30년 넘게 감시를 받으며 살았으며 대학 진학도 할 수 없었다.⁴³²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1960년대 ‘김창봉 사건’이라는 종파 사건에 연루되어 가족 전체가 양강도로 강제 추방당하였고 반동분자 집안으로 몰려 태어날 때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1970년대 초에 누명을 벗고 전쟁영예군인으로 복권되었지만 사무원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었다.⁴³³

430_NKHR2022000003 2022-05-19.

431_NKHR2014000015 2015-01-27.

432_NKHR2019000069 2019-08-26.

433_NKHR2019000074 2019-08-26.

그 밖에도 당간부나 보위성 또는 사회안전성과 같은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따로 있거나 병원 시설과 진료 환경 등에서 일반 주민들과 차이가 존재한다.⁴³⁴ 이처럼 성분과 토대에 따른 차별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 보고서에서도 성분제도에 의한 차별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⁴³⁵

나.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최근의 증언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생활에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토대에 의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⁴³⁶ 하지만,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이며,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배치 등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물론 결혼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당조직이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의 권력기관에 간부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성분 및 계층이 매우 중요하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434_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3 2022-06-22.

435_UNHRC, "Compilatio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third session, 6-17 (May 2019), p. 3.

436_NKHR2020000011 2020-06-15 외 다수의 증언.

관리위원장, 당비서들은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증언하였다.⁴³⁷ 2018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아버지가 재외 귀국자여서 김일성종합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고, 보위성 계통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당일군은 될 수 없고 행정일군만 가능했다고 말했다.⁴³⁸ 반면에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군관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토대가 좋았으며 친척들 중에 교화소에 가거나 남한으로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호위사령부에서 복무할 수 있었다.⁴³⁹ 2018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간부는 성분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는데 자신의 친척 중 한 명이 한국 영화 유포죄로 교화소에 갔기 때문에 직계가 아니라도 간부 등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⁴⁴⁰ 이처럼 토대는 평소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간부등용 과정에서 토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⁴⁴¹

둘째,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성분 및 계층이 좋지 않더라도 경제력이 좋으면 입당, 대학 진학, 하급 간부 선발 등은 가능해졌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예전에는 토대의 영향력이 100%였다면, 지금은 50% 정도로 줄어든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⁴⁴² 토대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437_NKHR2022000002 2022-05-18.

438_NKHR2019000011 2019-04-20.

439_NKHR2019000086 2019-10-05.

440_NKHR2022000006 2022-05-25

441_NKHR2020000011 2020-06-15.

442_ 위의 증언.

할 수 없지만, 대학 진학이나 직장배치, 그리고 결혼할 때 토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⁴⁴³ 부모가 간부인 경우에 간부의 자녀는 추천을 받기에 용이하며 대학을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한다.⁴⁴⁴ 직장 내에서 사람의 업무 능력을 보지만 마지막에는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⁴⁴⁵ 또 다른 증언자는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토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였다.⁴⁴⁶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시아버지가 1960년대 갑산파 사건에 연루되어 남편의 토대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에 돼지 350kg을 내고 입당할 수 있었다.⁴⁴⁷ 2016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평양 출신인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과오로 양강도로 강제 이주하여 살았는데 군대, 대학졸업, 지배인 근무 등에서 토대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⁴⁴⁸

대학 진학 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중앙대학이나 아니면 지방대학이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과 같은 중앙대학과 도급·시급 단위의 지방 일반대학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지방의 일반대학의 경우 토대가 좋지 않더라도 본인의 능력으로 진학이 가능

443_NKHR2020000035 2020-09-05 외 다수의 증언.

444_NKHR2022000022 2022-06-10.

445_NKHR2022000002 2022-05-18.

446_NKHR2022000034 2022-08-08.

447_NKHR2019000069 2019-08-26.

448_NKHR2019000044 2019-07-01.

지만 중앙대학은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토대가 나쁘면 갈 수 없다.⁴⁴⁹ 직장배치에서도 점차 토대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토대와 출신에 의한 차별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출신성분은 개인의 생애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여전히 토대가 좋아야 도당 또는 시당에 들어갈 수 있고, 교원이 되려고 해도 토대가 좋아야 하며, 토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다고 증언하였다.⁴⁵⁰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성분이나 계층으로 인한 차별은 흔하게 나타나며, 입당, 간부 등용은 물론 해외파견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였다.⁴⁵¹ 김정은 정권에서는 개인회사가 많이 허용되었는데 무역업 관련해서도 토대가 나쁜 사람은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⁴⁵² 가족 중 일부가 정치범수용소로 간 경우에도 남은 가족들은 출신성분이 나쁜 것이 되어 입당, 발전, 승진,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당한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외삼촌이 CD알 장사로 단속이 되어 교화소를 갔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공부도 잘하고 군사복무도 했으며 입당도 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⁵³ 심지어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할아버지가 자살

449_NKHR2014000015 2015-01-27.

450_NKHR2019000016 2019-05-07.

451_NKHR2019000031 2019-06-03.

452_NKHR2019000108 2019-11-18.

453_NKHR2022000002 2022-05-18.

을 했는데, 그 이유로 아버지와 남동생의 사회생활이 힘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⁵⁴

셋째, 토대나 성분은 여전히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제력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삼촌이 ○○○○년에 이산가족 상봉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가족들이 차별을 받기 시작해 조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당 일꾼이 되지 못했고 본인의 자녀도 5과에 여러 차례 선발되었으나 가지 못했으며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꺼려했다고 한다.⁴⁵⁵ 2016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의 성분이나 가족 이력을 보지만 돈(경제력)도 중요하게 본다고 말하였다.⁴⁵⁶ 2018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이제는 결혼할 때 성분보다는 경제력을 먼저 본다고 말하였다.⁴⁵⁷

다. 성분 및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분류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이주 조치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성분 및 계층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 출신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급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 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454_NKHR2020000028 2020-07-06.

455_NKHR2022000014 2022-06-10.

456_NKHR2019000048 2019-07-01.

457_NKHR2019000011 2019-04-20.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라는 뜻의 북한어)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 거주에서 보다 엄격하게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을 다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평양시관리법(2014) 제7조). 북한 주민이 평양시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제30조). 또한 평양의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1조). 같은 평양이라고 해도 중심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용성구역 등 일부 주변지역은 중심지역으로 통행은 할 수 있으나 취직은 불가능하다고 한다.⁴⁵⁸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성분 및 계층에 따라 세 부류로 분류해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1, 2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서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 출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다.

또한 평양과 지방의 차별도 심하다. 첫째, 거주 및 이전의 자

458_NKHR2018000037 2018-05-08.

유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이 평양시에 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평양시 관리법 제31조). 둘째, 평양 시민에게만 평양시민증을 발급함으로써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여 지방과 차별적 대우를 한다. 평양 시민증은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북한 공민에게 발급된다(공민등록법(2015) 제7조). 평양 이외의 도시나 지방에 사는 주민이 평양에 가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이 있어 사실상 차별적으로 평양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평양 시민들의 여타 도시나 지방으로의 이동은 자유로운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식량배급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내용은 식량권을 다루는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에서 살펴본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와 농촌 출신 사람들의 지역적 이동을 보다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과거 대학에 가서 교원을 하거나 군대에 가는 경우 농촌 출신도 도시로 진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농촌 출신 여성이 도시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도시로의 이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 남자가 농촌 여자와 결혼할 경우 남자가 농촌에 와서 살아야 한다.⁴⁵⁹ 또 지방사람은 평양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신성분 때문에 5~6개 기관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며, 직장배치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⁴⁶⁰

459_NKHR2015000052 2015-03-10.

460_NKHR2016000054 2016-04-19.

라. 화교 및 귀국자에 대한 차별

북한 사회에서는 이전에 화교와 재일동포 귀국자들이 북한 주민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연고가 있어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북일 교역이 중단되고 재일동포 귀국자들이 일본과의 연고와 왕래가 끊어지면서 이들의 생활형편이 나빠지고 이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도 변하고 있다.⁴⁶¹

화교의 처우에 대한 증언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화교들은 경제력이 있어 옷차림 면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반면,⁴⁶² 화교들은 자신들이 돈이 많다는 생각에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⁴⁶³ 화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및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일부는 화교로서 대학에는 갈 수 있고 직장에 들어가는 데는 특별한 차별이 없지만 입당과 승진에 차별이 있고 간부 등용에는 제한이 있다고 한다.⁴⁶⁴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부모가 1960년대에 북한으로 이주한 중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자녀가 입당을 하지 못

461_ NKHR2020000011 2020-06-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6 2022-05-25.

462_ NKHR2019000011 2019-04-20;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2000025 2022-06-23.

463_ NKHR2019000111 2019-11-18; NKHR2022000005 2022-05-25.

464_ 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6 2022-05-25.

했다.⁴⁶⁵ 2017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 증언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편이 화교인 한 증언자는 과거에는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자녀들이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⁴⁶⁶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중국 연고자의 4촌까지가 차별 대상이었으나,金正은 집권 이후는 6촌까지로 차별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국 연고자들은 국경연선에서 군사복무를 하지 못하고 후방에 배치되었다.⁴⁶⁷ 이 사례는 중국 연고자들이 탈북 및 밀수 등에 연루되기 쉽다는 인식하에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차별적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재일동포 귀국자 혹은 일본 연고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전에 이들은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는 계층이었으나 귀국자에 대한 대우는 최근 나빠지고 있는데, 이들이 일본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경제력이 약화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⁴⁶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일본과의 연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은 일반 북한 주민보다 더 힘들게 산다고 하였다.⁴⁶⁹ 아버지가 재외 귀국자라는 이유로 자녀가 당일군이나 법일군이 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⁴⁷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남한으로

465_NKHR2018000017 2018-04-09.

466_NKHR2019000054 2019-07-29.

467_NKHR2016000146 2016-09-06.

468_NKHR2016000061 2016-05-03; NKHR2016000111 2016-07-12; NKHR2017000113 2017-11-20.

469_NKHR2022000001 2022-05-13.

갔을 경우 입당, 대학 추천, 간부 선발 등에 모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⁴⁷¹

한 귀국자에 따르면 증언자의 형부가 일본에서 태어나 누나와 함께 와서 북한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간부 등용에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하였다.⁴⁷²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귀국자의 경우 사회안전부는 괜찮지만 보위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⁴⁷³ 귀국자였던 한 증언자의 아버지는 직장 내 차별, 일본으로 보내는 편지 내용 검열,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및 고발 등을 경험했다.⁴⁷⁴

마. 평가

북한 사회에는 여전히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이 주민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은 입당, 직장배치, 간부 등용 및 승진, 진학, 군입대, 거주지 배치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성분 및 계층 분류의 기초가 되는 ‘토대’에 의해 작동하던 차별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부정부패 및 빈부격차, 그리고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력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이 부상하고 있다. 간부 등용에

470_NKHR2019000021 2019-05-07

471_NKHR2019000031 2019-06-03.

472_NKHR2022000013 2022-06-10.

473_NKHR2022000005 2022-05-25.

474_NKHR2016000127 2016-08-09.

성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분은 승진과 사회적 우대나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평양과 지방 간에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화교 및 귀국자들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대와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

1

식량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또 사회권규약은 식량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표Ⅲ-1 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북한은 양정법(2015) 제7조에서 “양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며,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식량권을 국가가 보장하며 공식적으로는 식량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은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식량 부족 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농업생산방식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식량 배급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 지속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은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뿐만 아니라 2000년대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유엔아동기금이 실시한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DPRK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이하 ‘MICS 조사’) 결과와 2012년 영양 실태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2020년 8월 13일 미국 농무부 산하의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연례보고서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20-30』에 의하면, 2020년 북한 주민의 59.8%인 약 1,530만 명이 식량부족 상태일 것으로 전망하였다.⁴⁷⁵

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a)은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당국도 식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은 2012년 협동농장의 생산

475. USDA,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20-30*, (Washington DC: USDA, 2020), p. 50.

단위 규모를 분조(10~25명) 안에 2명 이상의 소규모 생산단위를 조직하여 일정 규모의 토지(포전)를 담당하도록 하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이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이어 농장법(2015)을 개정하여 포전담당책임제를 제도화하였다. 2015년에 개정된 농장법은 “농장은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분조별, 농장원별로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 수매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며 알곡 생산물에 대한 분배와 처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에서 2015년에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에게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농장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생산과 관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독려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곡물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⁷⁶

또한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면서 국가생산계획 달성 시 수확한 농작물 가운데 국가에서 종자나 비료, 농기자재 등을 제공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가에 납부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⁴⁷⁷ 농민들에게 생산 증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추진하였다. “농장들은 국가적인 생산 계획을 달성하

476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9.

477_ 『조선신보』, 2013.6.7.

여 나라에서 분여받은 토지, 보장받은 관개, 영농물자, 비료 등의 대금에 상응하는 몫만 바치면 그 외 남은 농작물들을 모두 농장의 결심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⁴⁷⁸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식량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들이 실제 생산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부다. 일단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포전담당책임제는 대다수의 협동농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⁷⁹ 예를 들어, 202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대부분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며, 그렇지 않은 일부 농장의 경우 간부의 권한이 더 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 간부들도 농장원들과 같이 평등하게 일을 해서 분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⁴⁸⁰ 포전담당책임제 이후 생산성이 향상되어 식량 사정이 좋아졌다는 증언도 일부 있었지만,⁴⁸¹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이후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양이 더 적어졌다거나⁴⁸² 또는 포전담당책임제를 폐기하고 과거 분조제로 회귀한 농장도 일부 조사되었다.⁴⁸³ 포전의 불공정한 분배 및 불충분한 영농 자재의 공급, 과도한 수매량 등 다양한 요인들로 포전담당책임제의 실시가 식량 사정을 개선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78_ 『조선신보』, 2013.4.19.

479_ NKHR2020000022 2020-07-06; NKHR2022000030 2022-07-22 외 다수의 증언.

480_ NKHR2022000030 2022-07-22.

481_ 위의 증언.

482_ NKHR2019000029 2019-06-03; NKHR2020000022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483_ NKHR2022000014-2 2022-07-29; NKHR2022000015-2 2022-07-29.

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하게 높은 생산 계획 때문이다. 농장원으로 일한 북한이탈주민은 배분받은 포전에서 얼마를 수확할 것인지 당국에서 계획을 미리 정하는데 그 계획량이 너무 높게 책정되니까 국가에 바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수확량이 계획에 못 미쳐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부족량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⁴⁸⁴ 불공정한 포전 분배와 비료 등 영농 물자의 불충분한 공급도 포전담당책임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한 증언자는 좋은 땅은 인민반장이나 분조장이 가져가고 일반 농장원에게는 척박한 땅을 준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며,⁴⁸⁵ 국가에서 공급되는 비료를 간부들이나 운송업자들이 횡령하여 팔아먹기 때문에 실제로 농장원 개인에게 분배되는 비료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장원의 경우는 돈이 필요할 때 공급받은 비료를 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개별 농사에 비료를 전용하기도 했다.⁴⁸⁶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당국의 지도부도 포전담당책임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25~26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박봉주 내각총리는 포전담당책임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을 지적한 바 있다.

484_NKHR2020000003 2020-05-15.

485_NKHR2019000023 2019-05-18.

486_NKHR2019000057 2019-07-29.

나. 국가의 과도한 수취로 인한 농민들의 식량 부족

포전담당책임제도가 농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증언들을 통해 확인된다. 농장원 출신의 한 증언자는 포전담당책임제가 수확량의 30%를 농장원이 가져갈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농장원은 1%의 수확량을 가져가기도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비료, 기름, 노력비(국가에서 보내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농장원이 일부 내야 함)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농장원이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⁴⁸⁷

다른 증언자도 생산량이 매우 적어 약 3~4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⁴⁸⁸ 또 다른 증언자도 포전담당책임제 시행 이후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게 거의 없어 농사가 잘되지 않은 지역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였다.⁴⁸⁹

포전담당책임제의 운영으로 개인의 분배량이 많아져 일의 능률이 올랐다는 증언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이고,⁴⁹⁰ 많은 농장들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가 원칙대로 실행되지 않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장원의 식량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데는 균량미, 애국미, 원호미,

487_NKHR2020000040 2020-10-31.

488_NKHR2019000046 2019-07-01.

489_NKHR2019000072 2019-08-26.

490_NKHR2019000057 2019-07-29; NKHR2019000077 2019-09-25.

돌격대 지원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공출하는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생산계획을 100% 달성하지 못해도 군량미는 무조건 걷어가는데 군량미를 내고 나면 남는 식량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⁴⁹¹ 2019년에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공동경작한 농장의 수확에서는 군량미를 떼고 나면 개인 농장원들에게 배분되는 것이 거의 없으며, 공동경작하여 수확한 양으로도 군량미를 채우지 못하면 개인 농장원이 분담하여 전체 할당량을 무조건 채워야 했다고 한다.⁴⁹²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국가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40%를 군량미로 내야 하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애국미를 내야 했다.⁴⁹³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식의 이름으로 강냉이 15kg을 냈는데, 부유한 집의 경우 강냉이 1~2톤을 내고 국가에서 상장을 받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⁴⁹⁴

농민들은 군량미, 애국미 외에도 ‘지원’ 명목으로 다양하게 식량을 공출당하고 있다. 군대, 학교, 마을 지원을 명목으로 농장원 한 명당 10~20kg 정도의 곡물을 공출당하기도 하고,⁴⁹⁵ 4.15 지원 사업으로 쌀과 화목(딸감)을 내야 하기도 했다.⁴⁹⁶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백두산 삼지연 건설 등 국가적

491_NKHR2019000025 2019-05-18.

492_NKHR2020000040 2020-10-31.

493_NKHR2019000032 2019-06-03.

494_NKHR2019000057 2019-07-29.

495_NKHR2019000027 2019-06-03.

496_NKHR2019000041 2019-07-01.

인 건설이 있으면 세대별로 얼마씩 내라고 ‘포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돈을 못 내면 노동으로 대신해야 했다고 한다.⁴⁹⁷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2018년 한 해에 북부수해지원금으로 강냉이 2kg, 김일성·김정일기금사업으로 5,000원, 군량미로 강냉이 80kg, 애국미로 콩 2kg, 005(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파철을 내는 과제)로 파철을 한 달에 2kg씩 냈으며, 파철이 없는 경우에는 1,000원의 현금을 냈으며 그 밖에도 개가족(30,000원)과 토끼가족(4,000~5,000원)을 매년 한 번씩 내기도 했다.⁴⁹⁸ 김정은 정권에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지원하는 공출 빈도가 증가하였다. 위연건설지구 살림집건설, 삼지연지구 건설지원 등으로 직장, 인민반, 여맹, 학교 등에서 중과의 공출이 이루어지고 있다.⁴⁹⁹

한편, 최근에는 식량공출이 거의 없고 강제적이지 않다는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다.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애국미, 수도미를 내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낼 수 있는 사람은 내라고 호소하는 차원이며, 증언자는 내지 않았다고 한다.⁵⁰⁰ 또 다른 증언자 역시 식량 공출 경험은 없었으나 소소하게 내는 돈들이 있었다고 했다.⁵⁰¹

국가의 과도한 수취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은 텃밭, 땀기밭, 소토지 등에서 별도로 농사를 짓는 등 개인 농사를 통해 부족한

497_NKHR202000002 2020-07-04.

498_NKHR2019000045 2019-07-01.

499_NKHR2019000039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500_NKHR2020000044 2020-10-31.

501_NKHR2020000022 2020-07-06.

식량을 확보하기도 하고 일부 농산물을 팔아 생필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⁵⁰²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구사업으로 개인 농사땅이 줄어들었고, 나무를 심지 않으면 밭을 회수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식량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증언들도 다수 있었다.⁵⁰³

다. 차별적인 식량 배급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건대 북한의 식량 배급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에 차등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급량도 실질적인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은 배급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배급량이 부족하여 시장 활동이나 소토지 경작 등을 통해 보충해야 하거나,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해 전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등 편차가 크다. 그리고 배급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 몫만 받는가 하면, 가족 몫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받는가 하면,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배급량과 배급 주기에서 편차가 있으며, 배급되는 식량도 입쌀, 강냉이, 감자, 밀가루 등 차이가 크다. 특히, 많은 직장에서 1년에 한 번 감자 배급을 한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⁵⁰⁴

502_NKHR2020000025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503_NKHR2020000026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표 III-2 최근 식량수령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00~2009년까지 양강도 ○○시에서 고등중학교 교원으로 일했는데 6개월의 식량을 한 달 56kg으로 계산해서 가을에 한 번 감자 배급 336kg을 받음. | NKHR2020000027 2020-07-06 |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로 일했는데 배급이 전혀 없었고, 의사들도 배급이 없었음. | NKHR2020000023 2020-07-06 |
| 남편이 보위지도원이었는데 2014년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남편 본인과 가족배급을 합쳐 백미 50kg 정도 받았고 명절 부식물도 매우 잘 나왔음. | NKHR2020000038 2020-09-26 |
|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탄광 식량공급소에서 일했는데 배급으로 쌀 23.25kg을 받았으나 식량을 운송하는 기간에 날아가는 수분량과 가공되어 사라지는 양을 제하면 보름치 식량밖에 안되었음. | NKHR2020000042 2020-10-31 |
| 어머니가 의사였지만 식량배급이 없어서 몰래 주사를 놔주며 돈을 벌었음. | NKHR2020000001 2020-05-15 |
| 영예군인공장에서 일했는데 감자 배급이 나왔지만 질이 안 좋고 썩이 난 감자를 줘서 배급을 포기함. 아들은 역무원으로 근무했는데 배급으로 감자와 강냉이가 조금 나왔음. | NKHR2020000019 2020-07-04 |
| 두 직장을 다녔는데 무역국 산하 광산을 다닐 때 배급이 잘 나오고, 콩기름 15~25kg, 오리, 계란, 쌀 등을 받았음. 군 소속 식료공장에서 일할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에 줄 선물물을 제작하는 곳이었는데, 두 식구가 먹고 실만큼 충분히 배급이 나왔음. | NKHR2020000021 2020-07-06 |
| 아버지가 중학교 교원이었지만 배급이 없었음. | NKHR2020000035 2020-09-05 |
| 남편이 의사였는데 직장(병원)에서 쌀표를 주면 동배급소에서 강냉이, 밀가루 등을 배급으로 받았음. 배급은 15일마다 한 번씩 나왔는데 한 번 줄 때 일주일치 식량 정도만 받았음. 그런데 대북제재가 시작되면서 배급이 되지 못한 적도 많았음. | NKHR2020000047 2020-11-28 |
| 평안남도 ○○시 관리소 보위대로 근무했는데, 매월 1인당 옥수수 15kg을 정량대로 배급받았고, 관리소 내 농장원도 배급을 줬음. | NKHR2020000048 2020-11-28 |
| 남편이 의사였으나 배급이 전혀 안 나왔음. 환자를 돌보고 점심을 다같이 먹거나 환자 집에서 준비한 것을 받는 정도만 있었음. | NKHR2022000005 2022-05-22 |
| 배급같은 거는 그냥 보위부, 안전원, 당 일군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상 배급이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배급이 없었기 때문에 모자나 가발을 만들고 그 대가로 쌀이나 콩기름을 받았음. | NKHR2022000007 2022-05-25 |
| 무역회사에 다닐 때 국가에 바쳐야 하는 동안 채우면 나머지는 상장이 알아서 정해줌, 능력이나 기술에 따라 다르게 받았으며 여름에는 벌이가 잘 되고 겨울에는 약간 침체된 경향이 많았음. | NKHR2022000010 2022-06-09 |
| 제강소는 종일 군수물품을 계속 생산해야 하므로 제강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가끔 강냉이, 밀가루, 옥수수, 고기류, 기름, 비누 등을 배급해 줬음, 그러나 다른 곳은 일체 배급을 주지 않음. | NKHR2021000017 2022-06-13 |

504_NKHR2020000019 2020-07-04 외 다수의 증언.

Chapter I
법치목적 및 연구방법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Chapter IV
취임개황

Chapter V
주요사건

(1) 직업별로 차별적인 배급

북한의 배급 시스템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작동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주로 엘리트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엘리트 중에서도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당간부와 지배인, 보안원, 보위원 등에게는 일반 노동자나 농장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들 중 일부는 배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나누어 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례도 있고,⁵⁰⁵ 일부는 배급만으로는 부족하여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⁰⁶ 당, 법, 행정기관 등은 배급 '뽀트(할당량)'를 받아서 농장으로부터 직접 식량을 실어다 배급한다.⁵⁰⁷ 한 증언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간부가 배급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는 보위성, 사법검찰, 보안서 순이다. 이들의 배급량은 의사나 교원이 받는 양의 3~5배 정도이며, 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부식까지 공급을 받는다.⁵⁰⁸ 엘리트 집단들은 주로 백미로만 공급받는다는 점도 차별적이다.⁵⁰⁹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보위지도원이었는데 식량배급이 남편 본인 및 가족까지 포함하여 백미로 50kg씩 받았고, 명절 부식물도 매우 잘 나왔다고 한다.⁵¹⁰

505_NKHR2022000022 2022-06-21.

506_NKHR2020000048 2020-11-28 외 다수의 증언.

507_NKHR2018000006 2018-03-12.

508_NKHR2019000029 2019-06-03.

509_NKHR2019000041 2019-07-01.

한편,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 교원, 연구원 등의 경우에는 비록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만 권력기관의 종사자들에 비해 배급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부모가 교원이었거나 의사였는데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⁵¹¹ 일부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본인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양강도 ○○시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일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을에 6개월분의 식량을 몰아서 감자 배급 336kg(1개월 56kg로 계산)을 받았으며,⁵¹² 아버지가 교원이었던 한 북한이탈주민도 2017년까지 1년에 감자 1톤을 받았다고 한다.⁵¹³ 병원에서 준의사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을에 감자 배급이 나왔으나 운임비 등을 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자의 질이 나빠 배급을 받지 않았다고도 한다.⁵¹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로 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의사들도 배급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⁵¹⁵

(2) 기업소별로 상이한 배급

국가배급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기업소 등 기관에서 자력으로 식량을 마련하여 배급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그

510_NKHR2020000038 2020-09-26.

511_NKHR2020000001 2020-05-15; NKHR2022000005 2022-05-25 외 다수의 증언.

512_NKHR2020000027 2020-07-06.

513_NKHR2019000079 2019-09-25.

514_NKHR2019000029 2019-06-03.

515_NKHR2020000023 2020-07-06.

결과 기업소의 역량에 따라 노동자들이 받는 배급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거나 형편이 나은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배급을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적은 양의 배급을 받거나,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외화벌이, 수출, 무역 등과 관련된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배급 실태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⁵¹⁶ 하지만 최근에는 대북제재의 강화로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기업소들의 경우도 배급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⁵¹⁷

광산 노동자들의 경우, 배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북한은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석탄 증산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무연탄, 철광석 등을 수출 주력상품으로 삼아왔던 까닭에 광산 경영 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노동자들에 대한 배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도 무역국 산하 광산에서 일했는데 배급이 매우 잘 나왔으며, 한 달 노임이 북한돈 30~50만 원 정도였고 물품 배급도 콩기름 15~25kg, 백미, 오리, 계란 등이 나왔다고 한다.⁵¹⁸ 다만 무산광산의 경우 배급이 이루어졌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부터 철광석 수출이 막히면서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⁵¹⁹

516_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2000010 2022-06-09 외 다수의 증언.

517_NKHR2019000035 2019-06-03 외 다수의 증언.

518_NKHR2020000021 2020-07-06.

519_NKHR2019000057 2019-07-29.

표 III-3 대북제재 이후 기업소 배급이 악화된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대외건설소에서 근무했는데 매월 쌀 10kg씩 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배급의 품질이 나빠져 옥수수나 감자를 받았으며 일부는 썩은 것들이 섞여있었음. | NKHR2019000050 2019-07-20 |
| 무산광산에서 근무했는데 2017년부터 대북제재로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해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NKHR2019000057 2019-07-29 |
|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세관이 닫히고 기름(연료)이 들어오지 않아 무산광산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7년 겨울 이후 노동자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 NKHR2019000065 2019-08-17 |
|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탄광 식량공급소에서 일했는데 장성택 생전에는 탄광이 석탄 수출로 잘 살았으나 지금은 수출이 안되어 배급식량의 질과 양이 점점 나빠짐. | NKHR2020000042 2020-10-31 |
| 남편이 다이아(타이어)공장 ○○지사에서 근무했는데 제재 때문에 통나무 무역을 하지 못해 밑수로 돈을 벌며 노동자에게 식량을 배급했음. 탈북 직전인 2019년까지 매월 55kg의 현미를 받음. | NKHR2019000035 2019-06-03 |
| 해산시에 거주했다 2019년에 탈북한 증언자는 중국과의 무역이 막히면서 회사들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 영업을 정지한 회사도 생기고, 공장기업소가 돌아가지 않아 생활이 악화됨. | NKHR2020000020 2020-07-04 |

일부 군수 분야의 공장과 같이 특수 분야의 기업소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배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군 소속 식료공장에서 일했는데 이 공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에 줄 선물을 제작하는 곳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의 식량배급이 나왔다고 한다.⁵²⁰ 2018년까지 ○○시에 있는 잣채종사업소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비록 1년에 한번 10월에 배급을 받았지만 배급량이 1,500위안 정도의 양으로 따로 장사하지 않고 배급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⁵²¹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편이 국가 기

520_NKHR2020000021 2020-07-06.

업소에서 근무했는데 2018년 9월까지 매월 쌀 10kg과 콩기름 2kg, 맛내기(조미료) 1봉지, 세수비누와 세탁비누 1개씩을 받았다고 한다. 그 밖에도 가을에 감자 250kg을 받았다.⁵²²

몇 년 전만 해도 군수품 공장의 배급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⁵²³ 최근에는 일부 군수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배급이 나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군수공장에서 근무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매월 강냉이 14kg씩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에는 젓은 강냉이를 주는데 말린 강냉이 기준으로 5~6kg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⁵²⁴ 이 경우 오히려 군수공장에 근무하는 것이 식량 수급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일반 직장과 달리 군수공장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만큼 출퇴근이 엄격하여 시장 활동을 통한 식량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⁵²⁵

표 III-4 기업소(공장)의 배급이 양호한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까지 관광지도국에서 근무했는데 매월 백미 21kg, 돼지고기 8kg, 수산물 냉동 1팩, 기름, 맛내기, 소금 등을 공급받음. | NKHR2019000014 2019-05-07 |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에 있는 잿채중사업소에서 근무했는데 배급이 1년에 한 번 10월에 나왔지만 1,500위안 정도의 양으로 따로 장사하지 않고 배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음. | NKHR2019000043 2019-07-01 |
| 남편이 국가 기업소에서 근무했는데 2018년 9월까지 매월 쌀 10kg, 콩기름 2kg, 맛내기(조미료) 1봉지, 세수비누와 세탁비누를 한 개씩 받았으며, 명절마다 명태, 돼지고기 등을 받았고, 과일철에는 과일, 큰명절에는 맥주 12개짜리 1박스, 가을에는 감자 250kg을 받았음. | NKHR2019000002 2019-04-08 |

521_NKHR2019000043 2019-07-01.

522_NKHR2019000002 2019-04-08.

523_NKHR2018000083 2018-08-11.

524_NKHR2019000070 2019-08-26.

525_NKHR2022000014-2 2022-07-29.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해산에 있는 수출회사에 다녔는데 매월 강냉이 15kg과 기름을 받았음. | NKHR2019000058 2019-08-26 |
| 초물사업소의 총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쌀 50kg을 공급받았음. | NKHR2019000079 2019-09-25 |
| 도 무역국 산하 광산에서 일할 때 한 달 노임으로 북한돈 30~5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배급도 쌀, 오리, 계란 등이 나왔음. 또 군 소속 식료공장에서 일할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 선물 제작하는 곳이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의 배급을 받았음. | NKHR2020000021 2020-07-06 |

하지만 일반 기업소(공장)에 근무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배급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1년에 한 번 가을철에 감자 배급이나 명절 때 특별공급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전신전화국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년에 한 번 가을에 감자 배급 350kg을 받았는데 양강도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소들이 그렇게 감자 배급을 받으며, 그 외에 1월 1일, 설명절, 2·16, 4·15 때 기름, 고기 1kg 정도를 공급받았다고 한다.⁵²⁶ 영예군인 출신인 아버지가 체신소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역시 2018년까지 명절 공급(설, 2·16, 4·15, 4·25)만 받았는데, 공급 품목은 2018년 기준으로 술 1병, 기름 1병, 돼지고기 500g, 콩나물 1kg 정도였다고 한다.⁵²⁷ 영예군인 공장에서 일했던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감자 배급을 받았는데 질이 안 좋고 썩이 난 감자를 줘서 배급을 포기하기도 했다.⁵²⁸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회령시에 있는 도급 기업소에서 근무했으나 탈북 직전인 2018년까지 배급을 받지

526_NKHR2019000079 2019-09-25.

527_NKHR2019000070 2019-08-26.

528_NKHR2020000019 2020-07-04.

못했으며,⁵²⁹ 산림경영소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아버지가 도로설비대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설계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전기공장을 다녔던 북한이탈주민, 아버지가 제지공장에서 근무했다는 북한이탈주민, 약초공장에 다녔던 북한이탈주민 모두 배급을 받은 적이 없었다.⁵³⁰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배급도 없고 장사할 수단이 없는 계층은 중국에서 모자나 가발 등 임가공을 맡기는데, 모자 하나 만들면 입쌀 3kg으로, 가발은 12kg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눈이 잘 보이는 고등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가발 등을 부업으로 많이 한다고 증언했다.⁵³¹

설령 다른 기업소에 비해 배급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치 않고 배급이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동자들은 소토지 농사를 짓거나 장마당에서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식량을 마련하고 있다. 부모님이 군부대 부업지 노동자였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직장에서 1년에 쌀 30kg, 강냉이 70kg이 배급으로 나왔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2,500평 정도의 소토지를 경작하여 강냉이, 콩, 입쌀 등을 생산했다고 한다.⁵³² 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부족한 식량을 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기업소에서 보수가 거의 지급되지 않

529_NKHR2019000017 2019-05-07.

530_NKHR2019000027 2019-06-03; NKHR2019000042 2019-07-01; NKHR2019000047 2019-07-01; NKHR2019000062 2019-07-29; NKHR2019000059 2019-07-29; NKHR2019000077 2019-09-25.

531_NKHR2022000007 2022-05-25.

532_NKHR2019000118 2019-11-30.

다 보니 식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마당 등에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⁵³³

(3) 군대 내 식량 배급에서 나타나는 차별

북한은 선군정치를 위해 군부를 이용해 왔다.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는 것도 그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부의 식량 사정은 일반 사회보다 낫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군인이나 군부대가 식량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배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복무하는 부대와 계급에 따라 배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경경비대나 해안경비대, 호위사령부, 잠수부대, 공군비행사와 같이 특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경우는 다른 부대의 군인들에 비해 배급 사정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군관은 사병과 달리 비교적 배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동생 남편이 국경경비대 군관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구성원 4명의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군관인 본인은 백미로 매월 16kg(보름에 8kg씩), 나머지 가족구성원들 몫으로 1명당 잡곡 50~60kg이 공급되었다고 한다.⁵³⁴ 남편이 해안경비대 군관였다는 북한이탈주민도 남편몫으로 20kg, 나머지 가족몫으로 34kg의 식량이 지급되어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였다.⁵³⁵

533_NKHR2019000004 2019-04-08 외 다수의 증인.

534_NKHR2019000003 2019-04-08.

535_NKHR2017000087 2017-09-25.

표 III-5 군부대 배급이 잘 이뤄진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7년 탈북) ○○부대는 군부대 중에서도 가장 배급이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식량사정에 문제가 없었음. 잠수함 부대, 공군 비행사 등이 특별 대우를 받고, 974 김정은 호위대도 좋은 대우를 받음. | NKHR2017000069 2017-08-28 |
| (2017년 탈북) 남편이 해안경비대 군관이라 배급이 빠짐없이 나눔. 남편 몫으로 20kg, 아들과 아내몫으로 34kg, 3,000원의 노임이 나왔음. | NKHR2017000087 2017-09-25 |
| 2017년 남편이 군부대 군의관으로 복무했는데 가족 식량까지 매달 쌀 15kg, 강냉이 17kg을 배급받음. | NKHR2018000055 2018-07-02 |
| 여동생의 남편이 국경수비대의 군관이었는데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며 가족 구성원 4명의 배급이 모두 이뤄졌고, 본인은 매월 백미 16kg,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1인당 잡곡(강냉이, 밀) 50~60kg씩 공급받음. | NKHR2019000003 2019-04-08 |
| 남편이 군관이었는데 군에서의 공급이 관찰야 따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배급만으로 먹고 살 수 있었으며, 잡곡과 백미가 섞인 것을 받음. | NKHR2019000041 2019-07-01 |

하지만 대부분의 군부대에서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점차 배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군인들이 민가에 나와 주민들에게 감자 등 식량을 달라고 하거나 짐승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으며,⁵³⁶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은 1인당 600g의 배급을 받지만 배고파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민가에 가서 식량을 훔치기도 하고, 특히 초급병 때는 식량배급을 거의 받지 못해 도둑질을 하거나 풀을 뜯어먹기도 하였다고 한다.⁵³⁷ 또 다른 증언자는 군인이 군부대에서 생산한 금강석을 개인들에게 몰래 팔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 온다고 증언하였다.⁵³⁸ 이 밖에

536_NKHR2020000001 2020-05-15 외 다수의 증언.

537_NKHR2019000065 2019-08-17.

538_NKHR2020000013 2020-06-15.

도 군인들이 군복, 모자 등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가에서 절도를 하거나 약탈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⁵³⁹

이처럼 사병에게 배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군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관으로 복무했던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하전사들의 경우 간부들이 식량을 빼돌리기 때문에 배급량이 줄어들고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쌀 100kg이 공급되면 실제로 하전사들에게는 강냉이 50kg만 배급된다고 한다.⁵⁴⁰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군에서 1인당 1일 750g을 받아야 하지만 300g만 배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분대장이 중간에 빼돌려서 팔아먹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였다.⁵⁴¹ 군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지만, 군관들이 중간에 떼먹어서 실제로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다는 증언도 있다.⁵⁴²

라. 평가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은 제도개선에 따른 농업 생산의 향상과 더불어 시장화를 통한 개인 구매력 향상 및 물류 개선 효과 또한 어느 정도 기여

539_NKHR2019000063 2019-07-29.

540_NKHR2019000049 2019-07-20.

541_NKHR2018000095 2018-08-27.

542_NKHR2018000118 2018-10-22.

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쌀 가격만큼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으며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김정은 시대 들어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직면할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이 식량난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북한 당국이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획기적인 생산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포전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비료나 농기계 등 영농 물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분배 과정에서 간부들의 횡령이 만연하고, 과도한 생산목표 설정과 수매, 다양한 형태의 공출 등으로 농장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농민들의 식량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과거 분조제로 회귀하는 지역도 사례에서 보여졌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책임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농장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면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⁵⁴³

김정은 정권에서 배급은 직업, 기관·기업소, 지역에 따라 선택적이고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당 및 권력기관 종사자, 지배인, 군관, 군수공업 등 특수 집단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배급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무원

543. 2019년 4월 황해남도 웅진군내 협동농장들을 방문한 박봉주 내각총리가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록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향후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부문의 곡물생산 목표를 2019년 국가의무수매계획 수준으로 정하고 농업근로자의 생산 열의를 높일 것을 제안한 것을 고려했을 때 포전담당책임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을 비롯해 의사 및 교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외화벌이, 수출, 무역 등과 관련된 기업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배급 상황이 좋았으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들 기업소의 배급도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마당에 나가거나 소토지 농사에 종사하는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 근교의 경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에 노출된 중·고등학생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정권의 산림복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식량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 동안 국가 운영의 기본 노선으로 자력갱생이 채택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식량안보는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대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 위기를 개선할 필요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개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접근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개발협력과 함께 산림, 환경, 재난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북한주민의 식량권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가 직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양지원은 물론 농

업개발협력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비료 및 각종 영농 물자의 수입이 대북제재로 인해 지연되거나 제약을 받을 경우 북한주민의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건강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권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III-6 사회권규약 제12조

| | |
|-----|--|
| 제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 제2항 |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북한 당국은 종래부터 무상치료제를 시행하고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법(2014), 국경위생검역법(2007), 식료품위생법(2013), 의료법(2012), 의약품관리법(1998), 마약관리법(2005), 약초법(2009), 인민보건법(2012), 전염병예방법(2020), 비상방역법, 장애인보호법 등 건강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관한 유엔의 2019년 UP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분야발전 중기전략(2016-2020), 말라리아관리전략(2014-2017), 결핵관리전략(2014-2017)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⁵⁴⁴

특히 김정은 정권은 의료기관의 현대화, 의료봉사의 질 향상, 먼거리의료봉사체계 구축 등을 보건의료 관련한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는 등 건강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실제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완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⁵⁴⁵

이처럼 북한 당국은 제도적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호하고, 여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 사인(私人)에 의한 의료행위의 만연, 불충분한 예방의학적 상황을 중심으로 북한의 건강권 실태를 살펴본다.

544_ UN Doc. A/HRC/WG.6/33/PRK/1 (2019), p. 14.

545_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과 먼거리의료봉사체계,” 『노동신문』, 2021.10.18.

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

북한에는 동·리 단위로 1차 의료기관인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구역 단위로는 2차 의료기관인 인민병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보아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⁴⁶

그런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무상치료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경제력에 따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계층에 따라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언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제력 및 계층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 실태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시행하며, 모든 주민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치료제는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⁴⁷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진료, 입원, 수술, 약품 구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546_ NKHR2017000110 2017-11-20; NKHR2018000082 2018-07-30; NKHR2020000018 2020-07-04; 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2000025 2022-06-23; NKHR2022000034 2022-08-08.

547_ 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2000007 2022-05-25 외 다수의 증언.

초보적인 의약품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수술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 입원 시 본인이 먹을 식량과 침구류도 가지고 가야 하며, 난방비를 개인이 부담하기도 한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시기(2005년)에 비해서 환자가 거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증언했다.⁵⁴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병원에 약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약을 사오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그는 간부 등 일부에게 유엔에서 지원받은 약을 주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수술 이후 항생제 등을 환자에게 사오라고 시킨다고 말했다.⁵⁴⁹ 또한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4월 딸의 맹장수술을 위해 200위안을 지불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병원에서 쓰는 거즈나 의료장갑 등을 환자가 직접 사서 바쳐야 했고, 난방을 위한 떨감도 스스로 마련하여야 했다고 말했다.⁵⁵⁰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사오라고 하며, 장마당에서 구입한 약을 가져다주면 의사들이 투약해 준다고 증언하였다.⁵⁵¹

이와 함께 진료나 수술 시 수고비 명목으로 의료진에게 약간의 현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7~8월경 귀와 머리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두 번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치료비를 안 냈지만, 두 번째 진료 시 인사치레로 북한돈 3,000원을 냈으

548_NKHR2022000022 2022-06-21.

549_NKHR2022000005 2022-05-25.

550_NKHR2018000115 2018-10-22.

551_NKHR2020000027 2020-07-06.

며, 의사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⁵²

환자가 내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북한 의료계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은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았었는데,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없었으며, 돈이 없는 환자는 담배, 콩나물 등 물건으로 지불하기도 했다고 한다.⁵⁵³ 이렇다 보니 의사들이 환자의 외모나 생활 형편을 보고 진료수준을 결정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⁵⁵⁴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병원이 무상이지만 신속한 치료를 원할 경우 의사에게 담배나 5~10위안을 주면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⁵⁵⁵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의료 차별이 존재하여 돈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고 있으며, 돈이 없는 사람은 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⁵⁵⁶

표 III-7 의료서비스 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병원에 1주일간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했으며 약 뿐만 아니라 식사, 심지어 약솜까지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함. | NKHR2018000029 2018-05-08 |
| 2017년 조카의 맹장수술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담배 1갑과 수술비 100위안을 의사에게 줌. | NKHR2019000050 2019-07-20 |
| 2018년 남편이 X-레이 촬영을 하는데 10위안과 담배 3갑을 진료비 명목으로 줌. | NKHR2019000006 2019-04-08 |

552_NKHR2020000029 2020-07-06.

553_NKHR2020000018 2020-07-04.

554_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50 2019-07-20.

555_NKHR2022000007 2022-05-25.

556_NKHR2018000105 2018-10-01.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해산시 2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50위안을 수술비로 냈음. 이외에도 모든 약값, 난방비, 식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음. | NKHR2018000124 2018-10-27 |
| 아픈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담배 혹은 5~10위안을 쥐어줘야 치료를 먼저 볼 수 있었음. | NKHR2022000007 2022-05-25 |
| 페니실린,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아드롤핀의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 맹장 수술의 경우 50위안, 위 수술은 100위안이 필요하다고 들었음. | NKHR2022000022 2022-06-21 |
| 집 앞에 있는 의사에게 가서 침을 받거나 감기약을 사먹었음. 감기약은 2원~2원 5전했음. | NKHR2022000034 2022-08-08 |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의료인력이 제대로 임금이나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의료보험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환자가 돈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인민반에 속해 있던 40대 여성이 자궁암에 걸렸으나 돈(300위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⁵⁵⁷ 2018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이웃에 유방암에 걸린 환자가 있었지만 생계가 어려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도 쓰지 못해 앓다가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⁵⁸

557_NKHR2018000124 2018-10-27.

558_NKHR2019000006 2019-04-08.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국가가 해주는 것은 없고 개인 약국이나 장마당 약장사를 통해 약을 구매한다고 말했다.⁵⁵⁹

또한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2019년 사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간에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었음에도 치료비를 낼 형편도 못 되어서 미루다가 병원을 너무 늦게 갔고, 결국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⁶⁰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이웃이 맹장염을 앓았는데, 수술비용(북한돈 10만원)을 바로 마련하기 어려워 돈이 없으니 일단 수술을 하고 이후에 돈을 내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일주일 후에 돈을 마련하고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⁵⁶¹

표 III-8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모친이 피를 토할 정도로 많이 편찮으셨으나 병원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고, 결국 2014년 사망했다고 함. | NKHR2018000100 2018-10-01 |
| 2016년 유선염에 걸린 이모가 치료비 부족으로 사망했음.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한 편임. | NKHR2019000034 2019-06-03 |
|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했던 여성은 2016년경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약물 리스트와 기구 등을 따로 챙기는 데 500위안이 들어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함. | NKHR2020000027 2020-07-06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받기 어렵다고 함. | NKHR2022000010 2022-06-09 |

559_ NKHR2022000010 2022-06-09.

560_ NKHR2020000005 2020-05-15.

561_ NKHR2020000021 2020-07-06.

한편, 북한에서는 계층에 따라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격차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1차, 2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되었으나, 간부들이 이용하는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 군 병원, 시 병원, 도 병원에 당 간부나 간부 가족들이 사용하는 별도의 의료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도 병원이나 시 병원에 간부들을 위한 특수입원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⁵⁶²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도 병원의 시설이 좋지 않아 큰 수술이 필요할 경우 도, 시 병원 혹은 평양으로 가야 한다면 서,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받기도 어렵다고 증언했다.⁵⁶³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지주막하출혈이 있었는데 사위가 순찰과장이어서 약을 제대로 사용해서 잘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적십자병원이나 의대병원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으며 ‘빡’이 있어야 하고 돈도 써야 한다고 증언했다.⁵⁶⁴ 2019년 또 다른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병실 배정도 계급이나 지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에게 약국에서 약을 사오라고 하면서 간부나 돈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나오는 약을 사용한다고 말했다.⁵⁶⁵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특별방, 간부방이 과마다 따로 있었으며, 의사들도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방에서는 서비스를 더 잘해주었다고 말했다.⁵⁶⁶

562_NKHR2018000120 2018-10-22.

563_NKHR2022000010 2022-06-09.

564_NKHR2021000017-2 2022-05-26.

565_NKHR2022000010 2022-06-09.

또한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간부 전용 참모 진료시설이 따로 있었으며, 여기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능력, 인물, 체격을 보고 뽑는다고 한다.⁵⁶⁷ 시·도 병원에는 간부들을 위한 특수입원실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⁵⁶⁸ 2019년 탈북한 당 간부가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별도로 존재하며, 의사도 따로 배정해 둔다고 증언하였다.⁵⁶⁹

이외에도 당 간부들을 위한 별도의 입원실이 존재한다는 증언,⁵⁷⁰ 당 간부나 간부 가족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과가 있다는 증언,⁵⁷¹ 별도의 진료과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당 간부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약을 제공한다는 증언,⁵⁷² 당 간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주어진다는 증언,⁵⁷³ 당 간부만 전담하는 의사가 따로 있다는 증언⁵⁷⁴ 등 계층에 따라 의료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566_NKHR2018000036 2018-05-08.

567_NKHR2018000107 2018-10-01.

568_NKHR2018000120 2018-10-22.

569_NKHR2020000012 2020-06-15.

570_NKHR2022000023 2022-06-22.

571_NKHR2019000054 2019-07-29; NKHR2019000083 2019-09-25.

572_NKHR2019000055 2019-07-29; NKHR2019000076 2019-08-26.

573_NKHR2019000029 2019-06-03.

574_ 위의 증언.

표 III-9 계층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도 병원이나 시 병원에 간부들을 위한 특수입원실이 있었다고 함. | NKHR2018000120 2018-10-22 |
|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해산시에 시 병원, 제2병원, 의대병원이 있었으며, 의대병원 진료과는 간부들만 가는 곳이라고 증언함. | NKHR2018000089 2018-08-27 |
| 병원 약은 주로 유엔 약인데 요직의 간부들에게만 공급됨. 해산 의학대학 병원에는 간부들이 입원하는 호가 따로 있다고 들었음. | NKHR2019000041 2019-07-01 |
|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도 병원, 시 병원 등 큰 병원에는 '진료과'라는 것이 있으며, 진료 1과, 진료 2과 등으로 불리는데 간부들이 치료받는 곳이라고 함. | NKHR2019000111 2019-11-18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당 간부가 이용하는 의료시설(진료과, 입원실)이 별도로 존재하며 의사도 따로 배정해 둔다고 함. | NKHR2020000012 2020-06-15 |
|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당 간부들이나 비서들을 치료하는 진료과가 매 병원마다 있다고 증언함. | NKHR2020000027 2020-07-06 |
| 간부들만 이용하는 병원은 없었지만, 간부들을 위한 병실은 따로 있었고, 병실 이름도 다르고 깨끗하게 유지함. | NKHR2022000023 2022-06-22 |

나. 공적 의료서비스의 저하와 사적 의료행위의 만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의료시설에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의료기구도 대부분 낙후되어 있거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증언이 많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큰아버지가 탄광의사라서 병원에 가지 않고 큰아버지로부터 치료받고 처방받았다고 말했다.⁵⁷⁵

575_NKHR2022000025 2022-06-23.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아프면 치료해주는 선생님을 찾거나 개인 약국을 갔다고 하면서 개인의사를 통해 치료받았다고 하였다.⁵⁷⁶ 또 평양에서 의사로 있었던 한 남성은 진단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의사의 주관대로 이루어지다 보니 오진이 잦고, 그래서 치료가 엉뚱하게 진행되어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⁵⁷⁷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주민들 사이에는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⁵⁷⁸

실제로 병원에서의 오진 혹은 잘못된 치료로 인해 환자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도 확인된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7월에 복부에 통증을 느끼다 실신한 상태로 신포시립병원에 실려 갔다. X-레이 촬영 후 병원의사는 위천공으로 진단을 잘못 내렸고, 개복 후에야 위천공이 아니라 담석증임을 확인하여 담석 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있어 확인한 결과 수술용품이 배 안에 있었고, 그는 이를 제거한 후에야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한다.⁵⁷⁹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1월, 옆집 사람이 간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처음에 결핵으로 오진하여 전혀 맞지 않는 약을 쓰다 한 달 만에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⁸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동네에 살던 15살 아이가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시병

576_NKHR2022000016 2022-06-11.

577_NKHR2020000018 2020-07-04.

578_NKHR2017000039 2017-06-05; 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3 2020-07-06.

579_NKHR2017000070 2017-08-28.

580_NKHR2019000045 2019-07-01.

원의 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받아서 시력을 잃었으며, 평양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⁵⁸¹

의료기관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아프더라도 병원 대신 개인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의사가 소개해주는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복용하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진료소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돌팔이 의사들이 진단해주면 그 진단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개인 약국에서 약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집에 가서 약을 사서 자기가 치료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⁵⁸²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의약품이 병원에는 없고 장마당에는 충분했다고 하면서 주로 감기약, 소화제가 많았고, 중국약이나 유엔약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⁵⁸³

개인 의사들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는 불법이지만, 주민들은 이들이 병원의사보다 실력이 더 좋다고 인식해 이들을 더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⁵⁸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버지가 개인 의원을 운영했는데 의술이 좋아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곤 했으며, 동네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증언하였다.⁵⁸⁵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국가에서

581_NKHR2020000004 2020-05-15.

582_NKHR2022000003 2022-05-19.

583_NKHR2020000012 2020-06-15.

584_NKHR2019000093 2019-10-21; NKHR2019000083 2019-09-25; NKHR2020000023 2020-07-06.

주는 것이 없으니 병원 의사들 실력이 한심하다면서, 개인의사들이 더 실력이 좋아서 많이 간다고 증언하였다.⁵⁸⁶

하지만 이처럼 개인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자가진단에 근거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개인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구입한 링겔을 집에서 맞았다고 말했다.⁵⁸⁷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경성군에서 여동생이 개인의사 집에서 낙태수술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데, 소파수술을 마취도 하지 않고 하여 동생이 매우 심하게 아파했으며, 시술기구를 꿰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⁵⁸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이 소화제 같은 약을 직접 제조하기도 하며, 실제 본인도 뇌출혈이 온 어머니를 위해 3kg의 사향을 구입했었고 치료효과를 봤다고 증언하였다.⁵⁸⁹

또한 무자격자가 시술을 하거나 의약품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는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개인병원을 운영했는데, 관련해서 받은 정식 교육은 간호원학교에서 6개월 수학한 게 전부이며, 아는 도 병원 과장에게 물어가면서 독학해 진료했다고 한다.⁵⁹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의과

585_NKHR2019000051 2019-07-20.

586_NKHR2020000014 2020-06-15.

587_NKHR2022000003 2022-05-19.

588_NKHR2018000074 2018-07-30.

589_NKHR2022000005 2022-05-25.

대학을 갔지만 의사를 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해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며,⁵⁹¹ 헤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딸이 집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의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개인에게 70만 원 가량을 주고 배운 게 전부였다고 증언하였다.⁵⁹²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약 판매에 대해서 단속이 많거나 강화되었다는 증언도 있는데,⁵⁹³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일부 통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⁵⁹⁴

한편, 주민들이 잘못된 의료지식에 입각해 병두, 아편을 비롯한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양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탈북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병두가 북한에서 상당히 대중화되었다고 증언했다.⁵⁹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아버지가 신장염을 앓았는데, 너무 아플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편을 썼다고 증언하였다.⁵⁹⁶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기관지확장증을 앓았고 아편을 약처럼 사용했다고 말했으며,⁵⁹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590_NKHR2018000101 2018-10-01.

591_NKHR2020000025 2020-07-06.

592_NKHR2020000024 2020-07-06.

593_NKHR2020000018 2020-07-04; NKHR2020000023 2020-07-06.

594_NKHR2022000022 2022-06-21.

595_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37 2022-10-18.

596_NKHR2020000020 2020-07-04.

597_NKHR2018000127 2018-11-19.

남편이 2018년 뇌혈전 증세가 있어 빙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⁵⁹⁸ 심지어 개인 의사들도 병을 치료할 때 빙두와 아편을 사용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8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은 교화소에서 나온 이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심장이 나빠져서 개인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가 뜬을 떠주면서 아편주사를 맞으면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⁵⁹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중독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으로, 특히 빙두를 항생제, 아편을 진통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⁶⁰⁰

표 III-10 빙두(마약류) 남용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빙두가 상당히 대중화되었음. “한코할까?” 이게 인사일 정도임. 23세대가 한 인민반이라면 15세대는 빙두를 하고 있음. | NKHR2022000003 2022-05-19 |
| 정통편은 너무 흔하고 빙두도 너무 많이 하고 있음. 특히 중간계층이 빙두를 많이 함. | NKHR2022000008 2022-05-27 |
| 대부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고 특히 남자들은 다 해봤을 것임. 운전이나 야간일을 하는 사람들이 잠을 이겨내기 위해 빙두를 하고 있음. | NKHR2022000010 2022-06-09 |
| 혜산시는 전반적으로 빙두를 함. 증언자의 오빠가 있던 강구동은 밀수촌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아편을 많이 하였음. | NKHR2022000017 2022-06-13 |
| 성인은 치료,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빙두를 하는데, 최근 돈이 있는 애들이 마약을 함. 빙두를 안 주면 학교를 안 갈 정도로 심하다고 함. 부모와 같이 하는 경우도 목격한 적 있음. | NKHR2022000018 2022-06-15 |
| 예전에는 아편을 많이 했는데, 탈북 직전까지는 빙두를 많이 했음. | NKHR2022000022 2022-06-21 |
|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음. 빙두는 항생제, 아편은 진통제라고 약으로 대하고 있음. | NKHR2022000023 2022-06-22 |
| 돈 있는 사람은 쾌락을 위해 빙두를 하고, 운전기사들은 너무 피곤해서 쓰고 있음. | NKHR2021000025-2 2022-06-30 |

598_ NKHR2020000021 2020-07-06.

599_ NKHR2022000017 2022-06-13.

600_ NKHR2022000023 2022-06-22.

이처럼 잘못된 의료지식에 입각해 마약류를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양강도 보천은 병두보다 아편을 많이 사용하며, 아편을 몰래 파는 집들도 있다면서 걸릴 경우 처벌이 강하긴 하지만 뇌물을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⁶⁰¹

다. 불충분한 예방의학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보건의료 체계에 북한 특색의 정책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방의학제도인데, 이는 1966년 김일성의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연설 이후 북한의 기본원칙이 되었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인민보건법을 통해 명문화되었다. 즉 북한은 병이 발병하기 전 미리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치료보다 병의 예방을 우선하여 촘촘한 방역과 위생교육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의학의 취지는 실제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접종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2019년에 거주지 진료소에서 자녀

601_NKHR2020000006 2020-05-15.

(5~6세)에게 소아마비, 결핵, 간염, 홍역, 장티푸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줬다고 증언하고 있으며,⁶⁰² 그 외에도 다수의 증언자들이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⁶⁰³ 또 WHO 역시 북한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2019년 기준으로 96~98%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⁶⁰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아동 예방접종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 WHO와 유엔아동기금이 발표한 2021년 항원별 예방접종현황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을 위한 DPT1 백신접종률은 2020년 98%에서 42%로 급감했고, B형 간염 접종률(HepB3)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3) 접종률도 97%에서 41%, 수막구균(DTP3) 접종률도 99%에서 42%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0년 98%였던 소아마비(IPV1) 백신 접종률은 17%까지 급전직하로 하락했다. 소아결핵(BCG) 예방접종은 99%에서 95%로 소폭 하락하였다.⁶⁰⁵

또한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북한 당국이 지역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거나,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격리

602_ NKHR2020000026 2022-07-06.

603_ NKHR2018000059 2018-07-02; NKHR2019000014 2019-05-07;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30 2019-06-03; NKHR2022000002-2 2022-07-06 외 다수의 증언.

604_ "WHO Vaccine-preventable Diseases: Monitoring System. 2020 Global Summary," 2020, <http://apps.who.int/immunization_monitoring/globalsummary> (Accessed January 15, 2020).

605_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nd UNICEF estimates of immunization coverage: 2021 revision,"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country-profiles/immunization/2022-country-profiles/immunization_prk_2022.pdf?sfvrsn=fb196045_3&download=true> (Accessed September 4, 2022).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건강검진은 없었지만, 2014년경 파라티푸스 예방접종을 맞은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⁶⁰⁶ 2020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결핵 예방주사, 간염 백신, 백일해 주사 등을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⁶⁰⁷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독감이나 홍역주사를 맞을 수 있었으며, 의사들이 학교로 와서 무료로 예방주사를 놔주었다고 증언했다.⁶⁰⁸

다른 지역보다 평양에서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언도 있었다. 평양에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결핵 예방접종인 BCG 접종과 파라티푸스, 백일해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있는데, 특히 파라티푸스 예방주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접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⁶⁰⁹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헤산시에 장티푸스가 유행해 2018년 4월경 주민들에게 예방접종해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다.⁶¹⁰ 2016~2017년 장티푸스가 유행했을 때 담당진료소에서 매일 새벽마다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예방주사를 놓아주었다는 증언도 있었다.⁶¹¹

또한 북한 당국은 전염병 유행 시 예방교육도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장티푸스

606_NKHR2022000003 2022-05-19.

607_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25 2022-06-23.

608_NKHR2022000034 2022-08-08.

609_NKHR2022000005 2022-05-25.

610_NKHR2018000120 2018-10-22.

611_NKHR2019000059 2019-07-29.

나 조류독감 등 감염병 발생 시 인민반에 지시해 미리 알려주었다고 말하면서, 반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집 대문 앞에 ‘전염병 발생’, ‘통행금지’ 딱지를 크게 붙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⁶¹²

이와 달리, 2019년 탈북한 두 북한이탈주민은 감염병 발생 시 강연 자료로 선전하기만 할 뿐, 방역 등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조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¹³

한편,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등의 감염병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말라리아관리전략(2014-2017), 결핵관리전략(2014-2017) 등을 실시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결핵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WHO에서 발간한 『2021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2021년~2025년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 모두 고위험국으로 분류하였다. 2020년 북한의 결핵환자 수는 13만 5천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23명이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16%이었다.⁶¹⁴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 깨끗한 식수의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에는 상수도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612_ NKHR2021000017-2 2022-05-26.

613_ NKHR2020000027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614_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1,”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37021>> (Accessed September 4, 2022) 참조.

으로 보이며,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수도물의 수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책시의 수도관이 철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삭아서 녹물이 나왔고, 아파트 지하에 공공수도를 만들어 집집마다 물을 길어다가 사용했다고 증언했다.⁶¹⁵

우선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식수로 우물물 혹은 강물을 사용했다는 사람도 있다.⁶¹⁶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혜산시 거주 당시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고, 겨울에는 우물이 얼기 때문에 압록강 물을 길어 마셨다고 한다. 압록강 물의 경우, 수질이 나쁜 편이라 물을 한 번씩 끓여서 먹기도 했지만 바쁘면 그냥 먹기도 했는데, 얼음이 풀릴 때 물을 길어 먹으면 대장염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⁶¹⁷

반면, 샘물판매소에서 물을 사다 먹었던 사람들도 있다.⁶¹⁸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샘물공급소에서 물을 사먹었는데,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⁶¹⁹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아파트 3층에 거주했는데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10리터에 북한돈 30원을 주고 사먹었다고 증언했다.⁶²⁰ 이외에 식수로 수도물을 그대로 사

615_NKHR2021000017-2 2022-05-26.

616_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27 2020-07-06.

617_NKHR2020000023 2020-07-06.

618_NKHR2020000012 2020-06-15; NKHR2020000029 2020-07-06.

619_NKHR2020000001 2020-05-15.

620_NKHR2022000016 2022-06-11.

용했다는 사람도 있는데,⁶²¹ 식수를 사다 먹었던 사람들이 수도물 수질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진료소에 ‘물을 끓여 마시세요’, ‘손씻기를 잘하자’라는 스티커를 붙여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⁶²² 이렇듯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개인위생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예방의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호담당의사제도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었다.⁶²³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호담당의사가 전염병 발생 시 예방백신 접종 등의 역할을 담당하거나,⁶²⁴ 인민반에 앓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⁶²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전염병이 유행하면 호담당의사로부터 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인민반원들을 모아 놓고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⁶²⁶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호담당의사들이 북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⁶²⁷ 호담당의사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실제로는 만나

621_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0 2020-07-04.

622_NKHR2022000005 2022-05-25.

623_NKHR2019000018 2019-05-07; NKHR2019000010 2019-04-08; NKHR2019000062 2019-07-29.

624_NKHR2018000016 2018-04-09; 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9 2020-07-06.

625_NKHR2018000080 2018-07-30; NKHR2019000032 2019-06-03.

626_NKHR2022000023 2022-06-22.

보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⁶²⁸ 호담당의사제가 형식상 작동은 하나 돈이 없으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증언도 있다.⁶²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호담당의사가 예방접종을 담당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서, 얻어먹을 게 있는 집에 개인적으로 다닌다고 증언하였다.⁶³⁰ 심지어 호담당의사제에 대해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⁶³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은 친구의 삼촌이 의사로서 자신의 집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담당의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호담당의사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증언하였다.⁶³²

라. 평가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

627_ NKHR2015000018 2015-01-27; NKHR2015000019 2015-01-27; NKHR2018000084 2018-08-11; NKHR2018000099 2018-10-01; NKHR2019000011 2019-04-20; NKHR2019000019 2019-05-07.

628_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066 2017-08-28; NKHR2018000018 2018-04-09; NKHR2018000058 2018-07-02.

629_ NKHR2017000004 2017-04-10.

630_ NKHR2020000014 2020-06-15.

631_ NKHR2019000009 2019-04-08;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34 2019-06-03; NKHR2019000038 2019-06-15; NKHR2019000042 2019-07-01;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632_ NKHR2020000020 2020-07-04.

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층 혹은 부의 축적 수준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져 주민들은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장마당 약사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진료 및 시술 과정에서 오진,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주민들이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인해 치료용으로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마약류의 오남용이 상당히 북한 지역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예방의학을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담당의사제 역시 일부 작동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위생교육과 예방접종 등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호담당의사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어 완전한 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질이 좋지 않은 수돗물이나 우물물, 강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염병 예방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도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아동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 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3

노동권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노동 조건,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표 III-11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 | | |
|-------|-----|--|
| 제 6 조 | 제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 제2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제7조 | <p>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p> <p>(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p> <p>(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 보장</p> <p>(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p> <p>(b)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p> <p>(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p> <p>(d)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p> |
| 제8조 | <p>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p> <p>(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p> <p>(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p> <p>(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p> <p>(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p> |
| 제2항 | <p>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p> |
| 제3항 | <p>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p> |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개인과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권은 직업선택의 자유,⁶³³ 양질의 일자리,⁶³⁴ 강제노동 금지,⁶³⁵ 부당해고 금지,⁶³⁶ 차별금지원칙⁶³⁷

633. UN CESCR,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Art. 6 of the Covenant),” February 6, 2006, para. 6. 여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용을 하거나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노동의 수락 또는 선택을 자유로이 결정할 모든 인간의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보호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및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

관점에서 검토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파업 역시 근로권의 주요한 항목이다.⁶³⁸

북한에서는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2015)을 비롯한 각종 법규에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노동권에 대해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또한 사회주의노동법은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과 임금, 근로조건,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보호법(2014)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법률조항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아래에서는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양

634. *Ibid.*, para. 7. 규약 제6조에 특정된 노동은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뿐 아니라 작업 안전과 보수 조건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한, 이는 규약 제7조에 강조하고 있듯이 노동자로 하여금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고용의 행사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635. *Ibid.*, para. 9.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불이익(penalty)의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본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 노예협약 제5조 및 자유권규약 제8조에 선언되어 있듯이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철폐, 금지 및 방지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636. *Ibid.*, para. 11. 고용의 종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8호는 제4조에서 해고(dismissal)의 합법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해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오건 및 부당한 해고의 경우 법적 보상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과하고 있다.

637. *Ibid.*, para. 12. (b) (i). 제2조 제2항과 제3조에 따라,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 성적 지향 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과 근거한 것으로서 평등에 입각한 근로권의 행사를 훼손하거나 무효화할 의도 또는 효력을 갖는, 고용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638.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

질의 일자리,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노동권을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사회권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6조).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 고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을 직장에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노동계획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정하면 노동성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이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직장배치 시 본인의 의사와 능력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⁶³⁹ 그보다는 토대(성분), 인맥, 뇌물공여 여부(경제력)에 따라 직장배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⁶⁴⁰ 개인의 의사나 능력이 직장배치에 반영된다는 응답도 일부 수집되었으나,⁶⁴¹ 이는 토대(성분)가 좋

639_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640_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13 2019-05-07; NKHR2019000054 2019-07-29;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거나, 인맥이 있는 경우, 혹은 뇌물공여가 가능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뇌물과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⁴²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정치와 맞물려서 군대를 다녀왔는지 여부가 직업배치에 있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격요건 중 하나였다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식당 등 서비스직의 증가에 따라 인물이나 키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이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실질적인 개인기업이나 ‘정보기술교류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증이 꼭 필요하며, 2018년도에는 본인이 생산직에서 일하기가 힘들어 개인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키는 북한에서는 드물게 165cm 이상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며 또 다른 한 곳은 춤을, 또 다른 곳은 노래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주변에는 최근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키 크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 부작용으로 비만이 되거나 키 크는 관절 수술을 받은 친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⁶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대는 여전히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

641_NKHR2019000004 2019-04-08; NKHR2019000026 2019-05-18; NKHR2019000032 2019-06-03.

642_NKHR2020000021 2020-07-06.

643_NKHR2022000015-2 2022-07-29.

한 부동산의 1순위이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다 보안서에 서류로 구비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지도원에 뇌물을 주면 이것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⁶⁴⁴ 특히 특급기업소에 배치를 받거나 간부로 배치를 받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⁴⁵ 2019년에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검찰서, 보안서, 인민위원회, 군당 등은 토대가 중요하고 나머지 직종은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증언하였다.⁶⁴⁶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최근에는 보안원, 검찰서, 보위부 자리가 돈 주고 비법으로 살 수 있으며 뇌물 가격이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보안원은 2,000달러, 검찰서는 5,000달러 등이다.⁶⁴⁷ 그 외 요즘 선호하는 식당이나 무역회사는 300달러 정도의 뇌물을 주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뇌물을 주고 실질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취업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⁶⁴⁸

문제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뇌물이 많이 들어가며 과거에 비해 뇌물의 단위가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함께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식들을 경쟁적으로 남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시키기 위해 더 많은 뇌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44_NKHR2022000014-2 2022-07-29.

645_NKHR2017000019 2017-05-08; NKHR2017000056 2017-07-31; NKHR2017000073 2017-08-28; NKHR2018000008 2018-03-12.

646_NKHR2019000068 2019-08-26.

647_NKHR2022000014-3 2022-08-31.

648_NKHR2022000015-3 2022-08-31.

한편,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무리(집단)배치’이다. 무리배치란 공장, 탄광 및 각종 건설 공사장과 작업장 등 인원이 부족한 곳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국가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 일방적으로 노동력이 집단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졸업생, 제대군인들이 무리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배치되는 곳은 돌격대나 탄광, 광산, 군수공장, 농장, 건설대 등 기피되는 작업 시설인데,⁶⁴⁹ 무리배치 이후 다른 직장으로의 배치 요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⁶⁵⁰ 특히 군수공장의 경우, 배급은 주지만 매일같이 직장에 엄격히 출근해야 해서 8.3 임금 등의 과외 시장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다.⁶⁵¹ 한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경제난으로 인해 국영공장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아직 회복되지 않는 공장기업소가 적지 않은 관계로 김정은 시대 오히려 무리 배치는 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국가급 대형 공사가 많아진 관계로 돌격대 등 또한 많아지는 추세라고 답하는 증언이 있었다.⁶⁵² 이들은 한 번 가면 식사는 물론 수도 시설 등이 열악한 곳에서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답했다.⁶⁵³

그러나 무리배치 역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무리배치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

649_NKHR2018000030 2018-05-07;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11 2019-04-20; NKHR2019000036 2019-06-03; NKHR2020000029 2020-07-06.

650_NKHR2020000008 2020-05-16; NKHR2020000010 2020-05-16.

651_NKHR2022000014-3 2022-08-31.

652_위의 증언.

653_위의 증언.

람이 주로 당하고,⁶⁵⁴ 잘 사는 사람들이나 간부들의 자녀 등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배치에서 쉽게 빠지며,⁶⁵⁵ 무리배치를 피하려면 토대가 좋거나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증언한다.⁶⁵⁶

북한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전직(轉職)도 노동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속 절차도 복잡하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⁶⁵⁷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이직하려는 기업소에서 이직자를 받겠다는 채용증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서 파견증을 발급받으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⁶⁵⁸

하지만 뇌물이나 인맥이 동원될 경우에는 이직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식료공장에서 도 무역국 산하 광산 내 식당으로 이직하였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의 노동지도원에게 2만 원 정도 뇌물을 주면 문건 이동이 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⁵⁹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배치된 직장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근 시 노동교양 처벌을 받게 되는데, 노

654_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9000043 2019-07-01; NKHR2020000014 2020-06-15.

655_ NKHR2018000027 2018-04-09; NKHR2019000078 2019-09-25; NKHR2019000083 2019-09-25.

656_ NKHR2019000058 2019-07-29; NKHR2019000079 2019-09-25;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9 2020-07-06.

657_ NKHR2019000064 2019-08-17.

658_ NKHR2020000028 2020-07-06.

659_ NKHR2020000021 2020-07-04.

동단련대에 보내지는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⁶⁶⁰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에 한 달 정도 무단결근한 여성 노동자가 노동단련대 1개월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⁶⁶¹ 또 2016년도에 무단결근을 한 사람이 보안서의 단속에 걸려 3개월간 노동단련대에 다녀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으며,⁶⁶² 1~3개월 정도 농장에 무단결근해 노동단련대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증언도 있다.⁶⁶³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치 않는 노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북한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보니, 무단결근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더라도 돈을 내고 무마하는 경우가 있으며,⁶⁶⁴ 돈을 내기로 미리 합의하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⁶⁶⁵ 북한 국영 공장 기업소의 가동률 저하와 더불어 8.3 임금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1년에 500위안을 직장에 내고 무단결근을 했으며, 액수는 정세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660_ NKHR2019000036 2019-06-03; NKHR2019000082 2019-09-25.

661_ NKHR2017000036 2017-06-05.

662_ NKHR2019000016 2019-05-07.

663_ NKHR2020000022 2020-07-06.

664_ NKHR2018000095 2018-08-27; NKHR2019000038 2019-06-15; NKHR2019000052 2019-07-20.

665_ NKHR2019000039 2019-07-01; NKHR2019000047 2019-07-01; NKHR2019000057 2019-07-29; NKHR2020000019 2020-07-04.

활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직장에 수익금을 내고 결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신의주의 경우 8.3 입금액이 한 달에 300위안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농촌지원에 나가기 싫으면 대신 나가주는 사람에게 하루에 10위안을 주면 된다고 한다.⁶⁶⁶ 한편 최근 노동단련대나 교회소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생존을 해야 하므로 직장에 나가지 않은 만큼 돈으로 계산해서 받고 무마시켜주는 사례가 있다.⁶⁶⁷

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보수 조건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부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가 여부이다(사회권규약 제7조). 북한은 모든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태는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우선 배치된 직장에서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배치된 직장 혹은 농장에서 사실상 무보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설령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 가족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666_NKHR2020000006 2020-05-15.

667_NKHR2022000014-2 2022-07-29.

것으로 파악된다.⁶⁶⁸ 배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역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체신소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노임은 한 달에 2,000~3,000원 정도였으며, 배급은 1년 치를 한 번에 주는데, 이마저도 2017년까지는 지급받았으나, 무산의 경우 경제봉쇄로 인해 광산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배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⁶⁶⁹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북창군 탄광에서 근무했던 한 북한이탈주민도 한 달에 한 번 식량배급을 받는 것이 노동대가였다고 증언하였다.⁶⁷⁰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의사로 근무하면서 식량배급 외에도 노임을 한 달에 북한돈 4,000원 정도로 받았는데, 너무 적은 돈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⁶⁷¹

한편,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을 외화(위안화 및 달러)로 지급받았다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을 하는 기업소나 작업장,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⁶⁷²

668_NKHR2019000013 2019-05-07 외 다수의 증언.

669_NKHR2019000071 2019-08-26.

670_NKHR2020000042 2020-10-31.

671_NKHR2020000047 2020-11-28.

672_NKHR2019000043 2019-07-01; NKHR2019000060 2019-07-29; NKHR2019000072 2019-08-26; NKHR2020000021 2020-07-06.

표Ⅲ-12 북한의 임금 지급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2017년 간호사로 일할 때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1,000원의 노임을 받음. 원래는 매달 2,450원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1,000원이었음. 배급은 한 달에 옥수수 6kg을 받음. 이는 보름치에 해당함. | NKHR2018000102 2018-10-01 |
| 2016년 ○○○도에서 중학교 경리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월급으로 1,300원을 분기별로 지급받았으며, 가을마다 교직원에 대한 배급으로 감자 300kg을 받았다고 증언함. | NKHR2019000044 2019-07-01 |
| 노임으로 15일에 한 번씩 쌀 500~1,000g 살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받음. | NKHR2018000042 2018-06-04 |
| 직장에서 받는 보수로는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텃밭이나 소토지에서 농사지은 것으로 충당함. | NKHR2018000065 2018-07-11 |
| 임산사업소의 경우 배급으로 한 달에 강냉이와 밀쌀을 5~10kg을 받았고 생활비로 1,500원을 받음. | NKHR2018000079 2018-07-30 |
| 보위성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월급으로 1,200원을 받았고, 당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액은 거의 없었다고 증언함. 배급은 직장에서 먹는 세끼로 충당되어 별도 지급받지 않음. | NKHR2019000080 2019-09-25 |
| 간호원으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배급이나 노임을 받지 못하며,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주는 뇌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증언함. | NKHR2019000082 2019-09-25 |
| 정보통신국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노임은 형식적으로 1,000원을 받았지만, 사탕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함. | NKHR2019000083 2019-07-29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주택보수사업소에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감자 배급 2번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증언함. | NKHR2020000008 2020-05-16 |

공식적인 직장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노동자들이 시장과 연계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버지가 노임과 배급을 받았지만 생활하기에 크게 부족해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채소를 팔아 생활비를 벌었다고 증언하였다.⁶⁷³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노동대가로 노임을 받지만 생계유지에 충분치 않아 개별적

673_NKHR2018000043 2018-06-04.

으로 농사, 장사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하였다.⁶⁷⁴ 평양에 거주하다 탈북한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기업소에 8·3 노동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기업소의 공간을 일부 빌려서 탁구장을 운영한다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증언하였다.⁶⁷⁵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본인이 입고 간 옷이 곧 작업복이고, 안전모는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모든 것을 노동자 본인 돈으로 구입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⁷⁶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증장비 운전직으로 근무할 때 안전모 같은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사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⁶⁷⁷ 또 화약을 다루는 생산단위 노동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마스크와 작업 장갑은 지급받았으나, 별도의 작업복은 없었으며, 유해환경으로 인해 2~3년 일하면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폭발물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안전규정 등은 분기마다 교육받았다고 한다.⁶⁷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군수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

674_NKHR2019000029 2019-06-03.

675_NKHR2017000031 2017-06-05.

676_NKHR2018000036 2018-05-08.

677_NKHR2020000016 2020-07-04.

678_NKHR2019000070 2019-08-26.

우, 지하갱도 등에서 일하며 늘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감기 소견만 있어도 결핵 주사를 무상으로 맞거나 약을 타 먹을 수 있는 병원이 공장에 딸려 있다고 답했다. 즉,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결핵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 또한 실제로 군복 만드는 공장에 배치되었으나 어머니가 2002년 당시 50달러에 달하는 담배를 뇌물로 바치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시킨 이유가 노동의 혹독함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칠 우려도 큰 문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⁶⁷⁹

한편, 북한은 법으로 근로시간과 휴식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⁶⁸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에 규정된 하루 노동시간이 의미 없는 기업이 많다. 전기와 원자재 부족, 공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져, 직장에 일이 많지 않은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⁶⁸¹ 가동률이 높은 기업에서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내외였다는 증언도 다수 있다.⁶⁸² 한 북한이탈주민은 체신소에서 근무했는데 하루에 7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며,⁶⁸³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사업소에 근무할 때 총 8시간 근무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⁸⁴

679_ NKHR2022000015-2 2022-07-29.

680_ 「노동보호법」 제36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그보다 짧게 정할수 있다. …; 「노동보호법」 제3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 같은 쉬는날에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681_ NKHR2016000103 2016-06-28; NKHR2016000135 2016-08-22.

682_ NKHR2018000036 2018-05-08;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70 2019-08-26; NKHR2019000082 2019-09-25.

683_ NKHR2018000026 2018-04-09.

채종사업소에 경리담당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⁸⁵

이와 달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 공장에서 군수품 만드는 일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15~16시간의 노동을 해야 했다고 하며,⁶⁸⁶ 광산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었고, 아침 5시에 기상하여 빠르면 저녁 7시, 늦으면 밤 10시까지 일했다고 한다.⁶⁸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중장비 운전직으로 근무할 때 12~13시간 근무했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⁶⁸⁸ 2016~2017년경 광산에서 일할 때 새벽 4시부터 23시 30분 정도까지 일했다는 증언도 있다.⁶⁸⁹ 수출피복공장에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고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또한 아침 7시부터 10시~12시까지 근무했으며 마감일이 촉박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일을 했다.⁶⁹⁰ 농장원의 경우도 8시간 노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농번기 때에는 야간작업이나 아침 식전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⁶⁹¹

노동자의 휴식 보장 수준은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따라 서로 상이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15일

684_NKHR2018000043 2018-06-04.

685_NKHR2019000043 2019-07-01.

686_NKHR2018000003 2018-03-12.

687_NKHR2018000005 2018-03-12.

688_NKHR2020000016 2020-07-04.

689_NKHR2020000021 2020-07-06.

690_NKHR2022000015-2 2022-07-29.

691_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27 2019-06-03; NKHR2019000046 2019-07-01.

정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⁶⁹²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다.⁶⁹³ 10~11월 까지 만근한 사람에 한하여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⁶⁹⁴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이 다른 돈벌이를 위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휴가 개념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⁶⁹⁵

다. 노동조합 결성·가입·탈퇴의 자유 제약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은 규약 당사국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단체로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이 있지만,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는 직업동맹은 노동보호사업, 교양사업, 생산능률 제고, 노동규율 강화 등 노동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조직이다.⁶⁹⁶ 또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내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692_NKHR2019000019 2019-05-07;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7 2020-07-06.

693_NKHR2019000023 2019-05-18;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65 2019-08-17.

694_NKHR2019000070 2019-08-26.

695_NKHR2017000135 2017-12-18.

696_김강식, 『북한의 노동』 (서울: 집문당, 2003), p. 155.

러한 모임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⁶⁹⁷ 노동조합 결성이나 임금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한다.⁶⁹⁸ 국가에서 승인한 단체 외에는 노동자들의 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⁶⁹⁹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⁷⁰⁰ 직장생활에 대해 단체로 항의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었다.⁷⁰¹ 따라서 직장 내 노동자 대표와 관리자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관련 권리에 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⁷⁰²

라. 평가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 당국은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직장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된 직장에서의 이탈 역시 자유롭지 않다. 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돈 있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뇌물을 주고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사례도 함께 증가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여건도

697_NKHR2019000011 2019-04-10 외 다수의 증언.

698_NKHR2018000005 2018-03-12.

699_NKHR2019000055 2019-07-29.

700_NKHR2019000008 2019-04-08.

701_NKHR2019000068 2019-08-26.

702_NKHR2017000019 2017-05-08 외 다수의 증언.

점차 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시대에는 선군정치에 맞게 군대에 근무 경험이 필수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대학졸업장이 중요한 여건으로 부각되었다. 즉, 개인의 능력도 중요한 요건으로 점차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직 등의 증가로 인해 외모 또한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식들을 더 좋은 직종에 취업시키기 위해 뇌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돈 있는 계층에게 좋은 직업이 집중되어 북한 사회에 기존과 또 다른 불평등의 증가를 의미한다. 다만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해 토대는 여전히 부동의 1위였다.

한편, 북한은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 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서만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아예 직장에 일정 금액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치면서 직장에 가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이른바 ‘8.3 임금’ 노동자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정 정도의 자금력이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이러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기존 공식 직장에 매여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의 근로조건 관련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성·가입·탈퇴의 자유 역시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기업소 측에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4

교육권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권은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권리이다. 교육권은 공교육 혹은 정규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및 비정규교육과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북한이 당사국인 사회권규약 제13조는 교육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 III-13 사회권규약 제13조

| | |
|------------|--|
| <p>제1항</p> | <p>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p> |
| <p>제2항</p> | <p>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 | |
|-----|--|
|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
| 제3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 제4항 |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북한은 헌법 제73조에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2015), 보통교육법(2015), 고등교육법(2015) 등에 사회주의교육학에 근거한 전반적무료 의무교육제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는 이러한 규정과는 괴리되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들을 제·개정하고 정책을 수립했다.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북한은 2014년에 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전략(2015~2023)을 마련한 후 교육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수립하고, 초·중등교육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2017~2020) 아래 교육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⁷⁰³ 또한 2022년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여가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

703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4.

시하였다.⁷⁰⁴ 북한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늘리고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탈주민들은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합성(adaptability)을 기준으로 실태를 살펴본다.⁷⁰⁵

가. 교육 여건

교육에 있어 가용성이란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에 있어서 가용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교육법 제7조에서 “국가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리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법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교육법 제12조에서 “중등일반교육⁷⁰⁶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2019년 UPR 보고서에서 북한은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로 여겨 GDP의 8.6%까지 교육부문 투자를 증대했다고 보고했다.⁷⁰⁷ 그리고 2017~2018년에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교실

704_ 『노동신문』 2022.1.14.

705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1999), para. 6.

706_ 여기에는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과정이 포함된다.

에 도입한 다기능교실, 각종 실험실과 야외학습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본보기학교’를 세워 이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육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보고했다.⁷⁰⁸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과 농촌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시키고 학교를 현대화 하는 과업도 강조하고 있다.⁷⁰⁹

북한은 법으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공민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당국 또한 이의 구체적 실천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신축 교사는 편의시설과 환경이 개선되어 깨끗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⁷¹⁰ 대부분 교육 편의시설과 교육 기자재 구비는 지역 간, 학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평양 내에서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육 시설의 수준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⁷¹¹ 컴퓨터실과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⁷¹² 해당 시설 구축과 유지를 위해 학생들에게 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⁷¹³ 또한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만 공급 시간이 정해져 있어 컴퓨터실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⁷¹⁴ 양호실이나 도

707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2.

708_ *Ibid.*, paras. 45-46.

709_ 『노동신문』 2022.1.10.; 『노동신문』 2021.5.21.

710_NKHR2020000002 2020-05-15.

711_NKHR2021000022 2021-10-19; NKHR2021000025 2021-11-09.

712_NKHR2021000003 2021-08-19; NKHR2021000007 2021-09-06.

713_NKHR2021000019 2021-10-15; NKHR2021000010 2021-09-08; NKHR2021000029 2021-11-23.

714_NKHR2021000029 2021-11-23; NKHR2021000030 2021-11-28.

서관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도서관의 경우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⁷¹⁵

북한의 학교는 가장 기초적인 식수와 위생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전체 학교의 56% 정도만 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또한 지역 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¹⁶ 실제 학교 내 위생시설이 취약하여 재래식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손 씻는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는 곳이 많다.⁷¹⁷

컴퓨터 교육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컴퓨터실이 없고, 컴퓨터실이 있더라도 컴퓨터가 없거나 오래된 기종이어서 사용을 못하고, 종이 키보드로 연습하거나 개인이 노트북을 지참한다고 한다.⁷¹⁸

표 III-14 교육 시설과 환경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6년 함경북도에서 중학교를 다녔을 때 컴퓨터실이 있었고 체육시설도 꽤 잘 되어 있었음. 학교 내 동아리와 같은 컴퓨터소조를 다녔음.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학생들도 공부하기는 싫지만 운동은 좋아했음. 자신이 운동을 즐겨하는 편이라 체육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함. | NKHR2021000003 2021-08-19 |
| 2017년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가 있어 한 사람당 1대씩 사용함. | NKHR2020000047 2020-11-28 |
| 2018년 양강도에서 고등중학교를 2년 다녔는데 학교 5층 건물 하나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있었고 손 씻는 곳은 없었음. 체육실과 컴퓨터실이 있었으나 도서관은 없었음. 아주 오래된 두꺼운 모니터의 컴퓨터가 있었는데, 1인당 한 대씩 차례가 안 되어 한 번 쳐보기가 어려웠음. 학생들은 집에 노트북을 다 갖고 있었으며 본인도 갖고 있었음. | NKHR2021000010 2021-09-08 |

715. NKHR2021000020 2021-10-16; NKHR2021000019 2021-10-15.

716. UNICEF. 2019.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p. 81.

717. NKHR2021000006 2021-09-03; NKHR2021000028 2022-07-04; NKHR2021000030 2021-11-28; NKHR2021000008 2021-09-07; NKHR2021000009 2021-09-07; NKHR2021000010 2021-09-08.

718. NKHR2020000003 2020-05-15; NKHR2020000027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9년 양강도 해산시 친구와 사촌 집에 노트북이나 노트북이 있었음. 집에 돈이 많거나 엄마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집에 컴퓨터가 있음. 도시 바 것이 많고 리노버, 애플도 있음. 2014년에 중학교 졸업할 때 컴퓨터실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학교에서 컴퓨터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음. | NKHR2020000001 2020-05-15 |
| 2019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다녔던 중학교에는 화장실, 도서실, 컴퓨터실이 있었음. 화장실은 운동장에 별도로 있는데 시설이 별로였고, 도서관은 책을 빌릴 때 돈을 내야 함. 컴퓨터는 수업시간에만 사용했는데 문서작업은 안 배우고 타자연습만 했고, 키보드도 종이로 연습함. 학급당 40명 정도인데 약 10명 정도만 진짜 키보드로 연습했음. | NKHR2020000029 2020-07-06 |
| 2019년 양강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내 컴퓨터실이 구체적으로 있긴 했지만 내부 시설이 안 되어 있었음. 전기제품이 없거나 있어서 전기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됨. | NKHR2021000001 2021-08-13 |
| 2020년 학교에 다니던 자녀에게 노트북을 사줘서 컴퓨터 시간에 사용했음. 요즘은 대부분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한 반에 50명 정도면 절반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님. 화장실은 야외에 있음. 학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음. 양호실, 체육실, 도서관이 없음. | NKHR2020000038 2020-09-26 |
| 양강도 해산시 신장발전소를 세우면서 그 지역이 침수(수몰)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병합학교를 지음. 최근에 지은 학교 다 병원은 설비가 멋있지는 않아도 깨끗하기는 함. 다른 군 농촌학교는 아담하게 꾸며졌는데, 해산시 00동 00학교는 시설도 선생도 다 안 좋음. | NKHR2020000002 2020-05-15 |
| 일반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집 근처로 학교를 다니지만, 외국어학원은 좀 멀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간다고 증언함. 일반학교는 건물이 하나이지만 외국어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시설이 좋은 편임. 체육실, 도서관 같이 특수교실도 있고, 교육건물과 체육건물도 따로 있음. | NKHR2020000013 2020-06-15 |
| (양강도) 김정은이 교육현대화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매 교실마다 티비와 컴퓨터, 배터리 등을 놔야 한다는 소리임. 비용을 학생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데,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눠서 배정했음. 컴퓨터실은 있지만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음. 도서관도 책이 기껏해야 200여 권 정도 있었음. | NKHR2020000027 2020-07-06 |
| 학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으며, 수도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안 씻었음. 체육관이라고 큰 건물이 있었고, 운동장도 컸음. 컴퓨터는 학교에 50대 정도 있었는데 컴퓨터 시간에만 잠깐 사용함. | NKHR2021000007 2021-09-06 |
| 양강도에서 다녔던 중학교는 3층짜리 건물 하나였는데, 화장실은 실외 재래식이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양호실도 없었음. 체육실은 없고 운동장만 있었으며, 컴퓨터도 없었음. | NKHR2021000008 2021-09-07 |
| (평안북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음. 양호실, 도서관은 없었음. 컴퓨터실은 있었는데 컴퓨터실 마련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돈을 많이 모음. | NKHR2021000019 2021-10-15 |
| 평양 금성학원은 만경대소년공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농구장, 축구장이 잘 되어 있었음. 위생시설도 잘 되어 있으며 평양시내 일반 중학교도 수도가 잘 되어 있음. | NKHR2021000022 2021-10-19 |
| 평안남도 북창군에서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화장실은 재래식이며, 손 씻는 시설은 없음. 식수도 당번이 떠다 놓았음. | NKHR2021000028 2021-11-13 |

Chapter I
법규목적 및 연구방법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현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

Chapter IV
취업개념

Chapter V
주요사안

2019년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아동에게 진정한 의미의 초중등 무상의무교육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⁷¹⁹ 이에 북한은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도입했고, 교과서·교육자료·교육장비·교통수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⁷²⁰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은 정규교육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교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교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고 교육환경 전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교원의 생계가 불안정하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곧 교원의 생계를 학부모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며, 학생이 내는 돈으로 교원이 생활한다는 인식이 있다. 생계 불안 때문에 교원이 개인 교습과 부업을 하고, 교원 희망자가 없다는 증언은 열악한 교원의 처우를 보여준다.

표 III-15 교원 처우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9년 중학교 교원이었던 아버지는 배급이 없어서 자체 부업으로 농사를 지어 거의 다 자체소비하고 남은 것을 팔았음.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내는 돈을 교원이 가져가기도 한다고 들었지만 농촌 학교 교원은 그런 것이 없었음. | NKHR2020000035 2020-09-05 |
| 교원은 농장원들보다 배급이 좀 있지만 보수가 별로 없는 편임. 등산할 때 선생님한테 변또(도시락)를 싸감. 자식을 선생님이 교육하니 부모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고, 변또를 안 싸도 선생님이 곤란함. 주기적으로 주는 돈은 사람에 따라 다름. 남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담배, 여자 선생님은 비누라도 드림. | NKHR2020000002 2020-05-15 |

719.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Doc. A/HRC/WG.6/33/PRK/3 (2019), para. 82.

720. UN Doc. A/HRC/42/10 (2019), para. 78.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교원들은 배급도 따로 없고 학부모가 주는 돈으로 충당해야 함. | NKHR2020000012 2020-06-15 |
| 교사들의 생활이 힘들.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는 교사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음. 교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음. | NKHR2020000017 2020-07-04 |
| 교원들도 오전엔 수업하고 오후에 초물모자를 떠서 겨우 살아가는 형편임. | NKHR2020000027 2020-07-06 |
| 교사 월급은 북한돈 2,000원 정도인데, 거의 다 학생들에게 돈을 받음. | NKHR2020000029 2020-07-06 |
| 교원들은 부모들에게 걷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노임을 해결함. | NKHR2020000038 2020-09-26 |
| 유치원 선생님은 돌아가며 쉬면서 부업해서 먹고 살. 딱히 배급은 없는 것 같고, 학부모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님. | NKHR2020000040 2020-10-31 |
| 교원은 학부모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살아가고 당국에서 주는 게 아예 없다고 보면 됨. 준다고 해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감자배급이 조금 있는 정도임. | NKHR2021000001 2021-08-13 |
| 아버지가 30년간 교사이셨지만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음. 학교 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먹고 살 걸 해결 할 시간이 별로 없었음. 교사 월급이 오르지 않았기에 가정교사를 하셨고 나중에 나이가 많으셔서 학급을 맡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는 교사들 회의에서 내야 하는 돈을 못 내면 목을 먹는 게 싫어서였음. | NKHR2021000003 2021-08-19 |
| 월급으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잘 사는 부모님이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해서 챙겨줌. | NKHR2021000007 2021-09-06 |
| 부모들이 뇌물을 바쳐서 분당위원장, 학급반장을 시키려고 하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개인교습이나 과외도 했음. | NKHR2021000008 2021-09-07 |
| 선생들에게 배급이 잘 나오지 않고 학생들에게 받는 것으로 생활함. 학생 중에서도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도와 줌. | NKHR2021000011 2021-09-10 |
| 교원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고 사는 게 힘들니까 분단위원장은 500위안을 내고 학급반장은 250위안, 사상부위원장은 100위안을 냈음. 시내는 배로 더 높아짐. 학교에 돈을 바치느니 가정교사를 붙이는 게 낫다고 가정교사를 둬. | NKHR2021000015 2021-09-16 |
| 교사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원해주고, 교사들에게 과외하는 아이들이 있음. | NKHR2021000021 2021-10-17 |
| 교원생활을 10년간 했는데, 생활이 힘들었음. 학교로 출근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어려웠고, 아이들을 관리해야 했음. 학급반장 부모들이 먹여 살림. | NKHR2022000028 2022-07-04 |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면서 수업과 실습, 견학, 답사, 학용품 등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교육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수업료는 내지 않지만, 각종 명목으로 학교에 내는 돈이 많

다고 증언하였다. 여름에는 교실꾸리기 비용, 겨울에는 화목 비용을 내야 하며, 고철과 파지, 토끼가죽 등도 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재정 부담이 된다. 학교에서 지시한 물품이 없을 경우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돈으로 내지만 내지 못할 경우 교사로부터 질책을 듣게 되며 이러한 부담은 학생들의 결석 요인이 된다는 증언도 있었다.⁷²¹ 한편, 교과서는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대개 현 교과서이며, 새 교과서는 불충분하게 공급되어서 별도로 구입해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⁷²²

표 III-16 무상교육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에 토끼가죽, 두부콩, 겨울 화목, 돌격대 지원비, 교실꾸리기, 기와 씌우기 등에 돈을 냈음. 기와는 학부모가 직접 씌웠음. 교과서는 무상으로 나왔는데, 새 교과서는 북한돈 50원 정도 돈을 보탬. | NKHR2020000031 2020-08-03 |
| 2016년 고급중학교 다닐 때 필요한 물품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 했음.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두 달에 한 번 보통 7~8권 정도 노트를 주었음. 다른 학생들은 북한돈 500원 정도 냈던 것으로 기억함. | NKHR2021000003 2021-08-19 |
| 2016년 중학교를 다녔는데 눈을 뜨면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었음. | NKHR2022000025 2022-06-23 |
| 2018년에 학교에 다닌 자녀의 담임에게 화목대 15~20원(위안) 내고, 학교 꾸리기로 10원씩 냈음. 봄철 위생사업비 등 학교에서 정해주는 돈도 5~10원 정도 냄. | NKHR2020000002 2020-05-15 |
| 2019년 친구 동생이 중학교에 다녔는데 돈을 많이 내서 힘들어했음. 매일 돈을 내는데, 어떤 때는 정해진 수업료를 내는 것이 낫다고 함. | NKHR2020000001 2020-05-15 |

721. 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24 2022-06-23; NKHR2021000015 2021-09-16; NKHR2021000019 2021-10-15; NKHR2021000026 2021-11-10; NKHR2021000030 2021-11-28 외 다수의 증언.

722. NKHR2020000012 2020-06-15; NKHR2020000022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9년에 TV, 컴퓨터, 투시기, 배터리 등 교육현대화 비용으로 돈을 냈음. 학교에서 거두는 돈을 내지 못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6학년 아이들의 경우 20~30% 정도만 나눔. 가정곤란과 선생님이 돈을 내지 못하는 것을 질책해서 안 나눔. 고급중학교는 출석률이 더 저조함. | NKHR2020000027 2020-07-06 |
| 2019년에 자녀가 고등중학교에 다녔음. 수업료는 없지만 학교꾸리기, 교실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하루에 3~4위안은 늘 내야하고, 한 달에 100위안 정도가 들어감. 삼지연 건설 지원, 도로공사 지원을 위해서 얼마씩을 내야 한다고 학교에 과제가 떨어지면 그것을 학급별, 학생별로 나누어서 할당함. 너무 경제사정이 어려워 한 푼도 없는 학생들을 빼고는 한 사람당 3~4위안씩을 내야 함. 경제 부담으로 소학교부터 안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음. | NKHR2020000038 2020-09-26 |
| 교실꾸리기, 비품 구매, 밀대 등 청소도구도 사야하고, 학용품도 장마당에서 사야 함. 교과서도 충분하지 못하면 직접 사야 함.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있음. | NKHR2020000012 2020-06-15 |
| 꼬마계획, 파지값, 산나물 채집, 학교 꾸리기(책상, 의자, 칠판 도색 등) 등으로 소소하게 내는 돈이 많음.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도 돈을 내야 함.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나눠줄 때 돈을 내야 함. 물려받는 것은 무상임. | NKHR2020000022 2020-07-06 |
| 수업료는 없지만 ~지원, ~과제 등으로 잡다하게 내는 것이 많았음. 집이 가난한 학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다니지만, 위축이 되어서 다님. | NKHR2020000023 2020-07-06 |
| 수업료는 없지만 매일 매일 돈이 나갔음. 교과서는 모두가 받을 수 있게 충분히 주지 않고, 불공평하게 배급해 줌. 학용품은 자신이 준비해야 함. 다니던 학교가 붉은기운동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 학교 현대화를 했음. 이때 학생들은 1인당 300위안씩을 내야 했음. 열성자는 더 내야 하고,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내야 함. | NKHR2020000029 2020-07-06 |
| 돈이 좀 있는 집 아이들은 학급반장, 분단위원장, 사상부위원장 등 열성자를 시킴. 이들은 하루 5위안은 무조건 나감. 학교꾸리기 등 학교에서 일이 있을 경우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자녀일기기에 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돈을 보냈음. | NKHR2021000014 2021-09-16 |
| 돈을 낼 수 없는 학생은 학교에 못 나감. 학생들 앞에서 왜 못 냈냐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은 망신스러워서 학교에 가지 않음 | NKHR2021000015 2021-09-16 |
| 토끼가족이나 군대 겨울옷 만드는 것 등을 많이 함. 학교운영비도 당연히 내고 돈으로 거둘 때도 있는데, 매 학기 돈으로 냈음. 학교꾸리기를 위해 20위안, 학급반장은 100위안씩 냄. | NKHR2021000016 2021-09-24 |
| 꼬마계획이라고 해서 토끼가족, 파철을 구하고 도토리 줍기 등을 함. 물건 내라는 것도 많았고, 어디 지원해야 하는데 3,000원, 5,000원 내라고 하였음. 파철이나 토끼 가족 못하면 돈으로 내야 했고, 못 내게 되면 선생이 계속 욕하고 일으켜 세워서 말하고 졸업할 때 평가를 나쁘게 쓰기도 함. | NKHR2021000019 2021-10-15 |
| 교과서도 다 사야하는데 예전에는 무상으로 줬지만 생산을 못해서 5명밖에 못주는 정도라서 요새는 개인이 출판한 책을 삼. 학교에서 내라는 게 너무 많음. 달러로 바치는 것도 있었음. | NKHR2021000020 2021-10-16 |
| 파철, 플라스틱, 비닐, 폐지, 병 등을 가져오라고 했고 부담스러웠음. | NKHR2021000025-2 2022-06-30 |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교실꾸리기(칠판 도색 등), 현대화 등을 해야 하는데 학교가 돈이 없고 선생도 돈이 없음. 자신의 자녀 선생은 학급반장, 분단위원장 부모들로부터 돈, 배급, 쌀을 받으며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챙기고 칭찬을 함. 이로 인해 자신의 자녀가 공부는 잘했지만 자존심도 상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NKHR2021000026 2021-11-10 |
| 교실꾸리기, 도색 구입, 겨울철 화목(나무)등 모두 돈으로 지급하였음. 컴퓨터실 꾸리기도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함. | NKHR20210000292 021-11-23 |
| 학교꾸리기로 돈을 내야 했음. 김정일 시대에는 검열은 했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 애국주의' 명목으로 당연하게 요구했음. 돈 대신 자재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음. 학용품은 개인이 부담하며 교복은 소학교에 들어갈 때 한번 주었는데 질이 떨어졌음. | NKHR2022000002 2022-05-18 |
| 수업료는 무료이나 618건설돌격대 지원, 학교꾸리기, 교실꾸리기 등 지원 사업으로 비용이 많이 나감. | NKHR2022000022 2022-06-21 |

나. 교육기회의 차별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지를 의미하는 접근성은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으로 구분된다.⁷²³ 비차별은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회 내 특정 취약집단에게도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차별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의 교육 접근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치범을 포함한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723.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1999), para. 6. (b) 접근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있다.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법률상 사실상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 - 교육은 어떤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 동네 학교)에 의해, 혹은 현대적 기술(예,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란 측면에 대해서 제13조 제2항은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북한제도상 의무교육인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으나 일반사회와 다른 학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평등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⁷²⁴ 201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북한에게 과학기술 분야 등 여학생들의 입학을 차단해 온 전통적 인식과 구조적 제약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⁷²⁵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보고서에서 주요 대학이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지만,⁷²⁶ 성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 북한은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에서 외딴 지역의 아동과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지만 국제사회는 장애아동, 농촌과 산간 지역 아동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의 교육 기회가 평등하지 못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⁷²⁷ 2020년에는 원격교육법을 신설해 지리적 교육 장벽을 해소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교육 기자재 구비의 차이가 있어 도서, 산간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보기

724_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PR Kore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Doc. CRC/C/PRK/CO/5 (2017), para. 46.

725_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DPR Korea,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 Doc. CEDAW/C/PRK/CO/2-4 (2017), para. 34.

726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7.

727_ UN Doc. A/HRC/WG.6/33/PRK/2 (2019), para 73, 96.

어렵다. 또한, 생활고 때문에 장기결석하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다수의 증언은 지리적 장벽보다 경제적 접근성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7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6년에 고급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 집안일과 아버지 발일을 돕는 일이 많아 학교에 안 갔으며, 학교에서 내라는 것이 많은 것도 이유였음. 담임 교사가 집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찾아왔지만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했음. | NKHR2020000041 2020-10-31 |
| 정말 가난한 애들은 이름만 (학적부에) 올리고 (학교에) 안 감. 집에서 그런 아이들은 농사를 짓고, 금 캐러 금장에 감. | NKHR2020000002 2020-05-15 |
| 돈을 못 내서 학교에 안 가도 내버려 둬. | NKHR2020000003 2020-05-15 |
| 생활고 때문에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면서 이탈 학생들이 줄고 있음. | NKHR2020000017 2020-07-04 |
| 학교에서 잡다하게 요구하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결석하기도 하는데, 한 반에 1~2명 정도였음. | NKHR2020000023 2020-07-06 |
| 학교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어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음. 한 반에 50명 정도인데 10명 정도는 안 나왔음. 결석 학생이 있으면 학생도 보내보고 장기결석하면 선생님이 찾아감. 돈 없어서 못 나간다면, 경제 부담을 면제해줄 테니 나오라고 설득하기도 함. 교원은 학생들 출석을 이 떨어지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지만, 빈곤계층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음. | NKHR2020000038 2020-09-26 |
| (학교에 내는 비용) 진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몇 십 원씩 더 내더라도 메우는 편임. 본인이 위축감이 들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없음. 결석하면 학생들이 데리러 감. 마을별로 분조가 있어서 문 두드리고 이름 부르면서 아프다면 진짜 아픈지 확인함. 부모님 일 도와주는 학생들이 많아서 가서 체크하고 항상 데리러 감. | NKHR2021000003 2021-08-19 |
| 도시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는 드물고 중, 고등학교까지는 공부해야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농촌의 경우에는 생활고 때문에 힘들. | NKHR2021000005 2021-08-20 |
| (꼬마계획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못 내는 학생은 한 두 명 정도 되는데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던가 다른 일을 하라고 일을 시키고 함. 모래를 나르거나 청소를 혼자하거나 해야 함. | NKHR2021000008 2021-09-07 |
| 꼬마계획인데 어머니 수입이 안돼서 못 냈고 선생이 자꾸 때림. 맞기 싫어서 학교 안가고 거짓말하고 다른 곳에서 놀고 함. | NKHR2021000023 2021-10-24 |
| 파찰, 플라스틱, 비닐, 폐지, 병 등을 가져오라고 했고 부담스러웠음. 지방은 식량이 부족해서 결석하게 됨. 산에 가서 뭘 캐든가 했음. | NKHR2021000025-2 2022-06-30 |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해산시 외곽에는 생활이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 간혹 있음. 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찾으러 감. | NKHR2022000002 2022-05-18 |
| 돈을 못 내면 학생들이 주눅이 들고 학교에 못 다니는 학생들이 생김. 학 생들이 집단적으로 학교를 못나오면 조치가 있으나, 소수이면 결석해도 그냥 방치함. | NKHR2022000010 2022-06-09 |

북한의 전반적 도로상황이나 대중교통 상황, 원격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학생들의 실제 교육 접근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들 다수가 절대빈곤 계층이다. 지리적 격리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경제적 접근성의 차별과 중첩되어 왔다. 즉 지방이나 농촌,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가계 형편이 좋지 않을 경우 학교에 내야 하는 각종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학교생활에서의 심리적인 위축과 결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내지 못해 교사의 질책과 벌을 받고, 상당한 부담을 느껴 장기결석하거나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⁷²⁸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 학급의 간부가 되고 교사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⁷²⁹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동일하지 않는 대

728_ NKHR2020000001 2020-05-15; NKHR2020000027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1000010 2021-09-08; NKHR2021000015 2021-09-16; NKHR2021000023 2021-10-24 위 다수의 증언.

729_ NKHR2021000026 2021-11-10; NKHR2021000028 2021-11-13.

우가 공개적인 차별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증언하였다.⁷³⁰

빈곤계층의 아동은 입학하지 않고 농사를 짓거나 집안 일을 돕는 경우가 많으며,⁷³¹ 일부 교사가 경제 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기도 하지만⁷³² 일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⁷³³

다. 사회주의교육 강조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포함한 교육의 형식과 본질이 피교육자이자 교육권의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수용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제29조에서 아동 전인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보고서에서 아동권리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게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태는 이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2019년

730_ NKHR2021000025 2021-11-09.

731_ NKHR2020000031 2020-08-03; NKHR2020000038 2020-09-26; NKHR2020000041 2020-10-31; NKHR2021000005 2021-08-20; 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1000025-2 2022-06-30 외 다수의 증언.

732_ NKHR2021000018 2021-02-20; NKHR2021000003 2021-08-19; NKHR2021000007 2021-09-06; NKHR2022000022 2022-06-21.

733_ 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17 2020-07-04; 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1000009 2021-09-07 외 다수의 증언.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는 정치이념과 선전 이주로 진행되는 수업을 언급하며, 교육과정의 탈정치화를 즉각 이행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⁷³⁴ 북한은 교육법 제3조에서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29조 교육의 내용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보편적 차원의 전인교육으로 전환되기는 요원해 보인다.⁷³⁵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유치원을 다니던 자녀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동화처럼 배웠다고 증언하였다.⁷³⁶ <표 III-18>은 현행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전 과정을 거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가계에 대한 과목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의무적 군사훈련은 아동교육의 목표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734_UN Doc. A/HRC/WG.6/33/PRK/3 (2019), paras. 85, 87.

735_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 시켜야 한다.

736_NKHR2020000010 2020-05-16.

표 III-18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

| 학교급 | 교과목 |
|-------|--|
| 소학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 사회주의도덕, 국어, 영어,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 |
| 초급중학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사회주의도덕, 조선지리,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정보기술, 기초기술, 체육, 음악무용, 미술 |
| 고급중학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력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현행 당정책, 사회주의도덕과 법, 력사, 지리, 심리와 논리, 국어문학, 한문,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체육, 예술, 군사활동초보 |

출처: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65.

한편, 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건강, 교육, 발달을 위협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의 학생들은 교육의 일환이란 명목 하에 농촌작업, 건설작업 등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다. 학생들을 동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⁷³⁷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아동들의 학습, 휴식 및 여가권,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저해하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⁷³⁸

라. 학습자 선택권 제한

교육에 있어서의 적합성이란 피교육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교육환경이 보장되고, 각각의 발달과정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737_ 교육에 있어서의 수용성 결여 문제는 ‘IV. 취약계층, 2. 아동’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738_ UN Doc. CRC/C/PRK/CO/5 (2017), para. 46.

제공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이 교육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의 학생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개인 간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외에 직장, 사회단체, 각종 사회시설들이 교육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제도, 방향, 내용, 방법을 국가, 특히 당이 결정한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안과 교재를 편찬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도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이다. 그 결과 단위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2013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적은 시수이지만 지역별 선택교과가 도입되었으나,⁷³⁹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 이외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며 사립교육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나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로 인한 경직성은 북한의 교육과정 및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고의 변화와 시대적 혁신을 반영할 수 없게 한다.

739_ 김지수 외,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p. 198.

마. 평가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교육의 내용, 형태, 방법을 비롯해 교육 여건과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⁷⁴⁰ 무상교육의 실질적인 실현과 전반적인 교육권 향상을 위한 국가들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⁷⁴¹ 북한은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교육내용도 실용적이고 포괄적으로 최신화 되었음을 강조하였다.⁷⁴² 그러나 북한의 교육현황은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합성의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각각의 기준에서 일부 개선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상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 및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보다 보편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며, 기본적인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이전됨에 따라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가정

740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42~44.

741_UN Doc. A/HRC/42/10 (2019), paras. 126.150~126.153; 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742_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p. 22,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6, 2021).

형편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이 농업, 건설, 정치행사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동원으로 인해 심각한 저해를 받고 있는 현실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권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5

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사회권규약도 당사국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사회보장권은 사회권규약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⁷⁴³ 또 사회보장권은 빈곤을 감축 및 완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⁷⁴⁴

표 III-19 국제사회에서의 사회보장 관련 규약

| 조항 | 내용 |
|---------------|---|
| 세계 인권 선언 제22조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 사회권 규약 제9조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743_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1.

744_ *Ibid.*, para. 3.

북한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표 III-20>에서 보듯이 다양한 법령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단순히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제도들이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요망된다. 이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회보장권을 적절히 보장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령, 가족 및 아동, 질병 및 장애, 산업재해, 이렇게 4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III-20 사회보장 관련 법규

| 사회보장의 범주 | 관련 법규 | |
|----------------|-------|----------------------------|
| | 기본법 | 특별법 |
| 건강관리 | |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
| 질병 | |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
| 고령 | | 연로자보호법 |
| 실업 | |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
| 산업재해 | 사회보장법 | |
|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 |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여성권리보장법 |
| 모성 | | |
| 장애 | | 장애자보호법 |
| 유족 및 고아 | | 사회보험법 |

가.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연로연금

북한에서 연로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경우 매 월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는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연로연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⁴⁵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법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⁷⁴⁶ 지급되더라도 연금액이 노후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고령자의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⁷⁴⁷ 그러다 보니 아예 수령하려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⁷⁴⁸ 또 여성은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속기간 2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⁷⁴⁹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할머니가 연로보장 대상으로 한 달에 북한돈 350원을 받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사탕 두 알 정도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⁷⁵⁰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증언자의 아버지가 매달 북한돈 700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으로는 밥 한 끼 사 먹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증언했다.⁷⁵¹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여자는 55세, 남자는 60세 이상이면 주민센터에서 1년에 북한돈 500~6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쌀 1kg도 살 수 없는 금액이라 자식들이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⁷⁵²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모친이 연로보장금으로 한

745_ NKHR2013000065 2013-04-02; NKHR2021000002 2021-08-13.

746_ NKHR2019000018 2019-05-07; NKHR2019000081 2019-09-25.

747_ NKHR2019000002 2019-04-08; NKHR2020000010 2020-05-16, NKHR2020000011 2020-06-15; NKHR2020000044 2020-10-31; NKHR2021000005 2021-08-20 외 다수의 증언.

748_ NKHR2020000012 2020-06-15.

749_ 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44 2020-10-31.

750_ NKHR2022000018 2022-06-15.

751_ NKHR2022000025 2022-06-23.

752_ NKHR2022000022 2022-06-21.

달에 600원을 받았다고 하며,⁷⁵³ 역시 2017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아버지가 매달 1,600원씩 연로연금을 받았었는데, 1월분이 4월에 들어오는 식으로 밀려서 들어왔다고 한다.⁷⁵⁴ 또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한 달에 800~1,500원 정도 나온다고 증언했으며,⁷⁵⁵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신이 탈북할 때까지 연로보장금을 매달 870원씩 지급 받았는데, 그마저도 인민반장이 대신 수령하여 인민반 과제를 제하고 주었다고 증언하였다.⁷⁵⁶

표 III-21 부족한 연로연금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한 달에 많아야 6,000원 정도 연금이 지급되는데, 하루 이틀 생활하는 비용밖에 안 된다고 함. | NKHR2018000002 2018-03-12 |
|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7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 국정 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이어서 현실의 시장가격과 맞지 않는다고 함. | NKHR2018000006 2018-03-12 |
|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한 달에 700원씩 지급받았는데 이 돈으로는 두부 한 모도 살 수 없었다고 함. | NKHR2019000016 2019-05-07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한 달에 한번 7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함. | NKHR2019000025 2019-05-18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연로연금으로 800원~1,500원 정도 지급된다고 함. | NKHR2019000035 2019-06-03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에게 850원 정도의 연로보장금이 나왔는데, 몇 달 동안 수령하지 않다가 4,000~ 5,000원 정도를 한꺼번에 받아 술 한 병 사먹었다고 함. | NKHR2020000025 2020-07-06 |

753_ NKHR2017000055 2017-07-31.

754_ NKHR2018000040 2018-05-08.

755_ NKHR2019000035 2019-06-03.

756_ NKHR2020000017 2020-07-04.

일부 증언에 따르면 공로 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에 다소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을 위한 국가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데, 병원 치료 및 약 등을 지원이 있었다고 했다.⁷⁵⁷ 하지만 연금액이 너무 낮은 수준인 관계로 그러한 차별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주민들은 연로보장금이 없지만, 본인 아버지가 훈장을 받아 연로보장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⁷⁵⁸ 그러나 그 보조금이라는게 하루나 이틀치 식량분 밖에 되지 않아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증언했다.⁷⁵⁹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시어머니가 훈장을 받았고, 공로자라고도 불려서 다른 사람보다 연로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한 달 연금액은 2,700원에 불과했다.⁷⁶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기사급수(국가훈장 1급)를 받아 2015년까지 한 달에 4,000원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편에 속했지만, 그래도 연로연금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⁷⁶¹

한편, 고령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땅을 분배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소출을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머니가 연금을 받지는 못했

757_NKHR2021000005 2021-08-20.

758_NKHR2022000003 2022-05-19.

759_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2000002-2 2022-07-06.

760_NKHR2017000092 2017-09-25.

761_NKHR2019000013 2019-05-07.

으나, 농장에서 연로보장자들에게 토지 100~150평을 주고 소출을 모두 갖도록 했다고 증언하였으며,⁷⁶² 2017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농촌에서 연로보장을 받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어 소출을 갖도록 한다고 증언하였다.⁷⁶³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연로연금 외에도 1인당 200평씩의 토지 분배가 있었다면서, 자신의 부모님은 평지에 있는 관찮은 땅 400평을 받아 두부콩을 재배했다고 증언하였다.⁷⁶⁴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보아,⁷⁶⁵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국가 차원보다는 일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연로연금이 노후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다 보니, 고령층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양로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시어머니가 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 장마당에서 약장사를 했으며, 식량은 아들이 보내주었다고 한다.⁷⁶⁶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연로연금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면서, 자식이 간부 등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령층은 폐기밭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움직여야 하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양로원에 들어간다고 증언하였다.⁷⁶⁷ 2019년 탈북

762_NKHR2017000004 2017-04-10.

763_NKHR2017000016 2017-05-08.

764_NKHR2020000040 2020-10-31.

765_NKHR2020000016 2020-07-04; NKHR2020000017 2020-07-04.

766_NKHR2018000055 2018-07-02.

한 북한이탈주민도 남편에게 지급되는 연로보장 금액이 적어 중국에 있는 자식들이 보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증언하였다.⁷⁶⁸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연로보장으로 너무 적은 돈이 지급되므로, 보통은 가족들이 부양을 하며, 양로원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양로원에 대해서는 갈 곳 없는 할머니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하였다.⁷⁶⁹

한편 북한에서도 고부갈등으로 인해 양로원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딸이 있으면 딸은 엄마를 부양할 수 있는데, 아들은 며느리 때문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어 양로원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법적으로 딸이 있으면 양로원에 못 들어간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⁷⁷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양로원에 들어가고 싶어한다고 들었고, 증언자가 현상해 준 양로원 사진 속 어르신들의 표정이 오히려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⁷⁷¹

북한에서 연로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연로자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⁷⁷²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모셔

767_NKHR2017000043 2017-07-03.

768_NKHR2020000025 2020-07-06.

769_NKHR2020000023 2020-07-06.

770_NKHR2022000002-2 2022-07-06.

771_NKHR2022000025 2022-06-23.

772_NKHR2022000022 2022-06-21.

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생활이 각박해지고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 노인들과의 불화가 많이 발생한다고 증언했다.⁷⁷³

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 부재

북한에는 주요 소득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경우 주민들은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가정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국가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⁷⁷⁴ 2017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고 한다.⁷⁷⁵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또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없다고 증언하였다.⁷⁷⁶ 2018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자신의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773_NKHR2022000025 2022-06-23.

774_NKHR2017000060 2017-07-31.

775_NKHR2017000063 2017-07-31.

776_NKHR2018000093 2018-08-27.

한다.⁷⁷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가정경제에 위기가 와도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없다고 말하였다.⁷⁷⁸

일부 지원이 있다는 증언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 규모 역시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민반에서 반상회에 호소해서 이웃들의 쌀을 모아 한두 번 도와주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⁷⁷⁹ 또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국가가 식량을 주거나 식당표를 줘서 돈을 안 내고 국수를 먹을 수 있게 하며, 인민반에서 조사를 해서 인민반장이 보고하면 읍사무소에서 가끔씩 관리를 한다고 증언하였다.⁷⁸⁰

다. 질병·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미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현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장기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⁷⁸¹

하지만 북한에서는 질병·장애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777_NKHR2019000030 2019-06-03.

778_NKHR2020000029 2020-07-06.

779_NKHR2017000052 2017-07-03.

780_NKHR2018000094 2018-08-27.

781_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14.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동생이 어릴 때 다리를 다쳐 조금 절룩거리는 장애가 있었는데,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없었다고 하면서,⁷⁸² 오히려 장애인들이 일하는 경로동 직장에 모여서 일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⁷⁸³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경로동이라는 곳에서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으나, 그 혜택이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⁷⁸⁴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시동생은 병으로 시력을 상실해서 사회보장 수속을 밟았는데, 이는 장애인 수속을 안 밟으면 무직으로 걸리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같은 것은 한 푼도 없었고, 본인 부부가 먹여 살렸다고 한다.⁷⁸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도 이와 유사하다. 증언자의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절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보장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근무하는 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더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⁷⁸⁶

이와 달리, 일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보장을 받은 환자들은 병원 확인만

782_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2000007 2022-05-25.

783_NKHR2022000003 2022-05-19.

784_NKHR2022000025 2022-06-23.

785_NKHR2018000101 2018-10-01.

786_NKHR2019000045 2019-07-01.

되면 농장 일에 불러내지 않으면서도 식량을 일반 농장원의 절반 정도 분배해 주었다고 한다.⁷⁸⁷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은 부재하거나 형식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영예군인에 대한 생계지원에 관해서는 ‘IV. 취약계층, 3. 장애인’에서 살펴본다.

라.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취약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상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탄광에서 다쳐서 장애인이 되면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별게 없다고 말했다.⁷⁸⁸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농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거나 기계에 발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노동능력상실연금 지급 등을 통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⁷⁸⁹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부상을 입어도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없으며, 나온다고 해도 북

787_NKHR2017000092 2017-09-25.

788_NKHR2021000006 2021-09-03.

789_NKHR2019000046 2019-07-01.

한돈 3,000~5,000원 정도에 불과해 굳이 타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⁷⁹⁰

또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철도건설대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2014~2015년경 일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으나, 생활비나 병원비 지원이 일절 없었다고 한다.⁷⁹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공장에서는 다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은 없으며, 공장과 작업반에서 자그마한 보상을 해주는 정도라고 증언하였다.⁷⁹²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비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산의 경우 조금 지원을 해준다거나,⁷⁹³ 노동 중 부주의로 다친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불한다는 증언도 있긴 하지만,⁷⁹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6월 아파트 건설장에서 돌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비는 본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⁷⁹⁵ 또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병원에 근무할 당시, 아파트 건설현장 5층에서 떨어져 다친 5명의 노동자가 후송되어 이 중 2명은 사망하

790_NKHR2020000021 2020-07-06.

791_NKHR2018000038 2018-05-08.

792_NKHR2020000005 2020-05-15.

793_NKHR2017000098 2017-10-23.

794_NKHR2017000111 2017-11-20.

795_NKHR2018000130 2018-11-19.

고 일부는 다리에 장애를 입었는데, 병원비나 약값은 개인이 직접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⁷⁹⁶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부상을 입어도 공장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배인이 성격이 괜찮으면 약 사먹을 돈을 좀 주는 정도라고 증언하였다.⁷⁹⁷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기업소나 공장에서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⁷⁹⁸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산재 노동자 중 이렇게 지원받는 노동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1년 동네에 거주하던 20대 초반 주민이 618 돌격대에서 기계에 깔려 사망했는데, 부모에게 강냉이 200kg이 지급되었다고 증언하며,⁷⁹⁹ 2017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2017년 5월에 기차굴이 무너져 일하던 8명이 사망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⁸⁰⁰ 2017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학생이 일을 하다 떨어져 사망했는데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⁸⁰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

796_NKHR2018000102 2018-10-01.

797_NKHR2020000021 2020-07-06.

798_NKHR2020000016 2020-07-04.

799_NKHR2017000018 2017-05-08.

800_NKHR2017000111 2017-11-20.

801_NKHR2018000130 2018-11-19.

주민 역시 2018년에 공사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다고 해서 국가에서 병원비가 전혀 나오지 않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⁸⁰²

그러나 해외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일시금을 준다는 증언도 일부 확인되었다. 러시아에서 6년간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일하다 죽으면 집으로 보내주는 돈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⁸⁰³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 대신 명예를 높여 주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이것이 유가족의 생계보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군인 신분으로 평양 여명거리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당시 매일 사망사고가 났고 그 경우 훈장 하나 보내는 것이 다였다고 증언했다.⁸⁰⁴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전 자신이 일하던 돌격대에서 낙석을 몸으로 막다가 22세 청년이 사망했는데, 김정일 청년영예상을 주고 가족들에게 보상을 주긴 했으나 많이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⁸⁰⁵ 또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노력영웅 등의 호칭을 부여하기만 할 뿐 유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⁸⁰⁶

802_NKHR2019000045 2019-07-01.

803_NKHR2021000020 2021-10-16.

804_NKHR2021000023 2021-10-24.

805_NKHR2017000111 2017-11-20.

806_NKHR2017000051 2017-07-03.

마. 평가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권을 존중·보호·실현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여, 가정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던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질병, 사망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가정은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부재하거나 형식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상으로는 연금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만 지급되고 있어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동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권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은 북한 당국에게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Chapter IV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

1

여성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남녀 평등권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서는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도 여성의 권리와 연관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인권규약은 여성의 권리를 특수성 속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실현의 형태로만 보장하려 하는 한계점이 있다. 1981년 9월 3일 발효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여성 관련 국제문서와 구별된다.⁸⁰⁷

807.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 제6부,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6조)는 차별 철폐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7조~제9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제3부(제10조~제14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4부(제15조~제16조)는 법적능력,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제5부(제17조~제22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보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부(제23조~제30조)는 발효요건과 개정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다. 북한은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하였다.⁸⁰⁸ 북한은 법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남녀평등을 보장해 왔고, 헌법과 가족법에서 남성과 평등한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권과 가정생활에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⁸⁰⁹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고자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했으며,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⁸¹⁰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성보건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2021년 6월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보장’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⁸¹¹ 그러나 2022년 제49차 회기에서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는 고용에 대한 기회 불평등, 차별적인 법제를 비판했으며,⁸¹² 2022년 제76차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도 이와 동일하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⁸¹³

808_UN Doc. CEDAW/C/PRK/2-4 (2016), para. 2.

809_ *Ibid.*, paras. 9~10.

810_ *Ibid.*, para. 11.

811_ 『VNR 보고서』, pp. 23~24.

812_UN Doc. A/HRC/RES/49/22(11 April 2022), para. 1 (b).

북한은 여성 인권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성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에 근거한 관습적 구별과 배제는 직·간접적으로 북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1)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보고서와 2021년 VNR 보고서에서 양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인식 속에는 남존여비의 고정관념과 정형화된 성역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⁸¹⁴ 제도적으로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관습과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려고 표명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고정된 성역할은 성별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의식에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13. UN Doc. A/RES/76/177(10 January 2022), para. 2 (a)(xiii).

814. NKHR2021000017-2 2022-05-26; NKHR2021000019-2 2022-06-26; NKHR2021000025-2 2022-06-30; 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21 2022-06-21; NKHR2022000027 2022-07-01; NKHR2022000028 2022-07-04.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여자는 집에서 세간살이 잘 하고 아이 잘 낳아 잘 키우고 남편 공대 잘하고, 남자는 나가서 돈 잘 벌고 가정 하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을 구분했다.⁸¹⁵ 2021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사회적으로 여자는 온순해야 되고 남자를 잘 챙겨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⁸¹⁶ 2022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부부간 반말을 삼가고 남자가 구실을 못해도 남자를 존대해야 한다고 증언했다.⁸¹⁷

고정된 성 역할 인식은 여성도 가지고 있었다.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가사 일이 여자 몫이며,⁸¹⁸ 대학 세 개 나오는 것보다 시집 잘 가는 것이 낫다고 증언했다.⁸¹⁹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여성은 자신들이 경제력을 갖추면서 살기 좋아진 점도 있으나 봉건주의적 사고가 남아있다고 증언했다.⁸²⁰ 따라서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육아는 무조건 여성의 몫이며⁸²¹ 남성이 부엌일을 하면 여성이 비난받기도 한다.⁸²² 한편, 여성이 오히려 남성의 가사 참여를 거부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⁸²³

815_NKHR2021000019-2 2022-06-26.

816_NKHR2022000030 2022-07-22.

817_NKHR2022000032 2022-07-23.

818_NKHR2022000028 2022-07-04.

819_NKHR2022000026 2022-06-26.

820_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19 2022-06-16; NKHR2022000034 2022-08-08.

821_NKHR2022000013 2022-06-10.

822_NKHR2022000019 2022-06-16.

823_NKHR2022000034 2022-08-08.

교육에서의 남녀차별은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사회적인 인식과 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기혼이었던 고모가 평양까지 가서 대학원을 다니자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여자’라고 비난받았다고 증언했다.⁸²⁴ 이와 달리 사회적 통념을 극복한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아들과 딸을 똑같이 공부시켰으며,⁸²⁵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지만 고생하며 딸들을 다 대학 공부시켜 아들 부럽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했다.⁸²⁶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특정한 문화생활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평양을 제외하고 여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도 단속에 걸려 벌금 딱지를 낸다고 증언하였다.⁸²⁷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도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면 단속된다고 증언했다.⁸²⁸ 반면에 온천, 스키장 같은 여가 생활 및 레크리에이션 참여는 경제력 차이가 크지,⁸²⁹ 남녀차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³⁰ 그러나 시골 지역은 성에 대

824_NKHR2022000021 2022-06-21.

825_NKHR2022000012 2022-06-10.

826_NKHR2022000026 2022-06-26.

827_NKHR2022000027 2022-07-01.

828_NKHR2021000019-2 2022-06-26.

829_NKHR2022000026 2022-06-26.

830_NKHR2022000018 2022-06-15;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25 2022-06-23; NKHR2022000028 2022-07-04.

한 고정관념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골이 봉건적인 사고가 남아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⁸³¹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 남성우위 문화를 일부 개선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여성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남성이 요리와 빨래 등 가사에 참여하고 육아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⁸³² 특히 2018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⁸³³ 남아선호 현상도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⁸³⁴ 2019년에 탈북한 60대 여성은 “딸을 낳으면 심장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맹장을 낳는다”고 할 정도로 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장래를 책임지는 것은 아들이므로 남아를 낳기를 원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⁸³⁵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제도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증진되었다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었다. 남녀평등법이 발표된 7월 3일과 3.8부녀절에 여성평등에 대한 강연이나 설교를 통해 남녀평등에 대한 개선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며,⁸³⁶ 11월 6일 ‘어머니 날’ 제정은 여성을 우대하고 여성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⁸³⁷ 그

831_NKHR2021000019-2 2022-06-26.

832_NKHR2022000004 2022-05-20; 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1000024-2 2022-06-28.

833_NKHR2022000007 2022-05-25.

834_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13 2022-06-10.

835_NKHR2021000017-2 2022-05-26 .

836_위의 증언.

837_NKHR2021000024-2 2022-06-28.

러나 여맹이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 당에서 돌격대 역할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판적 증언도 있었다.⁸³⁸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기성세대와 조금씩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들은 집안일을 남녀가 함께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³⁹ 또한, 남한 드라마의 영향으로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⁸⁴⁰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르며,⁸⁴¹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회로 바뀌었으며,⁸⁴² 고정관념은 남아있어도 남녀가 가사를 함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서⁸⁴³ 성역할과 남존여비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별과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남성의 가사 참여가 누적되면서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도 다소 전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8_NKHR2021000017-2 2022-05-26.

839_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1000023-2 2022-05-31;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25 2022-06-23.

840_NKHR2021000019-2 2022-06-26.

841_NKHR2022000007 2022-05-25;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34 2022-08-08.

842_NKHR2019000077 2019-09-25; NKHR2022000008 2022-05-27.

843_NKHR2022000007 2022-05-25;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1000019-2 2022-06-26; NKHR2022000034 2022-08-08.

표Ⅳ-1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8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아직 봉건이 심해서 남자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증언함. 장가가서 아이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은 많이 변했음. 또한,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남자들은 사회주의를 지키자는 김정은 방침도 나오고 국제부녀절, 어머니절처럼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생겨나고 있음. | NKHR2022000007 2022-05-25 |
| 2019년에 탈북한 60대 여성은 여자들이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북한에서는 딸을 낳으면 심장을 넣고 아들을 낳으면 맹장을 낳는다고 말함. 그러나 장래를 책임지는 것은 아들이므로 남아를 낳기를 원함. 여성이 혁명의 한족 수레바퀴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여자들이 돌격대로 밀고 나가게 하느라 그런 거지, 여자들한테 무슨 자유를 주고 뭘 줘서 그런 게 아님. | NKHR2021000017-2 2022-05-26 |
|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최근 딸을 선호하지만, 아직도 봉건적인 게 있어서 살림은 여자가, 남자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함. 최근에는 여자가 돈을 번다는 인식이 커서 남자가 집안일을 해줌. 하지만 아버지는 청소는 하지만 음식은 안 했음. 제부는 밥도 잘했음. | NKHR2022000008 2022-05-27 |
|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가 다르다고 증언함. 여자가 요리와 빨래 등 가사를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함. 남자들은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요즘엔 약간 변해서 도와주기도 하나, 도와주는 게 엄청 큰일을 하는 것처럼 여김. 집안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고정되지는 않았으나 변화하고 있음. | NKHR2022000010 2022-06-09 |
|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부모가 오빠와 본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키우고 공부시켰다고 증언함. 그러나 대학에서 교실 청소는 여자 몫이라고 하여 여학생이 본인 한 명이었는데 혼자 했음. | NKHR2022000011 2022-06-10 |
|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여성들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살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힘들다고 증언함. 아무리 여자가 권한을 가지고 경제력이 있어도 남자 그늘 아래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음. 남자가 아이를 업고 다니면 '저 머저리 새끼 아니야'라면서 웃고 아직 봉건주의적 사고가 남아있음. 청소나 밥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무조건 엄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함. | NKHR2022000013 2022-06-10 |
|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본인 세대의 경우 남자가 집안일, 부엌일을 하면 여자가 돼먹지 못해 시킨다는 말을 한다고 증언함. | NKHR2022000019 2022-06-16 |
|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집에서 아들을 위해서 본인을 낳고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함. 아직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아들을 원함. | NKHR2022000021 2022-06-21 |
|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남자는 군 복무, 대학 등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여자는 대학 세 개 나오는 것보다 시집 잘 가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있다고 증언함. | NKHR2022000026 2022-06-26 |
|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함. 여자 할 일은 집에서 세간살이 잘 하고 아이 잘 낳아서 잘 키우고 남편 공대 잘하고 남자 할 일은 나가서 돈 잘 벌고 가정 하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남자는 위신이 있어서 여자가 나가서 벌어와도 집에서 큰소리침. 남자는 여자한테 세야 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예, 예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세대 아이들도, 고향 친구들 보면 남한 드라마 보면서 인식이 달라짐. | NKHR2021000019-2 2022-06-26 |

Chapter I
북한문적 및 연구방법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태

Chapter IV
취업개황

Chapter V
주요사안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20년에 탈북한 30대 남성은 여자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힘들다고 증언함. 남자는 직장에 나가고 여자가 부양이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더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도 없음. | NKHR2021000025-2 2022-06-30 |
| 2018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올라간 것은 없으나 가정 내에서 여자가 돈을 벌면 남자는 자연히 여자한테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증언함. | NKHR2022000029 2022-07-22 |
| 2021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사회적으로 약간 여자는 온순해야 하고 남자를 잘 챙겨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함.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여성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변하고는 있으나 고정관념은 여전히 있음. 시내에 아침, 저녁 모두 남자가 하지만 강원도 ○○은 아침은 여자가 하고 저녁은 남자가 하는 생활이 보편화 되었음. 육아의 경우 남자가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야 하고 젖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붙어있어야 함. | NKHR2022000030 2022-07-22 |
| 2022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부부간 반말을 삼가고 남자가 구실을 못해도 남자를 존대해주는 사상이 아직 존재한다고 증언함. 김일성 시대에는 가족 배급표가 세대주 남자에게 있어서 세대주에게 권한이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었음. 여자들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니까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남자들이 돕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짐. | NKHR2022000032 2022-07-23 |
| 2018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여자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말참견하면 안 된다 등 사회에서부터 가정까지 차별이 좀 있다고 증언함. | NKHR2022000033 2022-08-08 |
| 2018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예전에는 아들을 많이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딸이 있어야 엄마가 편하다고 해서 딸을 많이 선호한다고 증언함. 자식 세대는 좀 괜찮으나 부모 세대들을 보면 여자만 부엌일을 해야 한다는 게 있었음. 본인의 아버지는 부엌일을 하려 했지만 엄마가 싫어했고, 다른 집에서는 점심에 외출했다가도 남편 밥상 차리려고 들어가는 여자들도 있음. 그러나 부모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가 지금 많이 변하는 것 같음. 북한에서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에 와서 부엌일도 해주고 설거지, 빨래도 해줬음. | NKHR2022000034 2022-08-08 |

(2) 여성의 제한적 정치참여와 사회진출

북한은 2016년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 여성이 남성과 정치 및 공공생활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⁸⁴⁴ 또 2019년 UPR 보고서에서는 유능한 여성을 주요 직

844.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75~83.

책에 임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8년에도 부처 및 부처급 기관에서 여성 지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⁸⁴⁵ 2021년 VNR 보고서에서는 2015년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여성 대의원 비율이 20.2%, 2019년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여성 대의원 비율은 17.6%, 지방인민회의 여성 대의원 비율은 25% 이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⁸⁴⁶

그러나 2021년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조선노동당, 내각 등 고위급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⁸⁴⁷ 고위급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⁸⁴⁸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2021년 1월 18일 내각에 여성들이 임명되었지만 보고서 제출 시점에는 여성이 없다고 기술했다.⁸⁴⁹

한편, 2018년 이후에는 김여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성혜 통일선전부 통일선전전략실장,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 주요 여성 고위직 인사로 활동했다. 2022년 6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845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6.

846_『북한 VNR 보고서』, p. 24.

847_UN Doc. A/76/242(28 July 2021), para. 26.

848_UN Doc. A/76/242(28 July 2021), para. 55 (i).

849_UN Doc. A/HRC/46/51(2 July 2021), para. 10.

외무상으로 승격되었다. 최선희의 외무상 발탁은 북한 여성 최초의 장관급 간부 임명이다. 정치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로 등용된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여성 사회진출의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여성들의 간부 임용이 늘었다고 다수가 증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당증을 가진 여성은 무조건 간부로 등용되며⁸⁵⁰ 판사, 보위부, 보안원을 하는 여성들도 많고,⁸⁵¹ 여성 군관도 많아졌으며⁸⁵² 여성 대의원도 늘어났다고 증언하고 있다.⁸⁵³ 또한,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지배인, 작업반장, 분조장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⁸⁵⁴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비서, 당일군, 초급당비서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며 여성 후보들이 일군이나 반장, 지배인을 한다면 지지율이 더 높아 여성 지배인이 3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⁸⁵⁵

850_NKHR2022000003 2022-05-19.

851_NKHR2021000023-2 2022-05-31;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1000019-2 2022-06-26; NKHR2021000024-2 2022-06-28 외 다수.

852_NKHR2022000028 2022-07-04.

853_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23 2022-06-22; NKHR2022000027 2022-07-01; NKHR2022000028 2022-07-04 외 다수.

854_NKHR2022000026 2022-06-26; NKHR2022000028 2022-07-04.

855_NKHR2021000024-2 2022-06-28.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전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진 이유가 “여성을 간부로 등용하려는 국가 정책”⁸⁵⁶에도 있지만, “평등을 많이 논하고 여자들 우위가 많이 높아져서”⁸⁵⁷ “월등한 여자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⁸⁵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⁸⁵⁹는 인식이 사회가 발전해가며 점차 생긴 것에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에 여성은 ‘운전사’가 될 수 없다는 증언으로 보아 특정 직종에는 여성의 진출 제한이 남아있다.⁸⁶⁰

문제는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능력이 아니라 외모나 인맥과 같은 요소가 간부 등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북한 여성들 스스로도 성차별 인식을 내재화하는 점이다.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자신도 간부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배인이나 임명간부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를 “비위를 잘 맞춰서” 그런 것 같다고 증언했다.⁸⁶¹ 특히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여성의 외모가 뛰어난수록 사업에 유리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⁸⁶²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출신 성분이 좋고 남편의 직위와 같이 당의 신임을 받는 가족이 있어야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⁸⁶³ 여성의 간부 등용에 능력 외에 외모와 인맥

856_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30 2022-07-22.

857_NKHR2022000012 2022-06-10.

858_NKHR2022000028 2022-07-04; NKHR2022000030 2022-07-22.

859_NKHR2021000019-2 2022-06-26.

860_NKHR2022000026 2022-06-26.

861_NKHR2022000016 2022-06-11.

862_NKHR2021000024-2 2022-06-28; NKHR2022000032 2022-07-23.

863_NKHR2022000002 2022-05-18; NKHR2021000017-2 2022-05-26.

이 중요하다라는 증언은 여성의 사회진출 이면에 존재하는 성차별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은 직급과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보수나 임금에서 남녀차별이 없었으며⁸⁶⁴ 기술 및 기능 자격과 급수 판정에서도 남녀차별이 없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⁸⁶⁵ 반면에 “여자들은 승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⁸⁶⁶는 증언이 있어 여성이 승진 등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2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진출 실태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의 보안서나 판사직에는 남자 비율이 많고, 인민참사원에 여자도 가끔 있다고 증언함. 여맹위원장, 시농촌경영위원장, 상업관리소 소장 자리에 여자가 있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없지는 않음. 2016년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여자였음. 평양 131부대에도 여자 수가 많아지고 있음. 군관도 여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별도 있음. 26세까지 하고 제대하기에 제한적임. 소좌, 중과 상좌는 가끔 있고 거의 소위, 중위에서 제대함. | NKHR2021000025-2 2022-06-30 |
|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여자 검사는 못봤으나, 여자 판사는 많이 보았다고 증언함. 김정은 시대에 와서 여자 보위부, 보안원이 많아졌으며,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도록 함. 2019년 대의원선거, 지방선거에도 여자가 많았음. | NKHR2022000021 2022-06-21 |
|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도 정치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자신이 아는 것도 많고 더 잘할 수 있어도 출신성분이 뒷다리를 잡아서 할 수 없었다고 증언함. 농장원 작업반장부터 시작해 관리위원장까지 하고 83제품 만드는 상점까지 막 만들었던 정춘실 영화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여성 인재를 발탁하는 정춘실 운동이 있었음. 그러나 여자는 초급당비서, 지배인이 아니라면 일반 회사에서 과장급을 해서 살림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음. 그런 직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면 하는 거고 생계유지가 안 되면 포기함. | NKHR2022000002 2022-05-18 |

864_ 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6 2022-06-26.

865_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25 2022-06-23.

866_ NKHR2022000010 2022-06-09.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 간부비율이 많아졌다고 증언함. 당증을 맨 여자는 무조건 간부로 등용시키고 정치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증언함. 여자들이 나라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여자들이 간부를 하는 게 응당해서 동 사무장이라던가, 여행위원장 이런 건 다 여자들이 함. 도당위원회 간부 비율이 아마 여자가 몇 명씩 많아짐. | NKHR2022000003 2022-05-19 |
| 2019년에 탈북한 60대 여성은 여자가 큰 직책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증언함. 여자는 계급적 토대가 좋아야 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접견자 여부에 따라 여성 비례 양성으로 간부로 등용시켜주기도 하나 매우 적음. 집안의 토대가 좋거나 집 안 누군가 당의 신임을 많이 받으면 간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음. 여자는 남자에 비해 사업 능력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북한에서 여자들은 좀 깔보는 게 많음. | NKHR2021000017-2 2022-05-26 |
|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에 본 군사재판의 판사가 여성이었다고 증언함. 군사재판을 위해 평양에서 내려왔고, 다른 사람들은 군복을 입었는데 여성 판사는 사복을 입고 왔음. | NKHR2021000023-2 2022-05-31 |
|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요새는 평등을 많이 논하고 여자들 우위가 높아지면서 당기관 등에 여자가 많이 진출했다고 증언함. 대학 동창도 ○○군당에 있다가 조직부로 가고, 이후 ○○교원대학 학장으로 갔음. | NKHR2022000012 2022-06-10 |
|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예전에는 여성 간부가 없었으나 요즘에는 많지는 않아도 있다고 증언함. 판검사에는 없었으나 보안원에 여성이 있었고, 대의원 선거 때도 여자가 있었음. | NKHR2022000013 2022-06-10 |
|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지배인이나 임명간부도 여자였다고 증언함. 기관장 회의에 가보면 높은 자리에 여자가 많고 남자들이 얼마 없음. 여자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비위를 잘 맞춰서 그런 것 같음. | NKHR2022000016 2022-06-11 |
| 함경북도 청진시 대의원에 여자후보가 있었으며, 인민위원장이 여자였음. 간호사들은 모두 여자고 간호장도 여자였지만, 병원장은 남자였음. | NKHR2022000023 2022-06-22 |
|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보안원이나 보위부원 중 여성을 본 적은 있으나 많지는 않음. | NKHR2022000025 2022-06-23 |
|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군의 대대장, 간부과에 들어간 여군들이 있었다고 증언함. 보안원은 여자가 좀 많으나 보위부에는 적음.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음.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남들 처럼 남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농장관리위원장에 드물게 여자들이 한 명씩 있고, 국가 기업소 지배인에도 여자가 있었음. | NKHR2021000019-2 2022-06-26 |
| 2020년에 탈북한 30대 남성은 여자 판사와 검사는 못봤지만, 변호사는 봤다고 증언함. 보위부에도 여성이 있으며, 검찰소는 검사 밑에서 경리 같은 걸로 일하는 여성들이 있음. 최근에는 권력기관의 30% 정도가 여성임. 주변을 봐도 지배인, 당비서, 당일군, 초급당비서 등이 많아짐. 사업이나 일군 할 때 미모를 많이 보며, 여자들이 사업을 잘함. 또한, 여자들이 일군이나 반장, 지배인 한다고 하면 지자율이 더 높음. | NKHR2021000024-2 2022-06-28 |
| 평안북도 신의주시 농장에도 여자 분조장이 많음. 분조장은 세간살이 잘 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더 잘함. 한 개 리의 리농장을 책임지는 관리위원장에도 여자들이 많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할 때 의석에 앉은 사람들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많음. | NKHR2022000028 2022-07-04 |

Chapter I
북한정치 및 연구방법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상태Chapter II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상태Chapter IV
취업개황Chapter V
주요사건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양강도 해산의 관리위원장이 여성이었음. 여성 기관장은 없었으나 지배인, 당위원장이 하는 사업대상 중 여성 단위책임자가 있었음. | NKHR2022000029 2022-07-22 |
| 2021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김정은 방침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많이 추천하는 시대라고 증언함. 김여정을 내세우면서 변한 것 같으며, 여성들이 사업을 잘해서 식당 사장이나 국가적인 기업소 고위직은 모두 여성들이 하고 있음. | NKHR2022000030 2022-07-22 |
| 2022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여자들이 높은 직위에 있는 게 쉽지 않다고 증언함. 여자들이 발전하려면 얼굴이 고와야 하고 간부들을 잘 사귀어서 그들이 밀어줘야 함. | NKHR2022000032 2022-07-23 |
| 2018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돈을 들여 도당간부 학교나 정치보위대학을 가야 직위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여자 간부가 많아졌다고 증언함. 동사무장이나 지배인, 도당학교에 여자들이 많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여성 간부를 많이 높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여성간부가 좀 늘었음. 여자도 노력하고 갖추기만 하면 간부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들이 딸 간부 시킨다고 군대도 많이 보냄. 물론 토대가 좋아야 하고 돈도 중요함. 김정은이 유학을 다녀와서 외국물을 먹었기 때문에 여성도 간부로 써주겠다고 한 것 같음. | NKHR2022000034 2022-08-08 |

(3)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북한의 가정생활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다. 북한에서는 남성만이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가정생활이 이러한 남성 ‘세대주’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가정의 가부장적 특성이 약화되고, 가정에서 세대주(남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확보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여성권리보장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요인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졌다고 증언했다.⁸⁶⁷ 여성이 생활을 유지하는 권한을 가지고

867_ NKHR201000026-2 2022-05-18; NKHR201000023-2 2022-05-31;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19 2022-06-16; NKHR201000019-2 2022-06-26. NKHR2022000028 2022-07-04.

있으며,⁸⁶⁸ 남자들이 집안일을 한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⁸⁶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녀평등 인식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최근 가계 살림을 여자들이 다 벌어서 하다 보니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⁸⁷⁰ 옛날에는 이혼이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인식이 그렇지 않아, 남편이 잘해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이혼을 당할까봐 무서워한다는 증언도 있다.⁸⁷¹ 여성의 경제력이 북한 사회 내부의 공고한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음주 및 폭력, 아편이나 빙두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⁸⁷²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이혼 성사가 어렵지만,⁸⁷³ 돈과 뇌물이 있다면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⁸⁷⁴ 평안북도 신의주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30대 북한이탈주민은 300달러를 재판소에 내면 서류 일체를 마련해 주고 이혼이 성립한다고 증언했다.⁸⁷⁵ 이혼에 필요한 비용은 북한돈 3천만원,⁸⁷⁶ 700달러⁸⁷⁷ 등으로 일정치 않았지만, 고액이 필요한 것

868_NKHR2021000023-2 2022-05-31.

869_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4 2022-06-23; NKHR2021000019-2 2022-06-26.

870_NKHR2020000019 2020-07-04.

871_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2000004 2022-05-20.

872_NKHR2021000017-2 2022-05-26.

873_NKHR2022000009 2022-06-05; NKHR2021000025-2 2022-06-30.

874_NKHR2022000004 2022-05-20;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1 2022-06-21; NKHR2021000024-2 2022-06-28; NKHR2021000025-2 2022-06-30 외 다수.

875_NKHR2022000028 2022-07-04.

876_NKHR2021000011-2 2022-05-31.

은 사실이다.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유책 여부를 떠나서 여성에게 흠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여성을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⁸⁷⁸ 그러다 보니 북한 여성들은 제도적인 결혼보다 동거를 통한 사실혼 관계를 선호하며, 몇 년 동거 후 결혼하는 ‘계약결혼’의 사례도 수집되었다.⁸⁷⁹

그러나 동거를 선택하더라도 사회 분위기와 남자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여자가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⁸⁸⁰ 또한, 결혼 적령기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⁸¹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결혼하더라도 늦게 한다는 것이다.⁸⁸²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의 생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혼이 매우 어렵고 이혼 시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⁸⁸³ 애초에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나빠지거나 사정이 생기면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⁸⁸⁴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이혼하면 입당이 불가하고 간부

877_ NKHR2022000008 2022-05-27.

878_ NKHR2022000007 2022-05-25.

879_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6 2022-06-11.

880_ NKHR2022000027 2022-07-01.

881_ 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33 2019-06-03; NKHR2019000035 2019-06-03; NKHR2019000077 2019-09-25; NKHR2019000067 2019-08-26; NKHR2020000006 2020-05-15; NKHR2020000045 2020-10-31; NKHR2022000011 2022-06-10.

882_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8 2022-06-15.

883_ NKHR2020000047 2020-11-28; NKHR2022000026 2022-06-26.

884_ NKHR2022000003 2022-05-19; NKHR2022000019 2022-06-16; NKHR2022000025 2022-06-23; NKHR2021000025-2 2022-06-30.

등용이 어려워서 결혼 등록을 나중에 하지만, 군인 장교나 의사와 같이 남자가 안정된 직업을 가진 경우엔 혼인 등록을 한다고 증언했다.⁸⁸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젊은 세대들은 동거하다 헤어지기 일쑤이며, 2~3년 정도 살아보고 계속 같이 살 것 같으면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증언하였다.⁸⁸⁶ 결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미등록에 해당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⁸⁸⁷ 이로 인해 혼외 출산 아동이 급증하면서 2018년 6월 혼외자에게도 모두 출생증을 내어주라는 김정영의 방침이 내려졌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⁸⁸⁸

(4)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

북한 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에게 좋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공장과 기업에 훌륭한 복지 시설을 세워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⁸⁸⁹

북한이탈주민 면담에 의하면 사회의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어 서라기보다는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885_NKHR2022000026 2022-06-26.

886_NKHR2020000025 2020-07-06.

887_NKHR2019000077 2019-09-25.

888_NKHR201900W0035 2019-06-03.

889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9.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이 가정과 생계를 모두 떠맡는 이중부담을 지는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결정권이 많아진 것은 맞지만 많은 부분을 여성이 운영하는 만큼 부담감도 커지며,⁸⁹⁰ 여성이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가정에서 남편을 공대해야 한다는 관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⁸⁹¹ 2020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공직에 있던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간호사 직업을 유지하면서 출산, 가사, 양육을 혼자 부담했다.⁸⁹² 여성이 살림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가지고 있던 좋은 직업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다.⁸⁹³

경제활동과 가사노동만으로도 노동 부담이 큰데, 그 외의 시간에도 북한 여성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여맹 조직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생활총화, 학습, 노력동원 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⁸⁹⁴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가정주부는 여맹에, 직장인은 직맹에 계속 끌려다녀야 해서 장마당에서 일하랴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하랴 여자들이 힘들다고 증언했다.⁸⁹⁵ 2021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여성들로 구축된 인민반, 여맹이 여성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데 돌격대나 발전소 건설에 보내어 일을 고되게 시킨다고 증언했다.⁸⁹⁶ 2022년

890_NKHR2022000028 2022-07-04.

891_NKHR2022000019 2022-06-16.

892_NKHR2022000022 2022-06-21.

893_NKHR2022000018 2022-06-15; NKHR2022000021 2022-06-21.

894_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 16.

895_NKHR2022000005 2022-05-25.

896_NKHR2022000030 2022-07-22.

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인민반 동원이 힘들어서 차라리 직장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부양으로 있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있다고 증언했다.⁸⁹⁷

나. 여성에 대한 폭력

(1) 가정폭력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에 가정폭행금지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형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다. 경제적 빈곤, 외도, 음주, 마약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⁸⁹⁸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다.⁸⁹⁹ 2018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본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지만 법으로 제어가 안 됐으며 안전부 분주소 주재원이 나와도 뭘 할 수 있

897_ NKHR2022000032 2022-07-23.

898_ NKHR2021000011-2 2022-05-31; NKHR2021000025-2 2022-06-30; 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34 2022-08-08.

899_ NKHR2021000011-2 2022-05-31; NKHR2022000023 2022-06-22; NKHR2022000027 2022-07-01.

는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⁹⁰⁰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의 지인은 남편이 빚을 진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자 가정폭력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⁹⁰¹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인민반장이 와서 말리고 보안서에 신고해도 본인들끼리 알아서 잘 풀라며 싸움을 말리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⁹⁰²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여 주변에서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며,⁹⁰³ 신고해야 한다는 의식도 적은 편이다.⁹⁰⁴

반면에 가정폭력으로 “교회소 1~2개월 정도 가는 것은 팔이나 다리 부러지든 머리가 깨지든”⁹⁰⁵ 심각한 부상이 동반되거나 흉기를 들고 싸워 피해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⁹⁰⁶ 한편, 여성 자신이 이혼하기 전까지 맞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었다.⁹⁰⁷

가정폭력과 가정불화의 원인을 여성의 잘못이나 결합에 두는 왜곡된 인식도 뿌리 깊다.⁹⁰⁸ 여성권리 신장을 표방하는 여맹 역시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⁹⁰⁹ 가

900_NKHR2021000011-2 2022-05-31.

901_NKHR2022000005 2022-05-25.

902_NKHR2021000008-2 2022-05-26; NKHR2021000017-2 2022-05-26; 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28 2022-07-04 외 다수.

903_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32 2022-07-23.

904_NKHR2021000025-2 2022-06-30;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34 2022-08-08.

905_NKHR2022000026 2022-06-26.

906_NKHR2022000029 2022-07-22.

907_NKHR2022000018 2022-06-15.

908_NKHR2021000017-2 2022-05-26; NKHR2021000019-2 2022-06-26.

909_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 19.

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부재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력과 가정 내 발언권 강화로 가정 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고 있다. 대체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가정의 생계가 가능하다보니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성이 참지 않고 헤어지거나 이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도 폭력을 자제한다는 것이다.⁹¹⁰ 예전에는 여자들이 집안의 비밀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고 자신이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장사해서 돈을 벌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산다는 것이다.⁹¹¹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가정폭력이 너무 심하면 여자가 안 살겠다고 해서 폭력이 많이 없어졌다고 증언했다.⁹¹²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여성의 경제력이 폭력 감소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면, 남성들은 의식의 변화가 ‘문명화’에 있다고 증언했다. 2018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시골은 여전하지만 “시내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좀 문명해지니까” 폭력이 전보다 줄었다고 증언했으며,⁹¹³ 2020년에 탈북한 30대 남성은 “사람들이 개명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폭력이 줄었다고 증언했다.⁹¹⁴

910_NKHR202000016 2020-07-04; NKHR202200004 2022-05-20; NKHR2022000028 2022-07-04.

911_NKHR2022000026 2022-06-26.

912_NKHR2022000004 2022-05-20.

913_NKHR2022000029 2022-07-22.

914_NKHR2021000024-2 2022-06-28.

한편, 도시와 농촌 간의 인식 차이가 폭력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농촌과 달리 도시에서는 여자들의 입김이 세서 일을 좌지우지하며 살기에 옛날처럼 미개하게 폭력을 쓰는 집은 줄었다고 증언했다.⁹¹⁵

젊은 세대들은 폭력을 미개한 일로 여기고, 결혼 기피 요소로 취급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가정 기물을 부수거나 때리는 일을 ‘수준이 떨어지는 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젊은 남성들은 조금 나아졌다고 증언했다.⁹¹⁶ 또한,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술로 인한 가정폭력이 많아서 술이 나쁘다는 인식이 생겼으며 여성들의 결혼 기준, 연애 기준에 못 따라가면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워 술을 절제한다고 증언했다.⁹¹⁷

북한에서는 이혼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이 가능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⁹¹⁸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해도 이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별거의 형태로 헤어지기도 한다.⁹¹⁹ 평양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이혼하는 데 보통 4~5년 걸리지만, 지인이 뇌물을 주고 빨리 처리하여 3년

915_ NKHR2022000012 2022-06-10.

916_ NKHR2022000026 2022-06-26.

917_ NKHR2022000010 2022-06-09.

918_ NKHR2022000010 2022-06-09;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8 2022-07-04.

919_ NKHR2022000004 2022-05-20; NKHR2022000005 2022-05-25.

걸렸다고 증언했다.⁹²⁰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옆집에 살았던 신혼부부가 한 살도 안 된 아기가 있었지만,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고 증언했다.⁹²¹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사진관에서 가정폭력 증거사진을 인화해 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증언했다.⁹²² 이러한 증거물은 진단서와 함께 이혼을 성립시키는 요소가 된다.⁹²³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성별과 연령대 전반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력과 폭력 감소의 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

북한은 2016년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은 형법의 관련 규정(형법 제249조 매음죄, 형법 제279조 강간죄, 형법 제281조 미성인 성교죄)에 따라 엄격히 다뤄지며, 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폐적인 문화반입과 유포죄(형법 제183조)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⁹²⁴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손해보상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

920_NKHR2022000005 2022-05-25.

921_NKHR2022000010 2022-06-09.

922_NKHR2022000025 2022-06-23.

923_NKHR2022000016 2022-06-11.

924_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66~70.

밝혔다.⁹²⁵ 하지만 북한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절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성폭력은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공개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확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북한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2018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저녁 귀갓길에 남성들의 성추행을 많이 경험했으나 별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⁹²⁶ 또한, 2020년에 탈북한 30대 남성은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는 일이 상시 있는 일로 여겨진다고 증언했다.⁹²⁷ 강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장래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⁹²⁸ 그러나 피해자를 비웃거나 소문을 내는 2차 가해가 발생하며,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어서 강간이 아니라 일반 폭력으로 신고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⁹²⁹ 특히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고 면식 관계가 없다면 강간이지만, 평소에 알고 지냈다면 강간이 아

925_ *Ibid.*, para. 71.

926_ NKHR2022000016 2022-06-11.

927_ NKHR2021000024-2 2022-06-28.

928_ NKHR2021000017-2 2022-05-26.

929_ NKHR2021000008-2 2022-05-26.

나라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⁹³⁰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굳이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⁹³¹ 또한, 군대가 주둔한 지역은 군인에 의한 민간 여성의 성폭력이 만연하며,⁹³² 돌격대로 파견 나간 여성은 건설 현장에서 강간에 상시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⁹³³

간혹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조사되었다. 2017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강간한 남자를 처벌하긴 하지만, 교화를 가야 하는데 단련대밖에 안 가거나 돌격대로 보내진다고 증언했다.⁹³⁴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2019년에 평안북도 선천군 부대원이 민간 여성을 강간해서 군인재판으로 생활제대시키고 7개월 단련대를 보냈다고 증언했다.⁹³⁵ 강간 가해자는 최소 5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아야 하지만 단련대형이나 돌격대 파견으로 형벌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지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적 착취 내지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상사의 위력에 의한 강간이 부당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강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⁹³⁶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군대 내에서 상사

930_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21 2022-06-21; NKHR2022000023 2022-06-22; NKHR2022000024 2022-06-23.

931_NKHR2022000029 2022-07-22.

932_NKHR2021000019-2 2022-06-26.

933_NKHR2022000034 2022-08-08.

934_NKHR2021000008-2 2022-05-26.

935_NKHR2021000019-2 2022-06-26.

936_NKHR2022000011 2022-06-10.

가 부하를 강간하면 부하 여군만 다른 부대로 이동하거나 제대 하며, “여자가 죽어야 제기 터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 소연도 못 하고 범인을 찾지도 못한다”고 증언했다.⁹³⁷ 반면에 2018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간부는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좌우명이 있는데 간부가 성폭행을 하고 희롱했다고 하면 당적으로 엄중한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증언했다.⁹³⁸ 그러나 대체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며, 신고하더라도 형이 집행되기까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⁹³⁹ 그래서 “보안원들끼리 서로 비판서나 몇 장 써오라하여 적당하게 처리”하며 조용하게 무마한다는 것이다.⁹⁴⁰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성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북한 여성 중 일부는 성폭력행위를 경험 또는 목격하거나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우

(1) 송환여성에 대한 형사 처벌

2014년 유엔 COI는 여성의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여성이 이러한 폭력에 취

937_NKHR2021000019-2 2022-06-26.

938_NKHR2022000029 2022-07-22.

939_NKHR2022000034 2022-08-08.

940_NKHR2022000030 2022-07-22.

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⁹⁴¹ 또 2017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비법월경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성폭력, 강제낙태, 공정한 재판기회 박탈 등에 처해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들을 권고하였다.⁹⁴²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 즉 국경을 넘기 위해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⁹⁴³ 이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비법국경출입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⁹⁴⁴ 비법월경의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는 증언이 많으며,⁹⁴⁵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법자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⁹⁴⁶

일반적으로는 중국 거주 기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결정된다.⁹⁴⁷ 최근 탈북한 여성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집권 이

941_UN Doc. A/HRC/25/63 (2014), para. 89(i).

942_UN Doc. CEDAW/C/PRK/CO/2-4 (2017), para. 46.

943_NKHR2016000117 2016-07-26.

944_NKHR2017000014 2017-04-10;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094 2017-10-23; NKHR2017000100 2017-10-23; NKHR2018000020 2018-04-09; NKHR2018000021 2018-04-09; NKHR2018000025 2018-04-09; NKHR2019000042 2019-07-01.

945_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34 2016-08-09.

946_NKHR2016000148 2016-09-06; NKHR2017000124 2017-11-20.

후 강제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에 따르면 과거 인신매매 피해자는 단련대에 보내졌지만 최근에는 형벌이 강화되어 교화소에 보내지고 5~10년의 형을 받는다고 한다.⁹⁴⁸ 2015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강제송환되면 죄질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중국에서 성매매 일을 했거나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힌 경우에는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증언하였다.⁹⁴⁹ 한편, 인신매매 처벌은 강한 편이지만, 뇌물로 무마할 수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이후부터는 인신매매가 줄었다고 증언했다.⁹⁵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매매도 돈만 고이면 해결할 수 있다”⁹⁵¹고 증언하였다.

(2) 강제송환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장 큰 문제는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강제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이다.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 시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947_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33 2016-08-09.

948_NKHR2019000076 2019-08-26.

949_NKHR2019000041 2019-07-01.

950_NKHR2022000002 2022-05-18.

951_NKHR2020000006 2020-05-15.

일부 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 거주하다 강제송환된 여성이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송환 과정에서 강제로 낙태시킨다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⁹⁵²

표Ⅳ-3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6년 10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집결소에서 임신 여성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여 낙태시켰음. | NKHR2017000099 2017-10-23 |
| 2016년 11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임신 4개월로 조사받던 여성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소파수술을 시킴. | NKHR2017000128 2017-12-18 |

구금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역시 확인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7월 보안성 집결소에서 계호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동료 수감생이 “죽은 사람만 강간이 있지, 산 사람은 강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⁹⁵³

강제송환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여성들에게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검사라고 하는, 여성들이 치욕스럽게 느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위생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강제송

952_ NKHR2017000047 2017-07-03; NKHR2017000099 2017-10-23; NKHR2017000128 2017-12-18;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104 2017-10-23; NKHR2017000130 2017-12-18.

953_ NKHR2017000045 2017-07-03.

환 경험이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보위성 구류장과 보위성 집결소 등에서 이러한 검사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⁹⁵⁴ 대부분의 경우 여성에 대한 몸수색은 여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군관이나 군의가 아니라 문건정리를 하는 여성이 자궁검사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⁹⁵⁵ 몸수색은 여성이 하지만 옆에서 남정보안원이 수감자를 지켜보며 때리고 “몸매도 못생긴 게 중국 시중을 들었다”고 욕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⁹⁵⁶ 이처럼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북한 조사기관들은 자궁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앉았다 일어섰다가 반복시킨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⁹⁵⁷

라. 여성 건강 및 모성 보건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자보건교육전략(2014-2018) 및 신생아 건강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2015-2016)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산모 사망률(출생 10만 명당)이 2014년 62.7명에서 2017년 53.2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⁹⁵⁸ 또 북한은 “출산휴가가 240일로 연장

954_ NKHR2017000025 2017-05-08; NKHR2017000045 2017-07-03; NKHR2017000104 2017-10-23; NKHR2018000023 2018-04-09; NKHR2018000024 2018-04-09; NKHR2019000041 2019-07-01; NKHR2019000075 2019-08-26.

955_ NKHR2017000104 2017-10-23.

956_ NKHR2017000130 2017-12-18.

957_ 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49 2016-09-06.

958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9.

되고 모든 도립 산부인과가 현대화되어 출산 여성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환경과 아이의 영양관리가 개선되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⁹⁵⁹ 모성보건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조치가 실제 여성의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이하에서는 여성건강과 모성보건으로 나누어 관련 실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1) 여성건강

많은 북한 여성들이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피임과 낙태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7년 실시된 MICS(다중지표군집조사)에 따르면, 북한 여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임법은 북한에서 ‘고리’라고 불리는 자궁 내 장치(IUD), ‘루프’를 삽입하는 것이다. 기혼 여성의 경우 가족계획의 방편으로 ‘고리’를 시술받기도 하지만⁹⁶⁰ “1~2년 살면서 안 살 남자면 갈라져야겠다는 계획”⁹⁶¹으로 시술받기도 한다. 미혼여성의 경우 남자친구가 생겼거나 군에 입대하면 고리 시술을 받는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⁹⁶² 그

959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1.

960_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26 2022-06-26.

961_NKHR2022000026 2022-06-26.

런데 IUD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함에도 북한에서는 이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부인성 질환을 앓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⁹⁶³ 또한, 루프로 인한 출혈과 통증과 같은 부작용을 앓는 사례도 다수 수집되었다.⁹⁶⁴ 비용이 비싸도 루프보다 부작용이 없어서 팔에 놓는 임플라논을 시술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평양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지인이 60~70달러 내고 임플라논을 시술받았으며,⁹⁶⁵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고리로 출혈하는 여자들이 많아 임플라논을 많이 사용한다고 증언했다.⁹⁶⁶

반면에 북한은 2021년에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피임약 보급률이 2014년 78.2%, 2017년 70.3%이며 가족계획 미충족 여성 여성비율은 2014년 7.0%, 2017년 6.6%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구기금(UNFPA)와 협력하여 2017년부터 5개년 국가생식보건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⁹⁶⁷ 피임약을 인지하고 있거나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언도 있어서⁹⁶⁸ 피임약 복용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다.

남성 피임의 경우, 한국 드라마나 책을 통해 콘돔을 인지한

962_ 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8 2022-06-15; NKHR2022000021 2022-06-21; NKHR2022000026 2022-06-26; NKHR2022000027 2022-07-01.

963_ 이금순 외, 『북한의 건강권』(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8~39.

964_ 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07 2022-05-25; NKHR2022000026 2022-06-26,

965_ NKHR2022000005 2022-05-25.

966_ NKHR2022000018 2022-06-15.

967_ 『북한 VNR 보고서』, p. 24.

968_ 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11 2022-06-10.

사례도 일부 수집되었다.⁹⁶⁹ 병원에 콘돔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⁹⁷⁰ 그러나 약국에서 북한돈 100원에 콘돔을 팔았으나 사용법을 몰라 풍선으로 가지고 놀았으며,⁹⁷¹ “유엔에서 받은 콘돔”이 있었으나 체형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⁹⁷² 대부분 콘돔에 대해 한 번도 듣거나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많아 남성의 피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⁹⁷³

북한 의료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의료법 제28조). 그러나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고 낙태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⁹⁷⁴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다 보니, 병원보다는 퇴직 의사가 있는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개인 의사가 집에 와서 수술한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⁹⁷⁵ 특히 미혼은 병원 차트에 기록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고, 가정 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969_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1000019-2 2022-06-26.

970_NKHR2022000021 2022-06-21; NKHR2022000024 2022-06-23.

971_NKHR2022000002 2022-05-18.

972_NKHR2022000005 2022-05-25.

973_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2 2022-06-10;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26 2022-06-26; NKHR2022000027 2022-07-01.

974_UN Doc. A/76/392(8 October 2021), para. 10.

975_NKHR2022000004 2022-05-20; NKHR2022000005 2022-05-25; 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1000008-2 2022-05-26; NKHR2022000018 2022-06-15; NKHR2022000021 2022-06-21;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23 2022-06-22; NKHR2022000026 2022-06-26 외 다수.

한다는 것이다.⁹⁷⁶ 2018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가정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기보다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낙태를 많이 한다고 증언했다.⁹⁷⁷ 반면에 장사가 성행하면서 장사하는 여자를 지켜주는 ‘보호자’ 관계를 맺거나⁹⁷⁸ 경제적으로 풍족한 기혼 남성과의 연애가 낙태로 이어진다는 증언이 있었다.⁹⁷⁹ 아이가 있으면 결혼하기 힘들고⁹⁸⁰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불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낙태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⁹⁸¹ 또한, 수술을 못 하고 낳은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⁹⁸²

한편, 낙태하다 사망했다는 경우를 들어봤으나 많지 않다는 증언이 일부 있었다.⁹⁸³ 의료 장비가 충분치 않은 개인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주의는 크지 않으며, 낙태의 위험성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헌옷, 가제천 대신에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탈북한 50대 중반 여성은 옛날에는 위생대(생리대)가 없어서 가제천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위생대를 사서 쓴다고 증언하였으며,⁹⁸⁴ 2019년 탈북한 40대 후반 여성도 젊은

976_NKHR2022000021 2022-06-21.

977_NKHR2022000006 2022-05-25.

978_NKHR2022000021 2022-06-21.

979_NKHR2022000008 2022-05-27.

980_NKHR2022000008 2022-05-27.

981_NKHR2022000028 2022-07-04.

982_NKHR2021000011-2 2022-05-31; NKHR2022000026 2022-06-26

983_NKHR2022000018 2022-06-15.

사람들은 위생대(생리대)를 사용한다고 증언하였다.⁹⁸⁵ 중국산 생리대는 1위안~3위안 정도면 살 수 있고, 북한산 생리대는 2,000~7,000원 정도로 다양한 가격대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가격이 부담되어 가제천을 사용한다는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지만,⁹⁸⁶ 대체로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증언이 다수였다. 북한산 생리대는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낮았지만,⁹⁸⁷ 최근에는 북한돈 3,000~5,000원 정도이고 포장도 예쁘고 기능성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중국산보다 북한산이 더 좋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⁹⁸⁸ 도시에 거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필수가 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 모성보건

북한은 모성보건을 위해 임신부에게 제도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⁹⁸⁹ 출산 비용은 무료이며,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젓먹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에게는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984_NKHR2020000024 2020-07-06.

985_NKHR2020000028 2020-07-06.

986_NKHR2022000026 2022-06-26

987_NKHR2022000008 2022-05-27; NKHR2022000016 2022-06-11

988_NKHR2022000011 2022-06-10;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25 2022-06-23 외 다수.

989_이금순 외, 『북한의 건강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4~37.

모성보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성사망률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2014년 10만 명당 62.7명이었던 모성사망률이 2017년 53.2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⁹⁹⁰ 3년 사이 10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모성사망률 추이: 2000~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10만 명당 89명으로 북한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⁹⁹¹

모성사망률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 및 출산 여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개선되고 있다. 우선 임신부가 산전검사를 받는 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유엔아동기금이 실시한 2017년 북한 MICS에 따르면 2015~2017년 출산한 북한 여성의 99.5%는 적어도 한 번의 검진을 받았으며 4회 이상 검진을 받았다는 응답도 93.7%나 됐다. 이는 임신부 대부분이 산전검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산전검사를 받는 비율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신 기간 동안 검진을 받았다는 증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⁹⁹² 호 담당 의사의 도움과 영양제를 받지 않았으나⁹⁹³ 병원에서 초음파 정도의 진료를 받아본 사례는 다수 있었다.⁹⁹⁴

990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0.

991_ WHO,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992_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6 2022-06-26.

993_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06 2022-05-25.

994_ NKHR2022000001 2022-05-13; NKHR2022000013 2022-06-10; NKHR2022000016 2022-06-11; NKHR2022000025 2022-06-23; NKHR2022000026 2022-06-26.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자신의 언니가 2015년에 산원에서 해산했는데 임신 당시 초음파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비타민 같이 아이들의 면역을 키워줄 수 있는 주사나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⁹⁹⁵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양강도의 산원에서 출산했는데 임신 기간에 초음파도 받고 주사도 맞았다고 증언했다.⁹⁹⁶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혈액과 소변검사는 한 적이 없으며 태아가 정상인지 확인했다고 한다.⁹⁹⁷

한편, 최근에는 출산이 대체로 병원이나 산원에서 이뤄지고 있다.⁹⁹⁸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⁹⁹⁹ 2018년에 탈북한 의료 계통에 종사한 북한이탈주민은 산전검사 규정이 있어도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며 70~80%는 집에서 해산하고 나머지가 산원에 가며, 간부집 자녀들은 산원에 간다고 증언했다.¹⁰⁰⁰ 또한, 잘 사는 집들은 해산하면 병원에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간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⁰¹

이처럼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개인 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출산은 아무래도 병원에서의

995_NKHR2022000025 2022-06-23.

996_NKHR2022000016 2022-06-11.

997_NKHR2021000026-2 2022-05-18.

998_NKHR2022000001 2022-05-13;

999_NKHR2021000026-2 2022-05-18; NKHR2022000004 2022-05-20; 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2000013 2022-06-10,

1000_NKHR2022000006 2022-05-25.

1001_NKHR2022000008 2022-05-27.

출산에 비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모성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출산 비용을 무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공통적으로 출산 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9년에 탈북한 50대 남성은 부인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을 때 의사들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북한 돈 10만 원 정도 주었다고 증언했다.¹⁰⁰² 2019년에 탈북한 40대 남성은 환자의 경제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위안을 낸다고 증언하였다.¹⁰⁰³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출산할 때 200위안은 내야 하며, 약이나 주사가 모두 본인 부담이라 300위안 이상이 들어 출산을 거의 집에서 한다고 증언했다.¹⁰⁰⁴ 자녀를 출산한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출산 시 의사에게 비용을 별도로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휴가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2015년 임신부의 출산휴가를 기존의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였으며, 2019년 UPR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강조하였다.¹⁰⁰⁵ 이와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가 잘 지켜지며, 임신한 여성은 동원에서 면제된다는 증언이 많다. 2018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산전산후 휴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잘 지켜지지만, 직장생활하는 산모가 1%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증

1002_NKHR2022000001 2022-05-13.

1003_NKHR2022000006 2022-05-25.

1004_NKHR2022000008 2022-05-27.

1005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8.

언했다.¹⁰⁰⁶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출산휴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나오고, 그 기간 동안 식량도 나온다고 증언 하였다.¹⁰⁰⁷ 그러나 여성이 결혼 후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산전후휴가 및 유급육아휴직이 의미가 없다는¹⁰⁰⁸ 등의 증언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서 얼마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마. 평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존엄성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번영 증진과 여성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어렵게 한다.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차별의 개념을 여성권리보장법에 수용하고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공직과 경제 부문을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이 진출해 있고, 여성 간부 등용이 늘었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또한, 여성들은 직급과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보수

1006_NKHR2022000002 2022-05-18.

1007_NKHR2020000048 2020-11-28.

1008_NKHR2018000057 2018-07-02.

와 임금에서 남녀차별이 없다는 증언이 다수였다. 물론 특정 직종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금기시되고 있어 영역 제한이 남아있지만, 제도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증진되었다는 증언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가정 내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증언과,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성평등적 가치관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남성이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 폭력 감소의 원인을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경제력 향상에 두고 있다면, 남성은 의식의 변화에 있다고 보는 차이가 있다. 특히 폭력이 결혼 결격 사유가 됨에 따라 젊은 세대 중심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성별과 세대 전반에 고루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북한이 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관습과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려고 표명하고 있으나 고정된 성역할과 차별의식은 주민들에게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에서 성차별 의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통념을 극복한 일부 사례는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¹⁰⁰⁹ 세계인권선언은 모자보호(제25조 제2항)와 교육의 권리(제26조)를 규정하였으나,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는 아동의 권리와 연관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규약 모두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990년의 9월 2일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은 오랜 기간 동안 보호대상에 머물러 있었던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아동 관련 국제문서와 구별된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41조)는 아동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보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비준,

1009_ 자유권규약은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사회권규약은 “기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3항).

가입,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은 크게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구분된다.

| 표Ⅳ-4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 |
|--------------------|--|
|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 보호의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발달의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 참여의 권리 | 표현의 자유,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아동이 국가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북한은 1990년 9월 21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한 달 뒤인 1990년 10월 21일부터 발효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4년 11월 10일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4조), 북한은 1996년 2월 최초보고서, 2003년 5월 제2차 보고서, 2007년 12월 제3·4차 통합보고서, 2016년 4월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2월 북한의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예비심의를 마쳤으며, 2017년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아동 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하였다.¹⁰¹⁰ 그리고 아동권리보장법 제정(2010년), 보통교육법 제정(2011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발표(2012년),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창설(2013년)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을 강조하였다.¹⁰¹¹

한편, 북한 아동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연령에 대한 규정이다. 아동권리보장법이 아동의 연령을 “16살까지” 규정한 것은 기존의 11년제 학제에서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가 16세 또는 17세인 점을 고려한 것이며, 새로운 12년제 학제에서 교육이 17세 또는 18세에 종료될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아동의 정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⁰¹² 2019년 UPR 보고서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의 법적 기준이 교육받는 시기에 한정되고 있으며, 태어나면서 1세가 되는 북한의 연령 계산상 14세 또는 15세의 아동이 성인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¹⁰¹³ 북한은 최소 혼인연령을 18세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아동권리보장법 수정과 국내법 검토를 권고받

1010_ UN Doc. CRC/C/PRK/5 (2016), para. 7.

1011_ *Ibid.*, paras. 8~10, 17, 21, 25.

1012_ *Ibid.*, paras. 27~28.

1013_ UN Doc. A/HRC/WG.6/33/PRK/3 (2019), para. 97.

았으며,¹⁰¹⁴ 이에 수용한다고 답변하고 있어,¹⁰¹⁵ 향후 법 개정
에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
무를 지닌다(제4조).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권리협약
상의 권리들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사상·종교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 및 자유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관련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최종견
해에서 북한의 ‘아동복지행동강령(2011~2020)’ 채택을 평가하
면서, 교육 및 보건 관련 국가계획을 넘어서서 아동에 대한 폭
력, 아동착취,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포괄적인 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¹⁰¹⁶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아동 영양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영아
사망률과 만성 및 급성영양실조 비율을 낮추었으며, 문화와 여
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여러 지역에 건설하여 아동
의 창의적 사고가 증진되도록 했다고 보고하였다.¹⁰¹⁷ 북한은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
토(VNR)에서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1014_ Questions in Advance Prepared by UN Members States. Advance Questi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nd Batch), Belgium, 3 May 2019;
UN Doc. A/HRC/42/10 (2019), paras. 126.191, 126.192.

1015_ 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1016_ UN Doc. CRC/C/PRK/CO/5 (2017), para. 7.

1017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61-64.

평가하고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000명당 12명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¹⁰¹⁸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확충 하였으며, 대형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아동의 성장과 영양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선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같은 정책들이 균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북한 아동의 인권 실태를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동 보건·복지

(1) 아동 및 고아 보호 시스템 여전히 취약

저출산 문제는 최근 북한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아이 5명부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었고, 최근에는 3명부터 약간의 보조금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국가 보조금 이외에 학습장이나 학용품 같은 것도 부정기적으로 받았다고 덧붙였다.¹⁰¹⁹

1018_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p. 19,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6, 2021).

1019_NKHR2022000003 2022-05-19.

김정은 집권 이후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동 및 고아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일부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김정은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애육원, 중등학원을 많이 건설했다고 하였다. 이후 거지처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애들을 다 잡아서 그냥 애육원이나 중등학교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¹⁰²⁰ 또한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애육원, 중등학원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북한에서 꽃제비가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¹⁰²¹ 반면, 여전히 북한에 꽃제비들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역 주변에 여전히 많은 꽃제비들이 있다고 했으며,¹⁰²² 양강도에서 거주하다 탈북한 30대 여성도 꽃제비가 여전히 많으며 쓰레기장을 뒤지며 생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¹⁰²³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애육원과 중등학원 시설이 좋아지면서 국가적 지원이 잘 되고 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다. 2019년 탈북한 20대 북한이탈주민은 사촌 언니가 교사로 일하는데 아이들이 고기를 안 먹어서 버리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¹⁰²⁴

1020_NKHR2022000007 2022-05-25.

1021_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2000025 2022-06-23; NKHR2021000024-2 2022-06-28; NKHR2022000003 2022-05-19.

1022_NKHR2022000018 2022-06-15.

1023_NKHR2022000016 2022-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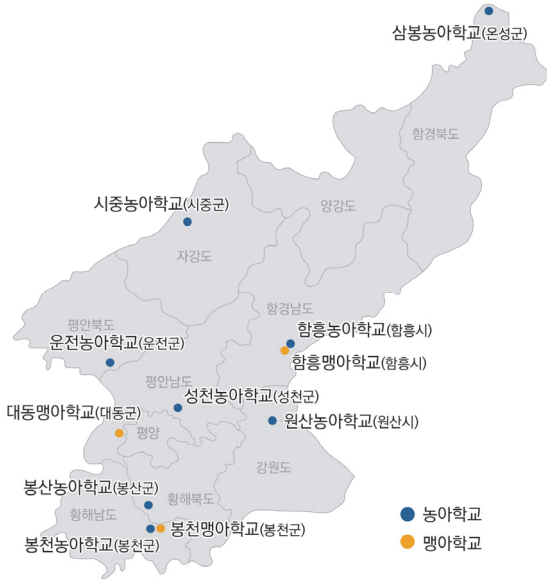
1024_NKHR2022000010 2022-06-09.

(2) 장애아동 교육시설의 부족

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아동은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향유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장애인보호법에서 장애자의 회복치료, 교육, 문화생활, 노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 장애아동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0조). 특히 아동권리보장법 제30조 제2항은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 농아 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서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 내에는 8개의 농아학교와 3개의 맹아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12년 3월 평양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설립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림 IV-1 북한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



출처: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http://www.greentreekorea.org>> 참조.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자 학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고하였다.¹⁰²⁵ 평양 외곽에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 개원했다는 소식이 단편적으로 있으나,¹⁰²⁶ 북한 전역에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는 11개에 불과하다. 특히 양강도 지역에는 이러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⁰²⁷

1025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11.

1026_ "North Korea opens kindergarten for hearing-impaired children," UPI, 1 July 2016. <https://upi.com/6352451>.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원산시 장춘동에 농아학교가 있었다고 하였다.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함흥시 덕산에 농아학교가 있었으나, 소요비용을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해서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¹⁰²⁷

북한은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서 미취학 장애아동은 지역사회 유치원에서 평등하게 양육되며, 연령과 심리 및 장애 유형에 맞게 재활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어린이 회복중심과 같은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재활과 조기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2018년에는 평양의 소학교를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준비를 진행중이라 밝혔다.¹⁰²⁹ 또한,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맹아학교와 농아학교가 12년 의무교육과정에 맞게 커리큘럼을 개정하고 직업 훈련을 결합했다고 소개하였다.¹⁰³⁰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이나, 장애아동의 재활과 직업훈련에 대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장애인을 본 경험이 적고, 장애아동 재활과 교육에 관심과 주의가 적은 것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027_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NKHR2017000023 2017-05-08; NKHR2017000049 2017-07-03; NKHR2017000056 2017-07-31. 양강도 해산시에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KHR2017000060 2017-07-31; NKHR2017000025 2017-05-08. 양강도 백암군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NKHR2017000062 2017-07-31.

1028_ NKHR2017000049 2017-07-03.

1029_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due in 2018. UN Doc. CRPD/C/PRK/1 (2018), paras. 143-144.

1030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6.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장애인들을 동네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이유가 장애인들을 구경하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 것 같다고 하며 탈북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나 시설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³¹ 북한의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 의료 방면에서 시행 중이지만, 일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개방하고, 인식개선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보건의료 및 영양

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보건법에서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의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아동병원, 아동요양시설, 영양제·영양식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탁아소 및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탁아소 내 아동병동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및 제26조).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공공 보건医疗을 개선하여 평균 기대수명을 늘리고, 유아 사망률 감소를 보건 부문의 주

1031_NKHR2022000010 2022-06-09.

요 목표로 설정하는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선진국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 투자를 늘리고 제도적, 실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하였다.¹⁰³² 또한 현대식 의료기관을 건립하고 의료기기 공장을 재건하였으며, 의료인 역량 강화를 비롯해 중앙과 지역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약품의 질과 품종 및 수량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2. 건강권’ 참조).¹⁰³³ 북한은 2021년 VNR에서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평양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등 현대적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¹⁰³⁴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은 호전되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온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보건성은 유엔아동기금 및 국제백신면역연합(GAVI) 등과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인력과 물자 이동 차단은 필수백신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은 2020년 10월 북한의 폴리오(polio) 백신 재고가 처음으로 떨어졌고 2020년 3분기 경구용 소아마비(3차) 백신 접종률이

1032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35.

1033_ *ibid.*, paras. 37~41.

1034_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8.

2019년 같은 기간 97.3%에서 84.3%로 낮아졌음을 보고했다.¹⁰³⁵ 유엔아동기금은 시급히 필요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결핵 진단 및 필수 의약품 재고 부족이 계속된다면 이미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270만 명의 아동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¹⁰³⁶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의 북한 예방접종률 추정치에 의하면 2020년과 2021년 사이 BCG는 99%에서 95%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1차(DTP1)는 98%에서 42%로, 소아마비백신(Pol3)은 70%에서 0%로, 홍역1차(MCV1)는 99%에서 42%로, B형간염(HepB3)은 97%에서 41%로 각각 하락하였다.¹⁰³⁷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북한 아동의 생명과 질병예방에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백신수급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영양부족인구비율이 2018년 42.6%에서 2019년 43.0%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1.6%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1,07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있다.¹⁰³⁸ 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비율(41.6%)은 아프리카 19.1%, 최빈개도국 22.9%, 저소득국가 29.6% 보다 높은 수준이다.¹⁰³⁹

1035_UNICEF, "UNICEF DRPK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No. 2," January to December 2020, p. 2.

1036_ *Ibid.*

1037_WFP/UNICE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nd UNICEF estimates of immunization coverage: 2021 revision," p. 3, 4, 6, 8, 12 (July 8, 2022). <<https://data.unicef.org/resources/immunization-country-profiles/>>.

1038_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ome: FAO, 2022).

2019년 유엔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긴급식량안보평가에 의하면, 6개월 이상 5세 미만 아동 15~25%가 영양부족 상태라고 보고되었다.¹⁰⁴⁰ 5세 미만 아동사망률 및 신생아사망률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1,000명당 5세 미만 사망률은 2019년 17.3%, 2020년 16.5%로 나타났고, 인구 1,000명당 신생아사망률은 2019년 9.3%, 2020년 8.9%로 감소하였다. 두 지표 모두 국제사회가 SDGs 이행 차원에서 제시한 목표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다.

아동영양부족(children malnutrition)의 국가 비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5세 미만 아동 10명 중 1명은 저체중이며 5명 중 1명은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다.¹⁰⁴¹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은 2020년 기준 5세 미만 아동 중 18.2%에 해당하는 31만 7,800명이 발육부진이며, 2017년 기준 2.5%에 해당하는 4만 3,500명이 급성영양부족을 앓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¹⁰⁴² 특히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의 3분의 1은 최

1039_ *Ibid.*

1040_ WFP/FA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2019, p. 42 <<https://www.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faowfp-joint-rapid-food-security-assessment>>.

1041_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2019), p. 54.

1042_ UNICEF, WHO, and The World Bank, *Levels and trends in child malnutrition: key findings of the 2021 edition of the joint child malnutrition estimates*. (New York: UNICEF, 2021), pp. 18-19. UNICEF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급성영양부족 아동을 1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2019), p. 54.

소만으로 필요한 식품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현재는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¹⁰⁴³ 발육부진에 있어서도 평양은 약 10%인 반면 양강도는 32%로 지역 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⁰⁴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2021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1,06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5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및 수유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¹⁰⁴⁵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약품, 의료기기 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의 건강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2020년 1월 이후 이어지는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식량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식량수급에 차질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 아동교육권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

1043_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 54

1044_ UN Doc. A/75/271 (2020), para. 28.

1045_ UN Doc. A/76/242 (2021), para. 34.

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 그 내용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은 여가를 즐기고,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교육법, 보통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 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 등 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제22조~제28조).

(1) 정치사상교육

북한은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교육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부합하게 개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⁴⁶ 아동교육은 존중·평화·관용·평등·연대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북한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면 정치사상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현 최고지도자와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주 1시간 이상 김정

1046_UN Doc. CRC/C/PRK/5 (2016), para. 209.

은 관련 수업을 편성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에 대한 학년별 교육시간은 <표Ⅳ-5>와 같다.

표Ⅳ-5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 연간 교육시간

| 구분 | |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
|-----------|-----|-------|------|------|
| 초급 중학교 | 1학년 | 68시간 | | 34시간 |
| | 2학년 | 68시간 | 68시간 | 34시간 |
| | 3학년 | | 68시간 | 34시간 |
| 고급 중학교 | 1학년 | 104시간 | | 27시간 |
| | 2학년 | 56시간 | 56시간 | 27시간 |
| | 3학년 | | 92시간 | 27시간 |

김정은 관련 과목은 김일성, 김정일 관련 과목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지만 신설과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다.¹⁰⁴⁷ 주된 학습 내용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주체사상 원리, 당 정책, 혁명전통, 혁명 및 공산주의 교양의 다섯 가지 범주이나, 이 모두는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¹⁰⁴⁸ 정치사상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학생들도 당연시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⁴⁹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이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조선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소년단에는 만 7~13세의 아동들이 가입하여 사상교양 활동과 조직 활동을 통해 유일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는 만 14~30세

1047_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69.
 1048_ 위의 책, pp. 95~ 96.
 1049_ NKHR2017000115 2017-11-20.

의 청소년들 및 청년들이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0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년동맹 명칭 변경에 따른 청년동맹의 성격이나 활동 변화를 조사하였으나, 관련 증언은 확보되지 않았다. 한편, 2019년에 탈북한 10대 북한이탈주민은 소년단과 청년동맹 가입을 형식적으로 하며, 가입할 때 돈을 낸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⁰⁵⁰ 2019년 탈북한 20대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중학교 4학년이 되면 청년동맹에 필수로 가입하며 이는 일종의 성년식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¹⁰⁵¹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치 조직체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증언 수집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2)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규정들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아동의 교육 및 여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UPR 보고서에서 북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거점뿐 아니라 북한 주민 누구나 문화적으로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 편의시설을 개보수했다고 보

1050_NKHR2020000029 2020-07-06.

1051_NKHR2021000001 2021-08-13.

고하였다.¹⁰⁵²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서 북한은 전국적으로 본보기학교 건설과 현대화 공사, 다기능화된 교실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⁵³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각종 정치행사나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어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 2015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행사 동원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학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¹⁰⁵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더운 여름 야외에서 꽃 드리기 행사로 쓰러진 학생들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표Ⅳ-6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졸업할 때는 명칭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는데 졸업 후 1년이 지나니,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었음. 김정일 서거일에 추모행사 공연을 했음. | NKHR2020000003 2020-05-15 |
| 2015년 소학교 시절 겨울(3.8 국제부녀절 추정)에 꽃이나 부채를 들고 열을 지어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30분 정도 도로를 도는 동원이 있었음. | NKHR2020000031 2020-08-03 |
|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때 꽃을 들고 선거유세를 진행하는 데 학생들이 동원됨. | NKHR2017000063 2017-07-31 |
|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등 명절 때마다 꽃바구니 증정에 동원되며, 학교별로 해산시 광장에 모여 결의모임에 참석함. | NKHR2017000078 2017-08-28 |
| 태양상에 꽃을 놓고 환영사업을 함. 군대환영사업에도 동원됨. 김정일 서거일에도 동원됨. | NKHR2017000086 2017-09-25 |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탄생일 행사에 동원되어 노래를 부름. | NKHR2018000103 2018-10-01 |

1052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56-57.

1053_ 『조선중앙통신』, 2022.7.6.; 『노동신문』, 2022.2.13.

1054_ NKHR2018000121 2018-10-22.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정치행사에 동원될 경우 100% 참석해야 하며 아니면 반동으로 몰림. | NKHR2018000104 2018-10-01 |
| 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아리랑 같은 집단체조를 할 때는 보통 6개월 이상 연습하고 중학교 3학년 이상부터 동원되는데, 돈을 내고 선발되지 않는 부자집 아이들과의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 NKHR2019000023 2019-05-18 |
|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등 명절에 보고대회에 동원되어서 박수치고, 수령님 노래 부르고, 애국가를 부름. | NKHR2019000045 2019-07-01 |
| 선거철에 학생들은 선거 독려 가창대 활동에 동원됨. | NKHR2020000022 2020-07-06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육체적으로 피로한 노동동원과 달리 체제선전 관료해선 아이들이 정치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재미있어함. | NKHR2020000029 2020-07-06 |
| 정치행사는 필수였고 강도도 심했음. 어린 나이에 매일 1시간씩 걸어서 큰 광장에서 사열식, 열병식을 했었음. | NKHR2021000001 2021-08-13 |
| 각종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되었음. 7차 당대회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집단체조를 해야 했고 각종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가창선전대를 했음. | NKHR2021000004 2021-08-20 |
| 정치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날. 혹은 설날이나 민속 명절날 같은 때에 태양상에 꽃다발 바치는 정치행사를 하며 빠지면 처벌이 큼. | NKHR2021000006 2021-09-03 |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생들은 국가기념일에 가두에 동원되어 행진하거나 선거일에 가창대 활동에 동원되고, 김정일 서거일 추모행사 공연을 한다. 집단체조에 동원된 경우 장시간 연습으로 인해 육체적 부담이나 학습 방해 등의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후반의 한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4·15 태양절 행사 준비를 위하여 2월부터 추운 날씨 속에 주말까지도 집단체조 연습을 했으며, 가끔은 밤늦게까지도 연습을 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⁵⁵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3~4시간씩 연습을 하다가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¹⁰⁵⁶ 집단체조 아리랑 연습에 6개월 이상 동원되

1055_NKHR2016000123 2016-07-26.

느라 학습을 하지 못했으며, 학교에 돈을 내고 선발되지 않은 부잣집 아이들과 학습격차가 생겼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⁵⁷ 학급의 반이 돈을 내고 정치행사에 빠지고, 반만 동원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⁰⁵⁸ 그런데 이 같은 동원을 의무로 생각하여 힘들어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¹⁰⁵⁹ 대체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뇌물을 바쳐 정치행사에 빠지는 것이 묵인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각종 근거를 만들어서 동원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⁶⁰

(3) 의무적 군사훈련

북한은 의무적 군사훈련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군사활동초보’라는 군사과목을 유지하고 있다.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고급중학교의 교육 목표에는 “군사복무, 사회생활, 대학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한 심신 함양이 포함된다”고만 밝히고 있다.¹⁰⁶¹ 고급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1주간 붉은

1056_NKHR2016000151 2016-09-06.

1057_NKHR2019000023 2019-05-18.

1058_NKHR2019000068 2019-08-26.

1059_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52 2016-09-06; NKHR2018000103 2018-10-01; NKHR2018000104 2018-10-01; NKHR2019000023 2019-05-18; NKHR2019000053 2019-07-29.

1060_NKHR2021000005 2021-08-20.

1061_UN Doc. CRC/C/PRK/5 (2016), para. 198.

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3학년 과정에 서는 1주간 야외숙영을 통해 초보적인 군사활동 능력을 기른다.¹⁰⁶² 고급중학교 2학년 때 붉은청년근위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증언자에 따르면 1주간 훈련이 군대와 똑같은 형식으로 남녀가 동일하게 예외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¹⁰⁶³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사훈련에서는 사격, 총기 분해 및 조립, 포복, 대열, 경계 근무, 군 규범 교육 등이 실시된다고 한다.¹⁰⁶⁴ 군사훈련 마지막 날에는 실탄을 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⁰⁶⁵

다. 학생 노동동원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은 자신의 건강, 교육, 발달을 위협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사회주의노동법,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노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의 나이를 “16살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에서도 노동가능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에 합치되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북한은 2019년 UPR 보고서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은

1062_ NKHR2022000022 2022-06-21; NKHR2021000025-2 2022-06-30.

1063_ NKHR2021000003 2021-08-19.

1064_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1065_ NKHR2020000038 2020-09-26; NKHR2021000007 2021-09-06.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농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이며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한다고 답하였다.¹⁰⁶⁶ 실제로 북한의 교육과정을 보면, 초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 그리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와 생산노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교육 과정에서 수행되는 각종 농사 및 건설 활동 등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¹⁰⁶⁷ 2021년 북한의 VNR에서는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한다는 SDG 8.7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보고 하였다.¹⁰⁶⁸

표Ⅳ-7 학생들의 노동동원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2015년경 중학교 때 산림복구전투에 동원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매년 여름에 동원됨. 등산을 하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함. 동 푸기도 시켰는데, 빠지고 싶으면 돈을 내야 했음. | NKHR2020000029 2020-07-06 |
| 2017년 고급중학교 때 농촌동원을 가는데 봄에는 모내기 동원, 가을에는 감자동원을 갔음. | NKHR2021000016 2021-09-24 |
| 2019년 소학교 3, 4학년인 친구 동생이 동원 나갔다고 들음. 애들 대신 엄마들이 나가기도 하는데, 돈 있는 엄마는 다른 사람을 내보내기도 함. 선생님께서 돈을 내면 안 갈 수 있음. 고등중학교 때 오전엔 공부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많이 감. 위원이파트 건설에서 돌을 나르고 철길 공사 등에 동원됨. | NKHR2020000001 2020-05-15 |
| 2020년에 매년 있는 감자동원에 공부를 위해 200~300위안을 내고 자녀가 동원에서 빠지게 했음. | NKHR2020000038 2020-09-26 |
| 중학교 4학년(고등중 1학년) 때부터 모든 학생이 매년 의무적으로 농촌 동원을 나가는데, 보통 새벽부터 했음. 매년 약 20일 정도 나가는데, 5월 말 모내기철 전에 나가서 김매기 끝나고 6월 중순에 들어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의무적이라서 정신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함. | NKHR2020000003 2020-05-15 |

1066_UN Doc. A/HRC/42/10 (2019), para. 79.

1067_UN Doc. A/HRC/WG.6/33/PRK/2 (2019), para. 87, 88.

1068_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2.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소학교 아이들은 노동동원이 많아 저녁에는 힘들어서 쓰러짐. | NKHR2020000012 2020-06-15 |
| 농번기에 학생들이 김매기에 동원되는데, 아프다든지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양해를 구하고 빠질 수 있음. | NKHR2020000022 2020-07-06 |
| 중학교부터 농촌봉사활동, 감자동원을 다녔음. 집단 동원으로 1년에 두 달씩 다녔음. | NKHR2021000002 2021-08-13 |
| 5~6월까지 한 달 정도 농촌지원을 갔었는데 타 지역으로 갔고, 개인집에서 생활했음. 끝나고 김매기 철에는 주변 농장에 매일 지원을 갔음. | NKHR2021000006 2021-09-03 |
| 소학교 4학년 때 1년에 두 번 노력동원으로 농촌을 1~2주정도 갔음. 재밌기도 하지만 농촌일이다 보니 일은 힘들. 쌀 등을 내서 빠지는 애도 있었음. 중학교 때는 고철, 모래를 나르거나 자갈을 쪼는 일을 오후에 함. | NKHR2021000008 2021-09-07 |
| 가을걷이 할 때 농촌에 가서 도와줌. 식량은 본인이 챙겨가야 했고 강도도 심했음. 또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학생을 동원시켜서 시멘트나 돌나르기를 시킴. | NKHR2021000009 2021-09-07 |
| 중학교 때 농촌동원을 나갔는데, 모내기, 강냉이 심기, 모 옮기기, 벼단 옮기기 등을 했음. 힘들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일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함. | NKHR2021000018 2021-02-20 |
| 의대생들도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농촌지원이라고 나갔음. 돈을 내고 오늘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가지 않을 수 있었음. 시험기간 같은 경우 돈 없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다 나가야 했었음. | NKHR2022000008 2022-05-27 |
| 중학생일 때 오후 수업은 4시 전으로 끝남. 수업 끝나면 일하러 갔음. 노동력이 필요한 곳은 직장, 도로, 철길 등 어디든 가서 일함. | NKHR2022000023 2022-06-22 |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도 방과 후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봄에는 김매기와 모내기에, 가을에는 감자 캐기에 동원된다.¹⁰⁶⁹ 매년 의무적으로 나가는 농촌동원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정신적인 부담도 크다고 한다.¹⁰⁷⁰ 또한 학생들은 모래나르기, 자갈나르기와 같은 건설작업이나 벌목, 철길 공사

1069_ NKHR2017000002 2017-04-10; NKHR2017000008 2017-04-10; NKHR2017000029 2017-06-05; NKHR2018000008 2018-03-12;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8000121 2018-10-22; NKHR2019000023 2019-05-18;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21000016 2021-09-24; NKHR2021000025 2021-11-09; NKHR2022000023 2022-06-22.

1070_ NKHR2020000003 2020-05-15.

에 동원되기도 한다.¹⁰⁷¹ 몸이 아픈 경우엔 동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¹⁰⁷² 동원에서 빠지려면 대부분 돈을 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¹⁰⁷³

한편, 소학교 때는 노력동원이 없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동원이나 들쭉동원을 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¹⁰⁷⁴ 반면에, 소학교 학생에게 노동동원이 부과되어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⁰⁷⁵ 그렇기에 소학교 학생이 노동에 동원되면 학생 대신 어머니가 대신 나가고,¹⁰⁷⁶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돈을 내고 빠지거나¹⁰⁷⁷ 인력을 사서 아동 대신 동원에 나간다는 것이다.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북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소학교 학생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상황이다.

라. 특별보호조치 필요 아동

(1) 강제송환된 아동에 대한 처우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가혹한 취급이나 처벌, 불법체포 또는 자유의 박탈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

1071_NKHR2016000133 2016-08-09; NKHR2018000103 2018-10-01; NKHR2018000123 2018-10-22;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58 2019-07-29; NKHR2019000083 2019-09-25; NKHR2020000001 2020-05-15; NKHR2021000008 2021-09-07; NKHR2021000009 2021-09-07.

1072_NKHR2020000022 2020-07-06.

1073_NKHR2022000008 2022-05-27.

1074_NKHR2022000002 2022-05-18.

1075_NKHR2020000012 2020-06-15.

1076_NKHR2020000001 2020-05-15.

1077_NKHR2020000038 2020-09-26.

고 있다. 그리고 제39조는 국가는 고문, 학대, 착취 등의 피해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에서도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추궁 및 사형 금지,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 사건취급처리에서 아동의 인격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7조~제49조 및 제51조).

북한은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서 “불법월경하였다가 귀환한 아동들은 교양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⁷⁸ 즉, 불법월경의 동기와 목적을 조사한 다음 아동권리보장법, 출입국법, 형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대한 준수를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¹⁰⁷⁹ 그리고 학교 측은 그런 아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인민위원회는 그러한 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모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다고 설명하였다.¹⁰⁸⁰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 결과 중국에서 송환된 아동들이 취조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며, 구금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린다는 증언들이 일부 수집되었다.¹⁰⁸¹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누나가 어린 조카와 함께 탈북하다 붙잡혀 강제송환되

1078_ UN Doc. CRC/C/PRK/5 (2016), para. 239.

1079_ *Ibid.*

1080_ *Ibid.*

1081_ NKHR2016000121 2016-07-26.

었는데, 누나가 보는 앞에서 조카를 구타하며 누나의 자백을 유도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⁸²

한편, 탈북 후 송환된 아동이 교양처분만 받고 풀려났다는 증언들도 수집되었다.¹⁰⁸³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미성년자는 성인과 같이 구류장에 구금될 수 없어 927상무로 보내진다고 증언하였다.¹⁰⁸⁴ 최근엔 강제송환된 아동 관련 사건이 수집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기존에 가해졌던 교양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 꽃제비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에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북한은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서 ‘꽃제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자연재해,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보호하고 그

1082_NKHR2018000109 2018-10-06.

1083_NKHR2016000112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1084_NKHR2016000143 2016-08-23.

들에게 좋은 생활환경 및 학습환경을 제공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¹⁰⁸⁵ 정부가 거리를 배회하는 극소수의 아동을 발견할 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운영하는 구호소에 보내고 보호자나 기관으로 인계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⁰⁸⁶ 마찬가지로 2019년 UPR 보고서에서도 부모가 없는 아동, 벽지와 재해지역에 있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당사국의 시책을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로 들고 있다.¹⁰⁸⁷

꽃제비가 고아들을 위한 애육원과 중등학교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꽃제비들을 보호·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구제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꽃제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증언들이 수집되어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꽃제비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라고 판단했다.¹⁰⁸⁸ 이러한 이유가 꽃제비들을 관리하는 수용시설과 관계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즉 꽃제비 수용시설이 건축되어 꽃제비가 감소한 것이며,¹⁰⁸⁹ 어린 나이의 꽃제비는 대다수 중등학교에 보내져 볼 수 없다는 증언이 있었다.¹⁰⁹⁰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 시대 와서 어린 나이의 꽃제비는 없어졌고 이들은 시설

1085_UN Doc. CRC/C/PRK/5 (2016), para. 109.

1086_UN Doc. CRC/C/PRK/Q/5/Add.1 (2017), para. 52.

1087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5.

1088_NKHR2021000024 2021-10-24

1089_NKHR2020000012 2020-06-15.

1090_NKHR2021000030 2021-11-28.

좋은 중등학교원이나 애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⁰⁹¹ 2019년 탈북한 20대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장마당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을 때 꽃제비들이 와서 흠쳐가곤 하였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다고 하였다.¹⁰⁹²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꽃제비는 별로 없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였기에 쌀값도 안정적이었고 장마당에 1~2명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¹⁰⁹³ 이 외에도 꽃제비는 거주지 부근에서 가끔 목격되거나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¹⁰⁹⁴

반면, 꽃제비는 여전히 많다는 증언도 확인된다.¹⁰⁹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2016년경에 서해지구(평안남도에 위치)와 동해지구에 방랑자 수용시설을 신축한 이후 꽃제비가 감소했지만 남포시는 2019년 대북제재로 인해 꽃제비가 증가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⁹⁶ 여전히 국경 지대 및 지방의 역전이나 장마당을 중심으로 꽃제비들이 목격된다고 한다.¹⁰⁹⁷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했던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역전과 골목에 꽃제비가 많았으며, 세수도 안 하고 여름에도 겨울 동복을 입고 다니는 등 행색이 한심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⁹⁸ 꽃제비

1091_NKHR2022000022 2022-06-21.

1092_NKHR2022000025 2022-06-23.

1093_NKHR2021000014 2021-09-16.

1094_NKHR2021000024-2 2022-06-28; NKHR2021000003 2021-08-19; NKHR2021000029 2021-11-23; NKHR2022000003 2022-05-19.

1095_NKHR2021000007 2021-09-06; NKHR2021000008 2021-09-07; NKHR2021000018 2021-02-20; NKHR2021000019 2021-10-15; NKHR2021000025 2021-11-09 외 다수의 증언.

1096_NKHR2020000045 2020-10-31.

1097_NKHR2022000018 2022-06-15; NKHR2021000010 2021-09-08; NKHR2021000016 2021-09-24; NKHR2020000048 2020-11-28.

는 여전히 많고 쓰레기장을 뒤지기도 했으며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⁹⁹

꽃제비들의 일탈행위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최근 꽃제비도 발전해서 장마당에서 소매치기를 해 옷도 사 입고 병두에도 손을 대 집안을 떡여 살리고 있다고 한다.¹¹⁰⁰ 또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꽃제비들이 더 잘 입고 다녀서 꽃제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역에서 짐을 놓고 가면 훔쳐가는 일을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⁰¹

한편, 꽃제비들이 수용시설에 수용이 되어도 오히려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꽃제비질’보다 더 힘들어 떠돌이 생활이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⁰² 2020년 탈북한 20대 북한이탈주민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시설에 들어가도 자유롭게 살던 경험들이 있어 다시 나온다고 증언하였다.¹¹⁰³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고, 규율이 엄격한 데다 식사가 부실해 결국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전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¹¹⁰⁴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1098_ NKHR2020000029 2020-07-06.

1099_ NKHR2022000016 2022-06-11.

1100_ NKHR2021000004 2021-08-20.

1101_ NKHR2021000006 2021-09-03.

1102_ NKHR2020000029 2020-07-06.

1103_ NKHR2021000019 2021-10-15.

1104_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57 2016-09-20;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8000093 2018-08-27; NKHR2018000128 2018-11-19; NKHR2019000047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52 2019-07-20; NKHR2019000064 2019-08-17.

마. 평가

2019년 UPR 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착취, 아동빈곤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나 실현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VNR을 통해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근절한다는 SDG 8.7를 이미 달성했음을 공언하였다.¹¹⁰⁵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 아동은 높은 비율의 영양부족, 발육부진, 빈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¹¹⁰⁶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를 지속하거나 국제사회와 식량 및 백신 등의 지원과 협력을 재개하지 않는 이상 북한 아동의 식량권과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시설과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균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장래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장애를 숨긴다는 증언은 북한 당국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아동들은 과도한 정치사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어 이해와 관용, 평화와 연대를 교육받고 성장해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

1105_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2.

1106_WFP, "DPR Korea Country Brief," 2021 <<https://docs.wfp.org/api/documents/WFP-0000135453/download/>>.

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모든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북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소학교 학생들도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고아들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물자 우선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육아원, 애육원 및 기숙학교에서 돌봄을 받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⁰⁷ 그러나 최근에 꽃제비가 종종 목격된다는 증언에 비추어보면,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107_ *Ibid.*

3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의 일반의무에 대해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2월 6일 협약을 비준하여 마침내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규모

(1) 장애인 정책

북한 당국은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의식하여 2003년 6월 장애인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 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노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인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제1조).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보호법에는 장애자의 회복치료(제2장), 장애자의 교육(제3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제4장), 장애자의 노동(제5장)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로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활동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수행, 보건과 생활조건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도의 제고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도와 시·군에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¹¹⁰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보건성이 임직원의 급여 및 기반시설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정부기구(NGO)로 구분하고 있다.¹¹⁰⁹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산하에 조선농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¹¹¹⁰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2008년 7월 베이징에

1108_ 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ed Third and Fo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PRK/4 (2008), para. 134.

1109_ Katharina Zellweg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North Korea,” *Shorenstein APARC Working Paper* (2014).

1110_ 『노동신문』, 2012.9.30; 『조선중앙통신』, 2014.12.16.; 『조선중앙통신』, 2020.12.3.

처음으로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2015년 선양대표부를 개설하였고 리분희 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초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¹¹¹¹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실행계획(Action Plan) 2008~2010, 실행계획 2013~2015, 실행계획 2016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장애자권리보호를 위한 전략계획 2018~2020을 시행하였다.¹¹¹²

(2) 장애인 규모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에서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북한 당국 차원에서 장애인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얼마나 자주 수행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9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당시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29만 6,51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16만 8,141명, 시각장애인 16만 5,088명, 중증장애인 6만 8,997명, 정신장애인 3만 7,780명 등으로 나타났다. 평양의 경우 1.75%

1111_ 『미국의 소리』, 2015.5.13.

1112_UN Doc. CRPD/C/PRK/1 (2018), para. 30.

가량이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은 농촌지역(35.4%)보다 도시(64%)에 더 많이 살았다.¹¹¹³

북한은 2008년 인구총조사에서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정도, 연령, 성별, 지역별(농촌, 도시) 분포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2009년 발표된 북한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 51만 9,573명(2.4%), 청각장애 37만 4,452명(1.73%), 보행장애 53만 7,496명(2.48%), 인지능력장애 33만 4,852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장애비율이 62%로 남성 32%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¹¹¹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중앙통계국과 함께 2011년 11월 3개도(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에서 2천4백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¹¹¹⁵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서 15세 미만 장애아동의 비율은 0.9%라고 언급하고 있다.¹¹¹⁶ 2012년 제14회 런던 장애인올림픽(8월 30일~9월 10일)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동 조사결과 일부내용이 밝혀졌다. 동 조사에 따르면 시력, 청력, 지체(사지), 정신(지능 포함), 복합장애 등 5대 부문의 장애인 인구는 5.8%로 집계되었다.¹¹¹⁷ 2014년 4개도(함경남도, 강원도, 평안

1113_ 『연합뉴스』, 2006.4.9.; 『연합뉴스』, 2006.11.23.

1114_ UN Doc. A/HRC/37/56/Add.1 (2018), para. 10.

1115_ 『노동신문』, 2012.9.30.

1116_ UN Doc. CRC/C/PRK/5 (2016), para. 135.

북도,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장애표본조사 결과는 전체 인구의 6.2%인 약 150만 명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55.1%로 남성의 4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¹¹⁸ 그리고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이 2015년 8월 7일부터 평양에서 ‘제7회 국제 농아모임’을 개최했는데,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¹¹¹⁹

2018년 12월 북한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는 북한의 장애인 규모 및 특성에 대한 가장 최신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¹¹²⁰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남성의 경우 5.1%, 여성의 경우 5.9%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60세 이상 여성 고령 인구의 장애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전체 인구의 2.5%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1.3%), 시각장애(1.2%), 언어장애(0.4%), 정신장애(0.4%), 지능장애(0.3%)가 뒤를 이었다. 아동(0~16세) 장애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로 남아의 경우 2.2%, 여아의 경우 1.4%였다.

1117_ 『연합뉴스』, 2012.9.10. 북한은 2014년 제2차 UPR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장애인 비율이 5.8%라고 밝히고 있다.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1118_UN Doc. A/HRC/37/56/Add.1 (2018), para. 10.

1119_ 『미국의 소리』, 2015.8.13.

1120_UN Doc. CRPD/C/PRK/1 (2018), Annex.

표Ⅳ-8 장애인 성별 및 연령별 비율(2016년 기준)

(단위: %)

| 연령(세) | 남성 | 여성 | 합계 |
|-------|------|------|------|
| 0~4 | 0.4 | 0.2 | 0.3 |
| 5~6 | 0.6 | 0.4 | 0.5 |
| 7~16 | 1.2 | 0.8 | 1.0 |
| 17~59 | 5.4 | 4.2 | 4.8 |
| 60 이상 | 13.3 | 19.1 | 16.9 |
| 합계 | 5.1 | 5.9 | 5.5 |

출처: UN Doc. CRPD/C/PRK/1 (2018).

나. 장애인 권리 실태

(1) 직업훈련 및 재활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재활에 대해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장애자보호법에서 “국가는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한다”(제11조), “보건지도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제14조)고 훈련 및 재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재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2013년 3월 평양에 지능장애와 사지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과 회복을 위한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건립하였다.¹¹²¹ 그리고 2013년 12월 6일 평양에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기능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수기능회복원’이 개원되었다. 동 회복원은 각 도, 시, 군병원들에 개설되어 있는 기능장애인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과의 모체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¹²² 또한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동대원장애자운동관’을 건설하였다.¹¹²³

북한에도 함흥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 등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함흥교정기구공장에서는 폴리프로필렌수지로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교정기구공장의 직원은 상당수 장애인들이며 이들은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¹¹²⁴ 그렇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 장애인 용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¹¹²⁵

북한에는 1952년 설립된 함흥재활센터를 비롯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사업으로 2002년 황해북도 송림에 개관한 송림신체재활센터와 2006년 평양에 개관한 락랑신체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121_ 『노동신문』, 2012.9.30.; 『조선중앙통신』, 2013.3.29.;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69.

1122_ 『조선신보』, 2013.12.17.; 『조선중앙통신』, 2014.12.16.

1123_ 『통일뉴스』, 2016.2.27.

1124_ 『조선신보』, 2013.5.23.;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1; 『연합뉴스』, 2014.12.3.; Katharina Zellweg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North Korea,” *Shorenstein APARC Working Paper* (2014), p. 37.

1125_ NKHR2015000131 2015-09-22.

1월에서 9월까지 송림과 락랑에 위치한 신체재활센터에서는 3,127건의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었다.¹¹²⁶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일련의 ‘실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교정기구 및 수술기구의 현대화,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증진, 장애아동을 위한 원거리 교육 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왔다.¹¹²⁷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대다수의 증언이다.¹¹²⁸

(2) 적절한 생활수준 및 고용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 내에서 장애인은 우대를 받는 영예군인과 일반 장애

1126_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북한 활동” 2020년 12월, <https://kr.icrc.org/wp-content/uploads/2021/03/2020-DPRK-Fact-and-Figures_KO.pdf> (Accessed September 6, 2022).

1127_ UN Doc. CRPD/C/PRK/1 (2018), para. 30.

1128_ NKHR2018000017 2018-04-09; NKHR2018000018 2018-04-09; NKHR2018000101 2018-10-01; NKHR2018000007 2018-03-12; NKHR2018000121 2018-10-22; NKHR2018000114 2018-10-13.

인으로 구분되는데, 공장의 경우에도 영예군인 공장과 일반 장애인 공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²⁹ 왜소증, 쇼아마비 등의 장애인들은 지역 편의봉사시설(편의봉사관리소)에서 도장 만드는 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 등을 수리하는 일 등의 경노동을 하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타를 연주하여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¹¹³⁰ 북한은 2007년 평양에 재봉작업장, 시계수리점, 머리방과 미용시설을 갖춘 보통강 종합편의를 개설하여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¹³¹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에 장애인들만 다니는 공장이 있었고, 실제로 운영되어 단추나 간단한 경첩, 지퍼 등을 만든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³²

북한이 2018년 12월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59세 장애인구 가운데 58.4%(남성 61.6%, 여성 54.7%)가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¹¹³³ 현재 북한에는 시각장애인이 근무하는 전용 공장이 북한 전역 60개 이상 시군구에 설립되어 있다.¹¹³⁴

1129_ 『데일리NK』, 2012.8.28.;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p. 71~72.

1130_NKHR2015000036 2015-02-10; NKHR2017000007 2017-04-10.

1131_Katharina Zellweg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North Korea," p. 21.

1132_NKHR2020000047 2020-11-28.

1133_UN Doc. CRPD/C/PRK/1 (2018), Table 5.

1134_UN Doc. CRPD/C/PRK/1 (2018), para. 169.

표Ⅳ-9 영예군인 공장 운영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양강도 해산시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음. 과거 각종 그릇을 생산했으나, 현재는 생산품 없음. | NKHR2015000043 2015-02-24 |
| 함경북도 길주군에 영예군인이 운영하는 통신기계공장이 있으며 배급도 실시됨. 다만 정상 배급은 아니고, 연 최대 6개월치 정도 배급됨. | NKHR2015000053 2015-03-10 |
| 양강도 해산시 연봉1동, 연두동, 송봉동, 위연동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음. 현재 전기, 원료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 | NKHR2015000130 2015-09-22 |
| 함경북도 회령시 성천동에 맹인 영예군인 공장이 있음. | NKHR2016000099 2016-06-14 |
| 양강도 갑산군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으며, 가동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함. | NKHR2017000046 2017-07-03 |
| 양강도 갑산군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음. | NKHR2017000050 2017-07-03 |
|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구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음. | NKHR2018000029 2018-05-08 |
|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음. | NKHR2018000029 2018-05-08 |

표Ⅳ-10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4년 삼지연 리명수 노동자구에 장애인들을 위한 경노동직장이 있었으나 운영되지는 않음. | NKHR2016000030 2016-03-08 |
|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구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장이 있음. | NKHR2013000036 2013-02-19 |
| 함경북도 회령시 성천동에 장애인을 위한 경노동직장이 있음.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 NKHR2013000095 2013-05-14 NKHR2015000131 2015-03-22 |
| 함경북도 무산군에 장애인 공장이 있었으나 현재 기자재가 없어 유지되지 않고 있음. | NKHR2013000116 2013-06-11 |
|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노동직장이 있음. | NKHR2013000186 2013-09-17 |
| 양강도 삼수군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공장들이 있음. | NKHR2016000083 2016-05-31 |
| 평양시 축전동에 중견기업 규모의 장애인 공장이 있음. | NKHR2016000170 2016-11-01 |
| 함경남도 원산에 장애인을 위한 경노동 사업소가 두 곳 있었으나, 실제 장애인은 없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적만 걸어 놓는 데 활용함. | NKHR2017000007 2017-04-10 |
|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에 시각장애인 공장이 있었음. 규모는 크지 않음. | NKHR2018000016 2018-10-01 |
|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경로동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음. 일이 조금 쉽고 일하는 시간이 적음. | NKHR2021000006 2021-09-03 |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탈북한 20대 후반 여성은 어머니가 한 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보조금은 없었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루 300g씩 배급이 나왔으며, 달마다 지급되었다고 한다.¹¹³⁵ 인근에 거주하던 지체장애인에게 당국 차원에서 쌀도 주고 물품도 가끔 한 번씩 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¹¹³⁶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가적으로 배려 내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 부양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에서 장애인에게 국가가 주는 혜택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³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은 없다고 증언하였다.¹¹³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혜산시에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직업이 없어서 가족들이 먹여 살렸고, 따로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¹¹³⁹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의 동생이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국가 지원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⁰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시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국가에서

1135_NKHR2018000096 2018-08-27.

1136_NKHR2018000094 2018-08-27.

1137_NKHR2021000025 2021-11-09.

1138_NKHR2020000007 2020-05-16.

1139_NKHR2020000014 2020-06-15.

1140_NKHR2022000003 2022-05-19.

받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가족이 생계를 책임졌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생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영예군인들이 장마당에 많으며, 강매를 하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¹¹⁴¹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대우나 지원은 대개 영예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예군인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은 그들의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영예군인들에게 석탄, 쌀, 부식물을 제공하는 등 생활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¹¹⁴²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에게는 국가의 배려가 크다고 증언하였다. 영예군인이 결혼할 때 결혼식과 집, 혼수 등 재산을 국가에서 다 해주며, 결혼식에는 도당, 시당 책임비서도 와서 매우 잘 해준다고 증언하였다.¹¹⁴³ 또한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영예군인들에게는 우선적인 병원 치료가 가능하며 정기 검진이나 약 등의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영예군인을 고용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영예군인으로 1987년 12월 제대하여 1988년 1월부터 영예군인 공장에 다녔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 수지용품공장이 원산시 남산동에 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

1141_NKHR2017000028 2017-06-05.

1142_NKHR2022000022 2022-06-21.

1143_NKHR2020000005 2020-05-15.

1144_NKHR2020000019 2020-07-04.

1145_NKHR2020000012 2020-06-15.

주민은 남포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곳에서 가구와 우산을 생산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⁶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김책시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⁷

급수가 높은 영예군인들은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은 급수에 따라 보장이 다른데, 3급 같은 낮은 영예군인은 혜택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급영예군인이 결혼하면 아내의 일을 하지 않고 남편만 돌보게 한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⁸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수산물 1~2kg을 배분하며, 특급영예군인은 조금 더 대우한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⁹

이외에도 영예군인들이 국가에서 의식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 2017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부친이 영예군인으로 감자수확철에 감자 배급을 받았으며 양은 매년 다르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증언하였다.¹¹⁵⁰ 2015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복무 중 실명한 영예군인에게 아파트, 전화, 배급 등 우선적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¹¹⁵¹ 2012년에 탈북한 함경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학교에서 영예군인들을 위해 현금이나 장갑 또는 옷 등의 지원물자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² 양강도 헤산시 출신 북

1146_NKHR2020000045 2020-10-13.

1147_NKHR2021000017 2021-09-24.

1148_NKHR2020000014 2020-06-15.

1149_NKHR2020000045 2020-10-31.

1150_NKHR2017000018 2017-04-10.

1151_NKHR2017000046 2017-07-03.

한이탈주민은 2015년 예산 배급소에서 일반 인민은 제외하고 영예군인에게만 식량을 배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였다.¹¹⁵³

그러나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많았다. 상당수의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의 급수에 따라 지원 규모와 내용이 다르다. 급수가 낮은 영예군인들에게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해마다 일정치도 않으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다리를 다쳐서 제대한 장애인인 직장을 찾아서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국가에서 영예군인에게 특별히 주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과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 지원 체계는 되어 있지만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에게 나라에서 따로 보장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⁶

아버지가 영예군인이었던 함경북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에게 실제로 지원되는 물자 또는 보조금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다고 말하였다.¹¹⁵⁷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고모

1152_ NKHR2016000135 2016-08-23.

1153_ NKHR2016000041 2016-04-05.

1154_ NKHR2020000031 2020-08-03.

1155_ NKHR2020000007 2020-05-16; NKHR2021000025 2021-11-09.

1156_ NKHR2020000014 2020-06-15.

1157_ NKHR2016000046 2016-04-19.

아들이 군복무 중 눈을 다쳐 영예군인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⁸ 2016년 탈북한 30대 남성은 부친이 영예군인이었는데, 영예군인 배급이라고 하여 감냉이나 감자를 배급받았다고 한다. 감자 배급의 경우 1년에 한 번 감자철에 이루어지는데, 50kg이 주어질 때도 있고 100kg이 주어질 때도 있었으며,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도 있었다고 한다.¹¹⁵⁹ 2019년 탈북한 20대 북한이탈주민은 군복무 당시 나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강제제대를 당했는데 보조금으로 한 달에 50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보장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¹¹⁶⁰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에게 국가에서 명절 때 보약 정도 주는 것 말고는 제공해 주는 것이 없고 의족이나 의수도 자기 돈으로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⁶¹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영예군인이라는 호칭만 있고 별다른 지원은 없었으며,¹¹⁶² 농사나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¹¹⁶³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기보다 배급을 좀 더 해주는 편이라고 증언하였고,¹¹⁶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2019년 당시 기관에서 영예군인에게 쌀이나 기름 등의 식료품을 후원해 주지만 그것으로 생활유지는 불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⁶⁵

1158_NKHR2018000058 2018-07-02.

1159_NKHR2017000018 2017-04-10.

1160_NKHR2019000065 2019-08-17.

1161_NKHR2021000004 2021-08-20.

1162_NKHR2021000008 2021-09-07.

1163_NKHR2021000007 2021-09-06.

1164_NKHR2021000022 2021-10-19.

영예군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거나, 영예군인 등록 시 혜택보다 불이익이 커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 2018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사촌이 군복무 중 눈을 다쳐 영예군인이 되었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¹¹⁶⁶ 2018년 탈북한 30대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군복무 중 다쳤지만 영예군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영예군인으로 등록하면 배우자가 공식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장마당에서의 사경제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시어머니가 등록을 말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¹¹⁶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실명을 당해 제대하였는데 영예군인이 되더라도 특별한 우대가 없기 때문에 영예군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¹¹⁶⁸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다가 장애를 입은 영예군인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이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20대 북한이탈주민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는데 유해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복무를 하다가 장애를 입어 2011년 특수영예군인으로 제대하였다고 한다. 증언자에 따르면 특수영예군인이 되면 자녀의 학교비용이 면제되고 명절공급을 받으며 일정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한다. 이 증언자는 아버지가 1년에 네 번 명절공급을 받고, 일 년에 한 번 도병원에서 40일 동안 치료요양을 받았다고 한다.¹¹⁶⁹

1165_ NKHR2021000029 2021-11-23.

1166_ NKHR2018000058 2018-07-02.

1167_ NKHR2018000072 2018-07-30.

1168_ NKHR2019000074 2019-08-26.

북한은 장애인보호법에서 “교육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연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컴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 것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북한은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12년 5월 2일 평양에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장애자기능공 양성반’이 개설되었다. 동 양성반은 1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아들과 절단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장애인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¹¹⁷⁰ 또한 영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두라 인터내셔널’은 2016년 5월 2일 평양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디자인 학교를 개설하기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합의하였다.¹¹⁷¹

다. 가정 및 지역사회 동참 노력 실태

(1)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위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제19조 가.)고 거주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

1169_ NKHR2019000071 2019-08-26.

1170_ 『조선중앙통신』, 2012.5.2.; 『조선신보』, 2012.5.9.; 『조선신보』, 2013.5.23.; 『에이블뉴스』, 2013.8.9.;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0.

1171_ 『미국의 소리』, 2015.12.29.

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제19조 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는 거주지 선택과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격리 지역의 운영이다.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김형직군(구 후창군) 연하리이다.¹¹⁷²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왜소증 장애인들이 후창에 보내질 때 친척이 시당책임비서였던 한 장애인은 거기서는 제외되었지만 변두리에 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¹¹⁷³

이와는 다르게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하였다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함경북도 나선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나선 시내에서 왜소증 장애인과 척추장애인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⁷⁴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왜소증 장애인 격리촌이 운영되지만 모든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증언을 통해 왜소증 장애인 격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1172_ NKHR2015000074 2015-04-07; NKHR2015000106 2015-05-19; NKHR2016000083 2016-05-31.

1173_ NKHR2022000021 2022-06-21.

1174_ NKHR2016000186 2016-12-13.

표 IV-11 왜소증 장애인 격리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왜소증 장애인의 격리수용 및 강제 불임수술이 시행되었음. | NKHR2014000004 2014-02-18 |
| 왜소증 장애인들을 따로 살게 하며, 아이를 못 낳게 통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음. | NKHR2014000055 2014-05-20 |
| 양강도 김형직군 연하리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했는데, 이들은 주민부락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았음. | NKHR2014000076 2014-06-17 |
| 장애인의 후대를 남기지 않도록 하고, 후창군에 밀집해서 퍼지지 않도록 했다고 함. | NKHR2014000137 2014-09-12 |
|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이모부를 따라 부업지 밭에 다녀오는 길에 후창에서 왜소증 격리지역을 목격함. | NKHR2017000131 2017-12-18 |
| 왜소증 장애인들은 모두 시골로 보냈으며, 양강도 후창에 그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음. 왜소증 장애인의 경우 국가에서 강제로 피임을 시킴. | NKHR2022000021 2022-06-21 |

표 IV-12 왜소증 장애인 비격리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함경북도 청진시 장마당에서 왜소증 장애인이 CD-R 장사를 하는 등 왜소증 장애인을 많이 목격했음. | NKHR2014000010 2014-03-04 |
| 왜소증 장애인을 많이 목격함. | NKHR2014000027 2014-04-01 |
| 인민반 내에 왜소증 장애인이 있었는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었음. 양강도 해산시에는 왜소증 장애인이 여럿 살고 있음. | NKHR2014000075 2014-06-17 |
| 고모가 사는 양강도 000군에서 이웃집에 왜소증 장애인(남성)이 사는 것을 목격했음. | NKHR2014000131 2014-08-26 |
| 어렸을 때부터 2015년 탈북시점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000동에 왜소증 장애인이 거주했음. | NKHR2015000141 2015-10-06 |
|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후창에 격리수용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해산시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함. 친척이 있으면 거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함. | NKHR2017000022 2017-05-08 |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특기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평양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⁷⁵ 2012년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에도 장애인이 많은 것 같은데 왜 평양에는 없는가’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¹¹⁷⁶

다만, 최근에 장애인이나 영예군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시민 중에 장애인이 출생했다고 해서 지방으로 보내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¹¹⁷⁷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장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손재간이 있어 사는 형편이 괜찮고 영예군인과 결혼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증언하였다.¹¹⁷⁸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¹¹⁷⁹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불쌍하게 생각한 적 없고 오히려 잘 살아서 시기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¹¹⁸⁰ 또한 장애인들은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돈벌이만 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서 시집 장가를 잘 간다는 증언이 있었다.¹¹⁸¹

1175_NKHR2014000078 2014-07-01.

1176_NKHR2015000176 2015-12-15.

1177_NKHR2021000005 2021-08-20.

1178_NKHR2021000004 2021-08-20.

1179_NKHR2021000008 2021-09-07.

1180_NKHR2021000010 2021-09-08.

1181_NKHR2021000012 2021-09-13.

(2)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위반

장애인권리협약은 “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제23조 제1항 가.)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하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를 인정”(제23조 제1항 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인도적 차별 대우와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행위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을 들 수 있다. 2015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왜소증 장애인들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⁸² 또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격리지역에 보내진 이들에게 2세를 낳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강제로 피임을 시켰다고 증언했다.¹¹⁸³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계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자녀를 낳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관련 증언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자의 승인 없이는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¹¹⁸⁴

1182_NKHR2015000171 2015-12-01.

1183_NKHR2022000021 2022-06-21.

1184_NKHR2019000084 2019-10-05.

(3) 이동성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후 2013년 11월 장애인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물과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¹¹⁸⁵

북한은 순안국제공항을 개축하면서 화장실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시설을 제외하고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한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은 과학기술센터, 평양순안공항(입국장), 평양초등학교 등 새로운 공공건물조차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고 확인하였다.¹¹⁸⁶ 또한 주거시설,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상 제약들이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별보고관에게 2017년 5월 이래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양에서 무료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건설감독성 산하 국가건설위원회가 지침을 정했다고 보고하였다.¹¹⁸⁷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최근의 접근기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대한 기술협력을 요청한 것을 환영하였다.¹¹⁸⁸

1185_ 『조선신보』, 2013.12.6.; 『연합뉴스』, 2013.12.6.

1186_ UN Doc. A/HRC/37/56/Add.1 (2018), para. 45.

1187_ *Ibid.*, para. 46.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 도입 및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¹¹⁸⁹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에 건설법규로 ‘무장애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였다.¹¹⁹⁰ 이는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제8조 제2항 가. 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 제49조에 따라 2011년부터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¹¹⁹¹ 그리고 북한은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2월 3일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장애자 연합모임(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다.¹¹⁹² 북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행

1188_ *ibid.*

1189_ UN Doc. CRPD/C/PRK/1 (2018), para. 76.

1190_ 『조선중앙통신』, 2019.12.18.

1191_ 『조선신보』, 2014.6.24.

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조직(2012년 11월)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탁구경기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참가인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¹¹⁹³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은 방북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장애인은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낙인과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⁹⁴ 또한 특별보고관은 북한 법률에 장애인을 지칭하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¹¹⁹⁵ 인지장애 및 심리사회장애가 있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제한하고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와 부합하도록 사법당국이 포괄적인 심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¹¹⁹⁶ 전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¹¹⁹⁷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대중 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1192_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2; 『조선신보』, 2013.12.7.

1193_ 이규창, 위의 책, p. 72.

1194_ UN Doc. A/HRC/37/56/Add.1 (2018), paras. 39~44.

1195_ *Ibid.*, paras. 26~28. 북한 형사소송법 제 172조와 제229조(병어리, 귀머거리)와 민사소송법 제49조(행위무능력자), 사회주의노동법 제78조(불구자), 인민보건법 제13조(로동능력상실자), 민사소송법 제49조(부분적행위능력자, 행위무능력자), 헌법 제66조(정신병자).

1196_ *Ibid.*

1197_ *Ibid.*, para. 42.

변화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은 2016년경 장애인에 대한 당국의 배려를 TV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¹¹⁹⁸ 또 다른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2017년 말부터 TV에서 장애인 공연단, 장애인 학교 등 장애인에 대한 소식이 많아졌다고 증언하였다.¹¹⁹⁹ 2019년에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 해 동안 북한 당국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취해 실시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¹²⁰⁰ 이는 장애인 복지를 통해 당국의 치적을 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기피되었던 과거와 비교할 때 긍정적 변화로 볼 수도 있다.

마.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먼저 남북 사이의 협력을 살펴보면, 남북 장애인 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대구대 대표단, 북한에서는 조선적십자병원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2월 19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재활 치료, 특수교육 부문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남북 간의 재활과학 분야 첫 토론회가 개최되었다.¹²⁰¹ 또한, 2007년 5월 등대복지회의

1198_ NKHR2018000056 2018-07-02.

1199_ NKHR2018000117 2018-10-22.

1200_ 『조선중앙통신』, 2019.12.18.

1201_ 『연합뉴스』, 2006.12.22.

지원으로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에 ‘보통강 종합편의’를 건립·개원하였으며, 이는 북한 최초의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¹²⁰²

둘째, 국제 NGO와의 협력이다. 국제푸른나무는 평양에 장애인 의료지원 및 재활기술 교육, 장애인 체육 및 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동강 장애인회복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¹²⁰³ 또한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평양의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등의 물리치료사들에게 작업 치료법을 전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²⁰⁴ 독일 대북 민간단체 ‘투게더-함흥’은 가톨릭 단체와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2016년 4월 평양 모란봉구역에 교실 10개 정도와 4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최초의 청각장애인 유치원을 개원하였다.¹²⁰⁵ 2019년 미국 구호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는 평양의학대학 내에 ‘척추·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 연구소’를 건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환자 치료 외에 북한 의료진을 상대로 뇌성마비, 자폐증 등 행동발달장애 어린이 진료법을 훈련할 계획이다.¹²⁰⁶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송림과 락랑에 위치한 신체재활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¹²⁰⁷

1202_ OOO,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

1203_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참조.

1204_ 핸디캡인터내셔널 홈페이지, <www.handicap-international.org> 참조.

1205_ 『노컷뉴스』, 2016.7.1.

1206_ 『미국의 소리』, 2020.1.1.

1207_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북한 활동,” 2020년 12월, <https://kr.icrc.org/wp-content/uploads/2021/03/2020-DPRK-Fact-and-Figures_KO.pdf> (Accessed September 6, 2022).

셋째, 국제사회와 장애인 교류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2011년 2월 9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세계농인연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에 따라 북한 조선맹인협회(2014년 3월 발족)와 조선농인협회(2013년 12월 발족)가 세계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²⁰⁸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핀란드농아인협회의 주선으로 북한의 청각장애인 3명 등 북한대표단 6명이 핀란드를 방문하였으며, 핀란드 국제개발부 세르파 파테로 장관을 예방하였다.¹²⁰⁹ 그리고 2015년 2월 20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장애학생 연주회를 개최하였다.¹²¹⁰ 또한 2014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청각장애인 18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¹²¹¹ 독일 본에 본부를 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관계자는 2016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탁구선수 13명과 수영선수 8명 등 21명에게 패럴림픽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도’와 규정, 분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¹²¹²

넷째, 장애인 관련 국제경기에 대한 참여이다. 북한은 2010년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하였고 2011년 9월에는 민족장애자 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3년 11월 22~24일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

1208_ 『조선신보』, 2014.6.24.

1209_ 『미국의 소리』, 2014.11.8.

1210_ 『조선신보』, 2014.8.27.; 『MK뉴스』, 2014.9.17.; 『아시아경제』, 2015.2.6.

1211_ 『조선신보』, 2014.8.27.

1212_ 『미국의 소리』, 2016.6.7.

였다. 또한 2012년 런던 하계패럴림픽대회, 2013년 10월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장애인청소년 경기대회, 2014년 10월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9월 리우데자네이루 하계패럴림픽대회,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등 장애인 관련 국제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으로 구성된 북한 농아축구팀은 2014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2016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오스트레일리아 농아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¹²¹³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¹²¹⁴

바. 평가

북한은 장애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영예군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및 지원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213_ 『미국의 소리』, 2016.11.19.

1214_ 『자유아시아방송』, 2022.1.10.

또한 왜소증 장애인 격리와 불임 등 지역사회 통합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예군인 공장,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등 자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2019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장애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¹²¹⁵ 장애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자등록상식문답집 발간, 장애자전용홈페이지 신규 개설, 청력장애자들을 위한 손말 전자사전 등을 개발하고 있다.¹²¹⁶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¹²¹⁷를 수용하였다.¹²¹⁸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장애인 관련 국내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하였다.¹²¹⁹ 이러

1215_『조선중앙통신』, 2019.12.18.

1216_『조선중앙통신』, 2021.12.23.

1217_UN Doc. A/HRC/42/10 (2019), para. 126.193~126.199.

1218_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1219_UN Doc. CRPD/C/PRK/1 (2018), paras. 199~204.

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의 주도로 핸디캡 인터내셔널,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함께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되어 2022년 9월 종료되었다.¹²²⁰ 북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1220 『미국의 소리』, 2022.12.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Chapter V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해외 탈북자
 3. 해외 노동자
 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재해재난
-

1

정치범수용소

북한 당국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¹²²¹ 북한은 이를 체제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치범수용소 현황, 수용 사유와 절차, 수용자 인권 실상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정치범수용소 현황

북한 당국이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국가보위성에서 운영하는 비공식적인 구금시설이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관리소의 존재를 부정해 오고 있다. 현재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총 5개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21_NKHR2019000020 2019-05-07.

개천 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창동, 잠상리, 동창골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요덕 15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대숙리, 입석리, 구읍리, 용평리, 평전리 등 다섯 개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덕군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명간 16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명간군 증평동, 가리동, 부화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명간의 구 지명을 따서 ‘화성관리소’로도 불린다. 개천 18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 동림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6~2007년경 평안남도 북창군 세포동, 삼포동, 신흥리 일대에 위치하던 구 북창 18호 관리소가 대폭 축소되어 평안남도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수성교화소’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라고 한다. 청진 25호 관리소에는 도당 보안부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간부들이 수용된다는 증언도 있다.¹²²²

1222_NKHR2014000010 2014-03-04; NKHR2014000056 2014-05-20.

그림 V-1 정치범수용소 위치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운영 형태, 구역구분, 사회복귀 여부, 가족동반 여부 및 관리주체에 따라 <표V-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¹²²³

표 V-1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운영 현황

| | 개천 14호 관리소 | 요덕 15호 관리소 | 명간 16호 관리소 | 개천 (구 북창) 18호 관리소 | 청진 25호 관리소 |
|---------|------------|-----------------|------------|-------------------|------------|
| 형태 | 마을 | 마을 | 마을 | 마을 | 구급시설 |
| 구역구분 | 완전통제구역 | 혁명화구역 완전통제구역 | 완전통제구역 | 이주민 (별도 구분 없이 수용) | 교회소식 |
| 사회복귀 | 불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가능 | 불가능, 가능 |
| 가족동반 여부 | 가족동반 | 본인/ 가족동반 | 가족동반 | 본인/ 가족동반 | 본인 |
| 관리주체 | 국가보위성 | 국가보위성 | 국가보위성 | 인민보안성 | 국가보위성 |

1223_ 자세한 내용은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1~16.

나. 수용 사유와 절차

‘정치범죄’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정치범죄란 ①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와 같은 ‘절대적 정치범죄’와, ② 살인, 방화, 절도 등 일반범죄의 요소가 절대적 정치범죄 행위에 결합돼 있는 ‘상대적 정치범죄’로 분류된다.¹²²⁴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정치범이 모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수령을 모독한 경우,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조직적 인신매매,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 한국행 알선 행위, 한국 사람과 접촉하거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한 경우, 한국이나 외국에 중요 문건이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용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운영 초기에는 종파분자, 반김일성 분자 등이 수용되었다.¹²²⁵ 현재에도 이와 같은 정치범수용소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즉, 북한체제를 반대하거나 최고지도자를 모독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말 반동’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항상 언사를 신중히 했다고 증언하였다.¹²²⁶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증언하였으며,¹²²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말하는 것을 왜곡하

1224_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9.

1225_ 위의 책, p. 10.

1226_ NKHR2019000104 2019-11-09.

1227_ NKHR2022000006 2022-05-25.

거나 김정은 방침을 왜곡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증언하였다.¹²²⁸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발각된 경우 관리소에 수용되기도 한다.¹²²⁹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양강도에서 33살 여성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여성의 남편은 ○○총국 초기복무 중이었는데, 부인이 관리소에 가게 되면서 제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²³⁰

인신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교화소에 가게 되지만, 조직적 인신매매의 경우이거나 한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에 같은 여맹에 있던 한 여성이 70명을 인신매매로 넘기다가 적발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²³¹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2016년경 국경지역에 사는 동창생이 인신매매로 사람을 중국에 넘기는 일을 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후 증언하였다.¹²³²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경 양강도 김정숙군 인민반장이 인신매매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²³³

1228_NKHR2022000001 2022-05-13.

1229_NKHR2019000019 2019-05-07.

1230_NKHR2019000031 2019-06-03.

1231_NKHR2018000101 2018-10-01.

1232_NKHR2019000046 2019-07-01.

1233_NKHR2019000019 2019-05-07.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함경북도 무산군에 살던 가족 11명이 탈북 후 중국 비행장에서 검거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관련 사실은 보위지도원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지하여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당시 8세로 추정) 무산의 고아들을 키우는 숙박소에 들어갔다고 전했다.¹²³⁴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있을 때 한국행을 기도하다가 적발된 일가족 5명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²³⁵ 한국행을 기도하다 잡히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는 점은 북한주민들도 인지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가다가 잡히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고 증언하였다.¹²³⁶ 2018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한국행을 기도하다 잡히면 재판 없이 보위성에서 바로 정치범수용소로 간다고 증언하였다.¹²³⁷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알선하던 탈북 브로커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브로커였던 고모부가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²³⁸ 2017년 탈북한 한 50대 여성은 탈북 브로커였던 동생이 2016년에 보위부에 체포된 이후 행방

1234_ NKHR2019000033 2019-06-03.

1235_ NKHR2019000075 2019-08-26.

1236_ NKHR2022000017 2022-06-13.

1237_ NKHR2022000006 2022-05-25.

1238_ NKHR2017000099 2017-10-23.

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하였다.¹²³⁹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에 탈북 브로커였던 이웃 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한 부모의 부탁으로 북한에 남아 있던 그들의 아이를 중국 브로커에게 넘겨준 일이 발각되어 보위성에 잡혀갔고,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⁴⁰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특문사례에 따르면, 2018년 대흥단 쪽으로 탈북을 시도한 7명 중 인솔자 여성 1명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나머지 인원은 10,000위안을 주고 풀려났다고 한다.¹²⁴¹

한국이나 외국에 문건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발각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남편과 사돈 관계인 여성이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시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간첩행위로 인정되어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²⁴² 이외에도 종교활동을 이유로 수용된 사례도 있는데,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12월 동네 주민의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²⁴³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4월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배포 및 선교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간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⁴⁴

1239_NKHR2018000028 2018-05-08.

1240_NKHR2018000057 2018-07-02.

1241_NKHR2019000074 2019-08-26.

1242_NKHR2018000105 2018-10-01.

1243_NKHR2017000012 2017-04-10.

한국과의 통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북한 실상 녹화물을 외국으로 유포 행위도 수용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도에 공개총살 녹화물을 국외에 유포시킨 것을 ‘적선’ 죄라고 해서 온 가족이 25호 관리소에 갔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⁴⁵ 2015~2016년경 지인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수감 사유가 한국에 있는 친척과의 전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등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전에 법 단련을 받은 조사문건으로 재범 처리가 되었고 여러 죄를 중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²⁴⁶

한편,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2016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이 득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한 바에 따르면, 2014년경 모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붙잡히자 할머니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¹²⁴⁷ 다만, 예전에는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한국행이 많아지면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수집된 바 있다.¹²⁴⁸ 또

1244_NKHR2019000051 2019-07-20.

1245_NKHR2020000030 2020-08-03.

1246_NKHR2020000005 2020-05-15.

1247_NKHR2017000038 2017-06-05.

1248_NKHR2015000028 2015-02-10; NKHR2017000067 2017-08-28.

한,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이 수용된 경우에도 아이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을 기도한 가족을 관리소에 수용하면서 아이들은 제외하였다는 증인들이 수집되었다.¹²⁴⁹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¹²⁵⁰

정치범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정치범수용소 수용은 재판 없이 하고 국가보위성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한다.¹²⁵¹ 국가보위성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낼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사회안전성으로 이관한다.¹²⁵² 정치범 피의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족, 친지 등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실 및 상황을 알기는 쉽지 않다.

다. 수용자 인권 실상

(1)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그동안 수집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원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

1249_NKHR2015000015 2015-01-27; NKHR2015000030 2015-02-10; NKHR2016000171 2016-11-01; NKHR2019000033 2019-06-03.

1250_NKHR2013000154 2013-08-20.

1251_NKHR2016000171 2016-11-01.

1252_NKHR2022000017 2016-06-13.

된다. 이런 식의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의 종류는 정치범수용소별로 다른데,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노동을 주로 하였으며 지리적 특성상 농사는 불가능하였다고 한다.¹²⁵³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공업반, 농산반 등이 있다고 한다.¹²⁵⁴ 탄광 노동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한다.¹²⁵⁵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비인도적 처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탄광교대 책임자인 ○○○ 교대부갱장이 탄광노동 중 계획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로 걷어차고 자루로 가격하는 등 구타를 하였으며, 탄광 보안원 역시 구타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²⁵⁶

1253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254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1255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1256_ 위의 증언.

정치범수용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김혜숙은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안남미가 한 달에 고작 8kg이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⁵⁷ 쌀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는 것밖에는 허기를 채울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쉬는 날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식량으로 모아 놓았다고 한다.¹²⁵⁸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지병과 영양실조로, 동생 2명은 각각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 북창 18호 관리소 내에는 영종병원이 있었는데 자신이 2004년 4월 탄광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을 때 X-레이 검사만 받고 치료는 받지 못하였으며 다리를 절단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¹²⁵⁹

(4) 가족생활 제한

그동안 수집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혁명화구역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고 한다.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었다.

1257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11), pp. 73~76.

1258_ 위의 책, pp. 73~76.

1259_ NKHR2013000126 2013-07-09.

라. 평가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다양하다. 들어보기만 했다는 증언부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등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진 증언자도 있었다. 수용 사유와 절차에 대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증언은 없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인권 실상에 관련된 증언 역시 수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수용자들은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 탈북자

북한 해외 탈북자에 대한 실태와 인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조사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가. 해외 탈북자 규모 및 배경

자유권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제2항).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등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1) 탈북 단속 강화와 중국 체류 탈북자 감소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하였다. 그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강제송환, 탈북 비

용의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증 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이외에도 장마당 활성화 등 북한 내 경제사정의 호전, 한국 등 제3국 정착의 이탈주민 증가 등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엄격한 국경 봉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래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2015년 형법 개정 당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제222조)를 신설하고,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비법국경출입죄(제221조)와 동일한 형량으로, 불법적 국제전화 통화가 불법적 국경 출입과 마찬가지로의 무거운 죄로 간주됨을 시사한다.

특히 주된 탈북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혜산지역의 경우 탈북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휴대전화 전자장벽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탐지활동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탈북희망자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12km에 이르는 혜산지역 국경지대에 철조망이 세워졌다. 철조망은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가로로만 철사가 연결되어 있지만 세로 방향으로도 철사가 추가되었다.¹²⁶⁰ 그리고 2층

1260_NKHR2015000130 2015-09-22.

초소들이 세워졌다.¹²⁶¹ 2016년부터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²⁶² 그런데 이는 비단 해산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쉽게 도강이 어려운 압록강 사이에 두고서도 북중 간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즉,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원래 신의주는 수해 방지를 위해 도시 주변으로 동독을 쌓아 놓았으며, 여느 때 같으면 그 동독 위를 걸으며 압록강 풍광을 산책할 수 있었으나 2015년경부터 국경에 철조망이 쳐지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되어 더 이상 동독에 올라서서 산책할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중국 쪽 경비가 상당히 강화되었다.¹²⁶³

한편 탈북자의 경우 ‘3족을 멸한다(치별한다)’ 혹은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강력한 처벌 경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탈북현상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월경자 발생 시 현장에서 총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¹²⁶⁴ 실제로 탈북 과정에서 총기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반면 국경지대에서의 총기사용은 탈북 방지를 위한 위협일 뿐 실제 사격은 못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¹²⁶⁵ 2020년 조사에서는 탈북과정에 총기가 사용된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

1261_NKHR2015000136 2015-09-22.

1262_NKHR2019000012 2019-04-20.

1263_NKHR2022000014-2 2021-07-29.

1264_NKHR2016000028 2016-03-08.

1265_NKHR2015000122 2015-09-08.

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경경비대가 총을 실제로 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위협용으로 빈 공간에 쏜다고 증언하고 있다.¹²⁶⁶ 또한,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최근에는 탈북을 감시하기 위해 실탄을 쏘는 경우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 사례는 들어본 바 없다고 증언하면서, 다만 국경 감시가 더 삼엄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았다고 말했다.¹²⁶⁷

탈북자에 대한 총살이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는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북한에서 탈북 중 검거된 주민 5명 정도가 총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 탈북한 사람이 ‘탈북자는 무조건 총살한다’고 말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⁶⁸

표 V-2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6년 함경북도 온성군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남성 3명이 두만강 너머로 중국이 보이자 즉흥적으로 탈북을 시도했으나 총에 맞아 사망함. | NKHR2018000107 2018-10-01 |
| 2017년 압록강 건너편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국 주민을 국경경비대가 탈북자로 오인해 총을 쏜 사건이 있었음. 다리에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일로 경비대원은 다른 곳으로 전출됨. | NKHR2018000057 2018-07-02 |
| 2017년 말 탈북하던 3명 중 1명이 경비대원에게 허벅지를 관통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음. 도강할 때 군인들에게 발견되면 일단 서라고 하지만, 무서우고 뛰어가면 실탄사격함. | NKHR2019000024 2019-05-18 |
| 2017년 겨울~2018년 초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하려던 3명에게 경비대가 총을 쏘. 2명은 무서워서 현장에서 검거되고, 나머지 한 명은 뛰어서 도강함. | NKHR2019000019 2019-05-07 |
|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북한에서 탈북 중 검거된 주민 5명 정도가 총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함. 또한 최근 탈북한 사람이 ‘탈북자는 무조건 총살한다’고 말해주었다고 함. | NKHR2020000019 2020-07-04 |

1266_ NKHR2020000005 2020-05-15.

1267_ NKHR2020000022 2020-07-06.

1268_ NKHR2020000019 2020-07-04.

탈북과정에서 단속의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히 중국에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오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비용이 1인당 최소 한화로 1,500만 원 전후로 급등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자유를 갈망해서 아예 중국이 아닌 애초부터 남한 정착을 목표로 온다는 것이다.¹²⁶⁹

그러나 반대로金正은의 탈북 단속 지시가 너무 심해 역효과가 나서 탈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¹²⁷⁰

(2) 탈북자들의 전 세계 이주 시도

탈북 주민은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 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 이스라엘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여 왔다.

표 V-3 난민 자격 해외 탈북자 수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수(명) | 1,052 | 1,110 | 1,166 | 1,282 | 1,103 | 1,422 | 1,175 | 802 | 762 | 694 | 528 |

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1~2019*, <<https://www.unhcr.org/kr/unhc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6003007&boardTypeID=98>> (Accessed June 24, 2022); "Global Trends Annexes: Table 2." *UNHCR Global Trends 2020*, <<https://www.unhcr.org/2020-global-trends-annex>> (Accessed October 4, 2022); "Global Trends Annexes: Table 2." *UNHCR Global Trends 2021*, <<https://www.unhcr.org/2021-global-trends-annex>> (Accessed October 4, 2022).

1269_ NKHR2022000005-2 2022-08-03; NKHR2022000014-2 2021-07-29; NKHR2022000015-2 2021-07-29; NKHR2022000035 2022-09-02 등.

1270_ NKHR2016000165 2016-11-01.

2004년 이후 한국이나 미국 등에 정착하기 위해 태국에 밀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태국에 불법입국하다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민국 감호소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단식농성도 이루어짐에 따라 입국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한때 유럽연합 국가에 정치적 망명(난민 지위)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 등 중국인이거나 한국에 이미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난민지위 심사 및 인정 절차가 강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2007~2008년에만 무려 512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지만 2016년에는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¹²⁷¹ 또한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로 망명신청을 위해 이동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서방국가 망명신청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있어 해외 탈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은 탈북을 위해 일단 중국을 거쳐야 하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중국인조차 중국 내 이동이 크게 통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을 속이고 제3국에 위장 망명을 신청한 경우 한국 정부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71_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p. 216.

나. 해외 탈북자 체류 실태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 중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미혼 여성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중국에서 숨어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성들은 중국 남성을 소개로 만나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도 있으나,¹²⁷²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려 강제결혼하는 경우도 많다.¹²⁷³ 또한 북한 여성이 매매형태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들의 지속적인 감시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¹²⁷⁴ 2015년 중국으로 인신매매당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인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대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게 아니면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⁷⁵

탈북 여성들의 중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호구를 취득하는 경우도 일부 생기게 되었다.¹²⁷⁶ 또한, 탈북 여성이 중국 남성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¹²⁷⁷ 일부 아동들은 호구

1272_NKHR2019000010 2019-04-08;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99 2019-10-21; NKHR2019000042 2019-07-01.

1273_NKHR2017000025 2017-05-08; NKHR2018000004 2018-03-12; NKHR2019000061 2019-07-29 외 다수의 증언.

1274_NKHR2019000100 2019-10-21; NKHR2019000061 2019-07-29.

1275_NKHR2017000094 2017-10-23.

1276_NKHR2017000046 2017-07-03.

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¹²⁷⁸

그러나 많은 경우 탈북 여성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강제 송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¹²⁷⁹ 이는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8년에 탈북하여 2020년까지 중국에 거주하다가 남한에 오게 된 북한이탈주민 또한 중국 대도시까지 진출하여 중국인이 운영하는 대기업에 장기간 취업하면서 엘리트로 살아왔으나 늘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은 남한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¹²⁸⁰ 한편, 2017년 탈북해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30대 여성은 처음 도강할 당시에는 결혼생각이 없었으나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브로커의 설득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⁸¹ 또한 중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²⁸² 남성들의 경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숨어 있던 중국인 마을에 자신보다 먼저 탈북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은 돼지우리에서

1277_ NKHR2018000020 2018-04-09;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58 2019-07-29
외 다수의 증언.

1278_ NKHR2017000014 2017-04-10; NKHR2018000021 2018-04-09;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99 2019-10-21
외 다수의 증언.

1279_ NKHR2019000099 2019-10-21; NKHR2019000067 2019-08-26.

1280_ NKHR2022000031 2022-07-23.

1281_ NKHR2019000067 2019-08-26.

1282_ NKHR2019000061 2019-07-29.

혼자 중노동을 했으나 하루 3끼 식사만 제공받고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지만 북송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했다고 증언했다.

탈북 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체류 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탈북 주민들은 친척이나 조선족들 집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한족 등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탈북 주민들이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적응 능력이 높아져 중국어를 익히고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체류방식을 체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¹²⁸³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탈북 여성이 중국 체류 중인 한국 남성과 동거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동거남성이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혜택을 알고 중국 체류 탈북 여성에게 한국 입국을 권유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위조호구로 여권을 발급받고, 무비자여행지인 제주도로 입국하여 탈북자임을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족들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생활하는 탈북 여성들이 상당수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83_NKHR2017000064 2017-07-31.

다. 탈북자 처벌

(1) 처벌규정

북한 형법은 탈북행위를 비법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제221조). 그리고 조국반역죄에 대해서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또한, 북한 출입국법은 북한 공민이 출입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 출국금지의 행정처벌이 가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이외에도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는 위반자에 대해 인민보안기관이 직접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민보안단속법은 직접적으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행정처벌법 제271조는 국경을 비법적(불법적)으로 출입한 자에게 3개월 이하의 노동처벌(정상이 무거운 경우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82조는 여행

질서 위반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벌금,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벌 실태

(가) 조사 및 이송

중국에서 단속된 북한 주민들은 변방부대를 거쳐 송환지역 국가보위성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사례에 따라 송환지역 노동단련대, 도 집결소를 거쳐 지역기관(인민보안성)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곧바로 지역기관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송환 이후 처벌절차는 최초 구금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최초 구금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경우 혹은 근거리인 경우에는 보다 단기간에 형이 결정된다. 반면 본인의 거주지가 국경지역 국가보위성과 거리가 먼 경우 지역 인민보안성이 신변인수를 위해 출석하여야 하고, 이송과정에서의 도주 우려, 운송수단의 확보, 가족에 대한 연락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구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1차 수용기관에서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송환지역 국가보위성 구류장은 주로 함경북도 온성군, 무산군, 회령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혜산시가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를 거친 후 수용된다. 구류장에서 남녀는

별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송환규모에 따라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될 경우 대체로 중국 내 경찰·공안 기관, 혹은 세관에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도 구금생활을 한다. 이후 ‘도 보위부 집결소’와 ‘시 보안서 구류장’을 거쳐 예심과 재판을 받고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2015년 탈북 후 중국에서 검거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변방대에서 1주일 구류생활을 하고, 북중세관을 통해 북한 당국에 신병인수되었다. 이후 보위부 집결소에 23일을 있다가 시 안 전부 집결소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았으나 뇌물을 통해 석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⁸⁴ 또한, 2019년 4월까지 구금시설에서 근무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중 잡힌 사람들은 보위부 안에 있는 구금시설에 수감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¹²⁸⁵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 제37조는 여성에 대한 신체 수색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 조사기관은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을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시키거나, 알몸수색을 하거나, 자궁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¹²⁸⁶ 이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번 돈을 몸속에 숨겨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6년 ○○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여성 군인으로부터 자궁검사를 당했으며 매

1284_ NKHR2020000024 2020-07-06.

1285_ NKHR2020000035 2020-09-05.

1286_ NKHR2017000014 2017-04-10; NKHR2017000045 2017-07-03; NKHR2017000046 2017-07-03; NKHR2017000119 2017-11-20; NKHR2018000081 2018-07-30; NKHR2019000041 2019-07-01; NKHR2019000075 2019-08-26.

우 아프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¹²⁸⁷ 심지어 사건이 이 관되어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여러 차례 알몸수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탈북하다 국경경비대에 붙잡혔는데 소대, 중대, 대대, 군 보위부, 시 보위부, 시 보안서에서 총 여섯 번의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¹²⁸⁸

최근 조사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행 탈북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한국행 기도자들에게는 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나, 뇌물을 통해 어느 정도 처벌을 무마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뇌물을 바쳐 형기를 단축하거나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¹²⁸⁹ 2016년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북한이탈주민은 ○○도 ○○시 보위부 정보과장에게 5,000위안을 뇌물로 주고 교양조치로 풀려났다고 진술하였다.¹²⁹⁰ 또한 관련 법일군들에게도 뇌물을 주고 조사문건을 조작하여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는데 검사, 판사, 변호인에게 뇌물을 주고 중국 체류 기간을 단축시

1287_NKHR2017000045 2017-07-03.

1288_NKHR2018000091 2018-08-27.

1289_NKHR2017000057 2017-07-31;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098 2017-10-23; NKHR2017000103 2017-10-23; NKHR2017000121 2017-11-20; NKHR2017000128 2017-12-18; NKHR2019000019 2019-04-08; NKHR2019000105 2019-11-09; NKHR2019000074 2019-08-26.

1290_NKHR2017000057 2017-07-31.

켜 형을 감면받았다고 진술하였다.¹²⁹¹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탈북하다 체포되었지만 3,000위안을 예심원에게 뇌물로 바친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단련대 1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²⁹² 이처럼 북한에서는 탈북을 하다 붙잡히더라도 뇌물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돈이 없어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²⁹³

또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월 탈북시도 후 검거되었는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7,000~7,500위안을 써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증언자는 한국행으로 붙잡힌 경우 조국반역죄에 해당되며 이는 가장 중한 범죄가 된다고 말하였다.¹²⁹⁴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4월까지 구금시설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구금시설에 탈북자들이 수감되는 것을 보았고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송환된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형량은 모두 5년이었고 그 이상 형량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한국행 기도는 관리소행이며, 보위부 안에 따로 있는 구류장에 수감이 되는데 그때 뇌물을 주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보안서에서 형이 확정되어 구류에 들어간 경우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¹²⁹⁵

1291_NKHR2017000005 2017-04-10.

1292_NKHR2018000091 2018-08-27.

1293_NKHR2017000026 2017-05-08.

1294_NKHR2020000020 2020-07-04.

1295_NKHR2020000035 2020-09-05.

탈북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송금브로커를 하던 남편이 체포되어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1만 5,000위안을 내고 보름 만에 풀려났다고 한다.¹²⁹⁶ 2016년에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금소에 수용된 적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만 5,000위안을 뇌물로 주고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¹²⁹⁷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시누이의 남편이 탈북하다 붙잡히자 남한에 먼저 가있던 시누이가 1,000만 원을 보내와 전부를 뇌물로 바쳤다고 진술하였다.¹²⁹⁸ 이외에도 3만~4만 위안의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는 증언,¹²⁹⁹ 심지어 6만 위안의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는 증언도 존재하였다.¹³⁰⁰

국경지역 국가보위성에서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 시기 및 횡수, 도강 이후의 행적(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여부,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 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 여부) 등을 포함한다. 국경지역의 국가보위성에서 취조를 받은 뒤에는 인민보안성 구류장이나 국경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진다. 북한의 형사소추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을 위한 예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심에서는 탈북자의 도강 목적과 중국 내에서의 행적에

1296_NKHR2018000099 2018-10-01.

1297_NKHR2018000056 2018-07-02.

1298_NKHR2018000105 2018-10-01.

1299_NKHR2018000109 2018-10-06.

1300_NKHR2019000009 2019-04-08.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구타 및 언어폭력,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형 감면을 명분으로 다른 송환자의 중국 내 행적을 증언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나) 형벌의 부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¹³⁰¹ 노동단련대나 노동단련형보다는 노동교화형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¹³⁰² 2013년까지는 1차 복송의 경우 노동단련대 6개월 정도, 2회 이상 복송된 경우 노동교화형이 주어졌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¹³⁰³ 교화기간은 3~5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은 탈북 횟수 및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¹³⁰⁴ 특히 비법월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비법월경 출입죄 제2항에서 규정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¹³⁰⁵ 그러나 단순 탈북일 경우 뇌물을 주면 노동단련형을 받기도 한다.¹³⁰⁶ 비법국경 출입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용되고 있다.¹³⁰⁷ 특

1301_NKHR2017000001 2017-04-10; NKHR2017000002 2017-04-10; NKHR2017000067 2017-08-28.

1302_NKHR2012000151 2012-07-24.

1303_NKHR2015000084 2015-04-21; NKHR2015000092 2015-05-12.

1304_NKHR2015000023 2015-01-27; NKHR2015000035 2015-02-10; NKHR2015000080 2015-04-21.

1305_NKHR2017000005 2017-04-10.

1306_NKHR2015000031 2015-02-10.

히, 전거리교화소는 수형자의 70% 정도가 비법월경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³⁰⁸ 한국행 기도는 정치범으로 처벌된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으며,¹³⁰⁹ 심지어 한국행 탈북자가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라는 증언자도 있었다.¹³¹⁰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에 따르면 2018년 가을 무렵부터 인민반 회의를 할 때마다 보위지도원이 와서 “탈북은 역적이다,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¹³¹¹

최근에는 과거보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중국으로의 탈북은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만큼 교화했지만, 최근에는 2배로 형을 받는 등 중국행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¹³¹²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2015년경부터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이전에는 중국으로의 탈북은 단련대형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 2~3년 교화형을 받는다고 증언하였다.¹³¹³ 2018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2015년 중국으로 탈북해 3개월간 머물다 강제송환 당했는데 당시 1년 교화형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루만 탈북해도 1년형을 받는다고 증언하였다.¹³¹⁴

1307_ 한동호 외, 『북한 교화소』, pp. 10~12.

1308_ 위의 책, p. 14.

1309_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7000007 2017-04-10; NKHR2017000039 2017-06-05; NKHR2017000111 2017-11-20; NKHR2017000112 2017-11-29; NKHR2017000130 2017-12-18;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101 2019-10-21.

1310_ NKHR2019000007 2019-04-08.

1311_ NKHR2019000019 2019-05-07.

1312_ NKHR2016000072 2016-05-17.

1313_ NKHR2019000039 2019-07-01.

1314_ NKHR2019000043 2019-07-01.

김정일 시대에는 도강 후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조치만 받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자발적 귀환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¹³¹⁵ 2007년과 2014년에 두 차례 탈북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인 2007년에는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 죄를 묻지 않았으나, 2014년에 귀환하였을 때는 자수를 해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한다.¹³¹⁶ 강제송환 시 한국행이 명백하고 뇌물도 주지 않았다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어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다.

표 V-4 탈북자 처벌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9월 양강도에서 사위가 탈북하다 붙잡혀 도 보위부에 잡혀감. 이후 청진 수성교화소(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음. | NKHR2018000123 2018-10-22 |
| 2016년 중국에 강제송환된 33세 남성이 교화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음. 이 사람의 경우 구류장에서 자살하겠다고 비늘을 먹어 수술까지 했다고 함. | NKHR2019000093 2019-10-21 |
| 2016년 아들이 탈북했다 6시간 만에 붙잡혀 강제송환됨. 단련형 3개월을 받았으나 뇌물을 주고 한 달 만에 나옴. | NKHR2019000096 2019-10-21 |
| 2018년 1월 탈북시도 후 검거되었는데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었으나, 어머니가 7,000~7,500위안을 써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음. | NKHR2020000020 2020-07-04 |

(다) 탈북자 가족 처벌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불어 강화되었으며,¹³¹⁷ 온가족이 추방을

1315_ NKHR2016000131 2016-06-09.

1316_ NKHR2016000148 2016-09-06.

1317_ 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38 2019-06-15; NKHR2019000031 2019-06-03; NKHR2019000092 2019-10-21.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¹⁸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경 이곳에 사는 한 부녀가 중국에서 강제복송되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전원 양강도 운흥군으로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¹³¹⁹

그러나 최근에는 탈북자가 너무 많아 탈북자 가족을 실제로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사례는 줄어들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³²⁰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2015년 탈북한 뒤 보위성에서 본인을 감시했으나 실제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한 집 건너 탈북자가 있는 상황이라 가족을 처벌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증언하였다.¹³²¹ 특히 국경지방의 경우 가족 중 탈북한 경우가 너무 많아 모두를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양강도 혜산시 주민의 90%는 가족 중 탈북민이 있고 조카뻘까지 합치면 모든 주민에게 탈북민 가족이 있으므로 강제추방이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¹³²²

최근 조사에서도 탈북자의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¹³²³ 2019년에

1318_NKHR2017000038 2017-06-05; NKHR2017000039 2017-06-05; NKHR2017000072 2017-08-28; NKHR2019000046 2019-07-01.

1319_NKHR2019000046 2019-07-01.

1320_NKHR2017000077 2017-08-28; NKHR2017000085 2017-09-25; NKHR2017000092 2017-09-25; NKHR2019000012 2019-04-20; NKHR2019000074 2019-08-26; NKHR2019000078 2019-09-25; NKHR2019000087 2019-10-05.

1321_NKHR2017000092 2017-09-25.

1322_NKHR2019000078 2019-06-10.

1323_NKHR2020000012 2020-06-15; 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1000008-2 2022-05-26; NKHR2022000006 2022-05-25; NKHR2022000020 2022-06-18 외 다수의 증언.

탈북한 한 증언자는 어머니가 중국에 갔기 때문에 2010년부터 감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북한 당국은 어딘가 가려고 해도 이유와 목적지를 따져 묻고 방문했던 집에서 연락을 취해야 하며 방문 지역의 안전부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¹³²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머니가 2011년에 탈북하여 행방불명자가 되자 그 이후로 감시를 당했는데, 이웃에 사는 보위부 통보원이 감시를 했다고 증언하였다.¹³²⁵ 또한, 어머니가 2013년에 중국으로 탈북하여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는 한 증언자는 자신이 있는 곳마다 감시가 붙었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인민반장이 감시를 하고 회사에서도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¹³²⁶

또한, 가족의 탈북이 오점이 되어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 어가지 못하거나 승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군 입대, 당원 등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2007년 남한에 입국한 어머니로 인해 불가능했다고 증언하였고, 어머니의 도강 문건에 남아 있어 본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에서는 제약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³²⁷ 2019년 탈북한 50대 남성은 형이 명망있는 판사였으나 딸이 탈북하는 바람에 일반 판사에서 더 이상의 승진이 어려웠다고 증언하였다.¹³²⁸ 2019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오빠가 당비서로 승진하게 될 예정이었으

1324_NKHR2020000021 2020-07-06.

1325_NKHR2020000029 2020-07-06.

1326_NKHR2020000013 2020-06-15.

1327_NKHR2020000017 2020-07-04.

1328_NKHR2019000108 2019-11-18.

나 2016년 가족 중 탈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무산되었다고 한다.¹³²⁹ 즉, 사법적 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사회적 차별과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 탈북민 가족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표 V-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5년 이웃에 사는 한 부녀가 중국으로 탈북했다 강제복송 당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전원 양강도 운흥군으로 강제추방을 당함. | NKHR2019000046 2019-07-01 |
| 2016년 함경북도 회령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여행중 단속에 걸렸는데, 조사과정에서 어머니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조건 탈북을 기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위성에 한 달 동안 구금되었음. | NKHR2017000054 2017-07-31 |
| 2019년 탈북한 증언자는 어머니가 2011년에 탈북하여 행방불명자가 된 후에 이웃에 사는 보위부 통보원이 감시를 했는데, 가택수색을 하지는 않지만 돈을 얼마씩이라도 내지 않으면 단련대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함. | NKHR2020000029 2020-07-06 |
| 2019년 탈북한 증언자는 같이 탈북한 친구의 아버지가 집 두 채를 몰수 당하고 단련대에 다녀왔으며, 자신의 아버지도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함. 김영정 제1부부장이 '한국에 간 것이 확정되면 집을 빼앗고 단련대, 교회를 보내라'고 했다고 함. | NKHR2020000021 2020-07-06 |

라. 인신매매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반인권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이 인신매매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UN Protocol to

1329_NKHR2019000009 2019-04-08.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여기서 착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착취는 “성매매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준하는 행태 및 노예제, 장기절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밀입국 알선(human smuggling)과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¹³³⁰

(1) 조직적 인신매매

북한 주민의 불법 국경이동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조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시장에서 북한 주민을 붙잡아 넘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빈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인신매매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에서 여자를 유인해 넘기는 사람과 중국 국경에서 인계받는 사람, 그

1330_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3.

리고 일정 장소에서 북한 여성들을 은신시켜 두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 등이 관여하며, 단계별로 거래비용은 상승하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3성의 내지까지 북한 주민들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도 노동력이 귀한 오지로 거래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례는 크게 근절되었다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북한 주민들은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인신매매에 관련된 중국 남성과 동거하는 북한 여성이 다른 북한 여성들을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개인들은 탈북 여성들을 한족 남성들에게 넘기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연락하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다시 연계시키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중국에서 4번이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강제결혼 당한 남성에게서 도망칠 때마다 브로커인 청진 출신의 ‘조선여자’(북한 출신 여성)에게 도움을 청했고 새로운 남성에게 연결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¹³³¹

1331_NKHR2019000061 2019-07-29.

한편, 과거에는 많은 탈북자가 인신매매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외로 팔려가는 사례가 많았다. 당시 한국 나이로 16살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에 중국에 돈을 벌러 가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¹³³²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자신의 딸이 친구와 중국에 가서 몇 달 동안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인데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말하였다.¹³³³ 이에 대해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이유가 브로커가 탈북을 도와주는 대가로 인신매매를 통해 별도의 금품을 수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2018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1인당 약 한화로 1,700만 원 전후로 비용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강을 건너는 비용을 직접 본인들이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¹³³⁴ 즉, 이들은 탈북 당시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행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이 도강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탈북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로 탈북자들을 넘기지 않는 이유가 경비대가 삼엄하여 국경을 넘는 위험 부담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커진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 2018년 즈음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자국민이 인신매매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인신매매 1명당

1332_NKHR2020000031 2020-08-03.

1333_NKHR2020000028 2020-07-06.

1334_NKHR2022000015-2 2022-07-29.

5년의 징역에 처해지며 2명이라면 10년, 3명이라면 15년 등 형량이 계속 늘어나서 누가 감히 인신매매를 할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다.¹³³⁵ 즉, 과거 인신매매가 중국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처벌이 가해지지만 과거에는 벌금을 내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오랜 형량을 살아야 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며 인신매매범에 대한 법체계가 엄격하게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행임을 알고 감수하는 탈북이기 때문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히거나 강제 송환되었을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¹³³⁶

(2) 인신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 여성들은 도시로, 또는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 사회에서 결혼상대자 혹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 거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본인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모른 채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도강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인신매매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브로커에게 도강을 의뢰하기도 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신매매만이 북한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1335_NKHR2022000014-3 2022-08-31; NKHR2022000015-3 2022-08-31.

1336_ 위의 증언.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팔려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¹³³⁷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가는 것이 탈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그마저도 인신매매 브로커를 구하기 어려워 탈북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증언하였다.¹³³⁸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 중국 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배우자의 성적 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거남성이 북한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북한 여성에게 호구를 구입해주거나 북한 여성 본인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여러 노력을 하게 된다. 북한 여성 본인이 인신매매 브로커의 도움 없이 국경을 넘었다 할지라도 중국에서의 생활이 막막해 스스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결혼생활은 강제결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현지어를 못하는 북한 여성은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려면 중국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인신매매를 당한 이후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어 중국 남성과 다시 결혼(사실혼)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¹³³⁹

1337_ NKHR2017000033 2017-06-15; NKHR2017000094 2017-10-23; NKHR2018000033 2018-05-08.

1338_ NKHR2017000094 2017-10-23.

1339_ NKHR2017000065 2017-07-31.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¹³⁴⁰ 2015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중국에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브로커를 따라나섰는데 막상 가보니 성매매업소였다고 증언하였다.¹³⁴¹ 북한 여성들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음란 화상채팅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³⁴²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2015년 탈북했는데, 중국 산동성에 있는 화상채팅 업체에 팔아넘겨져 2년 6개월간 일했다고 증언하였다.¹³⁴³ 최근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수를 하던 중국 업자들이 인신매매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¹³⁴⁴

한편 북한 내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신매매 선을 잡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인신매매법은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되었다.¹³⁴⁵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등은 여전히 인신매매가 활발하지만 온성군은 단속이 강화되어 인신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³⁴⁶

1340_NKHR2017000066 2017-08-28; NKHR2019000043 2018-12-25.

1341_NKHR2019000043 2019-07-01.

1342_NKHR2015000125 2015-09-08.

1343_NKHR2018000133 2018-11-19.

1344_NKHR2015000170 2015-12-01.

1345_NKHR2017000009 2017-04-10; NKHR2017000010 2017-04-10; NKHR2017000067 2017-08-28; NKHR2017000103 2017-10-23; NKHR2017000113 2017-11-20; NKHR2017000134 2017-12-18; NKHR2018000057 2018-07-02; NKHR2018000105 2018-10-01; NKHR2019000048 2019-07-01.

1346_NKHR2015000171 2015-12-01.

마. 평가

탈북자 강제송환은 많은 인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국경질서 위반행위를 출입국법과 형법을 통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입국 문제는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환 이후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한국행 기도나 기독교 접촉은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와 북한 여성 인신매매 행위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측 국경통제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뇌물의 액수가 치솟고 있으며, 재탈북에 성공하는 경우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과거 탈북하는 경우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양국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 인신매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도강비용이 치솟음에 따라 탈북의 기회가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국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짐에 따라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방역이 강화되면서 국경지역의 밀수뿐만 아니라 도강 등 전반적으로 국경통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졌다.

이러한 탈북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변화가 요구되며, 북한의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및 교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해외 노동자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 이상의 국가에 노동자들을 파견해 왔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가 약 4만 명, 중국 한 국가만 보아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³⁴⁷ 북한 당국이 해외로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하는 이유는 외화벌이를 위해서이다. 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1일 결의 제2375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 관할권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했으며, 2017년 12월 22일 결의 제2397호를 통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도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노동자 규모는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귀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 남아 있는 노동자 또한 일정 정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해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북

1347_ 2015년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58,000여 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자본주의 물들 위험에도, 달러벌이 8만 명 내보낸 북한,” 『중앙일보』, 2015.11.10.

한의 외화별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이하에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발 절차

모든 개인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과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성의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¹³⁴⁸ 사회권규약 제 6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 동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노동력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해외 파견의 경우에도 직업선택의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 사실 북한에서 해외 파견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¹³⁴⁹ 따라서 많은 주민이 해외 파견을 희

1348_UN CESCR, General Comment, No. 18 (2005), para. 1.

1349_NKHR2017000007 2017-04-10; NKHR2018000022 2018-04-09.

망해 왔으나, 해외 파견의 기회는 토대가 좋고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노동자에게 더욱 집중되는 추세였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토대(성분)가 좋아야 한다.¹³⁵⁰ 2019년도까지 ○○○시 수출피복공장에서 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피복 기능공으로 중국 파견을 희망하였으나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¹³⁵¹ 가족 내력은 보통 8촌까지 보며,¹³⁵² 기혼자의 경우 처가 쪽도 확인한다.¹³⁵³ 또한 해외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당원이고,¹³⁵⁴ 이전 근무지가 평양 혹은 대도시인 경우가 많았다.¹³⁵⁵ 이를 토대로 볼 때, 신분이 좋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탈북 가능성 때문에 인질이 필요하여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보내주지 않는다거나,¹³⁵⁶ 자녀가 2명 있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다.¹³⁵⁷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 있는 식당에 파견할 접대원을 뽑는 데 지원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선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¹³⁵⁸ 실제 파견 경험이

1350_NKHR2020000014 2020-06-15.
1351_NKHR2022000015-3 2022-08-31.
1352_NKHR2013000196 2013-10-29.
1353_NKHR2014000020 2014-03-18.
1354_NKHR2014000080 2014-07-01.
1355_NKHR2022000035 2022-09-02.
1356_NKHR2022000005-2 2022-08-03.
1357_NKHR2018000008 2018-03-12.
1358_NKHR2019000005 2019-04-08.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간부과에서 이력서를 보고 해외 친척 거주 여부, 결혼 유무 등을 보고 심사하여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¹³⁵⁹ 의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인을 포함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 동반 거주 기회 부여되지만 자식이 대학에 입학할 성인 연령에 달하면 사상적으로 물들기 쉽다는 이유로 반드시 그 자식만큼은 본국으로 귀국시켜야 했다.¹³⁶⁰

더욱이 선발 과정에서 심사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뇌물 공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러시아의 ○○도시로 파견되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 5단계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으며 그 때마다 뇌물이 들어가 결국 총 비용이 500달러 이상 소요되었으나 그것조차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¹³⁶¹ 그 절차는 먼저 본인이 소속된 기업소의 당 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당비서에게 200달러의 뇌물을 바친다. 그다음 소속 기관에서 추천 문건이 작성되면 이때부터 신상 파악에 대한 심층적 심사가 시작된다. 이 문건 심사는 간부부 해외 파견과에서 맡는다. 이때 친척 관계 등을 알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들이 적지 않은데 이 서류 준비를 원래는 해외 파견과 담당 직원이 해야 하지만 이를 당사자에게 떠넘긴다. 하지만 당사자는 이 서류들에 대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도원들이 뇌물을 받고 처리해 준다. 그 비용이 지방은 50달러, 평양은 20달러 정도 소

1359_NKHR2019000050 2019-07-20.

1360_NKHR2022000035 2022-09-02.

1361_NKHR2022000035 2022-09-02.

요된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문건들이 갖추어지면 해외 파견과 간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때 간부부장들에게 50달러 정도의 뇌물을 준다. 네 번째 단계는 신체검사이다. 신체검사에 대해 본인이 자신이 있어도 20달러 정도를 병원에 뇌물로 내야 하며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서류 통과를 위해 미리 100달러 정도를 준다. 마지막으로 중앙당의 최종 비준을 받기 위해 간부부장의 사인이 필요한데 이때 사인 비용으로 약 50달러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는 행선지의 선택에 있다. 예를 들어, 건설노동자라면 쿠웨이트 등의 중동국가를 선호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는 3년 일하면 3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으나 러시아는 3,0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쿠웨이트의 경우 5,000달러를 바쳐야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다. 의사는 상대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면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남편을 의사로 둔 북한이탈주민은 5,000달러를 상납한 반면에,¹³⁶² 재봉 임가공업에 종사한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 재봉공으로 파견나가기 위해 약 300달러를 바쳐야 했다.¹³⁶³ 뿐만 아니라 직책에 따라서도 다르다. 러시아의 건설노동자로 파견되는 경우, 일반 노동자가 500~700달러 전후로 바쳐야 하지만 사장의 직책으로 나가려고 할 경우 최소 2만 달러는 심사과정에서 바쳐야 한다.¹³⁶⁴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가 한번 해외에 파

1362_NKHR2022000005-2 2022-08-03.

1363_NKHR2022000015-3 2022-08-31.

전되었다가 다시 나갈 경우 더욱 심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처음 해외에 나갈 때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기 위해 200달러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2차로 다시 나갈 때는 700달러로 뇌물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선발과정에서 이왕이면 처음 나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즉, 기관 입장에서는 해외에 한 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더욱이 한 번 해외에 다녀와서 이미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된다. 바꿔 말하면 해외에 파견되어 일할 기회조차도 더욱더 뇌물을 바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예외적이지만 뇌물을 주지 않고 해외에 파견된 사례도 간혹 수집되고 있다.¹³⁶⁵ 2015년 태국 식당 봉사원으로 파견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만 합격하면 갈 수 있었고 지원과정 중 뇌물을 주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³⁶⁶

이처럼 해외 노동자 선발 절차에서 토대가 중시되고 뇌물 공여가 만연함에 따라 해외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성분(토대)과 당원 여부와 같은 선발단계의 조건은 사회적 출신, 출생, 재산 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에 반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의 작업장

1364_NKHR2022000035 2022-09-02.

1365_NKHR2018000043 2018-06-04.

1366_NKHR2019000014 2019-05-07.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국내 거주 등이 선발과정에서 고려되는데, 이 역시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다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남편이 아프리카 ○○○에서 의사로 근무하여 동반 거주하다가 2020년에 나온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당원의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당원이 아니어도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식들도 데리고 나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본인 자금력이 뒷받침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한다.¹³⁶⁷

나. 과도한 노동시간

북한 노동자는 해외에서 다른 국적의 노동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2020년에 해외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¹³⁶⁸

첫째, 1일 노동시간이 다른 국적의 노동자에 비해 비할 바 없이 길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가 아침 8시에 공사장에 출근하여 11시 반까지 오전 일을 마친 후 2시간 반 정도의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5시까지 일하고는 바로 퇴근하는 반면 북한 노동자는 아침 7시에 나가 새벽 1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새벽 2시까지도 일을 하며 공사 마감일이 다가오면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한다. 둘째, 계절적 제약에 구

1367_NKHR2022000005-2 2022-08-03.

1368_NKHR2022000035 2022-09-02.

애받지 않고 노동을 한다. 즉, 러시아의 경우, 겨울에 날씨가 혹독한 관계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공식을 북한 사람들이 깼다는 것이다. 쿠웨이트 또한 낮 기온이 높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다가는 오히려 경찰이 잡아갈 정도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일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임에도 북한 노동자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일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다. 셋째, 노동의 속도 또한 빠르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 절반도 못했을 작업량을 북한 노동자들은 이미 완성하고도 남을 정도로 일의 속도가 빨랐다. 넷째, 그렇다고 해서 결코 질이 낮지도 않다. 왜냐하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그만큼 임금에서 제하므로, 북한 노동자들은 필사적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 노동자들은 설령 준공검사에 통과를 못 해도 원래부터 일정 정도 본인들에게 할당된 몫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경우 대부분 현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북한 기업소 측이 노동자들의 작업현장을 직접 관리하는데, 현지 국가의 노동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마가단주에서 2014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16시간 근무했다고 증언하였다.¹³⁶⁹ 러시아 모스크바에 대외건설사업소 미장공으로 파견되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다는 북한이탈주

1369_NKHR2018000002 2018-03-12.

민의 노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⁷⁰ 2015년 아버지가 러시아에 별목공으로 파견되었으나,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버지가 하루 14시간 정도로 오래 노동을 했으나 임금은 한 달에 10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³⁷¹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건설노동자로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도 하루 일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고, 중간에 점심시간을 빼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절이나 주말에도 쉬는 날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⁷²

2016년 러시아 소치로 해외 파견을 간 북한이탈주민은 새벽부터 밤까지 18시간씩 일하였지만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¹³⁷³ 쿠웨이트에서 2017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아침에 일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술 마시고 그냥 잠드는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하였다.¹³⁷⁴ 2019년 말까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증언자도 아침 8시부터 밤 10~11시까지 근무했으며,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직장장의 재량으로 한 달에 이틀 정도 휴일을 가졌다고 말했다.¹³⁷⁵

한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1370_NKHR2019000037 2019-06-15.

1371_NKHR2019000020 2019-05-07.

1372_NKHR2019000023 2019-05-18.

1373_NKHR2019000050 2019-07-20.

1374_NKHR2018000031 2018-05-07.

1375_NKHR2020000049 2020-11-28.

상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 외 ‘개인청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그런데 청부로 나가는 것조차 북한 현지 회사 사장의 허락이 필수이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¹³⁷⁶

다. 과도한 상납금 부과와 중간관리자의 임금 착복

이처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체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인이나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에 나갈 수 있는 부문은 주로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봉재나 수산물 가공 등의 저임금 노동 집약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러시아라면 건설부문에서도 업스트림은 반드시 러시아 현지인들이 해야 하고 나머지 다운스트림 부문만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긴다.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체로 국가계 획분 명목 이외에도 소속 상급 단위 및 현지 회사로부터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오히려 후자의 비중이 더 높은

1376_NKHR2022000035 2022-09-02.

사례도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현지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현지 기업과 노동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북한 회사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대체로 임금을 현지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북한 현지 회사로부터 받는데,¹³⁷⁷ 현지 북한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은 다음 4단계를 거쳐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먼저 국가계획분이다. 둘째, 해외 회사에 노동자 파견 허가를 성사시킨 현지 회사의 상급 기관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 회사가 수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나왔다면 바로 수도건설위원회에 이윤의 일부가 돌아간다. 셋째, 현지 회사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이다. 그중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주체는 대체로 현지 북한 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국가는 총소득의 1/10을, 수도건설위원회는 3/10을, 현지 회사가 5/10를, 노동자가 1/10을 가져갈 정도로 이윤 배분이 현지 회사 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현지 회사 사장으로 파견될 경우 선발과정에서 바치는 돈도 많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했다.¹³⁷⁸ 그 외에도 세금, 사회보험료, 회사 운영비, 노동자 숙박비용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추가 부과되었는

1377_ 노동자가 현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수령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 노동자는 총성자금, 당자금, 국가계획분의 명분으로 수령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사할린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북한이탈주민은 매 월 평균 6만~7만 루블을 벌었으며, 2013년까지 매월 국가에 2만 5천 루블을 바쳤다고 증언하였다(NKHR2015000001 2015-01-13).

1378_ NKHR2022000035 2022-09-02.

데, 노동자들은 이같은 국가계획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¹³⁷⁹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서 건설 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증언자는 한 달 계획분이 600달러였는데, 이는 돈을 잘 버는 편인 러시아 노동자의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⁸⁰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역시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의 경우, 한 사람당 연간 8,000달러가 계획으로 주어졌는데, 여러 다른 명목으로도 돈을 더 받아가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1만 달러를 상납했다고 증언하였다.¹³⁸¹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의사로 근무한 한 증언자는 파견을 가면 3개월간은 상납을 면제해주지만, 이후에는 한 달에 600달러를 바쳐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다중으로 부과되는 상납의 규모는 노동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외에 나와 돈을 제법 벌어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건설 노동자로 근무할 당시 한 달 계획분이 600달러였다고 한 증언자의 경우, 상납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한 달에 230달러 정도였다고 한다.¹³⁸² 2018년 초까지 동유럽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월급이 500달러 정도였는데, 본인 월급으로 기록되는 것

1379_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은 쿠웨이트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만 그 중 60%는 국가에서 갖고 40%만 노동자에게 돌아온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4000144 2015-10-06; NKHR2020000050 2020-11-28.

1380_NKHR2020000049 2020-11-28.

1381_NKHR2020000050 2020-11-28.

1382_NKHR2020000049 2020-11-28.

은 150~200달러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당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⁸³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버지가 러시아 별목공으로 파견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임금으로 원래 500달러를 주게 되어있었으나, 당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떼어가 100달러도 미처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¹³⁸⁴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에 건설노동자로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파견 첫 7개월 동안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후 한 달에 20달러 정도를 받았으며, 본인 생각으로는 70~80% 정도 공제되는 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다.¹³⁸⁵

근로 관련 계약이 대체로 작업소장과 현지 회사 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북한 해외 노동자 상당수는 자신의 실제 임금과 상납금 비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동유럽에서 일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해 단장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단장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¹³⁸⁶ 다만 일부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상납의 대략적인 규모 파악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해외 노동자의 보수 중 상당한 부분이 상납분 명목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현지 여건이 좋지 않아 노동자가 상납금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러시아 건설 현장에 파견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매월 800~850달러를 자신

1383_NKHR2018000043 2018-06-04.

1384_NKHR2019000020 2019-05-07.

1385_NKHR2019000023 2019-05-18.

1386_NKHR2018000037 2018-05-08.

이 소속된 북한 기업소에 내야했으며, 2013년 러시아 금융위기로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자, 달러로 환전해 송금할 경우 상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⁸⁷ 2016년 러시아 소치에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도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와 환율 상승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¹³⁸⁸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증언자는 2017~2018년에는 회사가 적자가 나서 집에 돈을 보내지 못했고, 2019년에는 200달러를 빌려서 보냈다고 증언하였다.¹³⁸⁹

해외 노동자의 임금 중 60%는 국가 및 소속기관에 바치고 나머지를 개인이 가지는데 이 중 10%는 중앙급 선물, 행정에 필요한 자금을 내는 데에 지출되어, 결국 30%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꼴이라는 증언도 있다.¹³⁹⁰ 2016년 러시아 소치로 파견된 북한이탈주민은 절반 정도는 떼인다고 증언하였다.¹³⁹¹

이처럼 상납을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가로 상납되지 않고, 중간 관리자, 간부들에 의해 착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다 이러한 중간 간부들에게 떼이는 게 더 크다고 증언했으며,¹³⁹² 2017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기 월급에서 중간 간부가 농간을 부려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본인 월급에서 30%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면

1387_NKHR2016000163 2016-11-01.

1388_NKHR2019000050 2019-07-20.

1389_NKHR2020000050 2020-11-28.

1390_NKHR2017000063 2017-07-31.

1391_위의 증언.

1392_NKHR2015000158 2015-11-17.

서, 이로 인해 요즘에는 해외 파견을 나가도 예전보다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¹³⁹³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파견되어 2017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임금을 받을 때는 1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 임금을 받았고, 임금 계산은 기업소에서 (노동자 간) 등수를 매겨 1등은 250달러, 최하위는 100달러 등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임금이 노동량에 비해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중간에서 간부들이 착복을 했기 때문이라 추정했다. 그는 또한 2014년 말부터 대북제재가 시작되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¹³⁹⁴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⁹⁵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된 바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속한 작업소가 반년 동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북한 기업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¹³⁹⁶

라. 북한 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

북한에서 송출된 인력은 현지 회사와 계약한 북한 기업소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한다. 현지의 북한 기업소는 노동자들에게

1393_ NKHR2017000134 2017-12-18.

1394_ NKHR2019000037 2019-06-15.

1395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396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통역, 숙박 등을 제공하며, 노동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해외 노동자는 대부분 작업장 인근에서 단체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생활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러시아에서 건설노동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원래 러시아 현지 규정상 식수나 화장실 설비가 구비가 못한 곳에서는 노동자의 숙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지 경찰과의 결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¹³⁹⁷ 즉, 컨테이너는 한 대당 한 달 사용료로 약 100달러가 소요되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다른 외국인 작업장조차 숙소가 아닌 임시로 잠시 쉬는 휴게실로 이용하였으며 인원 또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 정도가 이용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게는 컨테이너 하나당 노동자 12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빈대로 인해 밤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열악하였다. 식사는 노동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했다는 증언도 있고,¹³⁹⁸ 식비를 한 달에 30달러 정도 냈다는 증언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식사 수준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¹³⁹⁹ 현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¹⁴⁰⁰ 작업 현장에 따라 현장 임시 숙소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⁴⁰¹ 물론 작업현장의 특성상 이러

1397_NKHR2022000035 2022-09-02.

1398_NKHR2020000005 2020-05-15.

1399_NKHR2020000050 2020-11-28.

1400_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6일, 서울에서 면접.

1401_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한 형태의 숙식 자체를 집단생활이 강제되고 있다거나, 개인의 주거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도 특별이과제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별도로 나가서 집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었으며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작업조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한 생활감시 및 상호감시 시스템이다. 북한 당국은 현지에서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현지 기업소마다 해외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당비서와 보위지도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⁴⁰² 러시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할 때, 이들 보위지도원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기장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⁴⁰³

실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은 함께 파견된 국가보위원 또는 소속된 북한 회사의 관리자에 의해 감시받는다. 공동생활을 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 기숙사에서 열리는 총화에 참석해야 한다.¹⁴⁰⁴ 그러나 2019년까지 5년간 러시아에서 건설노동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에 의하면, 사

1402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403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1404_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5.

장이 생활총화를 한 것과 같이 문건만 정리하게 하고 실제로 생활총화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그 시간에 오히려 노동을 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⁴⁰⁵ 한편 이들은 일주일에 2~3차례 노동자들의 소지품을 검열하며, 핸드폰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¹⁴⁰⁶ 설사 특별이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도 수시로 전화로 관리감독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날 특별이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사장이 조치하였다.¹⁴⁰⁷ 집에서 오는 편지는 100% 보위부에서 검열하기 때문에 본인도 편지에 구체적인 사항은 쓰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¹⁴⁰⁸ 노동자들은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 제일 엄중하게 처벌되는 행위는 한국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TV를 보는 것이다.¹⁴⁰⁹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사할린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파견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TV를 보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파견된 보위원 역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판서를 쓰고 뇌물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⁴¹⁰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 파

1405_NKHR2022000035 2022-09-02.

1406_NKHR2013000196 2013-10-29.

1407_NKHR2022000035 2022-09-02.

1408_NKHR2020000049 2020-11-28.

1409_NKHR2015000068 2015-04-07.

1410_NKHR2015000001 2015-01-13.

견되었던 한 증언자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했지만 노동자들이 전화를 암암리에 사용했으며, 전화기를 검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관리자 몰래 유튜브에도 많이 접속하여, 2018년 남북정상회담도 시청하고, 한국 노래를 듣기도 했다고 한다.¹⁴¹¹ 또 생활총화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데, 보위부에서 파견된 인원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검열에 대비해서 문건만 만들어두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¹⁴¹²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단독 외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¹³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집체적으로 다녀야 하며, 10명 내지 15명이 함께 다닌다고 증언하였다.¹⁴¹⁴ 2018년 초까지 동유럽에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역시 사전 신고 시 3명이조를 짜서 지정된 상점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⁴¹⁵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현장소장과 통역만이 접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⁴¹⁶ 이와 달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동했다거나 개인 혼자서 이동이 가능했다는 증언도 있다.¹⁴¹⁷ 일례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증언자는 원래는 개별적인 외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1411_ NKHR2020000049 2020-11-28.

1412_ NKHR2020000050 2020-11-28.

1413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414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5일, 서울에서 면접.

1415_ NKHR2018000043 2018-06-04.

1416_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5.

1417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본인은 러시아 말도 좀 알고 파견 경력이 어느 정도 길다 보니 혼자 다니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¹⁴¹⁸ 또한 이러한 개인적 외출 제한이 언어적 장벽이나 단독으로 외출할 때의 위험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¹⁴¹⁹

마.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성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동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¹⁴²⁰ 여기서의 처벌은 형사적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 또는 특권의 박탈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¹⁴²¹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노동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다. 강제노동 성립여부에 있어 일차적 기준인 자발성 여부를 살펴볼 때, 북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자원해서 해외로 파견되었으며, 선발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1418_NKHR2020000050 2020-11-28.

1419_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6일, 서울에서 면접.

1420_강제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1930), 제2조 제1항, 제2항.

1421_Sarah Joseph and Melissa Casta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24.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²² 파견신청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파견 시기를 불문하고 대부분 힘이 들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답한다.¹⁴²³ 근로 중단 및 종료의 자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휴식 의사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지만,¹⁴²⁴ 건강상의 이유로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경우 해외 파견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⁴²⁵ 2019년 말까지 러시아 건설 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증언자는 일을 하지 못할 만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직장장이 귀국시켰다고 증언하였다.¹⁴²⁶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해외 파견 중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허용치 않을 경우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¹⁴²⁷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해외 파견과 이후의 노동이 반드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자발적인 파견과 노동이라 하더라도, 이후의 과정에서도 부채로 인한 결박, 임금연체, 신분증의 압수, 취약성의 악의적 이용 등의 요인에 의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⁴²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422_ NKHR2017000064 2017-07-31; NKHR2017000120 2017-11-20.

1423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등.

1424_ “그럴 수도 없어요. 거저 죽지 않거나 다리 부러지지 않은 정도면 계속 나가 일을 해야 돼요.”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425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7일, 서울에서 면접.

1426_ NKHR2020000049 2020-11-28.

1427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5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집단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신분증명서(여권 등)는 압수되며,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이를 보관한다. 신분증을 압수하는 주체는 안전부(경찰), 책임자, 당위원회 등으로 보이며(〈표V-6〉 참조), 북한 당국이 아닌 현지 회사 차원에서 신분증을 압수했다는 증언도 있다.¹⁴²⁹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 노동자 파견이 어렵게 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노동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도록 강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¹⁴³⁰

표 V-6 신분증 압수 주체 관련 증언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나가자마자) 안전부에 다 바쳐야 해요.”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
| “내꺼 증명서 여권은 … 우리 책임자가 다 모아가지고 갔어.”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5일, 서울에서 면접 |
| “우리가 갈 때는 여권은 내가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요. 그 다음에는 경찰이 몽땅 다 뺏어요. 안 줘요. 여권을 다 뺏어요.”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6일, 서울에서 면접 |
| “도착하면 시간 썩 넘어가면, 넘어가기 전에 여권 줬다가 그 시간 썩 통과하면 몽땅 회수하니까 본인이 여권 쥐고 5분도 못 있어요. … 안전부에서, 경찰에서 다 거둬가지고.”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
| “소지를 못하고 거기서는 저거 당위원회에 다줘요.” |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

1428_ILO, “ILO Indicators of Forced Labour-Speci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Forced Labor,” 2012, <www.ilo.org/forcedlabour>. ILO는 강제노동 정의에서 도출되는 성립요건인 처벌의 위협이나 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하는 경우뿐 아니라, 강제노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11개의 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① 취약성의 악용, ② 기간, ③ 이동의 제한, ④ 고립, ⑤ 신체적 및 성적 폭력, ⑥ 협박과 위협, ⑦ 신분증명서 압수, ⑧ 임금연체, ⑨ 부채로 인한 결박, ⑩ 열악한 근로 및 생활조건, ⑪ 장시간 노동이 해당한다.

1429_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430_NKHR2018000043 2018-06-04.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항공 교통비, 비자 수수료 등의 빚을 안고 해외 생활을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해 몇 개월간은 파견에 소모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된다. 2013년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노동자로 파견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한 달에 1,500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이 중 950달러를 국가 당 자금, 회사 사장, 작업반장, 당비서 몫으로 가져갔으며, 처음 1년 동안은 항공료, 거주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공제가 이루어져 사실상 무보수로 노동을 했다고 증언하였다.¹⁴³¹ 2019년 말까지 러시아 건설 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증언자도 국가계획분 외에 파견 나올 때 들었던 항공료와 철도운임 약 1,000달러 정도를 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¹⁴³² 이러한 상황은 실제 이들이 채무로 인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 관리자에 의한 생활통제, 신분증의 압수와 파견 이후 자동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 등은 자발적 의사로 해외 파견을 신청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 평가

북한에서 해외 파견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1431_NKHR2014000112 2014-08-12.

1432_NKHR2020000049 2020-11-28.

김정은 시대 들어 선발 항목 조건 중 당원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회는 여전히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선발 과정에서 해외 파견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견된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뿐만 아니라 중간 단위에도 상당 부분 납부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중간관리자가 착복하는 비중 또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결코 적지 않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현지 체류 기간 내내 신분증을 압수당한 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파견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금지됨에 따라 해외 노동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갈 필요가 있다.

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에 속한다. 동시에 이 문제들은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 문제를 살펴본다.

가. 이산가족

(1) 현황

남북이산가족이란 가족과 헤어져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말한다.¹⁴³³ 이산가족 발생 원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한국전쟁 기간 중 납치나 의용군 입대, 일본에서의 복송,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 납북, 북한 이탈 등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1433_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은 13만 3,667명, 생존자는 4만 3,468명, 사망자는 9만 199명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66%를 넘으면서,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85%를 상회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 V-7 이산가족 등록 현황 (2022.9.기준)

| 구분 | 신청자(명) | 생존자(명) | 사망자(명) |
|--------|---------|--------|--------|
| 2010 | 128,461 | 82,477 | 45,984 |
| 2011 | 128,668 | 78,892 | 49,996 |
| 2012 | 128,779 | 74,836 | 53,943 |
| 2013 | 129,264 | 71,480 | 57,784 |
| 2014 | 129,616 | 68,264 | 61,352 |
| 2015 | 130,808 | 65,674 | 65,134 |
| 2016 | 131,143 | 62,631 | 68,512 |
| 2017 | 131,344 | 59,037 | 72,307 |
| 2018 | 133,208 | 55,978 | 77,221 |
| 2019 | 133,370 | 52,730 | 80,640 |
| 2020 | 133,406 | 49,452 | 83,954 |
| 2021 | 133,619 | 46,215 | 87,404 |
| 2022.9 | 133,667 | 43,468 | 90,199 |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2.9.30.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view.do?id=364&mid=SM00000129&limit=10&eqDataDiv=REQUEST&eqIndex=0&page=1>> 참조하여 작성.

표 V-8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2022.9.기준)

| 구분 | 90세 이상 | 80~89세 | 70~79세 | 60~69세 | 59세 이하 | 계 |
|--------|--------|--------|--------|--------|--------|--------|
| 인원수(명) | 12,671 | 16,087 | 8,217 | 3,955 | 2,538 | 43,468 |
| 비율(%) | 29.2 | 37.0 | 18.9 | 9.1 | 5.8 | 100 |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2.9.30.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view.do?id=364&mid=SM00000129&limit=10&eqDataDiv=REQUEST&eqIndex=0&page=1>> 참조하여 작성.

표 V-9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2022.9.기준)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9 |
|-----------|--------|--------|--------|--------|--------|--------|--------|
| 생존자(명) | 62,631 | 59,037 | 55,987 | 52,730 | 49,452 | 46,215 | 43,468 |
| 80세 이상(명) | 37,259 | 36,499 | 34,546 | 33,318 | 31,810 | 30,148 | 28,758 |
| 비율(%) | 59.5 | 61.8 | 61.7 | 63.2 | 64.3 | 65.3 | 66.2 |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2.9.30.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view.do?id=364&mid=SM00000129&limit=10&eqDataDiv=REQUEST&eqIndex=0&page=1>> 참조하여 작성.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이산가족법')이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⁴³⁴ 남북이산가족법은 남북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동으로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차 조사, 2016년 2차 조사에 이어 2021년 3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찾기 신

1434_ 동법은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되어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자’ 중 생존자 47,004명(국내 45,850명, 해외 1,154명)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다.¹⁴³⁵ 또한, 2013년 남북 이산가족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63,755건의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 검체를 조사했다.¹⁴³⁶

표 V-10 이산가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체 조사 현황 (2022.9. 기준)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
| 실적 (건) | 1,211 | 10,274 | 10,030 | 1,178 | 11,245 | 17,390 | 10,997 | 1,020 | 1,500 | 63,755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 2022년 실적은 계획이며, 합계는 2022년 계획을 포함한 수치임.

(2) 인권 문제

(가) 가족결합권 침해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가족끼리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산가족들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일명 ‘제네바 제4협약’)은 ‘가족권(family rights)’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¹⁴³⁷

1435_ 통일부,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발표, 2021.12.09.,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938&category=&pageIndex=> (검색일: 2022.10.10.).

1436_ 2022년 유전자 검체 조사는 2022년 9월 30일 기준 1,500건으로 계획되어 있음.

1437_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ugust 12, 1949).

표 V-11 제네바 제4협약 가족권 관련 규정

| | |
|----------|---|
| 제27조 제1항 |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은 제네바 제4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한국은 1966년 8월 16일에 제네바 제4협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57년 8월 27일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이하 'ICRC') 총재는 남북한 모두 제네바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1950년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 협약의 조건에 따를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북한 당국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제네바 제4협약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한국과 북한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¹⁴³⁸

이산가족들은 국제인권법상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가족결합권을 침해받고 있다. 가족권 중에서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 또는 '가족재결합권'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들은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결혼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³⁹ 또한 가정은 부부와

1438_ 제성호, “전시 민간인 납치의 국제인도법적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p. 200.

1439_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자유권규약 제17조 및 제23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d)(iv); 유럽인권협약 제12조; 미주인권협약 제17조 제2항.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의해 확대되는데,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아동이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결합권은 이와 같이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다. 가족권 및 가족결합권은 남북한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북한 헌법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가족결합권 실현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2018년 8월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었고, 이어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 간의 상설면회소 설치에 성사되지 못했으며,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 모두가 연결되지 못했다. 2021년 정부는 서울, 광주, 부산 등 기존 13개 화상 상봉장 이외에 의정부, 원주, 강릉, 홍성, 청주, 전주, 안동에 지방 화상 상봉장 7개소를 증설했으나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2022년 9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대북 통지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2019년 이후 2022년 9월까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방북 상봉, 화상 상봉 등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전무하다.

표 V-12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명)

| 구분 | 생사확인 | 서신교환 | 방남상봉 | 방북상봉 | 화상상봉 |
|-----------|-------------------|--------------|----------------|-------------------|----------------|
| 1985~2003 | 963 (19,096) | 8 (679) | 331 (2,700) | 735 (2,817) | - |
| 2004 | 681 (5,007) | - | - | 400 (1,926) | - |
| 2005 | 962 (6,957) | - | - | 397 (1,811) | 199 (1,323) |
| 2006 | 1,069 (8,314) | - | - | 594 (2,683) | 80 (553) |
| 2007 | 1,196 (9,121) | - | - | 388 (1,741) | 278 (1,872) |
| 2008 | - | - | - | - | - |
| 2009 | 302 (2,399) | - | - | 195 (888) | - |
| 2010 | 302 (2,176) | - | - | 191 (886) | - |
| 2011~2012 | - | - | - | - | - |
| 2013 | 316 (2,342) | - | - | - | - |
| 2014 | - | - | - | 170 (813) | - |
| 2015 | 317 (2,155) | - | - | 186 (972) | - |
| 2016~2017 | - | - | - | - | - |
| 2018 | 292 (1,996) | - | - | 170 (833) | - |
| 2019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2022.9- | - | - | - | - | - |
| 계 | 8,262 (59,563) | 679 (679) | 331 (2,700) | 4,024 (18,061) | 557 (3,748) |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2.9.30.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at/list.do?mid=SM00000129>> 참조하여 작성.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면서 사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 1,010편, 2020년에 1,001편, 2021년 1,004편이 제작되었고, 2022년에는 1,000편이 제작될 계획이다.¹⁴⁴⁰

우리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2020년 이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현저히 감소했다. 서신교환만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등 총 10건 성사되었으며 생사확인이나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간 차원의 교류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표 V-13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

| 구분 | 생사확인 | 서신교환 | 상봉 |
|-----------|-------|--------|-------|
| 1990~2006 | 3,667 | 10,680 | 1,614 |
| 2007 | 74 | 413 | 55 |
| 2008 | 50 | 228 | 36 |
| 2009 | 35 | 61 | 23 |
| 2010 | 16 | 15 | 7 |
| 2011 | 3 | 21 | 4 |
| 2012 | 6 | 16 | 3 |
| 2013 | 9 | 22 | 3 |
| 2014 | 6 | 11 | 5 |
| 2015 | 4 | 26 | 1 |

1440_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 구분 | 생사확인 | 서신교환 | 상봉 |
|--------|-------|--------|-------|
| 2016 | 6 | 43 | 3 |
| 2017 | 10 | 46 | 1 |
| 2018 | 7 | 36 | 1 |
| 2019 | 2 | 16 | 1 |
| 2020 | - | 4 | - |
| 2021 | - | 3 | - |
| 2022.9 | - | 3 | - |
| 합계 | 3,895 | 11,638 | 1,757 |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2.9.30.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 참조하여 작성.

(나) 월남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가족이 월남하여 이산가족이 된 북한 주민들은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며 이 밖에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월남자 가족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친할아버지가 남한에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 뒤 10년 동안 당국으로부터 미행과 감시를 당했고, 이를 견딜 수 없어 탈북을 감행했다고 증언하였다.¹⁴⁴¹

월남자 가족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위반된다.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과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1441_NKHR2017000084 2017-09-25.

표 V-14 이산가족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시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월남자, 해외거주자여서 토대가 나뉘었음. 남편이 2005년 군대에 갔으나 출세하지 못하였음. 또한 할아버지가 전쟁 때 행방불명되었고, 사촌언니가 남한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 친척들이 모두 수용소로 갔음. | NKHR2016000021 2016-01-26 |
| 아버지 가족이 월남자 가족이며 1960년대에 평양에서 추방되는 등 토대가 나뉘었음. 오빠는 군대를 못 가고 뇌물을 써서 입대하였고, 아들이 군대를 갔지만 군관학교에 가지 못했음. 토대가 나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음. | NKHR2016000041 2016-04-05 |
| 외할아버지가 월남자라서 평생 당국의 감시와 사회적 차별을 받았음. “까마귀는 까마귀랑 살아야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할 때도 토대가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음. | NKHR2017000032 2017-06-05 |
|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간 것 때문에 모든 가족이 양강도 금산으로 강제추방 당했고 본인은 추방지에서 태어남. | NKHR2018000025 2018-04-09 |
| 한국전쟁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월남한 것 때문에 1976년 모든 가족이 평양에서 평안남도 안주로 강제추방을 당함. 본인은 추방지에서 태어남. | NKHR2018000085 2018-08-11 |

나. 납북자

(1) 현황

(가) 전시납북자

한국전쟁 기간 납북된 한국 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의 관련 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 공보처 통계국의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간행된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8만 2,959명), 1954년 내무부 치안국이 발표한 납치자 명부(1만 7,940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의 실향사민등록자 명단(7,034명), 1963년 국방부가 작성한 실향사민 명부(1만 1,700명) 등이 부분적이거나 전시 납북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¹⁴⁴² 이 명부들에 동일인이 중복 수

록된 경우는 납북사실을 확인하기 쉽지만, 어떤 명부에도 기재되지 않은 납북자들도 다수 존재하며 심지어 한 인물이 피랍치자 관련 명부와 월북자 명부(1952, 공보처)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표 V-15 전시납북자 규모

| 구분 | 작성주체 | 시기 | 인원 | 존재 여부 |
|---------------------|--------------------|-------|--------------|--------------|
| 서울시 피해자 명부 | 공보처 통계국 | 1950년 | 2,438명 | ○ |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 공보처 통계국 | 1952년 | 82,959명 | ○ |
| 6·25사변 피랍치자 | 내무부 치안국 | 1952년 | (126,325명) | × |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 공보처 통계국 | 1953년 | (84,532명) | × |
|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 내무부 치안국 | 1954년 | 17,940명 | ○ |
| 실향사민등록자 명단 | 대한적십자사/ 공보처 통계국 | 1956년 | 7,034명 | ○ |
| 실향사민 명부 | 국방부 | 1957년 | 11,700명 - | 1권 ○ 2권 × |

출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정보마당 - 6·25납북자 현황,” <http://www.abductions625.go.kr/home/dta/dta01/dta01_02.jsp> (검색일: 2022.9.23.) 참조.

전시납북자들 중 귀환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시납북자의 숫자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경우가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다수의 납북자들이 북한 측에 협조하지 않아 피살되었고, 전쟁 중 활용(군, 부역)되는 과정에서도 희생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식량난 이후 탈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귀환납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고령이며

1442_이외에도 1951년 9월 결성된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 이후 그 때까지 회원들의 등록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6·25사변 피랍치인사 명부(2,514명)가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쟁납북자 명단-납북인사DB,” <<http://www.kwafu.org/korean/directory.php>>.

납북자 본인들이 북측 가족들에게 전시납북자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12월 13일에 공식출범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15년 12월까지 전시납북자 피해 사건을 접수하여 중복 및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다.

| 납북자 결정 | 납북자 비결정 | 판단불능 결정 | 합계 |
|--------|---------|---------|-------|
| 4,777 | 138 | 460 | 5,375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2022.9.30. 기준).

(나) 전후납북자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전후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 당국이 억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⁴³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송환되었고, 9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귀환 납북자 9명 가운데 1명은 사망하여 2022년 9월 기준 생존 귀환납북자는 8명이다. 2022년 9월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1443. 귀환 납북자 이○○에 따르면, 봉산 21호와 22호 선원 27명은 해주에서 평양으로 이관되어 여성이 간첩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 건강하고 일정수준(고교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부 7인을 선발하여 청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어부들은 귀환 조치하였다.

표 V-17 전후납복자 현황(추정)

(단위: 명)

| 구분 | 합계 | 어선원 | KAL기 | 군·경 | 기타 | | |
|-----|-------|-------|-------|-----|----|----|---|
| | | | | | 국내 | 해외 | |
| 피랍 | 3,835 | 3,729 | 50 | 30 | 6 | 20 | |
| 귀환 | 송환 | 3,310 | 3,263 | 39 | - | - | 8 |
| | 탈북 | 9 | 9 | - | - | - | - |
| 미귀환 | 516 | 457 | 11 | 30 | 6 | 12 |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표 V-18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 억류자 수 | 누계 | 연도 | 억류자 수 | 누계 |
|------|-------|-----|------|-------|-----|
| 1955 | 10 | 10 | 1973 | 8 | 429 |
| 1957 | 2 | 12 | 1974 | 30 | 459 |
| 1958 | 23 | 35 | 1975 | 28 | 487 |
| 1962 | 4 | 39 | 1977 | 4 | 491 |
| 1964 | 16 | 55 | 1978 | 4 | 495 |
| 1965 | 20 | 75 | 1980 | 1 | 496 |
| 1966 | 19 | 94 | 1985 | 3 | 499 |
| 1967 | 52 | 146 | 1987 | 13 | 512 |
| 1968 | 133 | 279 | 1992 | 1 | 513 |
| 1969 | 20 | 299 | 1995 | 1 | 514 |
| 1970 | 36 | 335 | 1999 | 1 | 515 |
| 1971 | 20 | 355 | 2000 | 1 | 516 |
| 1972 | 66 | 421 | | |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표 V-19 귀환 납북자 현황

| 성명 | 납북일자 | 직업 | 귀환일자 |
|-----|-------------|-----------|-------------|
| 이○○ | 1970.04.29. | 봉산22호 선원 | 2000.07.26. |
| 진○○ | 1967.04.12. | 천대11호 선원 | 2001.10.30. |
| 김○○ | 1973.11.24. | 대영호 기관장 | 2003.06.23. |
| 고○○ | 1975.08.17. | 천왕호 선원 | 2005.07.12. |
| 최○○ | 1975.08.17. | 천왕호 선원 | 2007.01.16. |
| 이○○ | 1975.08.17. | 천왕호 선원 | 2007.09.10. |
| 윤○○ | 1968.07.02. | 금용호 선원 | 2008.01.09. |
| 윤○○ | 1975.08.17. | 천왕호 선원 | 2009.02.26. |
| 전○○ | 1972.12.28. | 오대양61호 선원 | 2013.09.05.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한편, 전후 납북피해자는 2007년에 제정된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귀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정착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 구성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1년 12월 까지 총 461건을 접수하였다. 55회 회의를 개최하여 438건을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정착금·주거지원금,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

표 V-20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접수 결과 (단위: 건)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3년 | 2015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 피해위로금 | 232 | 99 | 97 | 0 | 1 | 2 | 7 | 0 | 438 |
| 정착금· 주거지원금 | 7 | 1 | 0 | 1 | 0 | 0 | 0 | 0 | 9 |
| 보상금 | 0 | 8 | 4 | 1 | 0 | 0 | 0 | 1 | 14 |
| 합계 | 239 | 108 | 101 | 2 | 1 | 2 | 7 | 1 | 461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표 V-21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 구분 | 신청건수 | 인정건수 | 지급액(백만 원) |
|-----------|------|------|-----------|
| 피해위로금 | 438 | 426 | 13,211 |
| 정착금·주거지원금 | 9 | 9 | 1,773 |
| 보상금 | 14 | 3 | 261 |
| 합계 | 461 | 438 | 15,245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표 V-22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구분 | 2007년~2011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계 |
|-------|-------------|-------|-------|-------|-------|-------|-------|-------|-----|
| 회의 개최 | 40회 | 2회 | 2회 | 3회 | 2회 | 2회 | 2회 | 2회 | 55회 |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2.9.30. 기준).

(2) 인권 문제

(가) 가족결합권 침해

납북자도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결합, 서신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문제를 겪고 있다. 이 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회피하였다. 2012년과 2013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4년 2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우리 측에서 생사확인을 요청한 전시납북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그쳤다. 2015년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는 1972년 오대양호 사건 때 납북된 어부 정건목이 납북 어머니를 상봉하였다.¹⁴⁴⁴ 2018년 8월 이산가족행사에서는 국군포로·납북자 21명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6가족 12명이 재북 가족과 상봉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18년 말까지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 및 납북자는 133명, 가족 상봉이 이뤄진 경우는 60건이었다.¹⁴⁴⁵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전쟁 중과 그 후에 납치된 사람들의 송환을 촉구했다.¹⁴⁴⁶ 납북자의 생사 유무를 확인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나) 강제이송과 억류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치행위는 민간인의 강제이송(forcible transfer)을 금지한 제네바 제4협약 제49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 이는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규범이었다.¹⁴⁴⁷ 또한 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은 민간인의 억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79조).

1444_ 『연합뉴스』, 2015.10.24.

1445_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p. 184.

1446_ OHCHR, “UN experts urge DPRK to repatriate abductees on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25 June 2020,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998>> (Accessed January 28, 2021).

1447_ 정민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93.

표 V-23 제네바 제4협약 강제이송 및 억류 관련 규정

| | |
|------|--|
| 제49조 |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이하 생략) |
| 제79조 | 총돌당사국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억류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강제실종

북한 당국에 의한 민간인 납치행위는 강제실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제실종은 여러 종류의 인권이 중첩적으로 위반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강제실종을 자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실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대우, 건강권과 교육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위반하게 된다.¹⁴⁴⁸

북한은 1950년 이래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해왔으며 이들의 송환을 거부하였다. COI는 북한에 강제실종 피해자가 아동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⁴⁴⁹ 강제실종 피해의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해 노동력 및 기술을 착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되었다. 유럽, 중동 및 아시아에서 납치된 여성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남성들과 강제결혼을 당하기도 하였다.¹⁴⁵⁰

1448_ OHCHR,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Fact Sheet No. 6/Rev.3. (2009); 정구연, “강제실종 개념의 등장과 확산,”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7에서 재인용.

1449_ UNHRC,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 para. 64.

그러나 북한은 강제실종의 존재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WGEID, 이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KAL기 납북 미귀환자 황원(2010.6.17.), 이동기(2010.10.8.), 최정웅(2010.11.8.) 사건을 접수하였다.¹⁴⁵¹ 북한은 이에 대해 “미귀환자 3명은 강제 실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북한에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또는 강제억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20년 2월 13일에 북한에 서한을 보내 1969년 북한의 KAL기 납치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했다.¹⁴⁵² 그리고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WGAD’)은 황원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황원이 엄중한 보안 속에서 가택연금 중이며,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는 자유 박탈 상태에 있다고 2019년 7월 17일에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2019년 8월 26일에 제출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황원이 대한민국 시민이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

1450_ *Ibid.*

1451_ 1969년 KAL기 납치사건 당시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 등 50명이 납치되었다.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을 송환하였을 뿐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은 송환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452_ OHCHR, “UN experts urge North Korea to repatriate 11 abducted from plane hijack 50 years ago,” 13 February 2020.

라고 확신하고, 즉각 송환하고 배상하라고 조치했다. 북한은 이 같은 의견과 조치가 악의적이고 전형적인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⁴⁵³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강제실종에 대한 긴급청원에 북한을 포함했다.¹⁴⁵⁴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15년 5월 22일에 이어 2020년 3월 11일에 북한 방문 조사를 재차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¹⁴⁵⁵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실종 사례 중에서 미결 건수를 총 362건으로 정리했다.¹⁴⁵⁶ 실무그룹은 북한에 긴급청원(urgent appeal)과 고소장(allegation letter)을 각각 1건씩 보냈으나, 북한은 고소장에 대한 답변만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¹⁴⁵⁷ 또한 미결 사례 362건 가운데 여성이 53건에 해당한다.¹⁴⁵⁸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22년 보고서에서 제3국에서 북한 국적자의 강제송환 관행이 계속되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비협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¹⁴⁵⁹

강제실종자들 중엔 물리적인 강압 또는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자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자도 없지는

1453_ WGAD, Opinion No. 69/2019 concerning Hwang W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AD/2019/69 (2020).

1454_ WGEID,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UN Doc. A/HRC/45/13 (2020), para. 27.

1455_ UN Doc. A/HRC/51/31 (2022), Annex I, p. 22.

1456_ *Ibid.*, p. 25.

1457_ *Ibid.*; UN Doc. A/HRC/45/13 (2020), p. 9.

1458_ UN Doc. A/HRC/51/31 (2022), Annex I, p. 25.

1459_ *Ibid.*, p. 15.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모두 결과적으로 북한을 떠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강제실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며,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은 삼엄한 감시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¹⁴⁶⁰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채택한 2014년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 납치와 송환 거부 및 강제실종을 비난하면서,¹⁴⁶¹ 북한 당국에게 이들이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라고 촉구하였다.¹⁴⁶² 이후 다수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서도 강제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¹⁴⁶³

(라) 북한 당국의 납북자 이용

납북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었다. KAL기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993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

1460_UN Doc. A/HRC/25/63 (2014), para. 68.

1461_UN Doc. A/HRC/RES/25/25 (2014), para. 2(f).

1462_ *ibid.*, para. 3(f).

1463_UN Doc. A/HRC/RES/49/22 (2022), paras. 1(g), 2(h).

으로 활동하였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 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또한, 북한은 납북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남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2000년 6월에 탈북, 귀환한 납북어부 ○○○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어부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대남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도 대남간첩교육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¹⁴⁶⁴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자들은 한 때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자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앰네스티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1464_ 북한이탈주민 ○○○, 2004년 1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다. 국군포로

(1) 현황

국군포로는 적국 등에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인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만 2,000여 명이었으나,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전쟁포로 상호 교환에 의해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⁶⁵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귀환 국군포로는 80명, 국군포로 가족은 430여 명에 이른다. 귀환 국군포로의 출신지는 함경북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국군포로 대부분이 함경북도 지역의 탄광에 배치되어 노역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부터는 귀환한 국군포로가 없다. 국군포로의 고령화, 김정은 정권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¹⁴⁶⁶

1465_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2), p. 110.

1466_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p. 253.

표 V-24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 연도 | 귀환포로 | 누계 | 연도 | 귀환포로 | 누계 |
|------|------|----|-----------|------|----|
| 1994 | 1 | 1 | 2005 | 11 | 59 |
| 1997 | 1 | 2 | 2006 | 7 | 66 |
| 1998 | 4 | 6 | 2007 | 4 | 70 |
| 1999 | 2 | 8 | 2008 | 6 | 76 |
| 2000 | 9 | 17 | 2009 | 3 | 79 |
| 2001 | 6 | 23 | 2010 | 1 | 80 |
| 2002 | 6 | 29 | 2011~2022 | - | 80 |
| 2003 | 5 | 34 | 합계 | | 80 |
| 2004 | 14 | 48 | | | |

출처: 국방부(2022.9.30. 기준).

표 V-25 국군포로(사망자 포함) 출신지 현황

| 구분 | 함경 북도 | 함경 남도 | 평안 북도 | 평안 남도 | 양강도 | 자강도 | 황해 북도 | 황해 남도 | 강원도 | 총계 |
|-----------|----------|----------|----------|----------|-----|------|----------|----------|------|-----|
| 인원 (명) | 60 | 9 | 0 | 3 | 4 | 1 | 1 | 1 | 1 | 80 |
| 비율 (%) | 75.0 | 11.25 | 0.0 | 3.75 | 5.0 | 1.25 | 1.25 | 1.25 | 1.25 | 100 |

출처: 국방부(2022.9.30. 기준).

(2) 인권 문제

(가) 가족결합권 침해

국군포로는 이산가족, 납북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결합, 서신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상호교환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북한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

위원회에 이관하였고, 강제역류 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¹⁴⁶⁷

국군포로의 상봉은 인도주의 차원과 가족결합권 실현 차원에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1명이 사망하면서 80명의 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생존해 있는 귀환한 국군포로는 14명뿐이다.¹⁴⁶⁸ 모두 87세 이상의 고령이고 90세 이상도 1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한 국군포로는 56명이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¹⁴⁶⁹

표 V-26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

| 구분 | 87세 | 88세 | 89세 | 90세 | 91세 | 92세 | 93세 | 94세 | 총계 |
|-------|-----|-----|------|------|-----|------|-----|-----|-----|
| 인원(명) | 1 | 1 | 2 | 2 | 1 | 5 | 1 | 1 | 14 |
| 비율(%) | 7.1 | 7.1 | 14.3 | 14.3 | 7.1 | 35.7 | 7.1 | 7.1 | 100 |

출처: 국방부(2022.9.30. 기준).

표 V-27 사망 국군포로 연령 현황

| 구분 | 70세 이하 | 71세~75세 | 76세~80세 | 81세~85세 | 86세 이상 | 총계 |
|-------|--------|---------|---------|---------|--------|-----|
| 인원(명) | 1 | 4 | 11 | 23 | 27 | 66 |
| 비율(%) | 1.5 | 6.1 | 16.7 | 34.8 | 40.9 | 100 |

출처: 국방부(2022.9.30. 기준).

1467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0.

1468_ “58년만에 북한 탈출한 국군포로, 88세로 영면,” 『조선일보』, 2020. 12. 11.; “[부음] 6·25 국군포로 허재석 별세,” 『조선일보』, 2021.11.04.; “탈북 국군 포로 이규일씨 별세,” 『조선일보』, 2022.08.13.

1469_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 253.

(나) 강제역류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일명 ‘제네바 제3협약’)은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전쟁포로를 석방·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¹⁴⁷⁰ 북한은 1957년 8월 27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군포로 존재 부인과 송환 거부는 전쟁포로의 석방 및 송환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위반이다.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석방 및 송환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모든 국가의 의무로 간주된다.¹⁴⁷¹ 이는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규범이었다.¹⁴⁷²

(다) 강제노동

귀환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으로 재편입되거나, 휴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부분 탄광, 기업소, 농촌 지역에 집단배치되어 전후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 12일 발표된 미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 이동 보고서」¹⁴⁷³에 따르면 수천 명의 국

1470_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August 12, 1949).

1471_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451, 재인용: 백범석,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인도에 반한 죄,”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p. 63.

1472_ UN Doc. A/HRC/25/CRP.1 (2014), para. 1143, footnote 1626.

1473_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러시아 생존 여부 확인 및 유해 발굴,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만든 ‘마려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위원회’가 조사활동 결과의 하나로 1993년 8월 26일 작성한 것이다.

군포로들이 1951년 11월~1952년 4월 오호츠크 등 소련 극동항구로 이송된 뒤 야쿠츠크 주변의 콜리마 수용소 등으로 보내졌다.¹⁴⁷⁴ 추크치해 지역으로 이송된 포로들은 최소 1만 2,000명에 달하고, 도로 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7년 12월 18일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 문서작성자를 비롯해 국군포로 소련 이송을 주장한 구소련 장성 강상호의 아들, 카자흐스탄 거주 한국전 참전 고려인 10여 명, 귀환 국군포로, 러시아 체류 탈북자 100여 명의 증언,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국군포로 이송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은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¹⁴⁷⁵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안화식, 우광윤, 장○○,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 무산탄광(리갑도, 강영호, 리희근),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장용연, 류태인, 오○○, 이증호, 정수환) 등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탄광 노동자로 배치된 국군포로들은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탄광 일을 하였으며, 함경북도 일대의 탄광에

1474_ 『연합뉴스』, 2007.4.13.

1475_ 『조선일보』, 2013.4.30.

배치된 국군포로는 한때 1,100~1,2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군포로들은 한국전쟁 종료 이후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포로수용소로 사용되다가 후에 정치범수용소로 용도가 변경되었다.¹⁴⁷⁶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공민증을 받고 집단수용소에서 사회로 배치되었으나, 대부분이 집단수용소 시절 생활 하였던 탄광에 배치받아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2001년에 탈북한 귀환 국군포로 한모(86)씨와 노모(91)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47년에 이르는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6년 10월에 제기했고, 2020년 7월 7일에 승소했다.¹⁴⁷⁷ 이어 국군포로 5명은 아오지 탄광 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51년간 탄광 생활을 하거나, 국군포로가 된 후 8번 탈북 시도를 하다 40년간 구금되어 있었다며 2차 소송에 참여했다.¹⁴⁷⁸ 2차 손해배상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⁴⁷⁹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모두에 위반된다. 우선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 제51조, 제52조에 위반된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476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1477_ “47년 강제노역’ 탈북 국군포로, 북한-김정은 상대 손해소 승소,” 『이데일리』, 2020.7.7.

1478_ “국군포로 5명, 北 김정은 상대 2차 소송 “6억씩 배상하라,” 『조선일보』, 2020.9.2.

1479_ “탈북 국군포로 5명, 北-김정은 상대로 2차 손해소…2100만 원씩 청구,” 『동아일보』, 2020.9.2.

(제13조), 적절한 노동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그리고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에 대해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52조). 또한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 표 V-28 제네바 제3협약 강제노동 관련 규정 | |
|----------------------------|---|
| 제13조 |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어떠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하 생략) |
| 제51조 | 포로들에게는 특히 숙소, 음식, 피복 및 장비에 관하여 적절한 노동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은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억류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 제52조 | 포로는 스스로 희망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라) 국군포로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북한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거주 지역과 직장 선택의 제한을 받았으며, 국군포로들의 자녀들은 입당과 진학, 직장 선택에 차별을 받았다.¹⁴⁸⁰ 예외적으로 국군포로 출신이라도 상황에 따라 입당하거나 큰 차별 없이 생활한다는 증언도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와 가족의 증언 사례가 거의 수집되지 않고 있어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포로병 출신과 가족에 대한 차별이 불식되었는지 확인되지 않

1480_NKHR2015000095 2015-05-12.

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 또는 친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제2조 제1항) 및 사회권규약(제2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

표 V-29 국군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할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고모부의 직장배치 시 차별을 당했음. | NKHR2014000093 2014-07-15 |
| 조카는 중앙당 5과에 선발되었으나, 조카의 할아버지가 포로교환병이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음. | NKHR2014000168 2014-10-07 |
| 할아버지가 포로병 출신이어서 토대가 매우 나빴으며, 다른 가족들이 입당 및 간부 등용,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음. | NKHR2016000099 2016-06-14 |

(3) 귀환 국군포로 대우 및 지원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정착금 및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31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의2)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 말부터 귀환 국군포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환 국군포로들은 민간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생

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있다.¹⁴⁸¹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에 관한 조항(제5조의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제15조의2),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5조의3),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제15조의4) 규정을 신설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였다.

표 V-30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남 | 충북 | 대구 | 경북 |
|-------|------|-----|------|-----|-----|-----|-----|-----|-----|
| 인원(명) | 22 | 1 | 20 | 5 | 2 | 0 | 1 | 4 | 6 |
| 비율(%) | 27.5 | 1.3 | 25.0 | 6.3 | 2.5 | 0.0 | 1.3 | 5.0 | 7.5 |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총계 |
|-------|-----|-----|-----|-----|-----|-----|-----|-----|
| 인원(명) | 5 | 2 | 6 | 1 | 3 | 2 | 0 | 80 |
| 비율(%) | 6.3 | 2.5 | 7.5 | 1.3 | 3.8 | 2.5 | 0.0 | 100 |

출처: 국방부(2022.9.30. 기준).

표 V-31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

| 구분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남 | 충북 | 대구 | 경북 |
|-------|------|-----|------|-----|-----|-----|-----|-----|-----|
| 인원(명) | 5 | 0 | 7 | 1 | 0 | 0 | 0 | 1 | 0 |
| 비율(%) | 35.7 | 0.0 | 50.0 | 7.1 | 0.0 | 0.0 | 0.0 | 7.1 | 0.0 |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총계 |
|-------|-----|----|-----|-----|-----|-----|-----|-----|
| 인원(명) | 0 | 0 | 0 | 0 | 0 | 0 | 0 | 14 |
| 비율(%) | 0.0 | 0 | 0.0 | 0.0 | 0.0 | 0.0 | 0.0 | 100 |

출처: 국방부(2022.9.30. 기준).

1481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2.

라. 평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산가족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제네바 제4협약 제27조)을 침해받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는 가족결합권 즉, 가정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7조)와 가정을 구성하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23조)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가족결합권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상봉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제3차 UPR에서 대한민국은 가족 분리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고,¹⁴⁸² 북한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¹⁴⁸³ 실제로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국군포로나 전쟁 전후 납북자 등 특수 이산가족들의 일부 상봉도 이루어지는 했으나, 2019년 이후 2022년 9월까지 이산가족 교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치 및 억류행위는 민간인의 강제이송 및 억류를 금지한 제네바 제4협약 제49조와 제79조 위반이다. 그리고 국군포로의 존재부인과 송환거부는 전쟁포로의 석방 및 송환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위반이다. 또한

1482_ UN Doc. A/HRC/42/10 (2019), para. 126.149.

1483_ 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인도적으로 대우 받을 권리(제13조), 적절한 노동조건을 부여받을 권리(제51조),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제52조) 위반이며, 자유권규약상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제8조),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제10조)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월남자 가족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사회적 차별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규약 제2조와 자유권규약 제2조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납북자 가운데는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UPR에서 북한은 납북자, 전쟁포로, 강제실종 등에 관련된 권고는 ‘즉각거부’ 하였다.¹⁴⁸⁴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정치 상황과 이 문제들을 분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기된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484_ UN Doc. A/HRC/42/10 (2019), paras. 127, 127.30, 127.31, 127.51~127.53.

5

재해재난

북한 당국은 재해재난이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기상관측·예측 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경감하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¹⁴⁸⁵ 이렇듯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2014년 6월 27일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채택하였다. 동법이 채택되기 전에는 재해 종류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이 관련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를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4단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든 재해재난 기본법이라 하겠다.¹⁴⁸⁶ 이렇듯 기본법을 갖추기는 했지만, 재해재난 예방보다는 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이나 복구 시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주민 스스로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¹⁴⁸⁷

1485_ “기상예보의 과학화실현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노동신문』, 2016.5.23.

1486_ 나용우 외,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104~106.

1487_ 위의 책, p. 111.

표 V-32 재해재난 관련 법규

| 범주 | 관련 법규 | |
|---------|---------------------------|------------------|
| | 채택 수정보충 | 법률명 |
| 재해 방지 | 2014.6.27. |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
| 전염병 | 1997.11.5. 2020.8.22. | 전염병예방법 |
| | 2020.8.22. 2022.5.31 | 비상방역법 |
| 대기오염 | 2012.7.11. 2013.7.24. | 대기오염방지법 |
| 방사성물질 | 2011.8.29. | 방사성오염방지법 |
| 산림 | 1992.12.11. 2015.3.11. | 산림법 |
| | 2009.11.25. 2013.7.24. | 자연보호구법 |
| 자연보호 | 1977.4.29. 1999.6.16. | 토지법 |
| | 1986.4.9. 2014.10.22. | 환경보호법 |
| 지진 및 화산 | 2011.8.29. 2011.12.21.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김정은 집권 이후 재해재난 역량 미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유엔에 제출한 『국가재해위험감축전략 2019-2030 (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9-2030)』 보고서를 채택하였고,¹⁴⁸⁸ 2021년 7월 『자발적 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에서도 빈번하게 발

1488 DPRK, *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9-2030* (2019), pp. 1~36.

생하는 재해재난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직접 명기하기도 했다.¹⁴⁸⁹

북한 당국의 열악한 대응능력은 기술적, 재정적, 전문 인력의 부족 등에 의해 짧은 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우며, 제한된 가용자원 하에서 재해재난 대응과정에서 최고지도자의 애민이미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사회적 동요를 막고 있다. 또한 군대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주민들로부터의 강제적인 자원 동원을 통해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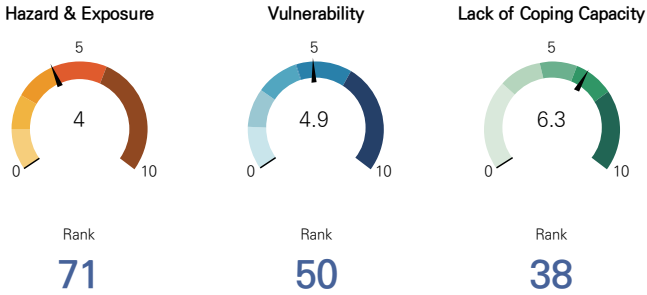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재해재난 발생 시 북한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북한의 열악한 재해재난 관리 역량

북한 당국이 재해재난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충분한 대처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을 살펴본다면, 북한의 부족한 재해재난 관리역량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489_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ic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p. 6, p. 13, p. 15.

그림 V-2 2022년 북한 위기관리지표



출처: INFORM, INFORM RISK COUNTRY PROFILE 2022 SCORES: North Korea, <<https://web.jrc.ec.europa.eu/dashboard/INFORMRISK/?no-header=1&v-vISO3=AFG&no-scroll=1>> (Accessed September 6,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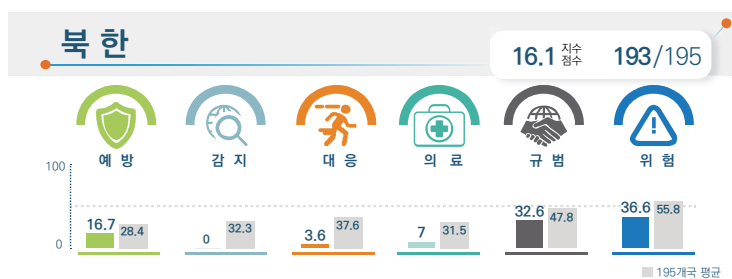
세계 각 국가의 인도적 위기와 재해재난 상황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지표(Index for Risk Management)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위험도는 높은 편에 해당한다.¹⁴⁹⁰ 조사대상 전 세계 191개국 중 하위 44위였으며, 특히 재난대응역량 부족(Lack of Coping Capacity)은 6.3점으로 하위 38위이다. 물론 2019년과 2021년 발표된 결과(하위 28위, 29위)와 비교하면,¹⁴⁹¹ 과거보다 소폭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재해재난 관리 및 대응능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490_ INFORM, *INFORM RISK COUNTRY PROFILE 2022 SCORES: North Korea*, <<https://web.jrc.ec.europa.eu/dashboard/INFORMRISK/?no-header=1&v-vISO3=AFG&no-scroll=1>> (Accessed September 6, 2022).

1491_ 10점 만점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관리역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INFORM, “KOREA DPR, Eastern Asia, INFORM Country Risk Profile, Version 2017,” <<https://drmkc.jrc.ec.europa.eu/inform-index>>, 재인용: 임예준·이규창,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p. 62; INFORM, *INFORM REPORT 2021: Shared Evidence for Managing Crises and Disaster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1), pp. 30~31.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능력 역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역량이다. 보건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대응 및 관리역량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림 V-3 2021년 북한의 세계 보건안보 지수



출처: NTI, *GHS Index 2021*, p. 245 인용. <https://www.ghsindex.org/wp-content/uploads/2021/12/2021_GHSIndexFullReport_Final.pdf> (Accessed September 6, 2022).

2021년 12월 NTI에서 발표한 『2021 글로벌보건안보지수(2021 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의하면, 북한은 16.1점을 기록해 전 세계 195개국 중 193위로 평가되었다.¹⁴⁹² 2019년과 비교해 순위는 그대로였으나, 평가점수는 17.5점에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⁴⁹³ 평가지표별로 보면,

1492_ NTI, *GHS Index 2021*, p. 245. <https://www.ghsindex.org/wp-content/uploads/2021/12/2021_GHSIndexFullReport_Final.pdf> (Accessed Septber 6, 2022).

1493_ Development Initiatives, *Global Humanitarian Assistance Report 2021*, (Bristol: Development Initiatives, 2021), p. 22, <<https://devinit.org/resources/global-humanitarian-assistance-report-2021/chapter-one-people-and-crisis/#section-1-3>> (Accessed June 15, 2021).

예방(Prevention), 탐지·보고(Detection & Reporting), 신속 대응(Rapid Response), 보건 체계(Health System) 등 4개 부문에서 2019년 결과보다 모두 악화되었으며, 국제규범 준수(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및 위험환경(Risk Environment) 부문에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보건 안보지수는 감소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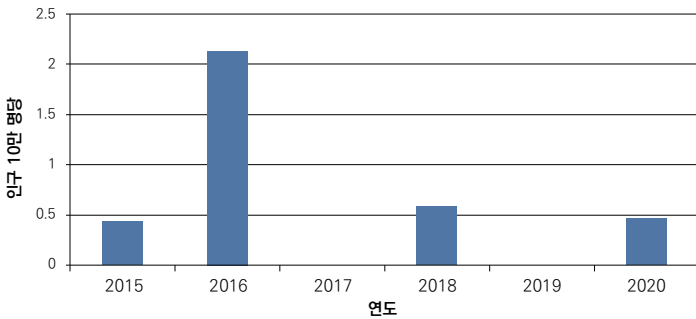
나. 재해재난으로 인한 노동권, 식량권 침해 사례

북한 당국은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에게 일정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자원으로 인해 신속하거나 충분한 대응 및 복구조치들을 취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원력(resilience)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2020년 국제사회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검토(VNR)』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47명으로 제시하며 2019-2030 국가재해위험감축전략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⁴⁹⁴

1494_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ic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p. 40.

그림 V-4 재해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와 실종자 수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ic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p. 40.

그러나 재해재난에 대한 낮은 복원력으로 인해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려운 식량사정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거나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일부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시에 피해복구를 위해 국가 당국의 노동력 동원이나 물품지원에 대한 강제적·비강제적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국가가 식량 등 구호품을 지급하였다는 증언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나 당이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러한 증언들을 미루어보면, 어떤 유형의 재해인지 혹은 피해지역에 따라 국가 당국의 조치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해의 경우 피해지역이 구체적이고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해 여러 구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뭄의 경우 그 범위가 북한 전역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식량 지원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증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실제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다른 재해들에 비해 북한 당국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가뭄이 들어 작황이 좋지 않았으나, 국가의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¹⁴⁹⁵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가뭄이 자주 발생하지만 당국에서 주는 것은 없으며, 아이들이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농촌에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2017년에 40일간 고온현상으로 곡식이 다 타죽고 소출이 거의 없었지만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¹⁴⁹⁶

한편,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피해지역에 살림집, 식량, 생활용품 공급 등 일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원산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무상으로 살림집을 공급해주었다고 했고,¹⁴⁹⁷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2년 7월 수해가 심하게 났는데 당국에서 국수와 쌀을 5kg 정도 배급받은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¹⁴⁹⁸

1495_NKHR2019000055 2019-07-29.

1496_NKHR2020000040 2020-10-31.

1497_NKHR2019000062 2019-07-29.

1498_NKHR2018000019 2018-04-09.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수해 당시 전국에서 무산으로 사람들이 와서 집을 건설했는데, 군인과 기업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며,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한 가구당 쌀을 50kg씩 줬다고 들었다고 했다.¹⁴⁹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함경북도 수해 발생 시 살림집 건설, 식량 배급, 생활도구를 지급해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¹⁵⁰⁰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수해가 났을 때 인민반에서 시에 보고하면 보름치의 배급을 주는 등의 일시적인 조치를 해주었고, 2017년 수해가 심했을 때 국가에서 무료로 식량을 공급해줬다고 증언했다.¹⁵⁰¹

표 V-33 재해재난 시 지원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2년 7월 수해가 심하게 나서 당국에서 국수와 쌀을 5kg 정도 배급 받았음. | NKHR2018000019 2018-04-09 |
| 2016년 수해 당시 당국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수해가 난 지역의 집들을 다 지어줌. | NKHR2018000099 2018-10-01 |
| 2017년 원산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무상으로 살림집을 공급해줌. 수해가 났을 때 인민반에서 시에 보고하면 보름치의 배급을 주는 등의 일시적인 조치를 해줌. 2017년 수해가 심했을 때 국가에서 무료로 식량을 공급해줌. | NKHR2019000062 2019-07-29 |
| 2016년 수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줌. 2016년 수해 때 살림집 아파트 20-30동을 돌격대와 군대가 조직되어 밤샘작업으로 2달 동안 건설함. | NKHR2019000057 2019-07-29 |

1499_NKHR2021000021 2021-10-17.

1500_NKHR2021000029 2021-11-23.

1501_NKHR2019000062 2019-07-29.

재해재난 발생 시 북한 당국은 피해복구를 위해 군대 및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데, 지원물품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군대 동원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당, 기업소 등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피해지역 의복 등 지원되나 식량은 전달이 잘 안 되었다고 말했다.¹⁵⁰²

2018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6~2017년경 청진, 회령 쪽 수해가 났을 때 인민군대를 동원해 집을 지어주고 이재민에게 생필품 제공했다면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사람들에게 옷, 그릇, 돈 등 지원물품을 내도록 해서 증언자 본인도 2017년경 돈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⁵⁰³

표 V-34 재해재난 시 구호물자 모집 사례

| 증언내용 | 증언번호 |
|--|------------------------------|
| 2016년 수해 발생 시 김정은이 TV를 통해 전국에 호소해 청진 등에서 세대별로 강냉이를 걷어 함경북도에 구호물자를 보냄. | NKHR2019000057 2019-07-29 |
| 2017년 무산시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강압적으로 지원품을 내라고 해서 옷과 이불 등을 냄. | NKHR2018000105 2018-10-01 |
| 수해로 인한 당국의 조치를 보지 못함. 한국 오기 전 무산 쪽에서 수해가 있었을 때 지역별, 기업소별, 인민반별로 지원품을 냈음. | NKHR2018000104 2018-10-01 |
| 수해가 있을 경우 인민반에서 도와주자고 공지를 함. 강제성은 없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복, 물품 등을 내는데, 본인도 의복을 낸 경험이 있음. | NKHR2020000047 2020-11-28 |

1502_NKHR2021000002 2020-08-13.

1503_NKHR2021000011 2021-09-10.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가뭄으로 가물거나 장마가 와서 피해를 입으면, 조직적으로 농촌 지원을 많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까지도 가뭄이 오면 물 주러 가고, 풀이 한창 자랄 시기에는 풀베기 전투를 나가는 등 조직적으로 농촌을 엄청 지원한다고 증언했다.¹⁵⁰⁴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에서 수해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집을 지어주고, 생활가구 및 용품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용품은 군 보위부나 보안기관 등 당기관에서 지원품을 바치게 하는데 돈을 내면 물자를 사서 지원품을 보냈다고 말했다.¹⁵⁰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수해가 나면 인민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장으로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지원하라고 호소하는데, 현금 등 자발적으로 후원(또는 지원)을 받고 후원자의 명단을 작성해 동에 전달했다고 했다.¹⁵⁰⁶

과거 북한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개적으로 그 피해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를 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았음을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다고 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비밀로 했으나, 유엔 지원 때문에 지금은 다 공개한다고 말했다.¹⁵⁰⁷

1504_NKHR2022000007 2022-05-25.

1505_NKHR2021000005 2020-08-20.

1506_NKHR2021000017-2 2022-05-26.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쌀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유엔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고 말했다.¹⁵⁰⁸ 2016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2016년 8월 수해가 크게 나서 수산물, 이불, 숟가락 등을 지원받았는데, 유엔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했다.¹⁵⁰⁹

한편, 재해재난 발생 이후 적극적인 구호 및 복구에 나섬으로써金正은의 ‘애민지도자’ 이미지를 크게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주민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동원 등 비자발적 참여를 강요함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무산에서 수해가 났을 때 군대가 총동원되고 인민반도 수해 복구하는 데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맹돌격대를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복구했는데, 주택이 파손된 경우 원래 있던 집보다 더 멋있게 지어줬다고 들었다고도 했다.¹⁵¹⁰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함경북도 와 함경남도에서 수해가 많이 나는데, 피해 발생 시 기업소마다 사람을 뽑아서 지원을 나갔으며, 집이 없으면 집을 지어주었다고 증언했다.¹⁵¹¹

200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회령에 큰 수해가 발생했고, 중국, 삼지연 쪽에도 심각했는데 그때 동원된 적이

1507_NKHR2021000017-2 2022-05-26.

1508_NKHR2017000006 2017-04-10.

1509_NKHR2018000118 2018-10-22.

1510_NKHR2021000017-2 2022-05-26.

1511_NKHR2022000022 2022-06-21.

있었다고 증언했다.¹⁵¹² 또한 공장 기업소나 단체별로 식량을 모아 지원해주었고, 회령시에 사는 친척이 피해를 입었는데 옷과 식량을 지원받고 집도 받았다고 말했다.¹⁵¹³ 또한 그는 재난 발생 시 방송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지원도 나가야 한다고 했다.¹⁵¹⁴ 조류독감이 많았으며, C형 간염이 돌아서 방역을 많이 했는데, 담당진료소 사람들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손을 소독 물에 씻게 했다고 증언했다.¹⁵¹⁵

북한 당국 또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큰물(홍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복구를 강조해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5년 ‘산림복구전투의 원년’으로 정하는 등 산림복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산림 조성 및 보호 관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그러한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예전에 비해 양묘장이 많아졌고, 나무 심기도 많이 하고 있으며, 군대에서도 1~2개월 동안 훈련을 미루고 나무 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¹⁵¹⁶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주민들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밭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뽑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¹⁵¹⁷

1512_ NKHR2022000025 2022-06-23.

1513_ NKHR2022000025 2022-06-23.

1514_ NKHR2022000025 2022-06-23.

1515_ NKHR2022000025 2022-06-23.

1516_ 북한이탈주민 ○○○ 인터뷰 2021-10-05, 나용우 외, 위의 책, p. 84.

중앙 차원의 산림복구 정책이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식량 수급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일 시기 일궈놓았던 밭에서 개인 농사를 해 식량을 획득해 살았는데 김정은 시기 야산에 밭을 일구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증언했다.¹⁵¹⁸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나무심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구던 밭을 회수해 나무를 심는 바람에 식량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다.¹⁵¹⁹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텃밭이 없는 세대는 산에 밭을 경작해서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정은 정권 이후 산에 정해진 규격으로 식수를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일굴 수 있는 밭의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¹⁵²⁰

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권 침해 사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발병 이후 북한은 2020년 1월 신속하게 국경봉쇄를 단행, 인적·물적 교류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위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노력했다. 실제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코로나19 대응조치로 2020년 1월 말, 2월 초에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시켰다고 하면서, 집에서 자주 손을 씻도록 하

1517_NKHR2021000017-2 2022-05-26.

1518_NKHR2019000052 2019-07-20.

1519_NKHR2019000074 2019-08-26.

1520_NKHR2019000042 2019-07-01.

고, 시장이나 외부에 나가면 분무기를 쐬주었다고 증언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에 대해 잘 알려주었지만, 본인은 무직이라 잘 몰랐고 인민반에서 교육받았다고 덧붙였다.¹⁵²¹ 또한 2021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사람 간에 거리 유지를 강조하고 기차대가 단속을 하며 인민반 회의를 통해 당에서 코로나19 관련된 규칙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¹⁵²²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의 조치가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동시에 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감염병이 돌면 아픈 학생만 집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¹⁵²³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심지어 군대에서도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움이나 수두가 돌았고 결핵에 걸린 부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¹⁵²⁴

한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진료소들이 우선 관할 병원 검진, 방역, 예방주사를 하고 있으나, 시설 부족으로 확진자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¹⁵²⁵ 또한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위험한 감염병이 돌았는데 진료소에서 나와서 집을 다 소독하고 소독약을 많이 나눠줬다고 증언했다.¹⁵²⁶

1521_NKHR2021000021 2021-10-17.

1522_NKHR2021000012 2021-09-13.

1523_NKHR2021000001 2021-08-13.

1524_NKHR2021000019 2021-10-15.

1525_NKHR2021000002 2021-08-13.

북한 당국이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이를 보면, 지역에 따라 대응체계가 상이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감염병 체계가 잘 되어 있어 방역에 관해 여러 방면으로 들었으며 학교, 인민반, 부모님 직장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¹⁵²⁷ 또한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사스(SARS) 당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받았으며 공장을 다 폐쇄하고 닭고기, 칠면조 등 가금류를 먹지 말라고 들었고, 인민반장이 모이라고 해서 선전을 하고 의사와 방역 의사가 와서 선전했지만, 마스크나 약을 주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¹⁵²⁸

한편,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2021년 초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했다.¹⁵²⁹ 2020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2022년 4월경까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없었지만,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 코로나19가 퍼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¹⁵³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간 이동이 철저히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증언에 따르면,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26_NKHR2021000007 2021-09-06.

1527_위의 증언.

1528_NKHR2021000020 2021-10-16.

1529_NKHR2022000030 2022-07-22.

1530_NKHR2022000022 2022-06-21.

202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북한 당국이 세관을 폐쇄하고 반입을 차단하며 중국에 있는 회사는 모두 철수하고 중국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45일 격리시켰다고 들었다면서,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단속 통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¹⁵³¹

202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가 아닌 곳, 특히 전연(전방)지역으로의 이동은 단속이 상당히 심해서 ○○시에서 미장일로 돈을 벌던 앞집 사람이 일을 못하고 왔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바다에도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증언했다.¹⁵³²

코로나19의 북한 지역 내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통제 조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화되었으나, 국가나 당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1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며, 그동안 모아둔 것으로 생활했다고 하면서, 쌀 가격이 북한돈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특히 중국 수입품 가격이 2~3배로 뛰었다고 증언했다. 돼지고기는 2배, 건전지는 5배가 올랐고, 국산 고춧가루나 수입하는 조미료값도 올랐다고 말했다.¹⁵³³

또한 그는 시장을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음식을 못 먹게 하고 그냥 사서 가야만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매대의 수

1531_NKHR2021000021 2021-10-17.

1532_NKHR2022000030 2022-07-22.

1533_NKHR2022000030 2022-07-22.

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이 없어서 상품도 많이 줄었다고도 했다.¹⁵³⁴

라. 평가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김정 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및 인프라, 재정 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의 대응수준이 상이 하다는 것을 여러 증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가 물(가뭄)보다는 피해지역에 분명한 수해가 발생한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 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해재난 대비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림복원사업이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식량 공급약화 등 생존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북한은 철저한 국경봉쇄는 물론이고, 코로나19의 발병이 알려졌던 2022년 5월 엄격한 지역격폐 등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이동권을 상당히 강력하게 통

1534_NKHR2022000030 2022-07-22.

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대응조치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을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가 상이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2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값 24,000원

 통일연구원



9 791165 890957

ISBN 979-11-6589-095-7